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

결산분석시리즈 Ⅲ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유민호 임동훈 김민혁 이미선 김다운
임제웅 김유진 권인오 현서린 박은형
우형규 최성찬 오지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 원 | 양승미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Ⅲ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차 례

CONTENTS

II. 재정총괄 분석

12.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 분석 ····· 3
12-1.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 3
12-2. 2025년 추경 사업 총괄 분석 ····· 6
12-3. 산불피해 복구 및 대응력 강화 사업 분석(1회 추경) ····· 25
12-4. 소비여력 보강사업 분석(2회 추경) ····· 57
13.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 64
14. 재정의 신속집행 분석 ····· 102
15. 집행부진 사업 분석 ····· 113
16. 수시배정사업 분석 ····· 187
17. 재해·재난대책비 분석 ····· 213
17-1. 재해대책비 사업 내 전년도 피해복구비와 당해연도 재난대책비의 통합편성으로 인한 문제점 ····· 215
17-2. 재난대책비의 예비비적 성격을 고려한 본예산 규모 설정 필요 ····· 222
17-3.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관리 필요 ····· 227
18. 지방이전재원 결산 분석 ····· 237
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분석 ····· 273
20.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결산 분석 ····· 310
21.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 344
21-1 예산성과금 ····· 345
21-2.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 361
22. 국고금 관리체계 분석: 2025년 국방비 미지급 관련 ····· 374
22-1. 국고금 관리체계의 구조와 운영원리 ····· 375
22-2. 2025년 연말 국방예산 미지급 사안 ····· 382

CONTENTS

22-3. 분석의견 ····· 394
22-4. 개선방안 ····· 424
2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 427
23-1. 공공기관 결산 개요 ····· 428
23-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441
23-3. 공공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448
24. 정부 위탁사업 분석: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심으로 ····· 456
25.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현황 분석 ····· 479

Ⅱ. 재정총괄 분석

12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 분석

12-1.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①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③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제1회 추경안”)을 국회 제출(2025.4.21.)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12.2조원으로,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과 추가 국채발행 8.1조원이며, 재해·재난 대응 3.3조원,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민생 안정 4.4조원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1 재해 · 재난 대응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1.4	0.03
	재해 · 재난 예방 · 대응력 강화	1.9	1.9	0.09
2 통상 및 AI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2.1	0.01
	AI 생태계 혁신	1.8	1.9	0.1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0.5	0.02
3 민생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2.6	-
	영세 · 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2.0	0.4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0.6	0.4
4 기타	건설경기 보강	-	0.8	0.8
	APEC 정상회의 등	0.2	0.2	0.04
5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0.2	△0.2
합계		12.2	13.8	1.6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산불 피해복구 예산 확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SOC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정부안(12.2조원)보다 1.6조원 증액된 13.8조원으로 의결(2025.5.1.)되었으며, 증액된 1.6조원의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 0.1조원과 추가 국채발행 1.4조원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① 소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기 진작, ②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 ③ 세입경정을 통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목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제2회 추경안")을 국회 제출(2025.6.23.)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의 규모는 30.5조원(세출확대 20.2조원,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국고채 추가발행 22.7조원(외평채 발행규모 3조원 감축 별도)으로 충당하였으며, 경기 진작 15.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정부안	국회 확정	증감
1 경기 진작	소비여력 보강	11.3	13.3	2.0
	건설경기 활성화	2.7	2.7	0.02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	1.3	0.1
2 민생 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	1.4	-
	고용안전망 강화	1.6	1.6	-
	취약계층 지원(발달장애인, 농어민 등)	0.7	1.0	0.3
	지방재정 보강 등	1.3	1.3	-
3 세입감액경정		10.3	10.3	-
4 국회 감액 (국고채 이자 등)		-	△1.1	△1.1
합계		30.5	31.8	1.3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2.4조원을 증액하고,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을 감액하여 정부안 30.5조원보다 1.3조원 증액된 31.8조원으로 의결(2025.7.4.)하였다.

증액된 2.4조원의 재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 지출감액 1.1조원과 추가 국채발행 1.3조원을 통해 조달하였다.

다. 종합

종합하면, 2025년 제1회 추경은 주로 산불피해 복구와 대응, 대미 관세 정책에 따른 산업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제2회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및 10.3조원 규모의 세입감액경정이 중심이 되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총지출은 703.3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0조원 증가하였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2%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4%p 악화되었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0%p 증가하였다.

[2025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25년 본예산(A)	'25년 1회 추경	'25년 2회 추경(B)	본예산 대비 증감(B-A)
◇ 총수입	651.6	652.8	642.4	△9.1
◇ 총지출	673.3	687.1	703.3	+30.0
■ 통합재정수지	△21.7	△34.3	△60.8	△39.1
(GDP대비, %)	(△0.8)	(△1.3)	(△2.3)	
■ 관리재정수지	△73.9	△86.4	△111.6	△37.7
(GDP대비, %)	(△2.8)	(△3.3)	(△4.2)	
■ 국가채무	1,273.3	1,280.8	1,301.9	28.6
(GDP대비, %)	(48.1)	(48.4)	(49.1)	

12-2. 2025년 추경 사업 총괄 분석

가. 2025년 제1회 추경 부처별 증액사업 분석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포함하여 23개 부처, 147개 세부사업에서 총 13조 7,76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다(총지출 기준).

[2025년 제1회 추경 증액 사업의 부처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수	1회 추경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감사원	1	4,519	14,512	12,485	1,938	86.0
금융위	4	386,500	692,500	692,500	0	100.0
개보위	1	1,296	8,782	8,811	35	100.3
기재부	5	1,957,687	35,824,678	32,379,402	876,686	90.4
교육부	1	115,700	4,980,747	4,980,747	0	100.0
과기부	24	1,907,587	3,015,294	3,013,026	2,268	99.9
외교부	1	16,275	118,105	110,618	7,487	93.7
법무부	11	50,691	178,296	167,401	9,151	93.9
행안부	5	1,088,608	2,980,206	3,059,212	8,248	102.7
경찰청	2	1,253	27,296	26,256	1,015	96.2
소방청	3	7,842	48,238	39,756	15,160	82.4
문체부	6	48,577	184,362	183,398	997	99.5
농식품부	4	212,897	365,348	360,050	5,298	98.5
산림청	7	440,727	1,193,425	1,054,508	167,936	88.4
산업부	15	981,382	2,318,582	2,171,719	138,547	93.7
복지부	3	14,120	53,576	54,387	691	101.5
기후부	5	241,444	2,843,922	2,808,098	90,665	98.7
고용부	9	280,317	2,024,344	1,884,267	128,907	93.1
성평등부	1	1,090	14,788	14,788	0	100.0
국토부	22	1,135,207	23,218,163	9,407,683	13,920,620	40.5
해수부	2	56,180	160,094	163,087	7	101.9
해경청	1	315	8,203	8,013	117	97.7
중기부	14	4,826,733	11,790,426	11,754,004	36,422	99.7
합계	**147**	**13,776,947**	**92,063,887**	**74,354,216**	**15,412,193**	**80.8**

주: 미집행=이월+불용 규모, 집행률은 2025년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로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한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소방청, 산림청, 국토교통부를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1) 집행부진 사업 분석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투자유치기반조성,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등으로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25년 제1회 추경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4,081,555	435,848	3.1
산업부	투자유치기반조성	403,796	288,023	71.3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1)]	213,448	158,614	74.3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39,574	31,140	78.7

주: 1)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제2회 추경 편성시에도 증액됨
1. 예비비는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투자유치기반조성(산업통상부) 사업[1)]의 경우, 2025년 본예산은 3,642억 4,600만원이나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거점을 국내로 조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39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예산현액 4,037억 9,600만원 중 2,880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56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이 중 현금지원 내역사업은 미국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되었으나, 외투기업 투자 철회 및 지연 등으로 본예산 일부와 추경 증액분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 확인을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액에 대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또한, 국내복귀 투자보조 지원대상 중 일부 기업은 9월 중 지원 여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수개월 뒤로 순연되면서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 착수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울러 향후 지차체의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및 실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비를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국토교통부) 사업[2]은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244억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현액은 14조 815억 5,500만원이었으나 4,358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조 6,457억 7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심의 결과와 달리 이차보전 방식에 편중하여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기존 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이 경직적으로 누적되어 주택도시기금 전체 사업비 대비 이차보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그 조달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융자를 적정 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소방청) 사업[3]은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 장착을 통한 물 수송 용량을 증가시켜 향후 대형산불에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내역사업에 22억원을 증액하였다. 내역사업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대형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사업은 입찰 조건 설계 미흡으로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2년 사업은 4대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등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추경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소방청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2) 사업추진 과정 등의 문제점 분석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산업통상부) 사업[4]은 요소의 수입선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정보 분석, 공급망컨설팅,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45억 4,700만원이었으나 대미 관세로 촉발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85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905억 4,500만원 중 87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7,400만원은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고위험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2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2027년 사업 종료 이후 재가동된 시설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중장기 운영방안이나 후속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내역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2025년 보조사업자 중 다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중요재산 정보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통상부) 사업[5]은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설비투자 및 M&A 등 전환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54억 9,4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 20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75억 1,3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으나, 실집행률은 76.2%에 불과하다.

동 사업은 2025년 추경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요 부족에 따라 목표로 한 2,500억원의 15%를 달성하는 데 그쳤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타 부처 유사 사업과 현장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6]은 국내 AI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GPU를 매입하여 민간클라우드사의 AI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GPU 서버 확충, GPU 통합환경구축 내역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1조 4,608억 3,800만원이 신규 증액되어 이를 전액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하였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GPU 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2025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GPU 확보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26년 상반기부터 GPU 구축·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30년까지 운용되어야 하고, 민관이 함께 2030년까지 26만장의 GPU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GPU 배분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부활용분 1만장의 30%까지는 산업계에 배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산업계의 자부담 인하, 산업계와 학·연을 별도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5년 추경으로 매입한 GPU 지원을 받는 AI 국가프로젝트는 소관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정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국가 AI 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과제 내 GPU 임대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행정안전부) 사업[7]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역대 최대규모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안동시, 영덕군, 의성군)의 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체계적인 마을단위 복구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이재민 주거시설을 포함한 마을단위 주요 시설 복구·재생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후,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6월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착수가 10월 말 이후 추진되면서 전액 실집행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주요 시설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대지급금 지급(고용노동부) 사업[8]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1,508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 7,190억 9,200만원 중 6,88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05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대위변제(고용노동부) 사업[9]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3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 863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향후 신용보증 규모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분에 대하여 융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 사업[10]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25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11억 7,100만원을 인건비 부족에 따라 본부인건비, 노동위원회 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로 이용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집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

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신용보증기금출연(중소벤처기업부) 사업[11]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 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보증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2025년 제2회 추경 부처별 증액사업 분석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25개 부처, 198개 세부사업에서 총 21조 8,11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감액된 사업은 별도 분석을 위해 제외하였다.

[2025년 제2회 추경 증액 사업의 부처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수	2회 추경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감사원	1	759	14,512	12,485	1,938	86.0
대통령실	1	4,125	13,302	8,903	4,399	66.9
식약처	1	1,308	15,591	14,672	919	94.1
금융위	3	1,100,354	1,601,559	1,601,849	0	100.0
기재부	7	1,335,452	31,832,057	31,497,462	345,408	98.9
교육부	6	163,236	5,411,628	5,392,225	19,403	99.6
과기부	12	179,311	433,758	433,758	0	100.0
외교부	2	2,000	122,525	114,398	8,199	93.4
법무부	7	4,004	153,045	143,850	8,104	94.0
국방부	7	222,310	3,762,526	3,317,922	535,908	88.2
행안부	6	12,825,731	14,135,056	14,083,057	52,029	99.6
경찰청	2	1,584	729,569	708,540	18,915	97.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수	2회 추경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소방청	1	6,649	69,067	77,626	2,895	112.4
보훈부	16	93,361	846,552	845,690	2,259	99.9
문체부	11	186,993	1,266,686	1,254,540	21,979	99.0
유산청	1	1,200	1,878	1,834	44	97.7
농식품부	10	293,373	4,059,096	4,417,443	81,453	108.8
산림청	2	26,294	275,186	217,843	68,662	79.2
산업부	7	33,666	416,319	424,589	96	102.0
복지부	15	221,157	9,854,595	9,847,808	8,656	99.9
기후부	18	626,688	5,190,997	5,124,080	121,609	98.7
고용부	10	1,592,856	16,011,959	15,676,297	335,814	97.9
국토부	35	1,875,440	11,029,521	10,006,424	1,088,243	90.7
해수부	8	87,647	774,772	792,299	27,876	102.3
중기부	9	925,830	4,770,539	4,770,425	114	100.0
합계	**198**	**21,811,328**	**112,781,251**	**110,786,019**	**2,754,919**	**98.2**

주: 미집행=이월+불용 규모, 집행률은 2025년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위 현황에는 제1회 및 제2회 추경을 통해 연속으로 증액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27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 연속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회	2회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9,234	4,519	759	14,512	12,485	89	1,849
기재부	지방채 인수(융자)	10,000	200,000	1,000,000	1,210,000	1,071,164	0	138,836
기재부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977,898	142,687	288,453	30,469,038	30,273,698	0	195,340
과기부	AI 반도체 실증 지원	24,370	44,000	30,000	98,370	98,370	0	0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 체계고도화(정보화,출연)	57,885	6,700	9,000	73,585	73,585	0	0
외교부	2025 APEC 의장국	100,830	16,275	1,000	118,105	110,618	1,600	5,887
법무부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35,543	2,283	85,664	80,983	65	4,081
법무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9,187	4,539	241	23,967	23,445	0	651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회	2회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9,918	3,726	812	14,456	12,753	0	1,170
법무부	공공수사	1,346	1,740	160	3,246	2,287	0	959
법무부	마약수사	7,823	1,387	374	9,584	8,878	0	645
법무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858	1,187	79	6,124	5,738	0	295
법무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9,861	88	55	10,004	9,765	0	239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0	400,000	600,000	1,000,000	999,969	5	26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17,678	52,500	944,332	936,632	0	7,700
문체부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37,150	16,500	16,000	69,650	69,628	0	118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03,675	15,915	213,448	158,614	65,583	420
산림청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5,419	5,940	10,379	61,738	59,229	80	2,579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지원	36,746	1,000	2,710	40,456	40,460	0	1
기후부	하수관로 정비	1,626,418	84,294	7,000	1,717,712	1,657,618	0	60,095
기후부	국가하천정비	679,400	22,500	15,000	716,900	739,692	18,773	4,444
국토부	평택-오송2복선화	250,000	100,000	100,000	450,000	450,000	0	0
국토부	고속철도안전 및시설개량	288,382	40,675	20,000	349,057	349,057	0	0
국토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34,674	17,815	20,055	72,544	72,544	0	0
중기부	지역신용보증 재단재보증	210,940	333,437	281,269	825,646	825,646	0	0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49,388	26,261	360,455	360,455	0	0
중기부	ICT융합스마트 공장보급확산	236,076	26,847	24,000	286,923	286,919	0	4
합계	**27개 사업**	**34,969,071**	**1,682,140**	**2,524,305**	**39,245,516**	**38,790,232**	**86,195**	**425,336**

주: 2회 추경 편성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현액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집행부진 사업 분석

제2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사업 등으로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13,302	8,903	66.9
법무부	공공수사	3,246	2,287	70.5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8,254	13,858	75.9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융자)	133,359	77,736	58.3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운영	213,448	158,614	74.3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63,769	30,687	48.1
국토부	사천서부산단진입도로	1,495	733	49.0
국토부	음성맹동인곡산단진입도로	9,616	5,337	55.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사업[12]의 경우, 제1회 추경을 통해 1,036억 7,500만원, 제2회 추경을 통해 159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2,134억 4,800만원이었으나 1,586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655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다.

동 사업은 산림헬기 계약에서 도입까지 약 4년이 소요됨에도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예산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연부율이 명확한 기준 없이 매년 임의로 산정되어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실제 헬기 제작 및 행정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과거 계약 사례, 실제 공정률, 연도별 실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연부율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7.

(2) 사업추진 과정 등의 문제점 분석

공공AX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13]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및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150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추진됨에 따라, 협약 체결 2개월 만에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성과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계속사업 지원이 결정된 만큼, 향후 철저한 과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만족도 지표에서 벗어나, 기술의 완성도, AI 솔루션 현장 실증·적용 건수 등 결과지표로 성과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행정안전부) 사업[14]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12조 1,708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2조 1,26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이월했으며 440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분담비율 설정으로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정책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구조적 미비로 사업경비의 이·전용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구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편성 시 이를 환류하지 않고 기존 편성 방식을 답습하는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행정안전부) 사업[15]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1회 및 제2회 추경을 통해 각각 4,000억원과 6,000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원이며 이 중 9,99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지원율을 회차별로 차등 조정하면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율이 높은 2회 추경에 집행을 집중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국회 심의에서 제시되지 않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도입해 집행 실적에 연동하여 국비지원율을 상향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회차별 집행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1·2회 추경 집행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 지원기준 집단 내에서도 실제 국비지원율이 상이하게 나타나 집행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표방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대응지방비 부담 누적 등으로 참여 여력이 낮아 지원 예산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집중됨으로써 당초의 지원 취지와 상충되는 배분 구조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16]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254억 9,9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을 통해 60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872억 8,9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1,712억 7,400만원(실집행률 59.6%)에 불과하다.

내역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교부하는 등 실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국토교통부) 사업[17]은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여 민간 대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LH에 전액 출자하였으나 실집행액은 없다.

동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추진경과를 기반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미분양안심환매(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미분양 안심환매(국토교통부) 사업[18]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환매사업의 추진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지방미분양안심환매(융자) 사업에 신규로 500억원을,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나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사업의 실집행액은 9억 9,700만원(실집행률 2%)에 불과하다.

미분양안심환매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HUG는 매입가격 한도를 상향하는 등 보완책을 내고 있으나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바,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다. 2025년 제2회 추경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사업 분석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시, 재원 마련을 위해 14개 부처, 64개 사업에 대해 총 5조 6,368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제2회 추경 감액 사업의 부처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수	2회 추경 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	집행률
기재부	4	△132,000	555,015	502,784	52,231	90.6
교육부	9	△2,522,702	79,056,846	79,013,481	43,365	99.9
외교부	9	△67,876	755,125	737,598	12,088	97.7
통일부	5	△320,260	441,997	10,763	431,358	2.4
국방부	4	△82,812	4,276,006	4,241,306	24,689	99.2
방사청	7	△87,761	157,304	96,559	50,481	61.4
행안부	1	△16,092	44,563	44,563	0	100.0
보훈부	1	△9,724	20,325	11,412	5,341	56.1
문체부	3	△108,519	209,945	158,528	54,249	75.5
복지부	4	△558,867	21,749,236	21,442,970	151,658	98.6
기후부	4	△444,441	2,840,323	2,198,788	647,197	77.4
고용부	1	△9,189	24,555	24,555	0	100.0
국토부	11	△1,226,531	2,086,769	1,869,287	220,698	89.6
중기부	1	△50,000	4,220,000	4,184,200	35,800	99.2
합계	**64**	**△5,636,774**	**116,437,947**	**114,536,793**	**1,729,154**	**98.4**

주: 미집행=이월+불용 규모, 집행률은 2025년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 중 통일부의 경우, 5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3,20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해당 사업들의 현액 대비 집행률은 2.4%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방위사업청과 국가보훈부도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내 지출 소요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감액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였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제1회 추경을 통해 각각 1,157억원과 5,0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2회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다.

[2025년 제2회 추경 감액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본예산	2회 추경 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기재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775,215	△72,000	446,501	398,061	0	48,440	89.2
기재부	비축토지매입	100,000	△30,000	70,000	67,217	0	2,783	96.0
기재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30,425	△22,000	8,425	8,400	0	25	99.7
기재부	중남미차관(융자)(ODA)	38,089	△8,000	30,089	29,106	0	983	96.7
교육부	보통교부금	69,659,572	△1,927,313	67,732,259	67,732,259	0	0	100.0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440,000	4,980,747	4,980,747	0	0	100.0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00	△60,000	1,941,000	1,933,519	0	7,531	99.6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33,595	1,033,814	1,033,814	0	0	100.0
교육부	국립대학 인건비	1,872,672	△22,600	1,850,072	1,814,362	0	35,642	98.1
교육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16,797	726,916	726,916	0	0	100.0
교육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39	△14,931	545,908	545,908	0	0	100.0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5,599	242,306	242,306	0	0	100.0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629	△1,867	3,842	3,651	27	165	97.0
외교부	유엔PKO예산분담금 납부(ODA)	216,784	△18,500	198,284	186,323	0	11,961	94.0
외교부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23,580	△9,389	114,191	114,188	0	3	100.0
외교부	탄자니아(ODA)	17,931	△8,000	9,931	9,931	0	0	100.0
외교부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6,617	237	112	0	125	47.3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6,370	77,278	78,655	0	0	101.8
외교부	베트남(ODA)	57,293	△5,000	52,293	48,693	0	0	93.1
외교부	글로벌연수(ODA)	67,973	△5,000	62,973	62,373	0	0	99.0
외교부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5,000	173,966	173,966	0	0	100.0
외교부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4,000	65,972	63,356	0	0	96.0
통일부	민생협력지원	475,885	△202,844	273,041	757	0	272,284	0.3
통일부	경협기반(무상)	102,649	△51,325	51,324	4,123	0	47,201	8.0
통일부	구호지원	112,230	△35,000	77,230	0	0	77,230	0.0
통일부	경협기반(융자)	59,051	△30,831	28,220	0	0	28,220	0.0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12,442	△260	12,182	5,883	0	6,422	48.3
국방부	병인건비	3,709,274	△59,700	3,649,574	3,626,880	0	13,837	99.4
국방부	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481,324	△20,800	460,524	459,765	3	756	99.8

(단위: 백만원, %)

소관	세부사업명	본예산	2회 추경 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국방부	통신요금	86,210	△1,200	85,010	78,351	2,259	2,995	92.2
국방부	정보보호(정보화)	82,010	△1,112	80,898	76,309	1,754	3,085	94.3
방사청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30,358	△30,000	358	351	0	7	98.2
방사청	120mm자주박격포	148,508	△20,000	128,508	84,928	31,098	4,773	66.1
방사청	특수작전용 권총	27,616	△13,670	13,946	55	13,891	1	0.4
방사청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00	△11,962	6,038	3,076	0	693	50.9
방사청	대형공격헬기2차	10,044	△9,700	344	15	0	5	4.2
방사청	기동저지탄(R&D)	1,245	△1,225	20	8	0	12	40.1
방사청	소형무인기대응체계 (Block-Ⅰ)(R&D)	9,294	△1,204	8,090	8,126	0	1	100.4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60,655	△16,092	44,563	44,563	0	0	100.0
보훈부	국립묘지조성	30,049	△9,724	20,325	11,412	4,780	561	56.1
문체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248,057	△84,327	163,730	112,330	0	51,400	68.6
문체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60,020	△13,805	46,215	46,198	49	2,801	100.0
문체부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0	△10,387	0	0	0	0	-
복지부	기초연금지급	21,814,577	△392,662	21,421,915	21,202,820	0	148,621	99.0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99,130	△123,561	175,569	90,928	252	378	51.8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1,041	△29,998	121,043	120,918	0	0	99.9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3,355	△12,646	30,709	28,303	2,378	28	92.2
기후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2,263,104	△362,250	1,900,854	1,594,659	98	306,146	83.9
기후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928,423	△63,000	865,489	528,759	0	336,730	61.1
기후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49,011	△12,191	36,820	38,143	0	4,224	103.6
기후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4,226	△7,000	37,226	37,226	0	0	100.0
고용부	숙련기술장려사업	33,744	△9,189	24,555	24,555	0	0	100.0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	964,025	△522,364	441,661	362,024	93,309	0	82.0
국토부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204,281	△182,091	22,190	11,734	0	0	52.9
국토부	행복주택(융자)	438,409	△124,400	314,009	313,502	0	507	99.8
국토부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296,800	△122,200	174,600	174,600	0	0	100.0
국토부	국민임대(융자)	187,597	△93,300	94,297	57,137	0	37,160	60.6
국토부	공공임대(융자)	662,758	△58,788	603,970	603,044	0	926	99.8
국토부	남부내륙철도	118,863	△50,000	68,863	0	0	68,863	0.0
국토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64	△25,100	186,964	186,964	0	0	100.0
국토부	월곶-판교 복선전철	171,983	△20,000	151,983	151,983	0	0	100.0
국토부	동광주-광산고속도로건설	36,663	△18,331	18,332	8,300	10,032	0	45.3
국토부	충북선 고속화	19,857	△9,957	9,900	0	0	9,900	0.0
중기부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50,000	4,220,000	4,184,200	0	35,800	99.2
합계	64개 사업	121,705,348	△5,636,774	116,437,947	114,536,793	159,931	1,569,224	98.4

주: 1. 2회 추경 감액 이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현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음영표시는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던 64개 사업의 최종적인 불용액 규모는 1조 5,692억원에 달하는 바, 추경 편성시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차원에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추가적인 감액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을 수 있다.

또한, 연례적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불용이 발생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활용하였다면 불필요한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경 편성시에는 지출구조조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계연도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집행부진 사업 분석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부내륙철도(국토교통부) 사업[19]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는 1,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00억원 감액된 6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예산 1,188억원 중 5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잔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철도 등 건설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문화체육관광부) 사업[20]은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시설설치,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2,480억 5,700만원이나 제2회 추경을 통해 843억 2,700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7.

만원이 감액되어 계획현액은 1,637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12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14억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2025년 불용액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상당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보건복지부) 사업[21]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단기연수와 술기교육 지원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보건의료 및 특수전문분야에 종사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 및 실습비를 지원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본예산은 2,991억 3,000만원이나 주요 지원 대상인 전공의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55억 6,9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추가적인 불용예상액이 발생함에 따라 846억 8,900만원을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이·전용하여 활용하였으며, 예산현액 910억 5,800만원 중 90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내역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이전에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따라 실제 사업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비해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추경예산을 통한 대규모 감액, 불용예상액의 연도말 이용,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재정 투입의 성과가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은 의정갈등이라는 정책변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의 복귀 시점 및 규모, 사업 참여가능성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련수당 지급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규모 감액, 불용예상액의 연도말 이용,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문제가 있다.

---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2) 사업추진 과정 등의 문제점 분석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업 중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보건복지부) 사업[22]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1,51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을 통해 299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1,209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가입률, 저축률이 저조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입률, 저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수요 기반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 확대와 함께 중도해지 및 미수납 환수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환수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계좌 유지 여건을 고려한 조기인출·사후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만기 도래 계좌와 민간 후원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 만기계좌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후원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민간후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12-3. 산불피해 복구 및 대응력 강화 사업 분석(1회 추경)

가. 현 황

2025년 3월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하 “영남지역 대형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군으로 확산되었고, 3월 22일에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금성면·안계면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의성 산불은 서풍의 영향으로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확산되었으며, 같은 기간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도 주변 일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체 산불피해면적은 8개 시·군 약 10만 4천 ㏊로, 공식 통계가 작성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00년 동해안 산불(약 2만 4천 ㏊)을 상회한다. 이로 인해 1조원을 상회하는 재산피해와 사망 27명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운사와 안동 만휴정 원림 등 문화유산이 소실되었으며 이재민은 최대 2만 7천여 명 규모로 집계되었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물량	피해액
사유 시설	소 계		-	517,473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반파(동)	256	11,589
		세입자(세대)	358	-
		주거불가능(세대)	572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곤충(kg)		22,061 / 24,509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7
	어망어구/어선(건)		30	173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단위: 백만원)

구 분			물량	피해액
공공시설(건)	소 계		-	564,313
	산 림 청	산림(ha) 국유림	11,218	41,588
		산림(ha) 사유림	92,658	352,739
		산림시설	324	15,218
	행안부	도로	57	13,526
		공공건물 등	86	3,520
		마을기반	17	7,269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6	2,095
		상수도 등	68	26,815
	유산청 국가유산		29	45,058
	국방부 군사시설		4	663
	국토부 국도		15	6,566
	농식품부 수리시설		103	3,433
	문체부 문화체육시설		37	34,193
	복지부 복지시설		16	10,806
	산업부 에너지시설		5	472
	해수부 해양시설		2	353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2025.5.).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이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은 총 1조 817억 8,600만원이고 복구비는 1조 8,808억 6,0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는 6,862억 7,8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산림청 소관 긴급벌채, 복구조림 등 복구비는 8,646억 8,200만원 수준이다.

[부처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액·복구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액	복구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081,786	1,880,860	1,213,608	667,253
행정안전부	소 계	541,788	686,278	453,516	232,762
	사유시설	517,473	495,393	346,792	148,601
	공공시설	24,315	212,877	106,731	106,146
산림청	소 계	409,544	864,682	508,903	355,779
	긴급벌채	-	62,887	62,887	-
	복구조림	394,326	690,041	381,401	308,640
	산림시설	15,218	109,432	63,454	45,978
	응원헬기	-	2,319	1,160	1,160
기후부		28,910	186,192	168,862	17,330
국가유산청		45,058	49,084	34,731	14,353
국방부		663	1,241	1,241	-
국토교통부		6,566	7,751	7,751	-
농림축산식품부		3,433	6,300	2,696	3,604
문화체육관광부		34,193	45,377	33,361	12,016
보건복지부		10,806	10,612	1,890	8,722
산업통상자원부		472	784	366	418
해양수산부		353	570	285	285

자료: 중앙재난대책본부(2025.5.).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년 제1회 재해·재난 대응사업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조 4,5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52.3%인 7,590억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대응력 강화 추경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추경예산 (증액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8,000	42	7,950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80,000	-	-	80,00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72,000	-	-	72,000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24,400	4,430	-	19,970
	드론안전 및 활성화지원	10,000	9,685	-	-
행안부	재난대책비	660,000	388,058	46,120	19,271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00	1,490	8,510	-
기후부	국립공원공단 출연	20,100	19,000	1,100	-
	재해대책비	112,000	87,898	-	13,068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74,000	102,777	69,344	1,879
	산림헬기 도입·운영	96,800	31,217	65,583	419
	임도시설	100,825	71,251	25,376	4,198
	대형산불 대응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11,657	11,657	-	-
	산불방지대책	43,630	28,599	849	8,421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2,200	-	2,200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5,163	2,016	3,074	73
합 계		1,430,775	758,120	230,106	219,299

주: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사업수행주체의 실집행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나. 분석의견

우리나라 산불 대응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산림재난방지법」('26.2.1. 시행)에 근거하여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예방-대응-복구·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상시 산불 예방·감시 및 진화(대응)는 산림청이 총괄하며,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한다. 진화 단계의 지휘권은 산불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의 경우 산림청장이 통합 지휘권을 행사한다. 단,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이 이루어지며,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쳐 피해조사, 시설 복구, 이재민 주거·생계 지원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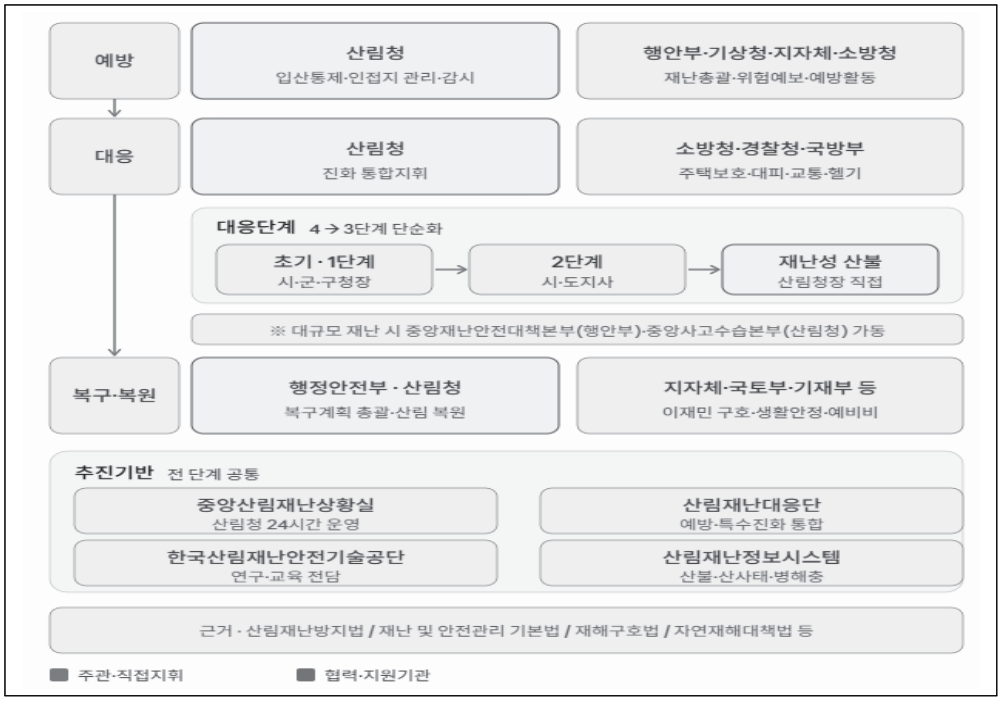

자료: 「재난안전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하여 재구성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러한 대응체계에 따라 계획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관련 시설복구·이재민 지원 사업과 향후 산불 예방·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장비도입 및 방재인프라 확충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산불대응체계와 2025년 제1회 추경 관련 사업체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청
지자체 지역대책본부

▼

복구·이재민 지원 시설복구·주거지원	**예방·대응력 강화** 감시·예측·진화역량 제고
이재민 주거지원	**예방 역량 강화**
다가구매입임대(융자) (국토부 800억원)	대형산불 지능형솔루션 R&D (산림청 117억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토부 720억원)	드론안전 및 활성화[소방특화 드론 국산화] (국토부 7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국토부 244억원)	산불방지대책①[감시기반 확충·과학기반 산불감시] (산림청 68억원)
마을 재건	**진화장비 도입·운영**
도시재생사업(특별재생) (국토부 80억원)	산불방지대책 ② [진화장비확충·고정익항공기물탱크 도입 등] (산림청 344억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행안부 100억원)	산림헬기 도입·운영 (산림청 968억원)
피해지원 및 복구	국립공원공단 출연 [노후헬기교체·진화차량 구입 등] (기후부 201억원)
재난대책비[피해지원·시설복구) (행안부 6,600억원)	중앙119특수구조대[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소방청 22억원)
산림재해대책비[고초목제거 등] (산림청 1,740억원)	**기타 방재인프라·인력 운영**
재해대책비[폐기물처리] (기후부 1,120억원)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소방청 52억원)
	임도시설 (국토부 1,008억원)
	산불방지대책 ③ [산불재난특수진화대·대응센터 등] (산림청 25억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사업 분석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이하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불피해지역 장기 주거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다가구임대주택 사업은, 이재민의 거주 선호와 이주 의사를 과거 재난사례와 산불 직후 실시된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책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과다하게 불용되었으며, 약 3,551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거 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는 총 3,848개소로 이 중 93.3%에 해당하는 3,592개소가 주택이 전소(全燒)된 경우이며, 이에 따라 3,358세대 5,54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같이 산불로 인한 주거시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영남지역 산불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주택피해 현황]

(단위: 동, 세대, 백만원)

구분	총계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청송		경북 영양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전파	3,592	338,663	319	24,876	1,255	102,807	770	87,040	113	11,096
반파	256	11,589	32	1,333	124	5,357	17	959	11	552
세입자	358	-	43	-	79	-	105	-	14	-
주거 불가능	572	-	36	-	258	-	78	-	13	-
구분	경북 영덕		경남 산청		경남 하동		울산 울주		그 외 지역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물량	피해액
전파	1,105	109,694	26	2,886	2	132	2	132		-
반파	72	3,389	-	-	-	-	-	-		
세입자	115	-	2	-	-	-	-	-		
주거 불가능	187	-	-	-	-	-	-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구체적으로 보면, 1년 이내 단기 거주가 필요하거나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한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였다.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재민 주거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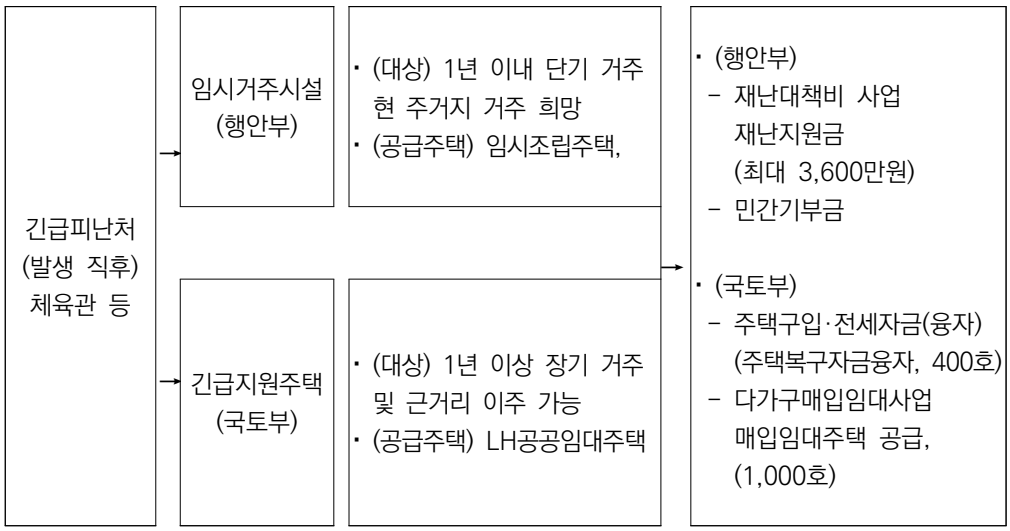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반면 장기 거주를 희망하면서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가 가능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에 8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에 72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더해 총 400호를 대상으로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에 244억원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실집행액이 전무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도 244억원의 예산 중 44.3억원만 집행(86건)되어 실집행률이 18.2%에 불과하다.

[이재민 주거지원 관련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이재민 다가구(신축) 매입임대 지원 호당 1억 6,000만원, 지원율(융자 50%, 출자 45%)	80,000	-	-	80,000	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72,000	-	-	72,000	0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이재민 재해주택복구자금 (복구) 14,370만원, (구입) 13,060만원 한도 1.5%금리 융자	24,400	4,434	-	19,966	18.2
합 계		176,400	4,434	-	171,966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025년 6월 지자체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과 11월에 관련 공고를 게시했지만 주요 지자체에서 추진 의사 없음을 통보하였고, 안동시는 추진 의향을 제출하였으나 2026년 6월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수요 부족과 공실 우려,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도 산불 피해지역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이주 대상 세대 대비 임대주택 실제 입주세대 수가 매년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피해 주민의 기존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입주 선호도가 낮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기존 마을을 떠나 다가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인근 읍·면으로 이주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참여 의사가 낮은 경향이 있다.

[2022~2023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다가구임대주택 입주현황]

(단위: 호)

구 분	공급유형	계획(확보)	이주대상	입주
('22) 동해안산불	계	65	276	32
	공공임대	65		8
	전세임대	-		24
('23) 충남·강원·경남산불	계	2,013	331	89
	공공임대	2,013		22
	전세임대	-		6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러한 거주 선호는 금번 산불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세대는 전체 피해주택 4,461호의 3.8%인 171세대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 지역 중 안동시를 제외하면 기존에 활용 가능한 다가구주택이 없어 신축 매입임대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지원방식과 달리 추가적인 기금 출자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기간(2~3년)을 고려할 때 입주 선호도와 사업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인이 낮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호 공급을 기준으로 1,5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가 미흡하였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직후 이재민 대상 주거지원 수요조사 결과]

(단위: 호)

지역	주거지원 예상 수요				입주		
	계	임시 조립주택	LH 임대	기타 (연수원)	조립 주택	LH 임대	기타 (연수원)
합 계	2,938	2,753	171	14	-	31	14
안동	1,101	990	111	-	-	28	-
의성	243	241	2	-	-	2	-
영양	102	99	3	-	-	-	-
청송	574	533	41	-	-	-	-
영덕	900	890	10	-	-	-	-
신청/철주/정읍	18	-	4	14	-	1	14

주: 복구계획 수립 시 확정된 임시조립주택 수요는 2,996세대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거지원 대책별 수요 및 추진현황'('25.4.14.)

결과적으로, 정부의 장기 주거지원 대책 마련 및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달리 2026년 5월 말 현재 여전히 2,180세대 3,710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 주택 복구 또는 대체 주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1)]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주택복구나 신규주택 매입이 어려운 이재민을 위하여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을 매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주택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활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2)]

일본 사례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마이시시 헤이타 지구에서는 고령 이재민을 위해 지역 돌봄기능을 갖춘 가설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점·약국·식당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러한 임시주택을 활용하여 함께 조성하였다. 또한 최근(2024년) 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 지진을 복구하면서 기존형, 마을만들기형, 고향회귀형의 세 가지 응급가설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마을만들기형과 고향회귀형의 경우 이재민 입주기간 종료 이후 시정촌영주택(공영주택)으로 전환하였다.[3)]

이재민 주거안정 정책은 임시거처의 단순 제공을 넘어 이재민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종전 거주지를 떠날 의사가 낮으며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지니는 바, 관계부처는 향후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고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재민이 재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 시설복구를 넘어 마을 재건을 목표로 도시재생 및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2026년 6월 현재 사업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재민의 거주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어울림플랫폼·경제활성

---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7조(지원 기간) ①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국회입법조사처(2025).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제」.

3) https://www.prefishikawa.lg.jp(応急仮設住宅 (建設型) について (災害救助法 : 令和6年 (2024年) 能登半島地震; 박유나 외(2024).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단지 조성방안」, 건축공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참조

화 거점조성 등 미래형 정주기반 구축이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재민 거주지 확정 및 주거 기반 조성을 우선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을 신설('25.12.29., 정원 33인)하여 피해구제와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단순 피해시설 복구에서 나아가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 하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특별재생)사업(이하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산불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이하 마을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마을재생사업이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심리적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은 주거·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경제 재생을 목표로 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두 사업은 모두 3년간(2025~2027년) 추진될 예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는 국토교통부 80억원, 행정안전부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마을재건 관련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도시재생사업	어울림플랫폼, 상권회복·경제활성화 거점 조성 등	8,000	42	7,950	-	4.2
산불피해지역 마을단위복구재생	마을기반(도로, 상하수도, 인접사면정비) 및 커뮤니티센터·공원 등 조성	10,000	1,490	8,510	-	14.9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산불지역 피해주민 심리회복 및 마을재건 지원	519	-	-	-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러나 두 사업 모두 2025년도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5개 대상 지구(의성 2, 안동 2, 영덕 1)에 국비 10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시설계 착수가 해당 연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행되어 설계비 선금만 지급된 상태이다.

특별재생사업은 총사업비 2,901억원 규모의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준하여 2개 사업지구에 대해 마중물 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비 지원 총규모가 미확정 상태로, 2026년 5월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은 일부 경비 4,2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특별재생사업 당초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지역	연차	국비	지방비	당초 사업계획	실적
A	2025	-	260	・특별재생계획 수립 착수(6~12개월 소요) ・풍수해 대비 2차 재해예방	미추진
	2026 ~2030	39,200	9,540	・특별재생사업(계획수립 후 5년), 국비 80% 매칭 - 재난취약 정주환경 복구 - 골목·생활환경 정비, 주거환경 복구 등 ・산림+α형 도시재생 - 나눔터·임시주택·공동체 공간 조성 등	-
B	2025	42	291	・특별재생계획 수립 착수(6~12개월 소요) ・풍수해 대비 2차 재해예방 (금액 미정)	미추진
	2026 ~2030	39,158	9,509	・특별재생사업(계획수립 후 5년), 국비 80% 매칭 ・주거안정 지원·정주환경 조성 - 정주환경·기반시설, 노후주택, 트라우마센터 등 ・재난대응 및 방재환경 ・공동체 활성화·마을 만들기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특히 해당 지역은 풍수해 기간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긴급 복구와 2차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며, 화재로 훼손된 경관과 공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민의 정주의식이 약화되어 지역이탈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지역 주변 공간의 조속한 정비가 긴요하다. 그럼에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정부는 거시적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복구 및 피해방지 사업이 함께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사업이 조속히 실질적 추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재민 2,180세대가 중장기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울림플랫폼, 마을회관, 관광거점 등 앵커시설[4]의 우선적 조성은 주거 기반을 상실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효용을 갖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복의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입주세대 현황]

(단위: 호, 명)

피해주민('25.3.)		초기입주		타지역 이주		잔류세대('26.5.)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3,358	5,546	2,661	4,587	17	28	2,180	3,710

주: 1. 임시주거시설은 임시조립주택, 선비문화원 등 포함
2. 거주지역 복귀 인원은 849명으로 확인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전소 주택 피해자에 대해 민간기부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 건물신축단가표상 34평형 단독주택의 신축비용이 2.3억원을 상회하는 점, 다수의 피해주민이 단기적으로 소득기반을 상실한 점,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령화율을 보여 자력 신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과 실제 재건 소요 간의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마을·특별재생계획은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방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2025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단위: 원)

용도	단위면적당 평균단가(/㎡)	66㎡(19평형) 평균 소요	114㎡(34평형) 평균 소요
다가구주택	2,079,879	137,272,014	237,106,206
다중주택	2,127,879	140,440,014	242,578,206
다세대주택	2,055,379	135,655,014	234,313,206
연립주택	2,329,450	153,743,700	265,557,300

주: 용도별 평균값(건물표준단가+부대설비단가)의 평균을 적용한 값
자료: 한국부동산원(2025.11.), 「2025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4) 앵커시설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비가 들어간 지역 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운영주체(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도시재생기업(CRC)등)들이 공간 운영을 기획, 운영(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생사업의 준거로 제시된 포항 흥해읍 사례는 약 3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이재민 재정착을 지원하였으나, 이주 완료까지 약 4년, 사업 착수 이후 입주까지는 약 7년이 소요되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이나, 대규모 재난 이후 신속한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마을과 주택의 소실이 지역 이탈과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바, 초기 주거지원의 지연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적용할 경우 초기 주거지원과 중장기 재생사업 간의 시간적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재민의 조기 정착과 공동체 회복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적 복구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재정립하고, 이재민의 실제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생 전략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지원 및 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 세대 규모를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사업으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 직후('25.4.) 전액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이상이 이월되었으며, 산림시설 복구 또한 위험목 벌채 및 사방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률이 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회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지원 및 복구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형산불 사회재난 피해지원 및 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기후부·산림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공사비 등을 보조한다(자치단체보조, 보조율 70%). 기후부는 주택·농업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기초시설 복구비 지원과 국립공원공단 시설복구를 담당하며, 산림청은 피해지역 산림 내 위험목 벌채와 산사태 복구·예방을 위한 사방공사(砂防工事)를 지원한다(자치단체보조, 보조율 50%).

제1회 추경예산에는 이를 위해 총 9,4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5,787억원(61.7%)이 실집행되고 1,155억원이 이월되었다.

[피해지원 및 복구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재난대책비 (행안부)	사유시설 피해 긴급생활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660,000	388,058	46,120	19,271	58.8
재해대책비 (기후부)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112,000	87,898	-	13,068	78.5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청)	피해지 고초목 제거 및 사방공사	174,000	102,777	69,344	1,879	59.1
합 계		946,000	578,733	115,464	34,218	68.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먼저, 생활안정지원금은 사회재난으로 주거불능 또는 생계곤란 상태에 처한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실거주하는 세대주(또는 세대원) 등에 지급되는 것으로 신속한 교부를 원칙으로 하여 복구계획 수립 이후 수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교부 실적을 보면 일부 불용 외에 매년 97%를 상회하는 실집행률을 보인다.[5)]

그런데 실집행내역을 보면 8개 특별재난지역 중 2곳을 제외하면 80% 수준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50.6%에 불과하다. 교부액 3,467억원 중 피해금액 재조사 등에 의해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된 금액은 1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마련이나 자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5) 2023년 8월말 태풍 '카눈'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합하여 총 1,351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97%인 1,351억원이 실집행되었다. 2024년에는 414억원 중 252억원(61%)이 실집행되었으나 이는 11월말 발생한 대설관련 복구계획이 연말에 수립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건을 제외하면 모두 복구계획 수립 직후 98%이상 실집행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명	교부현액(A)	실집행액(B)	불용액	이월액	실집행률(B/A)
울산 울주군	318	161	-	157	50.6
경북 의성군	34,349	30,288	-	4,061	88.2
경북 안동시	114,608	111,113	-	3,495	97.0
경북 청송군	84,069	68,302	-	15,767	81.2
경북 영양군	12,778	11,581	969	228	90.6
경북 영덕군	93,343	78,525	-	14,818	84.1
경남 산청군	6,130	5,075	-	1,055	82.8
경남 하동군	1,123	1,055	46	22	93.9
합 계	346,718	306,100	1,015	39,603	83.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5.10.) 등으로 인해 지원단가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지자체별 집행률 간 격차가 상당하고 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 후 단가 조정에 따른 변경액을 추가지급 하는 방안, 선지급 후 사후조사에 따른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재난 직후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일로부터('25.3.) 1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일부 지역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농·임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주택 피해 외에도 농어업시설 등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시 지급되는 농림재해대책비 및 양식등재해대책비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농작물·채취임산물 피해와 소상공인 사업장 소실 피해까지 동 지원금에 포함하여 편성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미지급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현황 및 복구비 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계	국비	지방비
계		-	495,393	346,792	148,601
구호금(인)		사망 27 부상 156	1,572	1,100	472
구호비(인)		4,329	4,116	2,881	1,235
교육비(세대)		15	15	11	4
생계비(세대)		3,823	24,442	17,112	7,330
주택	전파(동)	3,592	317,583	222,308	95,275
	반파(동)	256	11,170	7,819	3,351
	세입자(세대)	358	3,614	2,532	1,082
	주거불가능(세대)	572	1,198	838	360
농업	농업시설(건)	6,101	29,464	20,626	8,838
	농작물(ha)	1,952	22,360	15,652	6,708
	축산시설(건)	631	10,050	7,036	3,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24,509 /8,265	4,671	3,276	1,395
	농기계(대)	17,158	13,564	9,496	4,068
어업	어업시설(건)	5	661	463	198
	수산물(마리)	274,365	1,087	761	326
	어망어구 / 어선(건)	30	61	42	19
임업시설(건)		10	120	85	35
산림작물(ha)		1,467	40,499	28,350	12,149
송이 임가(임가수)		990	2,386	1,670	716
소상공인(업체)		848	6,759	4,733	2,026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2.),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복구계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다음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피해복구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평균 69.5%이며, 각 사업별로는 56.1~87.5%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각 사업별·지역별 실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편차가 상당하고 실집행부진의 원인도 상이하다.

[재난피해 시설·산림복구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추경 증액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A)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공공시설 복구	울산	398,100	34	34	34	-	-	100.0
	경북		106,413	106,413	81,762	6,517	18,134	76.8
	경남		284	284	162	-	122	57.0
폐기물처리·환경시설 복구	울산	112,000	69	69	69	-	-	100.0
	경북		93,396	93,896	86,447	-	7,449	92.6
	경남		6,939	7,001	1,382	-	5,619	19.7
고사목 제거 등	울산	-	973	973	945	-	28	97.1
	경북	-	114,006	114,006	63,392	50,609	5	55.6
	경남	-	1,766	1,766	1,536	-	230	86.9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울산	52,694	185	185	179	-	6	96.8
	경북		23,203	23,203	14,566	8,147	490	62.8
	경남		4,413	4,413	842	3,571	-	19.1

자료: 행정안전부·기후환경에너지부·산림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공공시설복구 및 폐기물처리·환경시설복구사업은 불용액 중심으로 미집행이 나타난다. 공공시설 복구는 예산 3,98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실제 소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6.8%인 1,064억원만 교부했음에도 복구 공사 완료 후 정산 결과 181억원 이상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이 지역별로(울산 제외) 76.8%, 57.0% 수준이다. 폐기물처리·환경시설 복구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남의 경우 실집행률이 19.7%을 나타낸다. 즉, 두 사업의 실집행부진은 사업의 실소요 대비 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교부한 결과에 기인한다.

반면 고사목제거 및 사방공사 등 산림지 피해복구 사업은 불용보다 이월의 비중이 크다. 경북은 고사목제거 등을 위한 예산의 44.4%인 507억원을 이월하였고, 산사태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의 경우 경북과 경남 모두 예산의 35.1%, 80.9%를 이월하여 공사가 계획 대비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사목이 잔존하거나 산불로 인하여 산지 사면이 훼손된 지역은 호우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가중되는 만큼, 우기 도래 이전에 위험지역에 대한 고

사목 제거 및 산사태 방지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을 조속히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2) 예방·대응력 강화 사업 분석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산불 예방·대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마트시스템 및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의 초기 탐지율은 최근 6년간 0.62% 수준으로 이는 시스템이 조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투입 재원 대비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 역시 규제와 기술적 한계 등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불감시원 12,010명이 1일 2회 이상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변이나 초소에서 차량 등을 이용해 활동하기 때문에 감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입법조사처, 2025).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산림청과 지자체는 드론과 CCTV 등을 산불감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도 신규 드론도입 및 노후카메라 교체,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다. 더불어 향후 AI·로봇을 활용한 산불감시 예방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해외 소방특화 드론구입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다.

[산불 예방 장비확충 및 기술개발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산불방지대책	감시기반확충(카메라 추가설치 등)	2,850	2,811	-	39	98.6
	과학기반 산불감시(감시센서 등)	375	189	-	186	50.4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3,600	873[2)]	-	27	24.3
대형산불지능형 솔루션 R&D	AI·로봇 활용한 대형산불 예방·현장대응력 혁신기술개발	11,657	11,657	-	-	100.0
드론안전 및 활성화	소방특화 드론구입 및 국산화	10,000	9,685[2)]	-	-	96.9
합 계		28,482	25,215	-	252	88.5

주: 1) 군 헬기 물버킷 지원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27억원 전용 감액
2) 소방특화 드론도입 및 국산화와 공항 조류대응 AI드론개발이 통합발주로 집행됨
자료: 국토교통부·산림청

주요 기술개발과 감시카메라 확충사업 등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과학기반 산불감시 사업 역시 기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과 연계하는 ICT플랫폼 추가 구축을 완료했으나 예산소요 과다계상으로 집행률은 50% 수준이다.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의 경우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과정에서 조달청 구매요청이 지연되었고, 이후 입찰 참여 업체 모두 기술평가에서 탈락하여 집행률이 24.3% 수준이다.

이들 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기술 고도화 및 질적 내실화,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6년간(2020~2025년) 산림청의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 감지 실적을 보면 발생 건수 3,059건 중 해당 시스템이 최초로 탐지한 건수는 19건(0.62%)에 불과하다. AI가 자동으로 탐지한 경우는 13건, CCTV 관제요원이 확인한 사례는 6건이며 나머지 99% 이상은 주민 신고나 소방당국·지자체 관제망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감사원의 활용실태 지적과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한 자동회전 기능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로 2025년에는 초기 탐지건수가 소폭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2.8% 수준으로 투입재원 대비 산불 조기탐지 및 예방효과는 미미하다.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을 통한 산불탐지(최초 발견)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산불발생 건	3,059	620	349	756	596	279	459
스마트시스템 최초탐지	19	-	1	-	5	-	13

자료: 산림청

더불어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에서도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의 감지는 신고 접수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경남 산청·하동 지역은 산불 신고 36분 후에 감지했고,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은 13분, 울산 울주(온양읍) 지역은 1분 늦게 감지하였다. 목격자가 불꽃이나 연기를 확인한 후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시간은 이미 산불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실제 산불 발생 시점과 스마트 시스템 감지 시점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6)]

[영남지역 대형산불 스마트 산불예방시스템의 감지 현황]

대형산불 발생지역	산불 신고접수시간	ICT 플랫폼 감지 시간
경남 산청·하동	2025.3.21. 15:28	2025.3.21. 16:04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2025.3.22. 11:25	2025.3.22. 11:38
울산 울주(온양)	2025.3.22. 12:12	2025.3.22. 12:13

자료: 산림청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로 조망 가능한 산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23%에 불과하여 카메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배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 시스템의 반복 학습 강화를 통한 실탐지율 제고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드론을 통한 산불 감시는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과 초기 화재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현행 항공안전 관련 규제 상 산림 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6) 산림청은 이에 대해 경남과 경북 지역 산불은 인근에 기 설치된 카메라가 없었고, 울주군의 경우 카메라 회전 주기로 인해 연기를 감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산림 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감시는 야간 시간대 및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행 금지 규정의 제약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129조제5항[7] 및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야간 비행 또는 비가시권 비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비행경로·비행방식·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산불 감시 임무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산림지역 중 군사시설 인근이나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항공안전법」 제78조 및 제127조). 또한 산불 발생 지역은 광범위하고 지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가 많아, 가시권 내 비행(VLOS) 기반의 현행 드론 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시권 밖 비행 운용 확대와 함께 체공시간 연장, 통신 중계 거리 확장 등 운용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AI기술 기반 산불감시 및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장비 확충에서 나아가 실질적 운용 성능 제고를 위한 신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를 함께 모색함으로써 사업 본연의 예방 강화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화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확충 사업들은 진화헬기 및 배면물탱크 구입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제조사와의 사전협의, 요구 성능 대비 적정단가 산정 및 기준단가 설정 등 사전 절차 이행과 계획이 미흡하여 당해연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진화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진화 헬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배면물탱크 등 관련 장비 도입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회복차량 구입 및

7)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신설 2017.8.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국립공원 헬기·진화차량 구매를 제외하면 전액 불용되거나 실집행률이 38% 수준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한 집행부진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사업 설계 및 조달 준비 과정의 미흡에 기인한다.

[장비(헬기·진화차량) 도입을 통한 진화역량 제고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	20,026	16,879	3,042	105	84.2
	고정익항공기물탱크도입	8,000	-	-	8,000	-
	리타던트 구입	2,970	2,835	-	-	100.0
	회복차량 배치운영	3,300	3,156	-	-	95.6
중앙119특수구조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입	2,200	-	2,200	-	-
산림헬기도입운영	산림 헬기 추가 도입	96,800	36,300	59,846	-	37.5
국립공원공단출연	공원헬기교체,산불진화차량구매	20,100	19,000	1,100	-	94.5
합 계		153,396	78,170	66,188	8,105	51.0

자료: 산림청·소방청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대형헬기 기종 선정 및 계약 조건 협상 등 신규 헬기 도입 계약 체결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추경예산의 61.8%에 해당하는 598억원 이상이 이월되었다.

당초 해당 예산은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의 부품 수급 차질로 가동 중단 대수가 누증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산불 진화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산림헬기 도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입찰 조건 및 단가 설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추경 편성 단계에서 시장조사와 적정 단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18년부터 총 1,220억원(8,563만 달러)을 들여 미국 에릭슨사로부터 대형헬기 S-64 4대를 순차 도입하였으나, 야간 운용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실제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야간에는 국토교통부 헬기운항기준에 따른 풍속 제한, NVG 자격 조

종사 부재, 연기에 의한 시계(視界) 제로 상황 등으로 인해 실질적 운용이 극히 제한된다. 장비 도입이 곧 야간 대응 역량의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NVG를 활용한 야간 헬기 운용은 공간 착각 사고율을 주간 대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 USFS도 야간 임무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통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8)]

한편, 이같이 강풍 지속으로 산불진화 헬기 운용이 어렵거나[9)] 진화 수요가 급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고정익 항공기(기존 군(軍) 수송기)에 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사업[10)]을 추경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다.

[고정익 항공기 설치 물탱크 관련 자료]

담수량	담수시간	담수방식	투하고도	제작기간	제작사	1기당가격
11,350ℓ	약 10분	착륙 후 담수	50m-100m	9-12개월	UAC	80억원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다. 이후 산림청은 2025년 국방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다. 그러나 공군 수송기(C-130H)에 산불 진화용 물탱크(MAFFS)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전력패널의 장착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제작사인 미국 UAC社로부터 기체 구조상 전력패널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25년 예산도 전액 불용하였으며, 2026년 현재 대상 기종을 공군 수송기(C-130J)로 변경하여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社에 장착 가능 여부를 의뢰 중이고, 회신과 견적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8) Butler, C. R., O'Connor, M. B., & Lincoln, J. M. (2015). Aviation-related wildland firefighter fatalities—United States, 2000–2013.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4(29), 793–796;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2021). National night air operations pla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참고

9) 순간풍속 기준 10m/s 이상일 경우 소형헬기 투입이 불가하고, 15m/s 이상일 경우에는 중형헬기 중 수리온의 투입이, 20m/s이상일 경우 중형헬기 중 KA-32 및 대형헬기 투입이 불가하다.

10) 국회예산정책처(2026.7.). 「2025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위원회별분석(농림해양수산위원회)」참고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 연도별 추진 내역 및 경과]

2024년	2025년	2026년(현재)
최초 추진	재추진	기종 변경 후 재추진
• 본예산 편성·추진 • 국방부 사전 협의 미완료 상태에서 편성 • 협의 결렬 → 추진 무산	• 국방부 협의 완료를 근거로 추경 편성 • C-130H 대상 추진 • 美 UAC社, 기체 구조상 장착 불가 통보	• 대상 기종 변경(C-130J) • 美 록히드마틴社에 장착 가능 여부 의뢰 중 • 회신·견적 확보 후 재추진 예정
예산 전액 타 사업 전용	예산 전액 불용	진행 중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 사업은 국방부 자산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방부와의 기술적·행정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2024년 신규 추진 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2025년 추진 역시 기체와 장비 간 기술적 호환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그 결과 예산이 재차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 기획의 적정성과 사전 검증 절차의 미흡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방청의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11]은 입찰조건 설계 미흡으로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다. 동 사업은 외화(달러) 물품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준을 계획보고 및 구매요청일('25.7.21., 1USD=1,391.7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상한액(2,017,965천원)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조달청은 계획요청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개찰 시점('25.12.23.)의 환율(1USD=1,482.7원)을 적용하여 개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체는 달러 기준으로는 공고 상한(USD 1,450,000) 이내로 투찰하였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액이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낙찰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도 사업 설계 및 조달 준비 과정에서 환율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국회예산정책처(2026.7.). 「2025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위원회별분석(행정안전위원회)」 참고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매 계획보고·개찰 시점 환율 및 금액 비교]

구분	시점	적용 환율	달러 금액	원화 환산액
사업예산 설정	'25.7.21. (계획보고)	1USD=1,391.70원	USD 1,450,000	2,017,965,000원
업체 투찰 (B)	'25.12.23. (개찰일)	1USD=1,482.70원	USD 1,443,291[1)]	2,139,968,300원

주: 1) 투찰 시 제시한 원화 금액을 근거로 계상한 금액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더욱이 소방청은 2022년 추경을 통해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사 기술문서 발행 일정의 불확실성, 부품 수급의 장기성, 외부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 등 헬기 개조 관련 사업의 특수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사업은 SB발행 결정만을 근거로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초 최초 발행 이후 2025년 하반기까지 수차례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개조설계 및 부품 수급이 지연되면서 2026년 현재까지도 목표 수량 10대 중 4대의 수리개조·장착이 미완료 상태이며 완료 시점도 2027년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전 사례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업에서는 입찰조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장비 확충은 산불 진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동 추경예산은 2026년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핵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기타 산불방재 인프라 확충 사업(임도시설, 산불대응센터,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사업 지연으로 과다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적기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단순한 방재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반의 지역별 우선순위 재설정과 유지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타 산불방재 인프라 확충사업으로는 산림청의 임도시설 확장,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위험수당 등 처우 개선, 진화장비 보관 및 출동대기 기능을 수행하는 산불대응센터 개선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소방청의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사업(국고보조율 50%)도 함께 증액 편성되었다.

관련 사업은 임도시설사업 외에 모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당해연도에 전액 교부됨에 따라 높은 집행률을 보이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실집행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임도시설과 산불대응센터 사업의 경우 착공 전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주민설명, 계약추진 등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절대공기상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부진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기타 산불방재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산불방지대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709	1,645	-	64	96.2
	산불대응센터	800	211	589	-	26.3
임도시설	임도 신설과 노폭확장	100,825	71,251	25,376	4,198	70.6
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산림인접지역비상소화장치설치	5,163	2,016	3074	73	39.1

자료: 산림청·소방청

특히 임도시설 설치 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업 전년도에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 추진되며, 공사계약 이후 준공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지장목 제거, 토양 굴진, 배수관 설치 등 본 공사에만 약 5~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조차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불진화임도 150km 및 간선임도 100km의 신규 설치와 기존 간선임도의 노폭확장(3m → 3.5m 이상)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전액 교부한 것은 사업 추진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임도시설 사업 내역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간선임도	27,800	23,123	3,238	1,439	83.2
산불진화임도	50,100	31,396	16,447	2,257	62.7
노폭확장	21,600	15,498	5,691	411	71.7
타당성평가	1,325	1,234	-	91	93.1

자료: 산림청

임도가 확보된 구간에서는 산불 발생 시 진화장비와 인력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불 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는 26,785.4km, 임도밀도는 4.25m/ha로 우리나라 최소 필요 임도밀도(6.8m/ha) 대비 63%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m/ha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산림 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핀란드는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갖추어 산불 1건당 피해 면적이 0.4ha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속한 추가설치를 위해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음에도 산불진화임도의 경우 상당수 사업이 착공되지 못하여 예산의 32.8%가 차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임도시설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사유림 중심의 산림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산림의 약 70%가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동의를 거쳐 임도를 개설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통행 및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 대응에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진화임도를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임도설치 및 임도밀도 현황]

(단위: km, m/ha)

구분	산림면적 (천ha)	2020~2024년 실적					임도확보 현황('25.3.)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리	밀도
계	6,298	744.6	773.0	948.7	918.2	937.9	26785.4	4.25
사유림	4,645	434.9	435.8	477.4	474.1	517.1	17690.4	3.81
국유림	1,653	309.7	337.2	471.3	444.1	420.8	9095.1	5.50

자료: 산림청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사유림 중심의 산림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재산주 등 동의 확보의 어려움과 임도 개설 이후의 이용 제한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의 합리화와 함께 이용권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 내 산불진화임도 개설과 관련해서도 환경적·공익적 가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청에서 추진한 산림인접지역 건축물 보호를 위한 비상소화장치[12] 설치지원(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 사업 역시 본예산 대비 500%를 상회하는 52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은 39.1% 수준이다.[13] 이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현황과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일괄교부하는 등 면밀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12) 비상소화장치는 옥외소화전에 관창과 100m 길이의 호스 등을 연결하여 주민이 산불 발생 초기에 직접 진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일체형 소방설비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산간 마을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13) 국회예산정책처(2026.7.), 「2025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참고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실집행이월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시도	수량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수요조사	설치				
계	1,254	1,199	5,163	2,016	3,074	39.1
전북	50	50	262.5	201.5	61	76.7
강원	84	63	346.5	0	346.5	0
충남	33	60	297	18.8	274	6.3
경북	654	654	2,493	40.3	2,453	1.6

자료: 소방청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비상소화장치가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 설치 물량이 산불 위험도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2025년 초 기준 전체 2,807개 중 1,852개(66%)가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북 434개, 충북 115개, 경기 97개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크다.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ha,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4만ha로 규모가 유사하나 설치 물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25년 대형산불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안동 2기, 의성 5기, 청송 10기, 영양 1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남 산청은 1기, 울산 울주는 설치되지 않았다.

[시도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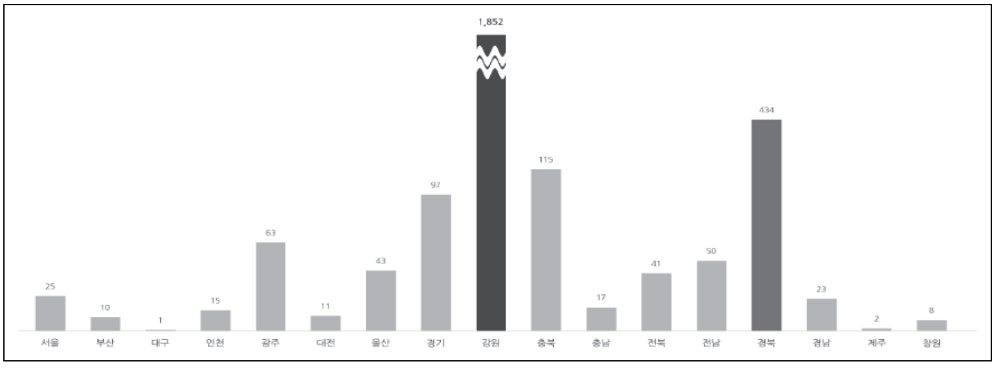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소방청이 건축물·인구·소방용수시설·기상·산림면적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산불취약지수 분석을 수행하였음에도,[14] 실제 설치는 위험도 분석 결과보다 과거 산불 피해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추진 역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가 선행되지 못한 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이 적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15] 이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25년 추경예산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수요조사에 따라 국비 지원도 배분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동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어 일부 지역은 도비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

나아가 비상소화장치는 사용 주체가 지역 주민이므로 설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일반 비상소화장치는 2인 1조로 호스 전개와 소화전 연결을 분담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일정한 숙련이 요구되므로 주민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설치 실적 위주의 사업 평가에서 나아가 사용법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주민 숙련도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영남지역 대형산불 대응 추경사업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통한 재난회복탄력성 강화 및 산불예방·진화역량 확충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과 사업설계, 사전협의, 집행관리의 미흡으로 전반적인 실집행이 저조하거나 이월·불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특히 이재민 주거지원은 실제 거주 선호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았고, 마을재생·특별재생도 초기 주거안정과의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산림복구, 장비확충, 방재인프라 사업 역시 적기 추진이 지연된 만큼 적기 완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실질적 운용성능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사업 본래의 목적이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 소방청(2024.3.) “소방청 2023 산림인접지역 산불취약지수 분석”. 보도자료

15) 국립농업과학원(2025.6.).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참고

12-4. 소비여력 보강사업 분석(2회 추경)

가. 현 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4분기 연속 성장률이 0% 내외를 기록하는 사실상의 경기 정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대표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12조 1,709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더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1차 추경 시 4,000억원을 신규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경 시 6,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한편, 냉장고·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비용의 10%를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환급 사업과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총 778억원 규모의 5대 분야 민생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숙박, 영화,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총 12조 6,48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2조 5,039억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도 소비여력 보강사업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예산액 (추경증액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2,170,867	12,126,645	182	44,04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0,000			
기후부	전력효율향상	267,103	267,103	-	-
문체부	숙박할인권 지원	47,699[1)]	47,699	-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27,100	27,068	-	32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26,000	25,395	-	605
	공연예술관람료지원	5,100	5,100	-	-
	미술전시관람료지원	4,900	4,900	-	-
합 계		12,648,769	12,503,910	182	44,677

주: 1) 기금 자체변경 33,020백만원+제2회 추경 14,679백만원 포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나. 분석의견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은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행정안전부)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분담비율 설정으로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정책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대민행정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2조 1,605억원 중 12조 1,215억원을 집행하였고 실집행액은 11조 8,426억원 수준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연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90%(서울 75%)까지 상향했지만 대응지방비가 1조 6,822억 1,000만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같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별 재정여력을 감안한 보조율 다층화의 필요성은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추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4차례 추진되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율은 서울 70%, 그 외 지역 80%라는 일률적 구조로 설정하였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사업 국고보조율 내역]

(단위: %)

('20)긴급재난지원금		('2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서울 70	평균 85.4	서울 70	서울 70	서울 70	서울 75
기타 80		기타 80	기타 80	기타 80	기타 90

주: 2020년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상자 추가가 있었으며 국회 증액분은 모두 국비로 부담하면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1) 국회예산정책처(2026.7.).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참고

그러나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과 지원금 사업수요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과 달리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55만원으로 지원금이 상이하여, 지자체별 인구 특성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가 오히려 높은 부담을 지는 반면, 재정여력이 양호한 지자체의 부담은 낮게 나타나는 역진적 현상도 확인된다. 이는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만큼 인구수가 예산소요에 비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와 세입 규모가 낮은 대구·광주·대전 같은 도시형 지자체가 자체사업 세출예산(예산 중 국고보조사업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더 무거운 반면, 세입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도별 재정여력과 지방비부담액 비교]

(단위: 백만원, %)

시·도명	재정력		지방비 부담액(B)	부담률 (B/A)
	자주재원 세입예산	자체사업 세출예산(A)		
서울	34,592,696	20,812,903	566,296	2.72
부산	9,890,315	5,746,608	94,699	1.65
대구	7,040,362	4,000,252	68,545	1.71
인천	10,224,067	5,782,184	79,624	1.38
광주	4,446,192	2,344,966	40,884	1.74
대전	4,256,572	2,105,080	41,263	1.96
울산	4,156,837	2,237,539	30,802	1.38
세종	1,162,439	767,669	10,812	1.41
경기	41,601,960	26,128,790	342,370	1.31
강원	10,615,414	5,091,492	44,846	0.88
충북	8,122,571	4,339,223	46,578	1.07
충남	11,926,594	6,209,000	62,612	1.01
전북	10,377,954	4,750,878	52,309	1.10
전남	12,714,860	6,516,329	53,669	0.82
경북	16,667,705	8,461,347	75,357	0.89
경남	15,112,446	7,589,341	94,556	1.25
제주	4,395,215	2,558,091	19,143	0.75

시군구별 자체사업 세출예산 대비 지방비부담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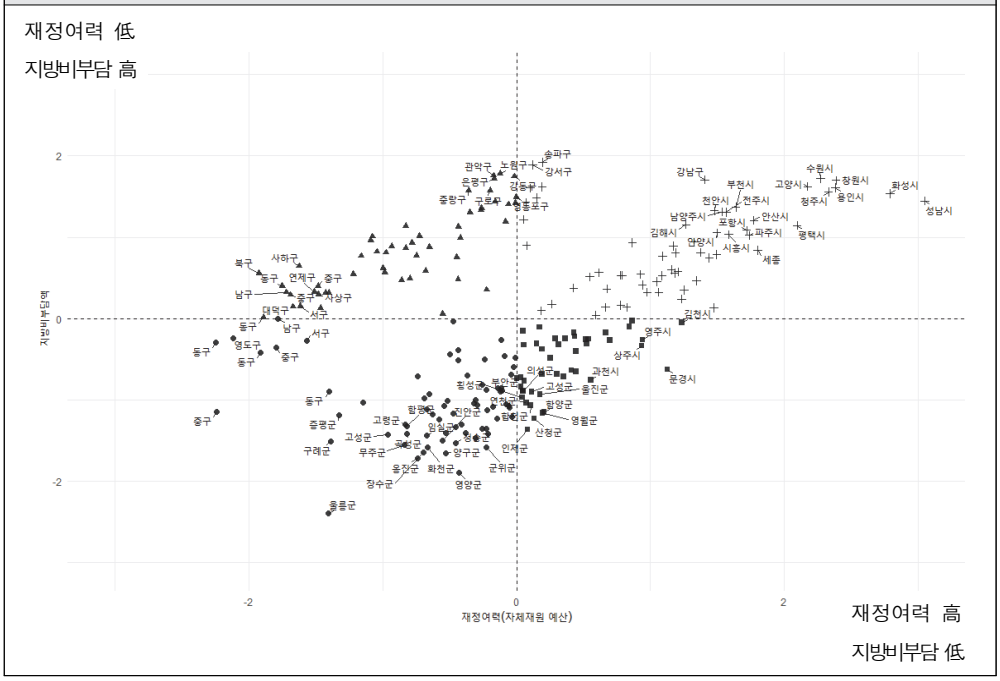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공시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내역에 대한 환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별·대상별 차등폭을 더욱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율은 일률적으로 설정했는데,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소득하위 70% 가구원 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사업 수요의 이질성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일률적 보조율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여건을 반영한 보조율의 차등화 및 정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 설계, 신속집행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①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도입해 집행 실적에 연동하여 국비지원율을 상향 적용함에 따라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나타났으며, ② 회차별 집행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1·2회 추경 집행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 지원기준 집단 내에서도 실제 국비지원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차등 지원의 효과적 구현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25년의 경우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1회 추경")에 약 4,000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2회 추경")에 약 6,000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다. 이때 국비지원율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일반자치단체 2%, 인구감소지역 5%, 대형 산불 피해지역 등 최대 10% 수준이었으나, 2회 추경에서는 지원율이 최대 5%p 상향 조정되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8%로 각각 인상되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기준]

구분	자치단체 유형	국비지원율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일반 할인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2%
	일반자치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5%	10%
재난대응할인지원	고용위기 및 특별재난지역	최대 10%	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일정과 보조율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회 추경 사업 참여를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되는 2회 추경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설계 및 재원 배분 단계에서 이러한 유인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3%의 지원율을 적용받게 되어 10%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을 상회하였다. 이는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구조로 판단된다.

[신속집행 인센티브 추가 시 국비지원율 변경 내역]

자치단체 유형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기본	특별지원 ① (10%p)	기본	특별지원 ② (+5%p) 인센티브
불교부단체	미지원	해당 없음	2%	-
일반자치단체	2%	12%	수도권 5%	수도권 10%
			비수도권 8%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5%	15%	10%	15%

주: 1. 특별지원 ①: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 추가 지원
2. 특별지원 ②: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3. 인센티브: 1회 추경 신속집행 시 5%p 추가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불어 회차별 집행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1·2회 추경 집행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 지원기준 집단 내에서도 실제 국비지원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원율 기준 동일 집단 내 지자체별 실제 국비지원율 편차 현황]

(단위: %, %p)

구분	지원기준	실제 국비지원율			
		평균	최고	최저	격차
인구감소-산불피해지역	1·2회 모두 15%	10.7	14.6	7.7	6.8
일반-재난·고용위기	1회 2%, 2회 13%	7.0	13.0	4.5	8.5
인구감소-재난·고용위기	1회 5%, 2회 15%	8.6	10.4	5.4	4.9
인구감소	1회 5%, 2회 10%	7.8	10.2	4.8	5.4
비수도권	1회 2%, 2회 8%	6.3	12.7	3.3	9.4
수도권	1회 2%, 2회 5%	3.9	5.0	3.3	1.7
불교부단체	1회 0%, 2회 2%	2.2	2.4	2.1	0.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부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국고보조사업은 지원율과 지원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기준과 변경 가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회계연도 내 다회 추가경정예산 간 지원율과 적용 방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선택 유인을 왜곡하거나 집행 결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 적용 시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지침 변경 및 예외 허용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자체별 국비지원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조율을 차등 조정하는 경우 회차 간 연계성과 자치단체의 집행 유인을 충분히 고려한 명확한 지침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자체 간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3 신규 재정사업 결산 분석

가. 현 황

(1) 개요

① 신규 재정사업의 정의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재정 관련 법령에서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이란 이전 회계연도에는 없던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새롭게 신설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

즉, 통상적인 예산 관행상의 의미와 함께 신규사업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내용[2)]을 참고할 때, 신규 재정사업은 이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예비비, 이·전용 등을 통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총지출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2025회계연도에 재정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신규 재정사업으로 정의한다.

② 신규 재정사업의 분석단위 및 범위

신규 재정사업의 분석단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 제84조제5항[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비목 설치 시 동의의 대상은 세부사업 단위로 이해되고

이미선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국가재정법」 제28조, 제38조 및 제66조에서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신규 사업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있으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시 검토되는 기본적인 사업의 단위 또한 세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신규 재정사업을 검토하였다.

앞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신규 재정사업에 포함되는 유형은, ① 본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②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한 신규사업, ③ 예비비로 편성된 신규사업, ④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신규 재정사업 검토 범위]

구 분	세부내용
사업 검토단위	- 세부사업(내역사업 신규는 제외)
분석대상 사업	-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 기금운용계획변경에 의한 신규사업 - 예비비로 편성된 신규사업 -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분석대상 제외 사업	-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사업: 보전거래, 내부거래 등 -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사업: 선거관련 경비, 실태조사 등 - 실질적인 계속사업: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의 통폐합 및 분리, 타부처 이관 등

특히, 신규 재정사업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운영되어 향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실시 첫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보전거래·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사업, 선거관련 경비나 실태조사 등과 같이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사업, 사업구조 개편으로 통폐합·분리되거나 타부처 이관 사업 등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인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① 총괄 현황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은 43개 부처에 45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기준 총 18조 2,905억 9,200만원 규모로 총지출 기준 정부예산 703.3조원의 2.6%를 차지한다. 신규 재정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8조 2,906억원 중 18조 557억원이 집행되어 98.7%의 집행률을 보였다.

[신규 재정사업 현황(세부사업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부처수	신규 재정사업 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정부 총지출 (조원) (C)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A/C)
신규 재정사업	43	457	18,290,592	18,055,732	98.7	703.3	2.6

주: 1. 각 부처 취합과정에서 사업 수와 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2. 정부총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신규 재정사업 수는 8개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각각 13조 4,286억원, 13조 5,546억원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신규 재정사업 추이]

(단위: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정부총지출 (조원) (C)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A/C)
2021	574	14,362,479	13,624,779	94.9	601.0	2.4
2022	641	12,605,641	11,443,939	90.8	679.5	1.9
2023	402	4,088,670	3,745,065	91.6	638.7	0.6
2024	465	4,861,945	4,501,132	92.6	656.6	0.7
2025	457	18,290,592	18,055,732	98.7	703.3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보고서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현액 규모가 큰 부처는 행정안전부(12개 사업, 13조 2,00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개 사업, 2조 2,919억원), 산업통상부(67개 사업, 4,333억원), 국토교통부(52개 사업, 3,780억원), 국방부(6개 사업, 3,732억원) 순이고, 이들 5개 부처의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현액 규모(16조 6,766억원)는 2025회계연도 전체 신규 재정사업 예산현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 처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새만금개발청	4	8,765	8,554	9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3,096	3,055	98.7
경찰청	4	5,748	6,048	105.2
고용노동부	4	66,675	63,725	9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	2,291,911	2,267,509	98.9
관세청	2	15,315	15,315	100.0
교육부	4	252,499	252,449	100.0
국가보훈부	1	8,259	8,258	100.0
국가유산청	3	5,466	4,966	90.9
국민권익위원회	1	6,737	6,331	94.0
국방부	6	373,163	325,135	87.1
국조실	5	2,971	2,492	83.9
국토교통부	52	377,965	335,629	88.8
기상청	3	27,100	27,100	100.0
기획예산처	5	110,061	110,038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23	122,168	122,168	100.0
농림축산식품부	11	198,139	191,010	96.4
농촌진흥청	7	33,450	33,450	100.0
대법원	2	24,988	24,345	97.4
문화체육관광부	7	57,608	55,952	97.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24,278	24,278	100.0
방위사업청	22	74,751	61,625	82.4
보건복지부	32	126,544	123,433	97.5

(단위: 개, 백만원, %)

부 처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산림청	8	49,201	48,934	99.5
산업통상부	67	433,284	408,410	94.3
성평등가족부	1	28,730	28,730	100.0
소방청	9	8,979	8,458	94.2
식품의약품안전처	5	8,436	8,402	99.6
외교부	1	237	112	47.3
우주항공청	15	54,275	45,900	84.6
원자력안전위원회	2	6,445	6,445	100.0
인사혁신처	2	4,323	4,321	100.0
재외동포청	1	1,800	1,773	98.5
재정경제부	10	7,030	5,312	75.6
조달청	1	477	276	57.9
중소벤처기업부	10	166,467	165,768	99.6
지식재산처	2	10,403	10,399	100.0
질병관리청	3	30,174	21,436	71.0
통일부	1	340	331	97.4
해양경찰청	3	2,518	2,512	99.8
해양수산부	19	59,441	59,308	99.8
행정안전부	12	13,200,217	13,155,917	9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58	127	80.4
합 계	457	18,290,592	18,055,732	98.7

주: 부처별 예산현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이·전용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신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2조 1,70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1조원), 국방부의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2,631억원), 국토교통부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

츠 출자' 사업(2,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사업(1,378억원), 산업통상부의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 지원' 사업(1,339억원), 교육부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1,289억원) 및 '병원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 사업(1,201억원), 국방부의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사업(1,064억원) 순으로 예산현액의 규모가 크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사업의 예산현액 총액은 15조 8,804억원으로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전체 예산현액 18조 3,076억원의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지원 강화, 교육, 국방, 국토 등 각 분야별로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된 것에 기인한다.

[예산 규모가 큰 주요 10개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2,170,867	12,126,645	99.6	182	44,0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1,619,438	1,619,438	100.0	-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1,000,000	999,969	100.0	5	26
국방부	경계 및 작전시설	263,148	224,005	85.1	17,195	21,948
국토교통부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200,000	200,000	100.0	-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137,823	135,956	98.6	1,866	1
산업통상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 시설구축지원	133,855	114,812	85.8	-	19,043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28,852	128,852	100.0	-	-
교육부	병원필수의료역량강화지원(융자)	120,050	120,000	100.0	-	50
국방부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106,400	98,384	92.5	-	8,016
합 계		15,880,433	15,768,061	99.3	19,248	93,124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계별 · 기금별 예산현액 규모가 큰 상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2조 1,708억 6,7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 3,800만원), 국방부의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2,631억 4,800만원), 국토교통부의 PF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 출자 사업(2,000억원), 산업통상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1,338억 5,500만원) 및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625억 8,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500억원) 및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426억원),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407억 5,6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366억 2,000만원) 순으로 예산현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회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사업(1,378억 2,300만원), 교육부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1,288억 5,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6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사업(370억원),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291억 9,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215억 6,000만원), 산림청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사업(213억 2,000만원), 산업통상부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R&D) 사업(180억원), 산림청의 정원도시조성(자율) 사업(85억 8,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사업(67억 5,000만원) 순으로 예산현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금에서는 교육부의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1,200억 5,000만원), 국방부의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사업(1,06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1,000억원) 및 기획예산처의 특별인프라펀드 사업(1,000억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1,000억원),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사업(50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420억원),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사업(융자)(400억원), 대법원의 국선변호료지원 사업(245억 9,8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120억원) 순으로 예산현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회계별·기금별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 회계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2,170,867	12,126,645	99.6	182	44,0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619,438	1,619,438	100.0	-	-
	국방부	경계 및 작전시설	263,148	224,005	85.1	17,195	21,948
	국토교통부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 출자	200,000	200,000	100.0		
	산업통상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133,855	114,812	85.8	-	19,043
	산업통상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사업	62,580	62,580	100.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혁신펀드	50,000	50,000	100.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42,600	42,600	100.0	-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40,756	40,398	99.1	-	3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36,620	36,620	100.0	-	-
특별 회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137,823	135,956	98.6	1,866	1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28,852	128,852	100.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R&D)	60,000	60,000	100.0	-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역지원)	37,000	35,969	97.2	136	894
	국토교통부	대장-홍대 광역철도	29,190	29,190	100.0	-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21,560	21,560	100.0	-	-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자율)	21,320	21,320	100.0	-	-
	산업통상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R&D)	18,000	18,000	100.0	-	-
	산림청	정원도시조성(자율)	8,580	8,563	99.8	17	-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 개발(R&D)	6,750	6,750	100.0	-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금	교육부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120,050	120,000	100.0	-	50
	국방부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106,400	98,384	92.5	-	8,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혁신펀드	100,000	100,000	100.0	-	-
	기획예산처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100,000	100,000	100.0	-	-
	중소벤처기업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	100,000	100,000	100.0	-	-
	국토교통부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50,000	50,000	100.0	-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탄소에너지보증	42,000	42,000	100.0	-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4,550	11.4	-	35,450
	대법원	국선변호료지원	24,598	24,295	98.8	-	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12,000	12,000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현액 규모가 큰 부처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2조 1,708억 6,7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1조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100억원),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사업(60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53억 9,200만원) 순이다.

[행정안전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2,170,867	12,126,645	99.6	182	44,040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1,000,000	999,969	100.0	5	26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00	10,000	100.0	-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6,000	6,000	100.0	-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5,392	5,392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 3,800만원), AI 혁신펀드(1,000억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60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426억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366억 2,000만원),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300억원),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210억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사업(203억 5,400만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사업(154억원), 공공AX프로젝트 사업(150억원) 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1,619,438	1,619,438	100.0	-	-
AI 혁신펀드	100,000	100,000	100.0	-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60,000	60,000	100.0	-	-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42,600	42,600	100.0	-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36,620	36,620	100.0	-	-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30,000	30,000	100.0	-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21,000	-	-	21,000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20,354	20,354	100.0	-	-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15,400	15,400	100.0	-	-
공공AX프로젝트	15,000	15,000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의 경우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1,338억 5,500만원),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625억 8,000만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R&D) 사업(180억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R&D) 사업(178억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128억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95억 1,000만원), AI자율제조 SDM플랫폼기술개발(R&D) 사업(92억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R&D) 사업(77억 1,400만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56억 5,700만원),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사업(54억원) 순이다.

[산업통상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133,855	114,812	85.8	-	19,043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사업	62,580	62,580	100.0	-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R&D)	18,000	18,000	100.0	-	-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00	17,800	100.0	-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12,800	12,800	100.0	-	-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9,510	9,510	100.0	-	-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9,200	9,200	100.0	-	-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 사업(R&D)	7,714	7,714	100.0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5,657	5,657	100.0	-	-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5,400	5,400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의 경우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2,000억원),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사업(500억원), 주택정비사업(융자)(400억원),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291억 9,000만원), 초고속하이퍼튜브 철도인프라 핵심기술개발(R&D) 사업(36억 8,000만원) 순이다.

[국토교통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200,000	200,000	100.0	-	-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50,000	50,000	100.0	-	-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4,550	11.4	-	35,450
대장-홍대 광역철도	29,190	29,190	100.0	-	-
초고속하이퍼튜브철도인프라핵심기술개발(R&D)	3,680	3,680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의 경우 경계 및 작전시설(2,631억 4,800만원),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1,064억원), 36사단 공병대대 이전(15억 9,700만원) 순이다.

[국방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경계 및 작전시설	263,148	224,005	85.1	17,195	21,948
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106,400	98,384	92.5	-	8,016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1,597	770	48.2	606	220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의 경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1,288억 5,200만원),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1,200억 5,000만원),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18억 7,700만원) 순이다.

[교육부 주요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28,852	128,852	100.0	-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120,050	120,000	100.0	-	50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지원	1,877	1,877	100.0	-	-

주: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유형별 분석

① 유형별 · 기금회계별 · 16대 분야별 분석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을 당초 본예산 편성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예산을 통해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이 421개(92.1%),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이 33개(7.2%), 예비비로 추진한 신규사업이 2개(0.4%), 이·전용 등을 통해 추진된 신규사업이 1개(0.2%)로 본예산 신규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현액은 15조 5,013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 예산 중 84.8%를 차지하였고, 본예산 신규사업의 예산현액은 2조 6,597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의 14.5%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예비비에 의한 신규사업이 1,296억원으로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이·전용 등을 통해 추진된 신규사업 1개는 전액 집행되었고, 예비비를 통해 신설된 사업이 99.9%,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이 99.7%, 그 다음은 본예산 신규사업(93.0%) 순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비중	예산현액 (A)	비중	집행액 (B)	집행률 (B/A)
본예산 신규	421	92.1	2,659,720	14.5	2,474,863	93.0
추경·기금운용 계획 변경	33	7.2	15,501,299	84.8	15,451,484	99.7
예비비	2	0.4	129,515	0.7	129,327	99.9
이 · 전용 등	1	0.2	58	0.0	58	100.0
합 계	457	100.0	18,290,592	100.0	18,055,732	98.7

주: 예산현액은 본예산 및 예비비,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의 **회계·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이 326개(15조 8,457억원), 특별회계 사업이 77개(1조 6,208원)이며, 기금 사업이 54개(8,241억원) 이다. 신규 재정사업의 회계·기금별 평균 집행률은 일반회계가 98.9%, 특별회계 99.2%, 기금이 94.3%로, 기금으로 추진된 신규 재정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비중	예산현액 (A)	비중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326	71.3	15,845,700	86.6	15,671,019	98.9
특별회계	77	16.9	1,620,774	8.9	1,607,421	99.2
기금	54	11.8	824,118	4.5	777,292	94.3
합 계	457	100.0	18,307,592	100.0	18,072,732	98.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신규 재정사업 규모가 13조 2,320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통신 분야 2조 1,17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877억원, 국방 분야 4,479억원, 농림수산 분야 2,860억원 등의 순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인공지능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국방 전력 보강 및 과학기술·농림수산·보건 등 분야별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신규 재정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16대 분야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분야	세부사업 수	예산현액 (A)	비중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29	13,231,953	72.3	13,184,830	73.0
공공질서 및 안전	25	64,761	0.4	63,869	0.4
통일·외교	3	2,377	0.0	2,216	0.0
국방	28	447,914	2.4	386,757	2.1
교육	3	132,449	0.7	132,449	0.7
문화 및 관광	11	64,074	0.3	61,918	0.3
환경	9	34,108	0.2	33,993	0.2
사회복지	15	213,047	1.2	171,433	1.0
보건	40	278,727	1.5	267,482	1.5
농림수산	28	285,959	1.6	278,559	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1	687,734	3.8	662,157	3.7
교통 및 물류	54	230,173	1.3	227,928	1.3
통신	44	2,116,963	11.6	2,095,945	11.6
국토 및 지역개발	19	222,245	1.2	219,847	1.2
과학기술	58	278,108	1.5	266,349	1.5
합계	457	18,307,592	100.0	18,072,732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국회 신설 신규사업 분석

신규사업 중 당초 정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설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수정안에는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은 없었고, 감액된 사업만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신규사업에서 국회에서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시 신설된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1조 1,054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 신규사업 457개의 2.2%, 금액으로는 전체 신규사업 금액 18조 2,906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2개 사업에 1조 1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3개 사업에 541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개 사업에 255억원, 보건복지부가 2개 사업에 131억원, 국토교통부가 2개 사업에 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부처별 국회 신설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번	부처명	사업 수	국회확정금액
1	행정안전부	2	1,010,00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54,100
3	농림축산식품부	1	25,500
4	보건복지부	2	13,120
5	국토교통부	2	2,714
합 계		10	1,105,434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42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한시) 사업(255억원), 행정안전부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100억원),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K-cell뱅크라이브러리구축(세포특화연구소)(R&D) 사업(81억 4,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사업(80억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사무처지원(49억 8,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 확산(35억원), 국토교통부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사업(14억 2,800만원) 및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12억 8,600만원) 순이다.

[2025년도 국회 신설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처명	사업명	추경안 금액	국회확정 금액	국회 증액 규모
1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	1,000,000	1,000,000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	42,600	42,600
3	농림축산 식품부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한시)	-	25,500	25,500
4	행정안전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10,000
5	보건복지부	글로벌 K-cell뱅크라이브러리구축(세포특화연구소)(R&D)	-	8,140	8,140
6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AI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	8,000	8,000
7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사무처지원	-	4,980	4,980
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 확산	-	3,500	3,500
9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	-	1,428	1,428
1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1,286	1,286

주: 국회확정금액이 큰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신규사업 집행 현황 분석

먼저, 본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예산변경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예산 신규사업 중 이·전용 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액 및 계획액을 전액 삭감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경주양남-문무대왕국도건설 사업(5억원), 재정경제부의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사업(2억 3,300만원)과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사업(7억 1,400만원),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사업(5억 1,2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 19억 5,9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목간 전용 및 내역 변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고, 재정경제부의 3개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액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된 청사 건립, 도로 건설 사업들이다.

[당초 편성된 신규사업을 이·전용,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전액 감액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경주양남-문무대왕국도건설	500	△500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233	△233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기금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714	△714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기금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512	△512	-
합 계			1,959	△1,959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앞에서 본 이·전용 등을 통해 전액 삭감된 4개 사업을 제외하고, **본예산 신규사업 중 당초 예산액을 예비비, 이·전용 등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은 3개이고 감액된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이·전용 등을 통해 증액된 사업의 본예산 대비 평균 집행률은 252.6%,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8.5%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용 등을 통해 감액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1.8%,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1.5%로 나타나 이·전용 등을 거쳐 감액조정 하였어도 현액 대비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A)	추경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증감률 (B-A)/A	집행액 (C)	집행률	
								(C/A)	(C/B)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농림)	54,413	54,413	-	83,410	137,823	153.3	135,956	249.9	98.6
천안신사산단진입로(국토)	484	484	1,700	-	2,184	351.2	1,940	400.8	88.8
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국토)	413	413	1,400	-	1,813	339.0	1,804	436.8	99.5
소 계	55,310	55,310	3,100	83,410	141,820	156.4	139,700	252.6	98.5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A)	추경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증감률 (B-A)/A	집행액 (C)	집행률	
								(C/A)	(C/B)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외교)	6,854	237	-	-	237	△96.5	112	1.6	47.3
남해삼동-창선국도 건설(국토)	500	500	△469	-	31	△93.8	31	6.2	100.0
중거리 자폭드론(방사)	5,000	5,000	△4,837	-	163	△96.7	50	1.0	30.7
해상작전헬기-II(방사)	412	412	△277	-	135	△67.2	42	10.2	31.1
소 계	12,766	6,149	△5,583	-	566	△95.6	235	1.8	41.5
합 계	68,076	61,459	△2,483	83,410	142,386	109.2	139,935	205.6	98.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 중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6개로, 예산현액 기준 302억 5,500만원 규모로 신규 재정사업 전체 예산현액 18조 2,906억원의 0.2%에 해당한다.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한 사업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의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R&D) 사업(50억원), 국토교통부의 신도시리츠(출자) 사업(25억원), 산림청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세종) 사업(2억 5,000만원)으로 총 3개 사업이다.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R&D)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의 중복 추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액 불용되었고, 신도시리츠(출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으로 인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리츠 설립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미추진되었으며, 국산목재 목조선축 실연(세종)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였다.

예산현액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산업은행 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210억원), 국토교통부의 진천스마트복합산단진입도로 사업(10억 500만원), 국토교통부의 용인처인이동-남동국도건설 사업(5억원)으로 총 3개 사업이며, 이월액 규모는 총 225억 500만원이다.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은 민간 사업자(SPC) 선정 공모 유찰 및 선정 후 설립 지연으로 인해 전액 이월되었고, 진천스마트복합산단진입도로 사업과 용인처인이동-남동국도건설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에 따라 집행이 순연되었다.

[신규 재정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산업은행출자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21,000	-	0.0	21,000	-
우주항공청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R&D)	5,000	-	0.0	-	5,000
국토교통부	신도시리츠(출자)	2,500	-	0.0	-	2,500
국토교통부	진천스마트복합산단진입도로	1,005	-	0.0	1,005	-
국토교통부	용인처인이동-남동국도건설	500	-	0.0	500	-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세종)	250	-	0.0	-	250
합 계		30,255	-	0.0	22,505	7,750

주: 1.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2. 예산현액이 큰 순으로 정렬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앞에서 본 집행률이 전무한 6개 사업을 포함하면 37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사업 457개 중 8.1%를 차지한다.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낮은 순서부터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 사업(103억 1,800만원, 집행률 0.7%),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5억 6,200만원, 집행률 1.6%), 국토교통부의 대구읍내-칠곡동명국도건설(4억 300만원, 집행률 2.7%), 방위사업청의 지휘헬기-Ⅱ 사업(3억 8,500만원, 집행률 8.1%),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사업(융자) 사업(400억원, 집행률 11.4%), 대법원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사업(3억 9,000만원, 집행률 12.8%), 방위사업청의 제독차-Ⅱ 경미한성능개량 사업(3,900만원, 집행률 12.8%),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50억원, 집행률 16.0%),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2억 8500만원, 집행률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비 지출결의 후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불용(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 및 사업비 불인정(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단독응찰에 따른 이·불용 발생(지휘헬기-Ⅱ), 융자 신설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신청 부진(주택정비사업(융자)),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따른 구조조정(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설계 등 공사 절차 지연(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대구읍내-칠곡동명국도건설,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등에 기인한다.

[신규 재정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방위사업청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	10,318	77	0.7	-	10,24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562	9	1.6	552	1
국토교통부	대구읍내-칠곡동명국도건설	403	11	2.7	392	-
방위사업청	지휘헬기-II	385	31	8.1	222	132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사업(융자)	40,000	4,550	11.4	-	35,450
대법원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50	12.8	340	-
방위사업청	제독차-II 경미한성능개량	39	5	12.8	-	34
산업통상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5,000	800	16.0	-	4,20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285	57	20.0	-	228
방위사업청	중거리 자폭드론	163	50	30.7	88	25
방위사업청	해상작전헬기-II	135	42	31.1	50	43
방위사업청	정보작전모의모델(R&D)	102	35	34.3	1	66
보건복지부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00	900	36.0	1,600	-
국토교통부	평창진부-강릉연곡국도건설	340	140	41.2	200	-
방위사업청	소총사격무인항공기	195	81	41.5	28	86
국토교통부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국도건설	335	140	41.8	195	-
재정경제부	미래융복합경제교육	1,928	811	42.1	-	1,117
산업통상부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00	848	42.4	-	1,152
산업통상부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 건조지원	500	229	45.8	-	271
외교부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37	112	47.3	-	125
우주항공청	드론제조 국산화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00	96	48.0	103.9	0.1
국방부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1,597	770	48.2	606	220
국토교통부	공주신풍-유구국도건설	655	323	49.3	332	-0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수입대체경비	1,185	667	56.3	-	518
조달청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276	57.9	117	84

(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989	1,236	62.1	-	753
국토교통부	아산신창일반산단진입도로	510	318	62.4	192	-
중소벤처기업부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1,556	991	63.7	408	157
방위사업청	특수작전용기관단총	80	51	63.8	19	10
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25,387	16,986	66.9	-	8,40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 (양자컴퓨팅)(R&D)	9,800	6,643	67.8	-	3,157

주: 1.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을 통해 증감된 내역을 포함한 기준임
2. 집행률이 낮은 순서로 정렬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신규 재정사업 중 수시배정사업**[5]에 대한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수시배정사업은 총 6건으로 전체 신규사업 457건 중 1.3%를 차지하며,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된 금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다. 배정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금액 654억 5,100만원 중 496억 9,300만원(75.9%)을 배정받고, 배정액은 전액 집행되어 대상액 대비 집행률도 75.9%로 나타났다.

수시배정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 양자컴퓨팅)(R&D), 미래 판기슬 프로젝트(R&D),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R&D)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2025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전까지 수시배정으로 지정되었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과기, 행안)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전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ISP 수립 등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성에 따라 수시배정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사업(95억원)의 경우 66억 4,300만원(67.8%)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50억원)는 8억원(16.0%)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R&D)(253억 8,700만원)은 169억 8,600만원(66.9%)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다.

5)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를 토대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관서가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 재정경제부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등을 포함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배정한다.

[신규 재정사업 중 수시배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부처명	예산액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집행률 (C/A)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과기부	15,400	15,400	15,400	15,400	100.0	100.0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과기부	9,800	9,800	6,643	6,643	67.8	67.8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과기부	4,472	4,472	4,472	4,472	100.0	100.0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산업부	5,000	5,000	800	800	16.0	16.0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질병청	25,387	25,387	16,986	16,986	66.9	66.9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행안부	5,392	5,392	5,392	5,392	100.0	100.0
합 계		65,451	65,451	49,693	49,693	75.9	7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Ⅱ」

(2) 계획 / 집행 / 성과관리 측면

2025년도 신규 재정사업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논의된 신규재정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사업의 ① 계획 단계, ② 집행 단계, ③ 성과관리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신규 재정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 분석 기준]

문제점 유형	
(유형 1) 계획 단계	- 법령 등 관계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 - 산출근거 미흡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 사업 추진절차 및 방식 개선 필요 -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유형 2) 집행 단계	- 집행관리 미흡 - 사업지연 및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유형 3) 성과관리 측면	- 목표 대비 성과 미흡 - 적정 성과지표 설정 필요 - 성과 관리 및 실효성 제고 필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사례, 사업의 목적·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부정확한 예산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기획이 미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와 유사중복이 발견되어 중단·지연된 사례, 수요부족으로 집행 과정에서 재정의 비효율이 초래된 사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게 집행된 사례, 총사업비 협의나 사업수행주체 선정 지연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사업의 성과 측면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사업 이후 구체적 활용계획이 미비하거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례, 충분한 성과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차년도 사업 지원이 결정된 사례, 운영 실적 및 실효성이 미흡한 사례, 과거 구축 장비 활용 실적을 신규사업 성과로 계상한 사례, 향후 성과 관리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사

례 등이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평가)' 과정은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앞서 유형화한 신규 재정사업의 문제점들은 실제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기초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단계

신규 재정사업 중 사업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사례, 사업의 목적·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부정확한 예산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기획이 미비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6]은 향후 10~20년 후 신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소기술·실증 및 시제품·생산공정 등 통합솔루션을 종합 개발·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은 집행되었고, 42억원은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42억원이 불용되어 예산운용이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7]은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2025년 예산현액 53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전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ISP 수립 후 2025년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6년 3월 말에 구축이 완료되는 등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개별 부처에서 공통기반을 활용할 계획으로 개발한 AI솔루션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공통기반을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공통인프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협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사업[8]은 개방형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축적된 위성정보를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ISP 수립 후 실제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 체결은 2026년 2월에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9]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동 사업 예산 12조 1,708억 6,700만원 중 99.6%인 12조 1,26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이월했으며 440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분담비율을 설정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정책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10]의 내역사업인 GPU 서버 확충 및 GPU 통합 운영환경구축 사업은 국내 AI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GPU를 매입하여 민간클라우드사의 AI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4,608억 3,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 활용분 약 1만장 중 30%까지는 산업계에 배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GPU 시장가격을 고려한 산업계의 합리적인 자부담금을 설정하거나 산업계와 학·연을 별도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연 GPU 지원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AI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지역가점제를 정비하고, 비수도권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적극적 지역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드론제조 국산화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11]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제조 분야 국산화 촉진을 위한 드론 제조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사전 준비를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2억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일부는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00억원 규모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창원특례시가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25년에 체결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2026년 2월 신규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본사업 부지 등 사업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용역 중단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12]의 내역사업인 GPU 임차지원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확보를 위한 실력 있는

1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국내 AI 기업(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에 GPU 임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586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GPU 임차 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예산 잔여분이 발생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활용하여 일반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GPU를 추가 임차하기 위한 후속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5년 추경 편성 목적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지원에 있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장 내 GPU 물량 확보 일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사업[13]은 폐업·전업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도축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폐업·전업 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예산 544억 1,300만원과 예비비 834억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78억 2,300만원 중 1,35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장려하는 선후후박형 인센티브 구조 설계 후 이로 인한 조기 폐업 집중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예상과 달리 조기 폐업 신청 규모가 대폭 증가하면서 본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예비비 834억 1,000만원을 배정받는 등의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재정 소요에 대한 예측을 면밀히 하여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14]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함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산단 내 전력 공급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력공급시설을 신설하는 등 전력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65억 4,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7.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54kV의 개폐소[15]를 신설하고, 이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변전소와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예산 확정 이후 산단 입주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고 송전선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력공급능력 500MW와 대용량 전력 사용고객을 위한 전용 공급선로 4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산단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간 소요로 착공 일정이 2026년으로 순연되었고, 공사비 등 48억 1,200만원은 실집행 이월되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기업 수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16]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동 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측가능성·시급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문위 구성 및 실무지원 인력 채용 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소요 산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특별인프라펀드 사업[17]은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출자되었으며, 산업은행은 자체 출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15) 전압 50kV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 7.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6. 7.

이어 2026년에는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을 연속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례와 달리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추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18]은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여 민간 대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00억원이 전액 출자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성, 토지확보율, 인허가현황 등 '앵커리츠 투자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브릿지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직 브릿지론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기존 브릿지론의 대환이 가능한 사업장 모두 동 사업에 따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사업경과를 바탕으로 예정한 상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의 유예기간, 연체이자 등 구체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19]은 지역의 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상생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 중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동 사업은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공고 중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향후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② 집행 단계

신규 재정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와 유사중복이 발견되어 중단·지연된 사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게 집행된 사례, 수요 부족으로 집행 과정에서 재정의 비효율이 초래된 사례, 총사업비 협의나 사업수행주체 선정 지연이 발생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우주항공청의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R&D) 사업[20]은 재사용발사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사업과 중복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신규 R&D 사업에 대한 기획 시부터 유관부처와의 사전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역할분담 및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 사업[21]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디지털화하여 개발한 표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소 유통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4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착수 이후 중소유통 AX 수요를 반영한 물류로봇 도입 시나리오 수립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물류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2025년 표준 모델 구축 목표 2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사업 착수 이후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향후 사업 집행 전에 부처 간 연계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안심환매(융자) 사업[22]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환매사업의 추진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5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시행한 1차 모집에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매입가격 한도를 상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사업(융자)[23]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의 기본설계비 등 사업인허가,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400억원 중 45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54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다. 동 사업 집행 결과 융자 신청 조합이 4곳에 불과하였고, 신청규모도 84억 5,000만원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5년 계획현액 400억원 중 45억 5,000만원(11.5%)이 실행되는데 그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융자금리를 크게 인하하였는데,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융자금리 인하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24]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역대 최대규모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안동시, 영덕군, 의성군)의 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체계적인 마을단위 복구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이재민 주거시설을 포함한 마을단위 주요 시설 복구·재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 이월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주요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7.

2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7.

산업통상부의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25]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252억 1,300만원이나 반도체 특화단지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설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1회 추경에서 1,17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이 중 83억 6,600만원을 감액 이용하였고, 예산현액 1,338억 5,500만원 중 1,148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4,3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증액 추경을 시행하였으나, 인허가 미취득 및 기업의 투자 철회 등으로 감액 이용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 사전준비 현황, 기업의 투자 의지,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고급 AI해외인재유치지원(R&D) 사업[26]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자 AI생태계 확립에 필수인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시급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수행 기업에 GPU·데이터와 함께 우수 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참여업체의 사업 수요가 20%에 불과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기업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27]은 2만 3,000㎥급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8] 건조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 시스

2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2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2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28) 벙커링 선박은 선박이 항구가 아닌 다른 선박(또는 육상 저장시설)에서 연료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친환경 연료(LNG 등) 공급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의미

템을 탑재·실증함으로써 암모니아 선박 기자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2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7,100만원은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국내 개발 기자재 시스템의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두 차례 공고에도 신청 수요가 전무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사업 중단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사업[29]은 우주항공 분야의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서울대학교)과의 협약 체결이 2025년 7월로 지연되었고, 주요 연구시설·장비 계약도 2026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실집행률이 21.0%로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약 체결,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도입 등 주요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 사업[30]은 바이오 후보물질을 양산하는 자동화 실험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 예산 51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국고 1,244억 4,6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63억 2,100만원 규모로 착수되었으나, 센터 구축 및 장비 도입 관련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연구개발기관의 실집행률이 16.8% 수준으로 저조하였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31]은

2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3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9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민간기업이 시스템 및 본체를 개발하고, 기상탑재체 및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기관 등을 총괄하여 주관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기상청은 당초 2025년 3분기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두 주체 간 기술이전 관련 협의 및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이전 계약이 2026년 3분기로 미뤄지는 등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32]은 민·관 출자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AI반도체(GPU 등) 기반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10억원 전액이 이월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추진된 두 차례 사업자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응모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개소 일정이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예산도 전액 이월되었다. 사업자 신청이 전무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의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므로, 향후 센터 착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8년 하반기 개소 일정을 차질없이 달성할 필요가 있다.

3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③ 성과관리 측면

신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단년도 사업 이후 구체적 활용계획이 미비하거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례, 충분한 성과 검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년도 사업 지원이 결정된 사례, 운영 실적 및 실효성이 미흡한 사례, 과거 구축 장비 활용 실적을 신규사업 성과로 계상한 사례, 향후 성과 관리 및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33]은 영상 등을 자동 생성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방송영상 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방송영상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인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이 편성된 후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과 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 지원 사업[34]은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양육비 선지급)을 수행하는 출연금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287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 추진 결과,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도입 이후 당초 계획 대비 지급 실적이 저조하여 출연금 실집행률이 55.6%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3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교부하며, 제도 홍보 및 신청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AX 프로젝트 사업[35]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및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이후 제한된 사업기간 내 추진됨에 따라, 협약 체결 후 2개월 만에 연차평가를 실시한 후 충분한 성과 검증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계속사업 지원이 결정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체계적으로 과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사업[36]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 2억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플랫폼은 2025년 11월 운영 개시 이후 2026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접수된 제보 건수가 총 87건에 불과하며, 월평균 제보 건수가 약 12건 수준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제보 처리 방식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과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37]은 AI 반도체 시제품 제작 전 설계 단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동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상의 시스템과 검증 장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은 72억 1,0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장비 구축비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현액 95억 1,000만원이

3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3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3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전액 집행되었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장비이용기업 수, 기술지원 건수의 실적을 집계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신규로 구축한 장비의 활용 실적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수행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장비의 활용 실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 집계 방식은 실제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과다 계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재정 투입과 성과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38]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동 사업은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도입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의 대학원생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향후 철저한 운영 성과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소외되는 대학원생이 없도록 대학이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4 재정의 신속집행 분석

가. 현 황

(1) 의의

재정의 신속집행[1]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의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예산집행의 연말 집중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에 대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은 2002년부터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에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며, 기획예산처는 매월 관계기관과 재정집행점검회의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신속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법령에서 언급되는 용어가 아니다. 도입 초기 '조기집행'으로 불렸으며, 이후 '균형집행'으로 변경된 후 2017년부터는 '신속집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재정집행의 관리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다.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를 개최하여 집행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의 의의는 경기의 상저하고가 예상될 때,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소비, 생산, 고용 증대, 경기 부양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속집행의 또 다른 역할은 하반기의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연도 중 집행하지 않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2] 재정의 신속집행은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신속집행을 통해 상반기 집행 비중을 확대할 경우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조기에 이루어지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년도 이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5회계연도에는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다.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였다.[3]

「2025년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25. 1. 9.)에 따르면 2025년은 내수가 건설부진, 심리위축 등으로 회복이 제약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며 경기 하방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속도로 재정,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다.

---

2) 편성된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최근 7년 신속집행 목표]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앙재정	62.0	63.0	63.0	65.0	65.0	67.0	63.0
지방재정	60.0	60.0	60.5	60.5	60.0	60.5	59.0
지방교육재정	63.0	63.5	64.0	65.0	65.0	65.0	65.0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5. 1. 9.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2026. 1. 13.

과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체 부처 중에서 재정 신속집행 대상 기관은 총 47개 부처[4], 대상 기금은 총 40개[5]이다.

[2025회계연도 총지출 vs.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 및 규모]

총지출(본예산)		신속집행 관리대상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중앙행정기관 62개, 기금 57개	673.3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241.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 8.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재량지출 사업 중에서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의 집행실적이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때 성질상 신속집행이 곤란한 인건비, 상환지출, 여비 등의 비목은 제외되었다.

[신속집행 대상 비목]

세목		코드	대상 여부	세목		코드	대상 여부
인건비		110	X	자치단체이전		330	○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	해외이전		340	X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일반출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X
	피복비	210-03	○		사업 출연금	350-02	○

4) 기관 및 소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기관이 제외되었다.

5) 독립적 성격을 지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신속집행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보보험성, 계정성, 금융성 기금 등이 제외되었다.

세목		코드	대상 여부	세목		코드	대상 여부
	급식비	210-04	X	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350-03	X
	특근매식비	210-05	X		민간기금 출연금	350-04	X
	일 · 숙직비	210-06	X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360-01	X
	임차료	210-07	X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2	○
	유류비	210-08	X		연구개발건축비	360-0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연구개발장비 · 시스템 구축비	360-04	○
	학교운영비	210-10	X				
	재료비	210-11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복리후생비	210-12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360-06	○
운영비	시험연구비	210-13	○	건설보상비		410	○
	일반용역비	210-14	○	건설비		420	○
	관리용역비	210-15	X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430-01	○
	기타운영비	210-16	○		저장품매입비	430-02	X
여비		220	X	무형자산		440	○
특수활동비		230	X	융자금		450	○
업무추진비		240	X	출자금		460	○
직무수행경비		250	X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70	X
연구용역비		260	○	예탁금		480	X
안보비		270	X	지분취득비		490	○
정보보안비		280	X	상환지출		510	X
보전금		310	X	전출금 등		610	X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20-01	○	예비비 및 기타		710	X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민간이전	구호 및 교정비	320-06	○
	연금지급금	320-03	X		민간자본보조	320-07	○
	보험금	320-04	X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
	이차보전금	320-05	X		고용부담금	320-09	X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각각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신속집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앙, 지방, 지방교육 재정 신속집행 계획 수립, 집행상황 및 낭비 실태의 확인, 점검 및 집행실적의 집계, 발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현황

2025년 중앙정부 신속집행 목표액 241.1조 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목표액은 66.8%에 해당하는 161.1조 원이고 2025회계연도 상반기 실제 집행액은 167.5조 원이었으며, 목표집행액 대비 6.4조 원, 목표집행률 대비 2.7%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회계연도까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주요 의무지출 및 공공기관 지출이 포함되었으나, 2022회계연도부터 제외됨에 따라 이전 대비 집행목표액과 집행실적이 감소하였다.

[2020~2025회계연도 중앙부처 신속집행 추진 현황]

(단위: 조 원, %, %p)

구분	연간 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초과달성	
		금액(B)	집행률 (C=B/A)	금액(D)	집행률 (E=D/A)	금액 (D-B)	집행률 (E-C)
2020	305.5	189.6	62.0	203.3	66.5	13.7	4.5
2021	343.7	216.5	63.0	234.2	68.2	17.7	5.2
2022	199.4	125.6	63.0	128.3	64.4	2.7	1.4
2023	242.9	157.9	65.0	159.7	65.7	1.8	0.7
2024	240.6	156.4	65.0	159.4	66.3	3	1.3
2025	241.1 (255.1)	161.1 (170.9)	66.8 (67.0)	167.5 (167.7)	69.5 (65.7)	6.4	2.7

주: 2024, 2025년도는 국토부 주택구입 · 전세자금(주택기금) 융자 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함에 따라 신속집행 대상 제외(괄호 안은 국토부 융자 사업 포함 시)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 8.

지방재정의 경우 2025년 집행목표액 283.5조 원 중 상반기 집행목표액은 60.5%에 해당하는 171.5조 원, 2025회계연도 상반기 실제 집행실적은 177.3조 원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2025년 집행목표액 26.6조 원 중 상반기 집행목표액은 65.0%에 해당하는 17.3조 원, 상반기 실제 집행실적은 19조 원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신속집행 실적]

(단위: 조 원, %)

구분	연간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B)	목표율(B/A)	금액(C)	집행률(C/A)
지방재정	283.5	171.5	60.5	177.3	62.6
지방교육재정	26.6	17.3	65.0	19.0	71.4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당국은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와 실적을 총량적 차원에서만 집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 현황 점검 등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재정의 신속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가 전망되는 경우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상하반기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상반기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여 하반기에 예산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잔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연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선 부처의 집행 관행과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속집행 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1) 경기여건 및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한 신속집행 비중 결정 필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재정의 60~67% 정도를 연례적으로 상반기에 투입하는 것은 상하반기 경기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하반기 경기변동 완화 기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상하반기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상반기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신속집행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반기별 투입 비중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재정 투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2019년 이후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를 매년 60~67% 수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2016~2025회계연도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	59.5	58.0	58.0	61.0	62.0
실적	60.8	59.0	62.1	62.1	65.4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	63.0	63.0	65.0	65.0	67.0
실적	68.2	64.4	65.7	66.2	65.7

주: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 사업 포함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아,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 관련 사업 85조 원을 선별하여 국민들이 조기 집행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6)]

그런데 2025년까지의 최근 10년간 실제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가령 2022년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재정의 신속집행이 적절하였는지 다소 의문이다.

[2016~2025 상하반기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1/4	0.4	1.1	1.4	0.0	△1.4
	2/4	1.3	0.7	0.8	1.4	△2.6
하반기	3/4	0.4	1.4	0.5	0.3	2.3
	4/4	0.8	△0.2	0.5	1.0	1.5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1/4	1.6	0.5	0.2	1.0	△0.2
	2/4	1.4	1.0	0.7	△0.2	0.6
하반기	3/4	0.0	0.3	1.0	0.1	1.4
	4/4	1.8	△0.4	0.7	0.2	△0.1

주: 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자료: 한국은행 ECOS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2025. 1. 9.

현재와 같이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명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재정의 60~67% 정도를 상반기 집행분으로 배정하는 것은 경기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변동폭의 안정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성장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하반기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상반기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신속집행 비중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재정 당국의 총량 위주 목표 및 실적 관리를 실집행 중심으로 보완 필요

기획예산처는 총량 위주로 신속집행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은 소관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 중인바, 보조사업의 실집행액이 아니라 피보조사업자 교부액을 기준으로 신속집행 실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재정당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비목에는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에 교부한 후 해당 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을 신속하게 교부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정책시차가 존재하게 되므로, 신속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집행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1차적으로 교부한 집행액만을 취합하여 신속집행 실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실집행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점검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처가 예산을 교부하기만 하면 중앙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실적으로 집계되지만, 해당 예산을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차원에서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의 발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괴리될 수 있다.

피보조 또는 피출연기관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방식은 신속집행 제도가 실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중앙부처가 예산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 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와 실제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재원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신속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재정의 신속집행 사업의 상반기 집행실적 예시]

(단위: 억 원, %)

사업명	소관 부처	예산액 (A)	상반기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육부	19,619	15,394	78.5	9,036	46.1
한국국방연구원운영(R&D)	국방부	559	411	73.5	256	45.7
주거급여지원	국토교통부	30,373	22,531	74.2	15,241	50.2
지상 ·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청	244	235	96.3	108	44.3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95	1,623	56.1	1,263	43.6
KBS대외방송송출지원	방송통신 위원회	61	45	74.0	19	31.9
갱생보호활동	법무부	469	469	100	213	45.5
사방사업	산림청	2,742	2,601	94.9	1,369	49.9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새만금개발청	880	880	100	491	55.8
아이돌봄지원	성평등가족부	4,747	3,331	70.2	2,169	45.7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657	657	99.9	285	43.4
인도적지원(ODA)	외교부	6,442	5,150	80.0	2,532	39.3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R&D)	우주항공청	1,478	1,109	75.0	706	47.7
소상공인재기지원	중소벤처기업부	3,605	2,729	75.7	1,627	45.1
어촌신활력증진	해양수산부	2,257	1,681	74.5	675	30.0
지방소멸대응기금출연금	행정안전부	10,000	10,000	100	6,505	65.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법정 의무지출 사업 제외하도록 관리 필요

연금,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 경상 보조 예산의 경우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까지 정책시차가 발생하고 월별 집행액이 비교적 일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까지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주요 의무지출이 포함되었으나 2022회계연도부터 제외되었다.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25. 1.

9.)에 따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한다.

그런데 재정당국은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와 실적을 총량적 차원에서만 집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및 집행 현황 점검 등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부처에서 법정 의무지출을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하는지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 경상 보조 예산의 경우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까지 정책시차가 발생한다. 특히 월별 집행액이 비교적 일정한 경우 정부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뿐, 근본적인 지원 목적 달성이나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반기 집행을 통해 이월 또는 불용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수당법」[7]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8] 2025년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서 매월 지출액이 고르게 나타나므로, 중앙부처가 예산을 신속집행하더라도 피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미리 교부될 뿐, 실제로 아동(및 부모)에게 수당이 미리 지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의무지출 예시(아동수당 지급 사업)]

(단위: 억 원, %)

예산액(A)	상반기			
	집행액(B)	집행률(B/A)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19,588	14,700	75.0	10,020	51.2

자료: 보건복지부

7)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8) 다만, 2026년도 예산부터는 「아동수당법」이 개정(같은 법 제4조제6항, 제7항 신설)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을 가산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만 원을 다시 가산한다.

(4) 하반기 융자 수요 고려 필요

융자 사업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적었던 융자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비목에는 융자금이 포함되고, 실제로 융자 사업이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소관 신속집행 관리대상 중 융자 사업은 총 14조 1,370억 원 중 50%인 7조 205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되었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융자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속집행 관리대상 중 융자 사업 예시(국토교통부 소관)]

(단위: 억 원, %)

구분	예산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공공임대(융자)	6,628	4,148	4,148	62.6
국민임대(융자)	1,876	102	102	5.5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14	0	0	0.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0,444	20,153	20,153	66.2
도시재생씨앗융자	500	218	218	43.7
도시재생지원(융자)	1,050	354	354	33.7
민간임대(융자)	15,000	6,103	6,103	40.7
분양주택(융자)	14,716	9,167	9,167	62.3
전세임대(융자)	51,141	21,091	21,091	41.2
주택정비사업(융자)	400	0	0	0.0
통합공공임대융자	14,817	7,670	7,670	51.8
행복주택(융자)	4,384	1,199	1,199	27.4
계	**141,370**	**70,205**	**70,205**	**50.0**

자료: 국토교통부

15 집행부진 사업 분석

가. 개 요

집행부진 사업이란 당초 마련한 재정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비해 당해 회계연도 집행한 예산이 저조한 사업을 의미한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투입이 시급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저해하고, 예산의 적정 배분을 어렵게 만들어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경기부양 등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집행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현황 및 원인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 집행실적 부진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전 부처의 주요사업 중 ①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과 ②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③정부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이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3가지로 분류하였다. 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시 해당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한다.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였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집행부진 사업 선정 기준]

구분	선정기준
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 중앙정부 기준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상이고, 보조사업자 기준 2025년 실집행률이 70% 미만(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제외)
(공통기준)	· 세부사업(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최근 4년간(2022~2025년)의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하고, 2025회계연도 집행실적 부진 사업과 유사하게 ①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②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③보조사업자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선정 기준]

구분	선정기준	
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가. 예산현액 대비	① 2025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② 2022~2025년(4년간) 집행률의 평균이 70% 미만
	나. 예산액 대비	①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② 2022~2025년(4년간) 집행률의 평균이 70% 미만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① 중앙정부 기준 2022~2025년(4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상이고, ② 보조사업자 기준 2022~2025(4년간) 평균 실집행률과 2025년 실집행률이 70% 미만	
(공통기준)	· 세부사업(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 4년 평균 집행률: 각 연도 집행률 평균	

주: 1. 2023년도 신규 사업은 3년 평균 집행률, 2024년도 신규 사업은 2년 평균 집행률 기준임
2. 2025년도 신규사업 및 단년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집행실적 부진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사업 준비단계, 사업 집행단계, 그리고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사업준비 단계의 부진 원인은 ①부적정한 예산 추계 ②사전 사업계획 미비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집행 단계의 부진 원인은 ③지방비 미확보, ④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⑤사업추진 지연, ⑥집행사유 미발생, ⑦수요

감소, ⑧주민 갈등, ⑨기타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⑨기타 유형에는 남북관계 경색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집행부진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유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2025년 결산 결과 연례적으로 집행이 집행이 부진한 사업(①예산현액 기준, ②예산액 기준, ③보조사업) 목록을 정보제공을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하였다.

[집행부진 사유 분류 기준]

구분	사유	주요 내용
사업 준비 단계	① 예산 추계 부적정 및 예산 과다편성	추계 부적정, 사업비 과다이월, 예산 과다편성 등
	② 사전 사업계획 미비	사업내역의 잦은 변경 및 설계변경 등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사업 집행 단계	③ 지방비 미확보	지방비 분담 보조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④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사업과 관계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상호간 협의, 인가, 허가 등의 절차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⑤ 사업추진 지연	용역 지연, 공사착공 지연, 공사 지연, 발주 지연 등
	⑥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요건 미충족 등
	⑦ 수요 감소	사업신청 저조, 사업대상자 감소 등
	⑧ 주민 갈등	부지매입 협의지연, 주민상호간 갈등 발생 등
	⑨ 기타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적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부진 사업

(1) 2025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

인건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각 부처별 사업을 정리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집행률 70% 미만)은 40개 중앙관서에 총 636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40개 중앙관서의 465개 사업이고, 중앙정부의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20개 중앙관서의 171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집행실적 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앙관서 수	사업 수
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	40	417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	19	48
	소계	**40**	**465**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20**	**171**
합계		**40**	**636**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2025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집행률 70% 미만)은 기획재정부 등 40개 부처의 총 417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현액은 40조 9,945억원이고, 이 중 13.4%인 5조 5,506억원이 집행되었다.

[예산현액 기준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수	사업수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C/B
40	417	41,192,815	**40,994,494**	**5,505,571**	13.4	**13.4**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9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91개, 방위사업청 41개, 통일부 20개, 해양수산부 19개 사업 등의 순서이며, 상위 3개 부처의 집행부진 사업 건수(총 227건)가 전체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현액 기준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기획재정부	95	교육부	5	대법원	2
국토교통부	91	외교부	5	우주항공청	2
방위사업청	41	행정안전부	5	재외동포청	2
통일부	20	국가보훈부	4	중소벤처기업부	2
해양수산부	19	농촌진흥청	4	해양경찰청	2
금융위원회	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	경찰청	1
문화체육관광부	14	산림청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국방부	12	소방청	4	공정거래위원회	1
보건복지부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법무부	1
농림축산식품부	9	10.29이태원참사특조위	3	새만금개발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성평등가족부	1
산업통상부	6	질병관리청	3	조달청	1
고용노동부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국회	2		
총 40개 중앙관서, 417개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사업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현액 감소로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의 총 48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액은 1조 3,761억원이고, 이 중 34.8%인 4,783억원이 집행되었다.

[예산액 기준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수	사업수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C/B
19	48	**1,376,063**	566,443	**478,256**	**34.8**	84.4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21개 사업, 방위사업청 6개 사업,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각 2개 사업 등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액 기준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국토교통부	21	국가보훈부	1	산업통상부	1
방위사업청	6	국민권익위원회	1	외교부	1
국방부	2	국세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기상청	2	기획재정부	1	해양경찰청	1
소방청	2	법무부	1	행정안전부	1
해양수산부	2	보건복지부	1		
공정거래위원회	2	산림청	1		
총 19개 중앙관서, 48개 사업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보조사업자 실집행 부진 사업

보조사업자 실집행 부진 사업은 보조사업 중 부처의 2025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이 70% 이상이면서, 보조사업자의 2025년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실집행 부진 사업은 해양수산부 등 20개 부처의 171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조 4,922억원이고, 이 중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금액은 6조 3,938억원이다. 2025년 부처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은 9조 5,185억원이고, 이 중 51.8%인 4조 9,32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다.

[보조사업자 실집행 기준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수	사업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	171	11,853,399	12,492,179	12,230,504	97.9	6,393,771	9,518,467	4,931,968	51.8

주: 1. 보조사업 수는 각 부처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2. 중앙관서 예산액에는 직접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과 교부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31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30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5개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18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및 우주항공청이 각각 9개 사업 등으로 확인되었다.

[보조사업자 실집행 기준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해양수산부	31	우주항공청	9	중소벤처기업부	2
국토교통부	30	행정안전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문화체육관광부	25	국가유산청	6	농촌진흥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	18	교육부	4	법무부	1
농림축산식품부	9	산업통상부	3	성평등가족부	1
보건복지부	9	국가보훈부	2	소방청	1
산림청	9	새만금개발청	2		
총 20개 중앙관서, 171개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22-2025회계연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1)]

인건비 ·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각 부처별 사업을 정리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32개 중앙관서의 367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 집행부진 사업이 28개 관서의 262개 사업이고, 중앙정부의 집행률은 70% 이상이지만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105개로 조사되었다. 2025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 636개 중 367개 사업(57.7%)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진 사업 중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앙관서 수	사업 수
중앙정부 집행부진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	27	246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	3	16
	소계	**28**	**262**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17**	**105**
합계		**32**	**367**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예산현액 대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2022~2025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등 27개 부처의 총 246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현액은 23조 6,959억원이고, 이 중 13.9%인 3조 2,874억원이 집행되었다.

1)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최근 4년간의 집행률 평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함. 단, 2025년도 신규사업과 단년도 시행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수	사업수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C/B
27	246	23,525,518	**23,695,919**	**3,287,364**	14.0	**13.9**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7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55개, 방위사업청 28개, 통일부 14개, 금융위원회 12개의 순서이며, 상위 3개 부처의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건수(총 158개)가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기획재정부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림청	1
국토교통부	55	기후에너지환경부	3	산업통상부	1
방위사업청	28	농촌진흥청	3	새만금개발청	1
통일부	14	고용노동부	2	성평등가족부	1
금융위원회	12	국가보훈부	2	외교부	1
해양수산부	10	국회	2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9	질병관리청	2	행정안전부	1
문화체육관광부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보건복지부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농림축산식품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총 27개 중앙관서, 246개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액 대비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현액 감소로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의 총 16개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액은 3,351억원이고, 이 중 22.5%인 754억원이 집행되었다.

[예산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수	사업수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C/B
3	16	335,084	83,920	75,403	22.5	89.9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관서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13개 사업, 방위사업청 2개 사업, 국가보훈부 1개 사업 등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국토교통부	13	방위사업청	2	국가보훈부	1
총 3개 중앙관서, 16개 사업					

주: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부진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보조사업자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사업

보조사업자 실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보조사업 중 최근 4년간(2022~2025년) 부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이 70% 이상이면서, 보조사업자의 4년 평균 실집행률과 2025년도 실집행률이 각각 7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해양수산부 등 17개 중앙관서 105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보조사업자 집행부진 사업이 17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사업자 실집행부진 사업의 상당수(61.4%)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5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규모는 2025년도 예산현액 기준으로 3조 4,863억원이고, 이 중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금액은 2조 9,626억원이며,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은 5조 2,122억원으로 이 중 45.8%인 2조 3,873억원이 실집행되었다.

[보조사업자 실집행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 관서수	사업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7	105	3,071,482	3,486,296	3,366,259	96.6	2,962,649	5,212,181	2,387,332	45.8

주: 1. 보조사업 수는 각 부처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2. 중앙관서 예산액에는 직접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액과 교부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관서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23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21개,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기후에너지환경부 12개, 농림축산식품부 6개 등으로 확인되었다.

[보조사업자 실집행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해양수산부	23	우주항공청	4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21	국가유산청	3	교육부	1
문화체육관광부	17	보건복지부	3	농촌진흥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	12	국가보훈부	2	법무부	1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2	소방청	1
산림청	4	중소벤처기업부	2		
총 17개 중앙관서, 105개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분석의견

① 2025년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48개 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417개 사업 중 집행액이 전무한 사업은 65개 사업이며, 이 중 차년도로 이월조차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사업은 48개로

조사되었다. 예산액이 전액 불용된 사업들의 예산액은 3,572억원이었으나, 이전용 및 예산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381억원이며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중앙관서수	사업수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12	48	357,167	238,149	0	238,149

주: 이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이 0원인 사업은 제외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18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 7개, 통일부 6개, 금융위원회 4개 사업 등으로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비중이 높다.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 사업의 부처별 현황]

(단위: 개)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중앙관서	사업수
국토교통부	18	기후에너지환경부	3	중소벤처기업부	1
기획재정부	7	농림축산식품부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통일부	6	농촌진흥청	1		
금융위원회	4	방위사업청	1		
국방부	3	우주항공청	1		
총 12개 중앙관서, 48개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해당 예산만큼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에 예산이 전액 불용된 48개 사업을 보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이 15개로 31.3%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 사업(48개 사업)]

(단위: 백만원)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부진 사유
국방부	광주기지영외 탄약고이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43	845	관련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중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1	1	관련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중
	부사관학교 훈련장 이전		1	1	이전 대상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취소
국토교통부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 열차기술개발(R&D)	일반회계	2,700	2,700	시범노선 건축 구축사업의 유치기관인 남원시의 소규모영향평가 미통과로 사업 중단
	성주선남-대구다사국도건설	교통시설특별회계	44,621	70	관계기관 협의 지연(종점부 확장 요구 등)
	경주외동녹동-문산국도건설		22,051	70	관계기관 협의 지연(문화재, 노선선정 등)
	안동풍산-서후국도건설		48,642	70	타당성 재조사 수행 필요
	울주범서-경주외동국도건설		3,217	70	관계기관 협의 지연(문화재, 노선선정 등)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2,500	2,500	기본계획 수립 중(`23.2~)으로 설계 미착수에 따른 불용
	석문산단인입철도		1,000	1,000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5.7.~) 중으로 노반 분야 등 기본설계 중지에 따라 불용
	남부내륙철도		68,863	68,86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3.9~`24.6)에 따른 착공 지연('24.末→'25.12.~)으로 공사비 등 집행 불가
	충북선 고속화		9,900	9,900	노선변경 민원에 따른 기본설계 지연으로 불용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1,000	1,000	기본계획 고시('25.12) 이후, 기본설계 준비단계로 집행여력 한계에 따른 불용

(단위: 백만원)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부진 사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5,400	5,400	기본계획 고시('25.11.) 이후 설계발주 준비 단계로, 설계비 등 집행 불가하여 불용
국토교통부	백령도소형 공항건설	교통시설특별회계	3,095	3,095	공항등급 변경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시행 중('24.11~)
	서산공항건설		1,662	1,662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여부 검토 중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5,500	5,500	직결이행방안 연구용역('24.6~'25.5)을 토대로 공항철도 예타신청 등 추진방안 검토 중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00	1,800	오송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의 미확보에 따른 공사 미착공으로 불용액 발생
	청주전통 공예촌 산단진입도로		100	5	산단 추진 지연에 따라 진입도로 사업 순연
	공주송선산단 진입도로		1,000	5	산단 추진 지연에 따라 진입도로 사업 순연
	신도시리츠(출자)	주택도시기금	2,500	2,500	필요 용역비 과다 배정에 따라 예산 감액
금융위원회	자산매각비	공적자금상환기금	52	52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중인 한화오션 주식 지분을 '24년 11월 전량(233만주, 816억원) 매각함에 따라 자산매각비 지출 불요
	기금관리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1	당초 계획한 기금 운용관련 수당 등 미발생
	전입금환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	3	금융구조조정 관련 사후손실 보전비용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소송및법적 절차비		7	7	금융구조조정 관련 소송 발생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기획재정부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5	5	수요기관의 이전여부 불확실(중랑세무서)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132	132	수요기관 추가로 청사수급관리계획 신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단위: 백만원)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부진 사유
	법무부 전주 로파크 신축		1	1	기재부 사업계획 협의
기획재정부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 경찰서 재건축	국유재산 관리기금	3	3	직제조정에 따른 설계 내역 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부산사하 경찰서 신축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체결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서울영등포 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1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서울중부 경찰서 신축		-	419	감리비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150	2,150	당초 영흥 석탄화력 부지에서 추진하던 석탄-암모니아 혼소용 암모니아 인수기지 구축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영흥 인수기지 EPC 비용으로 편성한 '25년 예산 전액 불용
	해외청정수소 암모니아생산 및도입기반 구축		1,650	1,650	국내 청정수소 수요 불확실 등으로 인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개발-도입 프로젝트 FID 지연
	수탁과제 수입대체경비(R&D)	환경개선 특별회계	31	31	수탁연구과제 미수행(외부기관에서 연구사업 참여요청 없음)으로 인해 불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60	360	2년차에 세종시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전액 미교부, 반납 처리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융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00	2,400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조정(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단위: 백만원)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부진 사유
농촌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보조, 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00	400	세종특별자치시 세수감소로 2025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 미편성(4억원)에 따른 사업포기
우주항공청	혁신형재사용 발사체핵심 기술(R&D)	일반회계	5,000	5,000	우주항공청 개청('24.5)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절차 종료 후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25년 과기부 혁본 사후 심의 결과 사업 미추진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지특회계	780	780	사업 추진 주체인 세종시에서 구역 내 상인회 간 불화 등으로 사업 포기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운영	일반회계	475	475	국회의 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25년 예산 전액 불용
	구호지원	남북협력기금	77,230	77,230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경협기반(융자)		28,220	28,220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추진 여건 미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819	2,819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
	경제교류협력 대출(융자)		5,850	5,850	남북관계 상황으로 신규 대출 미발생
	경제교류협력 보험		2,501	2,501	남북관계 상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	100	사업시행자의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불용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수시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불필요한 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시배정제도는「국가재정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정부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기획예산처가 예산 배정 시기와 규모를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국가재정법」제43조제2항 및 제5항과「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배정 및 지출 전 협의 대상사업[2](이하 수시배정사업)으로 정하고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배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25개 사업이 수시배정 및 지출전 협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수시배정의 취지는 사전이행절차나 사업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배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소관부처로부터 예산배정요구를 받고, 사업검토를 통해 배정여부, 배정규모, 배정시기를 결정한다.

[2021~2025년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중앙관서 수	세부사업 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2021	26	105	2,647,208	2,521,637	95.3	2,370,620	94.0
2022	25	81	4,598,167	4,552,723	99.0	4,503,840	98.9
2023	22	69	15,900,340	15,762,361	99.1	15,751,725	99.9
2024	26	107	6,545,560	6,189,666	94.6	6,019,500	97.3
2025	15	25	3,380,526	2,695,420	79.7	2,695,218	100.0

주: 대상액(A)은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액이며, 배정액(B)은 대상액(A) 중 부처에 배정된 금액임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수시배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사업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전 협의 대상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수시배정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예산 배정이 지연되고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제도 운영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기획예산처는 수시배정제도의 운영기준, 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3]는 연례적으로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관리되며 재원이 연도 말에 교부됨으로써 당해연도의 실질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2025년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을 보면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예산액의 100%인 1,646억 3,800만원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5월, 9월, 10월에 배정된 후 수시로 교부가 이루어졌고,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예산액의 50%인 4,115억 9,500만원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7월에 배정된 후 수시로 교부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21~'25) 특별교부세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이는 당해연도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6년 역시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

3)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2026년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지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계
2021	예 산 액	550,982	137,746	688,727	1,377,455
	대 상 액	-	137,746	339,300	477,046
	비 율	-	100%	50%	35%
2022	예 산 액	681,701	170,426	852,127	1,704,254
	대 상 액	-	170,426	426,064	596,490
	비 율	-	100%	50%	35%
2023	예 산 액	824,469	206,117	1,030,586	2,061,172
	대 상 액	-	-	515,293	515,293
	비 율	-	-	50%	25%
2024	예 산 액	740,337	185,084	925,421	1,850,842
	대 상 액	200,000	185,084	462,711	847,795
	비 율	27%	100%	50%	46%
2025	예 산 액	658,551	164,638	823,189	1,646,378
	대 상 액	-	164,638	411,595	576,233
	비 율	-	100%	50%	35%
2026	예 산 액	763,247	190,811	954,058	1,908,116
	대 상 액	-	95,406	477,029	572,435
	비 율	-	50%	50%	30%

자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법정 지출로 지방교부세 교부액 산정 당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 포착하기 어려우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것인데 해당 재원이 회계연도 종료일에 가까운 시일에 교부되도록 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별교부세와 수시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특별교부세는 각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수요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당 재원이 지연 교부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에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교부 시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예산 운용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연례적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대상사업 지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집행부진 사유 유형 분석

(1) 집행부진 유형

① 2025년도 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과, ②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실집행 부진 사업, ③ 2022~2025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④ 2022~2025년 보조사업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각각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9가지의 집행부진 사유에 따라 분류하고 주로 어떤 원인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① 2025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2025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부진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준비 단계보다는 사업집행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집행부진 사업 465개 중 사업준비 단계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7개(1.5%)에 불과하나,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458개(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예산추계 등 부적정이 4개 사업(0.9%), 사전사업계획 미비가 3개 사업(0.6%)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집행 단계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이 133개 사업(28.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01개 사업(21.7%),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이 85개 사업(18.3%), 수요 감소가 30개 사업(6.5%), 주민 갈등이 13개 사업(2.8%), 지방비 미확보가 9개 사업(1.9%)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사유		예산현액 기준		예산액 기준		계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 준비 단계	예산 추계 등 부적정	4	1.0	0	0.0	4	0.9
	사전 사업계획 미비	3	0.7	0	0.0	3	0.6
	소계	7	1.7	0	0.0	7	1.5
사업 집행 단계	지방비 미확보	9	2.2	0	0.0	9	1.9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82	19.7	3	6.3	85	18.3
	사업추진 지연	115	27.6	18	37.5	133	28.6
	집행사유 미발생	93	22.3	8	16.7	101	21.7
	수요 감소	26	6.2	4	8.3	30	6.5
	주민 갈등	9	2.2	4	8.3	13	2.8
	기타	76	18.2	11	22.9	87	18.7
	소계	406	98.3	49	100.0	458	98.5
합계		417	100.0	49	100.0	465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집행부진 사업

2025년도 보조사업 실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부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이 70% 이상이면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보조사업자의 2025년도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중앙관서와 유사하게 사업추진 지연이 99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21건(12.3%), 집행사유 미발생 19건(11.1%) 등의 순으로, 사업집행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자 집행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사유		사업수	비중
사업 준비 단계	예산 추계 등 부적정	0	0.0
	사전 사업계획 미비	1	0.6
	소계	1	0.6
사업 집행 단계	지방비 미확보	3	1.8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21	12.3
	사업추진 지연	99	57.9
	집행사유 미발생	19	11.1
	수요 감소	8	4.7
	주민 갈등	4	2.3
	기타	16	9.4
	소계	170	99.4
합계		171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2022~2025회계연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앙정부 기준으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부진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준비 단계보다는 사업집행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전 사업계획 미비가 3건(1.1%), 예산 추계 등 부적정이 1건(0.4%)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집행 단계의 경우 사업추진 지연이 86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사유 미발생 61건(23.3%),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이 52건(19.8%), 수요 감소 11건(4.2%), 주민 갈등 10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사유		예산현액 기준		예산액 기준		계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 준비 단계	예산 추계 등 부적정	1	0.4	0	0.0	1	0.4
	사전 사업계획 미비	3	1.2	0	0.0	3	1.1
	소계	4	1.6	0	0.0	4	1.5
사업 집행 단계	지방비 미확보	4	1.6	0	0.0	4	1.5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52	21.1	0	0.0	52	19.8
	사업추진 지연	79	32.1	7	43.8	86	32.8
	집행사유 미발생	57	23.2	4	25.0	61	23.3

(단위: 개, %)

사유		예산현액 기준		예산액 기준		계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수요 감소	10	4.1	1	6.2	11	4.2
	주민 갈등	6	2.4	4	25.0	10	3.8
	기타	34	13.8	0	0.0	34	13.0
	소계	242	98.4	16	100.0	258	98.5
합계		246	100.0	16	100.0	262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2022~2025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2025년도 보조사업자의 연례적 실집행부진사업은 보조사업 중 최근 4년간(2022~2025년) 중앙관서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평균이 70% 이상이면서, 보조사업자의 2025년 실집행률과 4년 평균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보조사업자의 2022~2025년도 연례적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6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이 14건(13.3%), 집행사유 미발생 9건(8.6%), 주민 갈등 4건(3.8%) 등의 순으로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자 연례적 집행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사유		사업수	비중
사업 준비 단계	예산 추계 등 부적정	0	0.0
	사전 사업계획 미비	1	1.0
	소계	1	1.0
사업 집행 단계	지방비 미확보	2	1.9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14	13.3
	사업추진 지연	66	62.9
	집행사유 미발생	9	8.6
	수요 감소	3	2.9
	주민 갈등	4	3.8
	기타	6	5.7
	소계	104	99.0
합계		105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집행부진 유형에 따른 주요 사업 분석

① 사업준비단계 미흡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 대상자 또는 수혜자의 수요 현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4]은 향후 10~20년 후 신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소기술·실증 및 시제품·생산공정 등 통합솔루션을 종합 개발·지원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고, 42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산업통상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 역시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5]에 따라 2024년 8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으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 착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확정되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10년 동안 총사업비 9,786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

---

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07.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비는 3,026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 수준만 인정되었다. 특히 총사업비 중 국고지원 규모가 37.6% 수준으로 줄어든 데 비해 민간부담은 11.8%만 인정되었다.

한편,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50억원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다가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8억원을 배정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는 8억원을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교부하였으며, 적정성 검토에서 불인정된 42억원은 불용처리하였다.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원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등 신규 기획 내용이 미비하여 결과 도출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의 16%만 타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예산의 상당부분(84%)이 불용되는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사업의 경우처럼 사업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 점검 결과 도출 지연 및 사업비 감액 등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6]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품과 관련하여,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3,261억원 중 1,81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450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대위변제 계획액의 불용이 과다한 것은 각 보증사업의 부실 규모에 대한 예측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사업의 직전연도말 부실잔액 예상치와 당해연도 부실순증액 예상치를 더한 값에 과거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5개년 대위변제발생률[7]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예측치에 비해 실제 부실이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부실순증액을 4,04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부실액은 1,571억원에 불과하였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6.07.

7) 부실발생액 중 대위변제가 진행되는 비율

당초 대환보증 신규 공급은 2024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신규 보증공급 목표를 무려 7조 7,910억원으로 설정하여 기금계획을 편성했다.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2025년의 실제 신규 공급액은 25억원에 불과해,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대규모 불용을 유발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당시, 2024년 내에 잔여분 8.3조원을 전액 공급하겠다는 기관의 애초 계획과 그에 근거한 대위변제 예상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현실화하는 대신, 2024년 공급분을 현실화(8조 3,346억원 → 5,436억원)하고 나머지 7조 7,910억원을 2025년 공급분으로 이연시킨 것이다.

보증공급 및 부실발생 추세 등에 비추어 과다한 대위변제액을 편성하여 과다불용을 반복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한, 2024년 종료 예정인 사업의 2024년 목표치가 과다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2024년 목표치의 대부분을 2025년으로 이연하는 방식으로 2024년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국회 지적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발생 규모에 대한 예측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가 예정된 사업의 운용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 사업[8]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6억 2,100만원이나 이 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소송에 따른 각종 비용,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률이 매년 60% 미만에 불과하다.

불용 사유와 관련하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 확정 판결까지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소송 패소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간

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6.07.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이 현액 대비 38.1%에 불과하고 불용액도 연간 4~5억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 자체가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경제부 설명대로 소송 최종 확정까지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패소 배상금이 집중 지출되는 시기가 적어도 1~2회는 나타나야 할 것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50%를 상회한 연도는 2022년(57.3%)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본예산 규모를 2021년 807백만원에서 2025년 621백만원으로 약 23% 축소하였음에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여전히 3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본예산 감축 폭이 실제 지출 소요의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청구금액·진행단계·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측하지 못한 배상금 발생 시에는 예산의 이용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9]은 「북한인권법」 제10조[10]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하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으로, 「북한인권법」 제12조[11]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6.07.

10)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1)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재단사무실 설치 공사비 3억 7,500만원, 2개월분의 사무실 임차·관리비 1억원 등 4억 7,5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약 2개월의 기간에 필요한 재단 사무실 임차료 및 설치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재단의 신속한 출범이 가능하므로 2025년 예산에 2개월분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단 운영·사업비 예산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될 경우에도 이사 임명, 재단 설립 등기, 재단 사업자 등록 등 재단 설립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재단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고, 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된 이후 예비비 신청을 통해 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한 후 재단 사무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단 이사 추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현 예산제도 내에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집행단계에서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사업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수요감소,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의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12]은 2만 3,000㎥급 암모니아 벙커링선박[13] 건조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 시스템을 탑재·실증함으로써 암모니아 선박 기자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 07.

13) 벙커링 선박은 선박이 항구가 아닌 다른 선박(또는 육상 저장시설)에서 연료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친환경 연료(LNG 등) 공급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의미

2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였고,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신청기관이 전무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3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2025년 7월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부처에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한 예산 2억 2,900만원은 실집행 불용처리하였다.

동 사업의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한 해상에서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 축적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사업의 미추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기획 및 수요예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의 전당 사업[14]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위패봉안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9,9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다.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건립 대상 부지인 서대문 독립공원이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공원과의 조화 및 경관 보존 등의 측면에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게 진행되어 2024년 8월에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순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12월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9월에서야 완료되었고,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계약 체결 절차 또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공사에 착수하였고, 2026년 7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착공을 통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초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 이월액을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6.07.

선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면 2026년 예산은 공정률에 따라 이월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 착공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예상 공정률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15]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에 10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46억 7,000만원(46.7%)이 집행되었으며, 44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8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다.

최근 5년간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4.8~57.1%로 연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이상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과도한 지연이 동 사업의 이월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6]. 그런데, 최근 5년간(2021~2025년)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완료된 철도건설 사업은 총 21개인데, 이 중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사

---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6.07.

1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정보화부문 12개월, 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업이 24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므로,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의 주요한 집행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밀한 사업기획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SOC분과위, 재정사업평가위 등을 적기에 개최하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17]은 다량의 용수 사용 및 폐수 배출이 불가피한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용·폐수 공동관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폐수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에 25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 253억 9,900만원 중 93억 9,600만원(37.0%)이 집행되었으며, 115억 1,200만원이 이월되고, 44억 9,100만원은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2025년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의 경우 본예산 238억 3,200만원 중 7억 2,000만원은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되었으며, 6,200만원은 조달수수료 부족으로 같은 사업 내 시설부대비로 세목조정되어 집행되었다. 착공 지연에 따라 준공 시기가 2026년 6월로 순연되면서 공사비 예산현액 230억 5,000만원 중 80억 9,900만원만 집행되고 108억 9,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억 5700만원은 불용되는 등 공사비·감리비 및 실시설계비에서 대규모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동 사업의 착공 지연은 폐수의 직방류 계획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수산업 피해를 우려한 새만금 지역 어민단체의 사업 반대 시위('24.8.~9.)와 그에 따른 협의 노선 선정 및 설계 지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착공이 6월로 지연되었으며, 착공 지연에 따라 미집행된 공사비 등 115억 1,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와 같이 새만금개발청의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사업 집행이 부진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6.07.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 배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유사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18]은 인도지원 협조체계 정비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집행률 54.2%)하고,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23년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1031-300)의 내내역사업인 인도협력 플랫폼 사업으로 대북 민관협의 인도협력의 플랫폼 운영, 인도주의 청년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세부사업(3036-312)의 내역사업인 남북그린데탕트[19] 추진으로 계획수립 및 소통채널 구축,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사업 추진 등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되었다가, 2024년도 예산에 기존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인도협력 플랫폼 예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의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예산을 폐지하고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인도지원 정책개발' 내역사업은 1,700만원 계획 대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내역사업은 1억 1,400만원 계획 대비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도 집행률이 부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받고, 조치완료(2025.12.31.)로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적정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6.07.

19)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프랑스어로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Détente)'를 결합한 단어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 평화공존을 이루어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적 구상이다.

하여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③ 보조사업자의 집행부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사전적 행정절차의 이행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고, 중앙부처가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20](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은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23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별로 10억원씩을 교부하였는데, 전남 무안군은 국비 교부액의 98.2%를 차년도로 이월하고, 경북 경산시는 국비 교부액의 33.9%를 이월하는 등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그런데 두 지자체의 집행액은 각각 1,800만원, 6억 6,100만원으로 국비 1차년도 1차(2025.5.) 교부액인 7억원에 미달하는 규모인바, 지자체별 2차 교부액은(2025.10.) 전액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사업은 2개년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소까지 약 3년 내외 소요(전북 부안군, 강원 원주시) 등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2024년에도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선정된 전북 부안군 및 원주시의 경우 2023년 교부 후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 일부를 2025년으로 재이월하는 등 연례적인 예산 이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연례적 예산 이월 및 사업 일정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21]은 국가유산 거주민에 대한 이주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존을 위해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07.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07.

적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현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최근 2년간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첫 해 시행 당시 5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억 4,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9.0%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4,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2억 4,400만원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한 5개 지자체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나주시의 경우 교부현액 2억 1,800만원 중 실집행액이 6,200만원에 불과하여 28.4%라는 가장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태안군(41.6%)과 남원시(70.7%) 역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태안군 7억 2,100만원, 나주시 1억 4,800만원, 남원시 7,800만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사업 선정·선정 이후 사업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과업 수행 절대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에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및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정 계획이 순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 집행여력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5년 예산액 20억원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한 결과,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의 실집행률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속적 집행 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22]은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726억 2,400만원 중 720억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07.

원을 집행하고 6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최근 4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25년에는 계획액의 99.1%에 해당하는 7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 교부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1,806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당해연도 실집행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

이에 2025년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70%를 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센터별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0개 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센터가 절반이 넘는 27개이고, 실집행액이 0원인 센터도 17개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 부지 확보 협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설계 공모,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검축기획용역 진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때문인데, 이는 문체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년 이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도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23]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9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07.

동 사업 예산의 2025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예산액 50억 2,5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전용한 3,800만원을 제외한 49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사업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게 교부하였고, 그 중 35억 2,000만원이 실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70%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은 보험상품 개발 및 사업 계획 구체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실제 배상보험 가입신청 접수는 2025년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된 이후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가입 신청 검토를 거쳐 2026년 1월이 되어서야 보험료 지원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가입자 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자부담으로 인한 병원 재정부담, 장기간 소요된 사업 준비에 따른 짧은 가입기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 편성 기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 목표 인원 총 5,000명 대비 실제 보험료를 지원 받은 인원은 40% 수준인 1,998명, 전공의 지원 목표 인원 총 4,636명 중 실제 지원 받은 인원은 44.8% 수준인 2,078명에 그치는 등 동 사업의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및 실적 부진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민주화운동지원 사업[24]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액 214억 9,600만원 중 95억 4,000만원을 이용 감액하였다. 이를 통한 예산현액 119억 5,600만원의 82.6%인 9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 및 후유증 사망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면소판결·유죄판결·해직자·학사징계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2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07.

그런데 2024년은 37억 8,400만원을 편성한 후 21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실집행률이 더욱 감소하여 예산액 170억 9,000만원 중 74억 2,000만원을 집행(43.2%)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신청접수 건을 바탕으로 심의인원을 예상하고 이에 40%의 인정률을 적용하여 소요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연차별 소요(연 1,795명)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의 80%가 관위거주자여서 사실조사가 장기화되어 심의실적이 717명에 그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제1차부터 제7차에 이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의 수행 경험을 통해 연내 심사완료 건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조사완료 예정자 수를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처가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신청자의 보상대상 구분과 심사·지급 절차상 최소 소요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소하여 보상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25]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에 실집행액이 전혀 없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한 45억원 전부 2024년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7억 3,100만원 중 60억원을 서울시에 교부하였는데, 서울시는 45억 100만원만 실집행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교부한 60억원 중 59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다.

---

2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노동위원회 소관)」, 2026.07.

2025년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교부액 15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9,900만원을 합한 209억 9,900만원 중 81억 4,5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추가 협의로 일정기간 소요되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턴키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잦은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순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집행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 및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는 추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26]은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6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 기간(2015~2018년)에서 세 차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준공 예정일이 2022년과 2026년을 거쳐 2030년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조정되어 2026년 4월 기준 2,360억 4,800만원이고, 2025년 예산은 1년차 공사비 36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 10월 1단계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본공사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신관 종사자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선행 공정인 1단계 철거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본공사 착공 또한 지연되었다.

또한,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시공사 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따라 2025년 1월 조달청 발주 후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기술 협의 및 설계 보완 등 행정 절차가 추가 소요되면서 2025년 11월에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

2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07.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2025년도 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878억 5,100만원 중 102억원을 집행하였고, 실집행률은 11.6%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 시에는 사업 공정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별도 점검 없이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의 이월 및 재이월을 야기하였다.

동 사업은 2026년 중 1단계 철거 공사 완료 및 본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바,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수행하고, 아울러 현장의 실제 집행 속도와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관행적인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27]은 신종감염병 및 재유행감염병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 등의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감염병동 구축비를 지원(국고보조율 100%, 병원 자부담 별도)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89억 3,500만 원 중 131억 3백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다.

각 권역별 지정된 병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은 '25년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26.5)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26.6)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남권은 '24년 12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중이며, 경북권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3.9) 완료 후 부지 증복 및 현안이 발생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은 KDI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25.11월)하여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즉, 모든 권역의 병원은 각 추진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당초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은 2027~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07.

이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추진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 기준 실집행률이 2024년 11.4%에서 2025년 69.2%로 개선되었다. 다만 이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 증가의 영향으로 보이며, 전체 기간의 연평균 실집행률은 약 12% 수준에 그쳐 여전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5년 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총 775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 편성 대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국회 결산 시정요구 및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반복적인 이·불용 발생, 부지 확보 및 행정절차 검토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향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시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총사업비 협의·설계 적정성 검토 등 단계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이·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①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사유(246개 사업)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일반회계	34.6	69.9	지원금 신청 후 행정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22년 4분기 가입자 중 상당수가 '25년 연초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25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24년 말에 지원금을 지급받아 '25년 잔여자수(1,134명)가 예상 (11,292명)보다 크게 감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보험기금	58.2	48.6	('17~'21년 한시사업) '21.5월 신규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지속지원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중이며 기업채용담당자의 잦은 이직과 업무변경에 따른 관심저하 등으로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등도 많아 집행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판활동지원	일반회계	63.3	48.6	사업 추진 인력 부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일반회계	67.8	67.8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25.9) 대안('25년 6,643백만원)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조정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0.0	0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공모(1차'25.1.23~5.30,2차 6.2~6.13.)가 민간 미응찰로 유찰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되며 SPC설립시기가 '26년으로 순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9	33.7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 적정성검토(70일 추가) 및 총사업비 심의·설계도서 완성검사(약120일)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며, 공사비 증가(200억원초과)에 따른 PQ심사 적용으로 조달입찰 공고기간이 일반경쟁대비 추가소요 (증60일)되는 등 공사 발주 및 착공 일정이 늦어짐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건립	일반회계	8.7	50.8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수행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이 순연되어 공사비 등 4,032백만원 이월
	국립묘지조성		68.1	64.6	(횡성호국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에 따른 사업순연으로 269백만원 불용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건설공사 장기계약 등 순연에 따른 공사비 4,474백만원 이월 및 집행잔액 282백만원 등 불용
국방부	광주기지영외탄약고 이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0.0	50.3	관련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중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0.0	0.0	관련사업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 중
	부사관학교훈련장 이전		0.0	0.2	이전 대상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취소
	부대개편 5차 사업		67.5	66.9	대관협의 지연
	부대개편 7차 사업		64.7	68.2	준공정산금, 집행 후 잔액 등 계속사업비 이월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등 불용
	군사안보지원학교		26.2	48.4	사업추진 재검토
	36사단 공병대대		48.2	48.2	임시숙영시설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부대개편 8차 사업		36.5	52.1	기성금 집행 후 잔액 등 계속사업비 이월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등 불용
	기타이전지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5	66.5	전문임기제 공무원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및 LH의 기부대양여 사업 기부합의서안 제출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 순연으로 인한 이월
국토교통부	철도기본계획수립	일반회계	46.7	43.5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불용 처리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일반회계	0.0	0.0	시범노선 건축 구축사업의 유치기관인 남원시의 소규모영향평가 미통과로 사업 중단
	국유재산실태조사		68.7	68.9	국유재산 결산 일정(매년2월말)을 감안, 회계연도 내 준공 곤란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교통시설특별회계	14.5	0.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15.2	1.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남양주-춘천3 국도건설		15.2	0.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10.3	1.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성주선남-대구다사 국도건설		0.0	0.3	관계기관 협의 지연(종점부 확장 요구 등)
	경주외동녹동-문산 국도건설		0.0	0.7	관계기관 협의 지연(문화재, 노선선정 등)
	평창진부-강릉연곡 국도건설		41.2	68.0	신규 착공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 필요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국도건설		41.8	67.0	신규 착공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 필요
	안동풍산-서후국도건설		0.0	0.3	타당성 재조사 수행 필요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울주범서-경주외동 국도건설		0.0	4.2	관계기관 협의 지연(문화재, 노선선정 등)
	인제상남-기린국도 건설		50.7	45.8	신규 착공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 필요
	청송진보-영양입암 국도건설		2.7	50.0	관계기관 협의 지연(하천 등)
	거제남부-일운국도 건설		23.9	3.6	타당성 재조사 수행 필요
	신안 비금-암태 국도건설		29.8	1.1	관계기관 협의 지연(총사업비 협의 등)
	함평-해보국도건설		32.8	66.0	시공사 경영 악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		10.8	2.0	타당성 재조사 수행 필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0.0	53.7	기본계획 수립 중(`23.2~)으로 설계 미착수에 따른 불용
	충북선 고속화		0.0	48.0	노선변경 민원에 따른 기본설계 지연으로 불용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0.0	0.0	기본계획 고시('25.12) 이후, 기본설계 준비단계로 집행여력 한계에 따른 불용
	새만금신항인입철도		0.0	40.7	기본계획 고시('25.11.) 이후 설계발주 준비 단계로, 설계비 등 집행 불가하여 불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52.1	63.0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미착공 상태(건설보조금 지급 곤란)
	청주국제공항 주기장확충		22.4	24.9	관계기관(조달청 등) 협의 및 계약절차 지연(유찰 등)으로 설계용역 완수('25.2) 후 공사계약('25.10)까지 사업지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0.0	7.8	공항등급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 중('25.1~)
	새만금신공항건설		44.6	16.1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25.9) 및 이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항소심 등) 대응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대구경북신공항건설		0.0	0.9	'25년 예산은 신공항 등의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선행이 필요한 민항 기본계획이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지연('25.12 완료) 등을 이유로 '25.12월 수립·고시됨에 따라 '25년 잔여 회계기간 내 설계 착수 및 관련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백령도소형공항건설		0.0	0.0	공항등급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 중('24.11~)
	서산공항건설		0.0	0.0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여부 검토중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0.0	0.0	직결이행방안 연구용역(24.6~25.5)을 토대로 공항철도 예타신청 등 추진방안 검토 중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혁신도시 특별회계	62.5	49.3	절대공기부족으로 연구용역 이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8	20.7	해당 예산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후 사용되는 것으로, 기업·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성 분석비 전액 이월
	부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0.8	25.5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집행 부진
	아산신창일반산단 진입도로		62.4	62.4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적정 선금 지출
	평택브레인시티산단 진입도로		49.5	45.2	공사구간내 상수관로 이설 지연 등에 따라 계획 공정 지연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62.2	39.4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에 따라 계획 공정 지연
	오송화장품산단 진입도로		51.4	52.3	실시설계 노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청주하이테크산단 진입도로		0.0	0.0	노선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추가 시행 등으로 사업 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첨단3지구산단 진입도로		52.5	61.4	하천점용허가 등 착공전 행정절차 지연
	청주전통공예촌산단 진입도로		0.0	35.4	산단 추진 지연에 따라 진입도로 사업 순연
	천안풍세2산단 진입도로		59.2	69.4	행정절차 및 보상 지연에 따라 계획 공정 지연
	천안제6산단 진입도로		0.0	40.4	행정절차 및 보상 지연에 따라 계획 공정 지연
	아산음봉산단 진입도로		66.0	55.3	실시설계 및 보상 지연에 따라 계획 공정 지연
	예산예당2산단 진입도로		26.0	31.4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발주 지연
	공주송선산단 진입도로		0.0	0.0	산단 추진 지연에 따라 진입도로 사업 순연
	대산그린컴플렉스 산단진입도로		69.4	54.5	산업단지 시행사와 노선안 협의지연
	진천스마트복합산단 진입도로		0.0	0.0	산단 추진 지연에 따라 진입도로 사업 순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진입도로		11.8	17.6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집행부진
	세종복합산단 진입도로		40.0	14.3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집행부진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주택도시기금	1.5	51.5	전년도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 징수실적 저조로 인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자금 부족
	집주인임대주택사업		51.2	63.3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특정 지역에 융자 지원 편중 해소 등을 위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청자 감소로 부득이 집행부진
	국민임대출자		42.1	69.3	공급 유형 변경* 및 일부 사업 지연·취소 등으로 집행 부진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출자		44.0	55.3	공급 유형 변경* 및 일부 사업 지연·취소 등으로 집행 부진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주택정비사업(융자)		11.4	11.4	신설 제도('25.3월)로 수요자의 제도이해 부족, 유사사업(서울시) 대비 융자조건(사업대상, 융자한도 등)이 불리하여 사업신청 저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일반회계	40.9	53.5	국회 운영 여건 및 제반 상황 등으로 인해 집행 저조
	특별위운영지원		12.8	41.5	공론화 관련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용역 입찰공고 실시 지연
금융위원회	기금관리비	공적자금 상환기금	20.0	39.5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운용 관련 지출경비 절감
	자산매각비		0.0	25.1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중인 한화오션 주식 지분을 '24년 11월 전량(233만주, 816억원) 매각함에 따라 자산매각비 지출 불요
	선급법인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3.2	36.2	구상채권상각금액이 증가함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미발생
	기금관리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0.0	0.0	당초 계획한 기금 운용관련 수당 등 미발생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신용보증기금	39.3	28.8	1~2차 추경 등 경기 보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및 금융정책 추진에 따른 부실감소 및 이연, 기관의 부실채권 정상화 노력 등으로 계획 대비 집행 감소
	구상권관리		58.8	57.7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지속에 따른 부실발생 이연, 대외채무조정(회생,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등) 신청 증가에 따라 비용 지출 감소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소상공인위탁보증대위변제		54.2	69.0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만기가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됨에 따른 부실 감소로 계획 대비 집행 감소
	대환보증대위변제		55.5	42.7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예상 대비 저조한 대환보증 공급실적,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지속에 따른 부실발생 이연 등으로 계획 대비 집행 감소
	전입금환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0	0.0	금융구조조정 관련 사후손실 보전비용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소송및법적절차비		0.0	5.5	금융구조조정 관련 소송 발생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정리자문경비등		31.9	18.6	서울보증보험은 일부 매각하였으나, 한화생명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매각 관련 수수료 미발생
	담보설정비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10.9	43.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4.12월)으로 담보설정 시 소요되는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27년 말까지 연장되어 대부분의 예산 불용
기획재정부	구상권관리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7.1	6.8	보증사고 발생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인프라보증대위변제 사업' 예산의 0.5% 수준으로 편성(예비비 성격), '25년 1건의 보증사고로 일부 집행사유 발생
	인프라보증대위변제		13.4	3.4	보증잔액 예상부실률 0.148% 적용 최소한으로 편성, 대위변제 유무에 따라 집행사유 발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생('25년도 1건의 대위변제 집행)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일반회계	47.6	21.6	유산취득세 개편방안 발표('25.3월) 후 홍보 과정에서 홍보영상 송출방식 변경(상업방송·유튜브 등 매체 활용계획→우리부 자체 유튜브 송출) 등으로 홍보비 일부 미집행
	국유재산관리		35.0	42.5	국가배상금, 반환금은 국가소송의 재판 결과 패소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행하고, 1심판결 이후에도 항소·상소 등의 진행여부에 따라 지급(2~3년 이상 소요)하므로 배상금 집행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68.5	60.0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종료로 남은 예산 반환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61.8	69.8	청년인턴 채용기간 단축, 중도퇴사 발생 등 인건비 미집행, 계약집행 잔액 등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31.4	69.9	지중 불법 폐기물 발생 등 현장여건상 공사 지연
	국세청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0.0	63.8	2개 사업 통합발주 협의 중으로 설계 중지
	국세청 잠실세무서 청사 재건축		0.0	53.1	2개 사업 통합발주 협의 중으로 설계 중지
	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4.2	64.6	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 중 용역 중지
	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0.0	53.6	사업 종료 후 기금개발로 전환 예정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14.0	13.5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협의 지연

(단위: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창원통합청사 신축		23.9	48.9	2025.12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착공 순연으로 공사비, 감리비 등 불용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0.0	0.0	수요기관의 이전여부 불확실(중랑세무서)
	수원세무서복합청사 신축		40.6	66.7	인허가(교통영향평가) 심의 지연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0.0	0.0	수요기관 추가로 청사수급관리계획 신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통합관사 신축		0.4	22.9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 실시설계비(기성금) 지급 지연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2.5	2.2	2025년 기획재정부(現 재경부) 기획조정실 직제 변경 예정으로 태안 정책연수원 숙소동 수요조사 후 총사업비 변경 및 재설계 예정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		10.2	39.4	- BF예비인증 심의 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로 설계 지연 -공사현장이좁은주택가로대형폐기물처리차량접급이어려워 공사지연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13.0	25.3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장기화 및 감리비 등 총사업비 증액 협의 기간 소요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		0.0	0.0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		61.3	52.1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조성		64.7	64.7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47.9	50.8	오염토 발견으로 인한 설계중지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52.8	59.9	공사대금 정산시기 미도래
	대법원 창원가정법		62.6	30.0	사업적정성 재검토 후 기본계

(단위: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원 신축				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12.8	12.8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정산 시기 미도래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취득		68.2	66.4	유찰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지연, 잦은 강우로 인한 공정률 부진 등
	법무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29.6	28.7	'25. 6. 거창군에 사업부지 확정 요청(대법원 협의 의건) 및 내부 문제로 부지 교환 지연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		32.3	42.9	토양 조사 진행 중, 정화 범위 확정 후 사업 추진
	법무부 전주 로파크 신축		0.0	0.0	기재부 사업계획 협의
	법무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신축		65.5	65.5	'25. 12. 기본설계용역 착수, 선금 등 예산집행 후 최소한의 금액 이월함
	법무부 검찰청 기타 시설 취득		12.7	40.8	실시설계적정성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법무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39.1	63.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진행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56.6	57.7	공사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이월
	경찰청 청·관사시설 리모델링		70.0	69.9	설계 용역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기간 소요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0.0	11.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62.8	42.4	설계 용역,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종합교육훈련센터 신축		22.1	18.9	무단점유자 퇴거 관련 절차 기간 소요
	경찰청 서울경찰훈련센터 증축		46.4	49.3	설계 용역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5.6	26.6	BF예비인증 및 인허가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거제경찰서 신축		52.9	35.9	민원에 따른 부지변경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0.0	44.5	직제조정에 따른 설계 내역 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제주 동부경찰서 재건축		36.4	57.7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충남청 수사동 증축		47.0	41.1	교통영향평가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신축		12.0	42.9	교통영향평가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경남 남해경찰서 신축		0.4	33.2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맞춤형서비스 체결 기간 소요
	경찰청 강원청 수사동 신축		54.5	29.2	설계 용역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15.0	7.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체결 협의 기간 소요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32.0	16.1	설계 용역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충남 부여경찰서 신축		44.8	57.8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충남청 경찰특공대 신축		37.5	53.3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설계 용역 기간 소요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0.0	25.0	감리비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20.9	29.1	감리비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 소요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0.0	24.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소요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경찰청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63.5	34.7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감리비 사전검토 기간 소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후생복지관 신축		39.6	66.6	설계 용역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63.9	49.0	발주 지연으로 '25년 하반기 공사계약체결, 이월액 발생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47.6	33.2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발주 지연으로 집행불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임차시설 대체 신축		68.2	37.3	발주 지연으로 '25년 하반기 공사계약체결, 이월액 발생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		6.3	3.2	총사업비 조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해양경찰청 동해청 강릉항공대 격납고 신축		21.1	59.6	세목 조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집행불가
	외교부 재외공관국 유화 사업		40.5	43.3	현지 인허가 지연 등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53.8	21.2	현지 인허가 지연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		0.0	50.0	임차인 퇴거협의 지연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61.7	61.7	현지 인허가 지연 등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		0.0	4.5	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공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		65.4	32.8	조달청 예산 분석 결과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협의 기간 및 설계 공모 기간 절차로 인한 지연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		52.3	58.2	당초 '25년 완공사업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사업기간이 연장('25년→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26년)됨에 따라 기성·준공금 및 관급자재 대금 집행이 '26년으로 이월되었음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41.9	59.3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25.1.~7.) 및 총사업비 조정('25.10.) 협의로 사업지연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ODA)	대외경제협력기금	28.4	48.3	지원대상 조정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일정 조정에 따라 예산 불용 발생
	사업진행컨설팅 (ODA)		59.1	50.0	수원국 정책협의 등 신규 후보사업 발굴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후보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등이 지연되어 해당 예산이 불용되었음
	사업심사평가연구 (ODA)		55.9	67.8	당초 추진하기로 한 협조융자 사업의 승인, 집행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순연으로 집행시 수반되는 관리수수료 집행 등이 순연되어 불용 발생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39.2	21	한은 일시차입 소요 미발생
	국공채상환	외국환평형기금	8.8	69.6	24년 18조원 규모의 원화외평채가 발행예정이었으나, 발행과 연관된 전자증권법 개정이 지연(24.12.31 공포)됨에 따라 전액 미발행 ⇒ 25년 원화외평채 원금상환 미발생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외청정수소 암모니아생산 및 도입기반구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0	38.6	국내 청정수소 수요 불확실 등으로 인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개발-도입 프로젝트 FID 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에너지자원정책연구		61.4	58.5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연구용역 계약 종료시점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R&D)	환경개선특별회계	0.0	0.0	수탁연구과제 미수행(외부기관에서 연구사업 참여요청 없음)으로 인해 불용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6	25.6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며, '25년도 지원대상 품목(녹두)의 직불금 지급액이 예산 대비 크지 않음(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선정 결과에 따라 집행여부가 달라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	51.4	설계 용역 준공 미도래('24.5.~'26.5.)로 인한 공사 추진 지연
	종자산업교육인프라구축		31.3	31.3	조달청 제비율 변경으로 인한 설계 내역 보완 및 법정 공사기간(1년, 국토부) 준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폭염기간, 혹한기간 내 공사 중지 등 추가 기간 소요로 일정 순연('26.7. 준공 예정)
농촌진흥청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일반회계	3.3	59.7	사업 부지 공시지가의 상승(1.85만 원/㎡ → 5.2만 원/㎡)에 따른 충주시 보상 재원(추경) 확보 지연 중,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대통령 긴급지시, '25.11.3.)으로 인해 매각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실시계획인가 후 손실보상' 체계로 전환. 이에 따라 법정 행정절차 소요 기간 부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건설보상비 등 609백만원 불용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54.0	69.3	농수로관 이설을 위한 농어촌공사 협의('23.11.~'24.6., 8개월), 농업진흥지역해제관련 농식품부 협의('24.6. ~'24.10., 5개월), 무안군 구제역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25.3.~'25.4., 2개월) 협의 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등 6,084백만원 불용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보조, 세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0.0	66.7	세종특별자치시 세수감소로 2025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 미편성(4억원)에 따른 사업포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활동 지원	일반회계	64.2	57.9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공사 계약기간 미도래 등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51.2	44.3	당초 설계용역 완료예정일(`26.4월) 미도래함. 완료예정일에 지급예정 및 `26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		41.9	44.3	당초 설계용역 완료예정일(`26.4월) 미도래함. 완료예정일에 지급예정 및 `26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1.6	1.6	당초 설계계획이('25년~'26) 까지이고 기본설계 계약기간(~'26.06) 미도래함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7.4	14.4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협의결과('24.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11.~'25. 5.), 총사업비 증가(45,293→86,296)로 타당성 재조사(기재부,KDI) 진행에 의한 설계용역 일시정지
	한글박물관 운영		57.6	0.7	'25년 2월 박물관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4년말부터 추진한 사업(증축공사)이 중단(계약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25년 예산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3	46.9	조성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9기 위원회 미구성 등에 따른 사업비 및 국외여비 불용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세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7.8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일반회계	54.1	66.9	'25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의 재허가심사 등이 '2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 발생
보건복지부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일반회계	0.0	47.5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48.1	64.4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 불용액 발생
	의사상자지원		44.3	65.9	의사상자 신청 건수는 대형재난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변동사항이 많고, 신청에 따른 실제 의사상자 인정 건수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건수의 사전예측 어려움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 및 매입	국민연금기금	61.6	54.0	악천후 등 현장 여건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초기 공정률 반영이 낮은 단계(기초공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사 등)에서 공사 중단되어 최종 공정률 11.66%로 목표(17.08%) 대비 저조하여 기성대가 지급 저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금 지급 추진하였으나, 업체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편성액(공사금액의 약 30%)에 미치지 못하며(선금지급: 건축공사 18.6%, 전기공사(2차) 11.5%) 관련 공사비용 집행부진
산림청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일반회계	50.0	69.7	조기상환 증가 등으로 대출평균잔액 감소 (이차보전 소요액 감소, '26년 종료사업)
산업통상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특회계	0.0	63.3	지자체(광주)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국비 미교부 이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일반회계	37.0	29.2	새만금 인근지역 어민단체의 사업 반대('24.下)로 인한 노선설계 지연 및 공사발주 지연
성평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일반회계	28.2	26.5	은평구 건축심의, 각종 건축물 성능인증,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후속 일정 추진 중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결정으로 사업 중단, 공사비 집행 불가
외교부	전략적 협력 강화(ODA)	일반회계	31.3	55.2	(전략사업비) 정상간 공약, 외교 현안 등 긴급 지원수요 미발생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지특회계	0.0	0.0	세종시에서 사업의 필수요건인 상권활성화구역지정이 지연되어, 사업취소 요청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일반회계	69.2	17.3	예산편성 당시 계획 대비 실제 계약추진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조정(예상 계약금액(예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산)〉조달청 검토금액, 차액발생) 및 낙찰차액 발생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국립목포병원책임특별회계	31.4	20.3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291백만원 의료장비유지보수및장비구입 집행잔액 16백만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일반회계	66.0	52.0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감소
	남북회담 추진		68.8	53.7	남북회담 미개최
	북한인권재단 운영		0.0	0.0	국회의 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25년 예산 전액 불용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개선		54.2	52.8	인도지원 여건 감안, 행사 규모 조정, 국외 출장 등 미실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69.9	63.1	공사 초기 지하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인허가 등으로 인한 일부 공정 지연으로 공사비 등 4,837백만원 이월
	사회문화교류지원	남북협력기금	32.7	19.6	남북관계 경색 등 사업추진 여건 미비
	이산가족교류지원		6.9	6.8	남북관계 경색 등 사업추진 여건 미비
	구호지원		0.0	0.0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외부지원 미수용 상황 등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
	민생협력지원		0.3	0.3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등에 따른 사업 미실시
	DMZ 평화적 이용		30.0	28.0	남북관계 경색 등
	경협기반(무상)		8.0	6.7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여건 미비
	경협기반(융자)		0.0	0.0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여건 미비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0.0	45.0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24.0	남북관계 상황으로 신규 대출 미발생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6.0	46.0	동해특성화양식센터(舊 질병예방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인한 공사 순연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교통시설특별회계	0.0	0.0	민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유찰('24.5)에 따라 기획처(KDI 포함) 및 사업자와 사업방식 협의 결과, 사업방식이 전환(민자→비관리청항만개발('25.9),민자취소('25.11))되어 정부지원 시설사업(도로,방파제) 추진계획도 순연되어 발주 지연('25.12) 및 집행부진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33.8	36.7	(남방파제) 턴키공사 계약기간('24.4, 발주, '25.12 실시설계 완료)소요로 본공사 착공('26.1)순연에 따른 집행부진
	동해신항		62.8	63.5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턴키공사 계약기간(2회 유찰 후 수의계약, '23.6 발주, '25.5 착공)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석탄부두) 설계 완료('24.12) 후 총사업비 협의기간(~'25.10) 소요로 공사 발주('25.11) 순연에 따른 집행 부진
	부산항		68.8	64.9	(북항 파제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항만시설 거부) 민원으로 사업 미추진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기타항만 재개발		55.9	68.6	(광양항 묘도 재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4.6 완료) 및 총사업비 협의기간('25.7 완료) 소요로 공사착공 ('26.1) 순연에 따른 집행부진
	마리나 항만		2.3	6.5	(여수)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착공 지연 (안산)시화방조제 지반 안정성 관련 분석 결과 도출 및 검증 기간 소요 등 국토부-안산시 간 협의 지연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수산발전 기금	27.9	51.1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 조달청 원가·기술 검토 기간 소요, 해수욕장 운영기간 제외 등으로 착공 지연, 지역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 지연
	수산장비구입지원 (융자)		47.6	64.9	장비구입계획 변경 및 담보 부족에 따른 융자 미실행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9	39.6	재해, 흉어 장기화 등 지원사유 발생 시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대규모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다소 부진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일반회계	5.8	5.8	제2기 진화위 종료 ('25.11.26.) 후 기록물정리 관련 사업' 잔금 지출 후 잔액 불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6.1	4.7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건립일정 조정에 따라 설계비 등 집행 순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0.3	4.4	국회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예산 집행 순연

주: 1. 집행률은 (집행액 / 예산현액) × 100
2. 2023년도 신규 사업은 3년 평균 집행률, 2024년도 신규 사업은 2년 평균 집행률 기준임
3. 2025년도 신규사업 및 단년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사유(16개 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상 사업 중-

(단위: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국가보훈부	대구보훈병원 외래 시설개선	일반회계	6.7	43.8	설계 적정성검토 및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를 위한 설계용역 일시정지 등 사업(착공)지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반회계	56.3	68.3	사업신청 저조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교통시설특별회계	1.1	1.2	25년 하반기 착공
	신안암태수곡-신석국도건설		56.0	36.7	신규 착공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 필요
	남해삼동-창선국도건설		6.2	6.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필요
	무안현경-해제국도건설		45.1	39.2	신규 착공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 필요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도건설		1.6	1.0	입찰 공고 유찰(2회)
	청북IC-요당IC국도건설		38.9	46.6	시공사 경영 악화
	입장-진천 국도건설		25.0	16.4	용지보상 협의 지연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57.8	40.0	용지보상 협의 지연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		42.5	40.9	용지보상 협의 지연
	순창 인계-쌍치 국도건설		57.1	66.5	용지보상 협의,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8	36.4	실시설계 용역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 순연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68.2	43.4	실시설계 및 하천협의 지연

주: 1.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상인 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 대상임
(예산현액 대비 70% 미만인 사업은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사유” 참고)
2. 집행률은 (집행액 / 예산액) × 100
3. 2023년도 신규 사업은 3년 평균 집행률, 2024년도 신규 사업은 2년 평균 집행률 기준임
4. 2025년도 신규사업 및 단년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보조사업자 실집행률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사유 (105개 사업)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교육부	어린이집 확충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6.9	59.3	기능보강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준공 기간의 소요에 따라 예산을 이월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내 실집행 완료가 곤란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 건립	일반회계	65.8	55.9	- 순창군: 482백만원 이월, 공사 진행중으로 잔금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 지연 - 진안군: 200백만원 이월, 건축공사 착수시기 연기로 지연 - 이천시: 142백만원 이월, 기존건물 철거중 발견된 석면 처리공정 추가되어 지연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0.0	66.7	설계 적정성검토 및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를 위한 설계용역 일시정지 등 사업(착공)지연에 따른 공사비 300백만원 이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일반회계	47.6	28.3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인한 실집행 지연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		68.0	69.0	지자체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조사기관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0.0	11.6	설계적정성 검토(조달청)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기재부)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일반회계	17.1	46.6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시범사업 관련 협약체결('25.8월) 후 행정절차 소요* 등 *사업사전검토(정보화·보안성 등)→계약심사(일상감사 등)→발주 및 사업자 선정(평균 5개월 이상)
	건축안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32.1	22.3	건축주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 특성상 건축주 의지가 중요하여 집행 더딘 측면
	건축문화진흥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지원)		46.3	69.2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용역 계약 지연 등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이천-문경 철도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6.0	51.8	충주역사 증축공사 등 노반 및 건물 분야 잔여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장항선개량 2단계		59.4	49.9	광역상수도관 지장물 이설 등 노반 공사 순연 및 후속분야 착수 순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 한계
	도담-영천 복선전철		59.4	66.7	안동~영천 고속화 개통 이후 후속 잔여공사 집행잔액 및 기존선 철거 공사 설계변경심의 등 행정기간 소요(~'25.12)에 따른 선금 미지급 등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6.3	5.7	청주공항 역사 계획 변경(지상→선하) 관련 노반 보완설계 시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집행 순연
	수서-광주 복선전철		15.5	14.9	노선변경 요구 민원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고시 순연으로 노반공사 착공 불가하여 집행 한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8.8	6.3	T/K(1,3,4공구) 실시설계 과업기간 연장(~'26.4.)에 따른 후속분야 설계비 집행 한계 및 착공 순연
	문경-김천 철도 건설		0.6	0.0	기본계획 고시('25.6) 이후, 기본설계 발주 행정 소요에 따른 집행 한계
	일반공항시설 관리		6.7%	6.7	- 조류탐지레이더: 계속사업('25~'26) 중 '25년 계약분 완료대금(20%)은 지급, '26년 계약분 사업비(80%)는 이월 - CCTV통합센터: 관계기관 협의('25.下) 및 설계용역 입찰공고('25.12월)에 따라 '26년 이월조치 - EMAS: 국내에 첫 도입 사례로 면밀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물품구매 방식을 적용예정
	검단-대곡 광역도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2.7	33.3	사업구간 내 도시개발사업 중첩구간 발생으로 사업시행주체 구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조야-동명 광역도로		55.1	63.3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의뢰(25년 8월)에 따른 사업지연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37.3	40.5	총사업비 협의 지연
	성장촉진지역 개발		48.8	52.1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부지확보 등) 이행에 따른 공사 착공 순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3.4	7.1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본격 집행 전 사전행정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등)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도심융합특구 지원		35.2	47.0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실집행 지연(국비 50%, 지방비 50%)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자율)		54.0	61.7	토지매입·보상협의 및 신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
	수소도시지원(자율)		62.1	58.2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지연, 용역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 발생
	도시재생사업		44	46	자치단체별 현장여건에 따른 용역 및 공사변경 검토, 동절기 공사 정지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었고, 관계부서 협의 지연 및 부지매입 민원 갈등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사유 발생하였음
	대구도시철도 영천연장		20.6	20.6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24.10~'26.下)으로, 기본계획 완료시 집행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일반회계	48.4	48.7	하천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복구 사업비+ 추가 피해발생 대비 유보금) 추진 필요, 특히, 국가하천에 비해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방하천 복구의 경우 절대공기(인허가, 설계, 보상, 계약,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공사 추진 등)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으나 전액 집행 가능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0.2	57.5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 소요, 주민 협의에 따른 지연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7.4	64.2	관련업계 여건변화, 지원단가 축소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환경개선 특별회계	60.2	55.7	공정지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동절기 공사 지연 등
	습지보전관리		64.8	51.0	습지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건축심의 등 행정협의, 실시설계 착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 부진
	국토생태 네트워크구축		62.7	55.6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 지연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66.4	67.5	소규모 사업장(사업대상) 사업 포기(폐업, 경제적 이유 등)로 인해 추가 대상자 선정 기간 소요, 소규모 사업장(사업대상) 및 설치업체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등 절차지연
	수돗물 공급 안전 강화		68.3	61.7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기술 등 공법 선정, 설치 위치(지점) 및 자재 검토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37.3	38.1	설계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		18.1	42.5	서울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25년 원인행위 완료)
	상수도시설확충 및관리(제주)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58.7	44.3	행정절차 지연, 장기계속사업 차수별 계약 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지연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전력산업 기반기금	64.2	60.3	설계·공사·행정절차·토지보상 지연, 사업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농림 축산 식품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2.3	25.0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에 따른 집행 지연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39.4	54.9	지자체 선정 지연(사업 수요 부족)으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순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7.6	65.6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이월 등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8.4	9.7	24.11말 사업시군인 음성군 폭설로 인한 화훼시설농가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음성군의 사업추진이 '25.3월 가지 전면 중단 지연되어 이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재설계, 공공건축물 사전 심의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실집행 부진 발생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축산발전 기금	46.1	42.2	융자 자부담 대체 및 사업 수요 부족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54.8	65.9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인허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융자 실행 부진
농촌 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지역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1	54.2	실시계획인가, 설계, 부지선정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 발생
문화 체육 관광부	재해복구비(관광)	일반회계	29.7	28.8	관급자재 공급 지연,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 지연
	재해복구비(체육)		54.2	31.5	재해복구작업 추진 일정 지연
	재해복구비(종교)		28.1	8.1	자체이용으로 재해복구비를 마련하여 해당연도 하반기 교부로 실집행 저조
	해외공공도서관조성(ODA)		63.8	50.0	수원국 기후(겨울 혹한기)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
	종교문화시설건립		50.6	53.5	건축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1.2	35.7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 주민의견 수렴 과정 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1.4	51.5	강릉, 전주, 목포 지역거점도시의 지방재정악화에 따른 지방비 미확비 및 사업추진 지연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0.2	33.9	행정소요기간에 따른 공사 및 경상사업 지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자율)		50.8	49.5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관광자원 기반 조성		42.3	53.1	내역사업 지역관광자원개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6.0	50.1	실시설계 지연, 연도별 공정율에 따른 사업 지연 발생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제주)		58.8	50.7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60.3	25.7	용역비 등 대금지급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 정상 추진중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8.4	51.8	일부 건립 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지연, 매칭 지방비 미확보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5.0	38.2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49.4	61.6	ㅇ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 (용역 과업기간 연장) `26.10월 개관예정인 국립스포츠 박물관과 연계 운영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전시 제작, 설치 사업 추진 중 - 전시 세부주제 및 연출안 변경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등에 따라 용역계약(`25.6~`26.2)을 `26.10월까지 연장하여 개관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중 ㅇ올림픽공원안전시설강화및노후시설정비 - (매장유산 발견) 올림픽공원 내 단계적 공사시행중 매장유산이 발견되어 매장유산법에 근거한 정밀발굴조사를 시행중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1차 정밀발굴조사 '25년 8월~11월, 2차 정밀발굴조사 '26년 2월~4월), '26년 5월부터 공사 정상추진 예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8.3	67.0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법무부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일반회계	69.9	69.9	사업 시작 지연 및 보조사업자의 수요 예측 오류
보건복지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7	54.7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공건축심의, BF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공사비 집행 지연
	노인요양시설 확충		51.8	38.3	계획단계와 공사시작 시점의 차이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심의(행정업무),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재활병원건립	국민건강증진기금	31.1	11.6	사업계획서 변경 과정에서 추가확보 예산 반영 지연
산림청	목재생산관리	일반회계	54.5	49.7	친환경벌채 제도 시행에 따른 대면적 벌채 감소로 인한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급 대상 감소
	산지관리		59.5	61.8	입찰 및 제작, 설치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어 일부 사업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함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산림재해대책비		63.6	62.7	산불(2~5월) 및 산사태(6~9월) 피해 이후 물리적인 복구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생활사에 대응한 적기방제(방제작업기간: 당해연도 9월~차년도 5월) 등으로 인한 이월
	산림복원		40.8	62.7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사업으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사업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
산업 통상부	기타 기반시설 지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60.4	68.7	(주요사유)토지 협의보상이 불발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및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보상비 지급이 지연, 개발계획 변경(유치업종 추가) 및 국도 2호선 교차로 변경(평면 → 입체)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 등
	주요기반시설 지원		64.7	54.4	기존 사업시행자 부도로 인한 공사중지 후 공동도급사에서 지분 인수받아 시행함에 따라 공사준비 기간 등이 필요
소방청	화재안전및시설 기준개발	일반회계	39.0	44.6	국비(50%), 지방비(50%) 매칭사업으로 국비 추경예산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 지방 추경예산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 착수 지연 및 이월 발생
우주 항공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일반회계	15.1	12.1	적정성 검토('23.9~'24.7), 공모(~'24.9)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사실상 1년 순연되었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장비비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부진 발생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21.7	16.9	연구수행일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차세대발사체 개발(R&D)		42.2	40.7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5.5~12.))추진함에 따라 집행부진 발생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다목적실용위성 개발(R&D)		32.5	68.2	해외 동반위성 개발 지연에 따른 발사기간 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자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6	35.6	주차장 건립 지원 사업으로 토지 보상 지연, 공사 민원, 공사 착공 지연,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 부진
	지식산업센터(자율)		56.7	50.3	행정절차 이행으로 실시설계, 착공 등 순차 지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일반회계	14.7	30.8	(안산 추모시설 건립) 설계도서와 다른 지반여건으로 인한 재설계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화랑호수내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인한 관계부처 협의진행에 따른 공사 지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유치 지원		58.7	50.0	사전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절대공기 부족
	해양관광육성		50.8	60.2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사업계획 절차 소요 등에 따른 사업 지연, 공사 중 문화재 발견에 따른 협의, 자재 비용 인상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기간 지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지연 등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42.5	54.5	추경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 추진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사업(총 154억)은 전국 동시에 대량으로 제품이 제작됨에 따라 1. 수입자재 공급 지연, 2. 생산업체 납품대금 일괄청구, 3. 추경사업으로 실질적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과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 저조
	수산종자산업 육성	농어촌구조개선	23.4	61.6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절차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관상어산업육성	특별회계	2.6	2.6	보조사업자 선정 및 설계공모 진행 등 절차지연
	수산부산물 자원 순환 기반구축		32.7	47.3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절차지연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		10.6	36.8	친환경배합사료공장건립(전남)의 행정절차 수행(사업자 공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지원)		46.5	67.1	지방비 확보 지연,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유통단계위생 안전체계 구축		12.6	33	실시설계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통영권거점위판 장현대화지원		4.7	5	실시설계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수산식품산업 육성		45.3	37.0	(가공설비지원) 지자체 선정 사업자 중도 포기에 따른 추가선정, 맞춤형 설비 주문제작에 따른 납품 지연, 자부담 부담에 따른 미신청(김건조기) 등 사유로 집행부진
	수산장비(임대) 활용(지자체)		20.5	39.1	수산장비임대, 시험인증센터 등 행정절차 지연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부결 등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 부진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축, 재정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26.1월)
	어업인삶의질 향상		51.9	52.1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지연
	산지유통시설 지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6.8	25.1	실시설계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1.7	12	사업자 선정 유찰, 재공고 등 공사 착공 지연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59.9	31.0	①설계단계인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일정 지연, ② 부산권 문화재 매장유산 정밀조사 실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공사비 등 이월하여 26년 착공 추진, ③그 외 전남권, 전북권은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차수계약에 따른 잔금 등으로 공사 정상추진중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3.8	2.7	실시설계용역 낙찰 지연('25.12)으로 공사 착수 지연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9.0	53.8	지역주민 및 생활과 인접한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설계→발주→착공) 이행 후 실제 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집행 부진(이월 470억)
	제주외항 (2단계)		49.0	35.2	(잡화부두) 공사 발주('25.1) 후 조달청 계약기간(물가변동 등 공사비 재검토) 장기간 소요로 공사 착공 ('25.12) 순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부진
	광양항(3단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42.0	20.4	(항만자동화) 안벽크레인 장비 유찰(6회, '25.1 착공), 공사(기반시설) 유찰(2회, '25.6 기본설계 완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 부진 (북측배후단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연('24.3, 광양시)에 따른 공사 순연 및 연약지반 처리기간(1년→1년 6개월) 추가 소요 등으로 집행 부진
	인천남항		29.1	47.1	(아암지하차도) 사업구역 내 지장물(도시가스, 가스관로 등) 이설 지연 및 우회도로 개설 순연으로 공사 지연(공사기간 연장, '26.5→'27.6)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어구부표 보증금제)	수산발전기금	28.8	22.4	지자체의 반납장소 부지 확보, 업무위탁 계약 등 지연

(단위: %)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기금/회계	2025 집행률	4년 평균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행정 안전부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일반회계	47.8	65.0	제주4.3평화공원활성화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 암발견, 연약지반처리 등 공사순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45.4	65.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해 사업 대상 시스템이 소실됨에 따라, 복구를 우선 추진 후 사업을 진행하였음

주: 1.집행률은 (집행액 / 예산현액) × 100
2. 2023년도 신규 사업은 3년 평균 집행률, 2024년도 신규 사업은 2년 평균 집행률 기준임
3. 2025년도 신규사업 및 단년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수시배정사업 분석

가. 현 황

(1) 수시배정제도의 의의

① 개념 및 법적근거

수시배정제도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1]을 근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를 토대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정[2]하는데,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중앙관서가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 기획예산처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등을 포함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수시배정사업을 선정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2) 예산의 배정이란 집행기관이 재정사업 수행이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③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④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재정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산배정 절차 외에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배정, 수시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 다양한 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수시배정은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고 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가 사실상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확정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시배정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고,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대상액 결정의 합리성, 운용의 적절성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범위와 관련하여, 수시배정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세출예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지만, 기획예산처는 기금에 대해서도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이하 지출전 협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의 수시배정사업과 기금의 지출전 협의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하 '수시배정사업'은 '지출전 협의사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한다.[3)]

② 수시배정사업 선정 기준

수시배정사업의 선정기준은 기획예산처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11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4)]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전 협의사업의 선정기준은 수시배정사업(예산)과 동일하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이행 요건과 사업내용 요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화 요건과 효율집행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

3) 두 개를 구분할 때는 수시배정사업(예산), 지출전 협의사업(기금)으로 표기하였다.

4) 2010년까지는 수시배정사업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회는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획예산처는 2011년부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지정기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대체로 3~4가지 기준을 통해 수시배정사업을 선정하였고 실무적으로 '신규사업'과 '효율집행'으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2015년부터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11개로 세분화하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II」, "35. 수시배정사업 분석", 2018.8.)

[2025년 수시배정사업 선정 기준]

내역사업	선정 요건	구체적 선정기준
신규사업	사전이행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①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의무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②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③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사업내용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④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⑤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⑥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⑦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계속사업	사업변화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⑧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⑨ 사업여건 변화로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
	효율집행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⑩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⑪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주: 위 표는 '지출전 협의사업' 선정기준이며, '수시배정사업(예산)' 선정기준은 '내역사업' 및 '선정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선정기준'만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2) 수시배정사업 현황

① 연도별 수시배정사업 추이(2021~2025년)

2025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25개이며, 수시배정사업(예산)이 24개, 지출전 협의사업(기금)이 1개이다. 수시배정 대상액은 총 3조 3,805억원으로 수시배정사업(예산)이 3조 3,802억원, 지출전 협의사업(기금)이 3억원이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수시배정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수는 2021년 105개에서 2023년 69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4년 107개로 2021년 수준에 근접하게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25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상액은 2022년까지는 2~4조원 대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15조 9,00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4년 6조원대에서 2025년에는 3조원대로 다시 감소하였다.

[수시배정 사업 수]

(단위: 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시배정	95	69	62	97	24
지출전 협의	10	12	7	10	1
합 계	105	81	69	107	25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수시배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시배정 대상액]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시배정	24,549	45,666	140,584	59,337	33,802
지출전 협의	1,923	316	18,419	6,119	3
합 계	26,472	45,982	159,003	65,456	33,805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수시배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에 수시배정 대상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조항 일몰 이후 지원 기한 연장을 예상하여 1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5]”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동 사업을 제외한 수시배정 대상액은 4.9조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수시배정 대상액 규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5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5년에 수시배정 대상 사업 수와 대상액이 모두 큰 규모로 감소한 것은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감액사업에 대한 의결만 이루어지고 증액사업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 증액사업이 전무하였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25회계연도 선정기준별 수시배정사업 현황

2025년도 수시배정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25개 사업이며,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27개 사업이다. 내역사업 기준으로 2025년도 수시배정사업의 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으로는 “⑥ 총사업비 미확정”으로 선정된 사업과 “⑪ 재원분담 조건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필요”로 선정된 사업이 각각 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시배정 대상액 규모로 보면, “⑪ 재원분담 조건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필요”로 선정된 사업이 1조 8,006억원(비중 54.8%)으로 가장 크다. 이는 지방이전재원인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조 338억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240억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4,116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46억원) 등이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 두 번째로 “④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가 7,436억원으로 22.6%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6,892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의 근거법률이 지원의 기한을 정하고 있다(주로 5년). 보통 지원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법률을 개정하여 국고지원을 연장하여 왔으나, 2023년도 국고지원의 경우 2022년 12월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된 이후 2023년 6월에 관련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었다.

[2025년도 선정기준별 수시배정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상세 기준	사업수	(비중)	대상액	(비중)
① 법령 제·개정 등 규정마련 필요	-	-	-	-
② 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규정 조건 미충족	3	11.1	1,427	4.2
③ 지방재정투융자 등 기타 선결조건 미충족	-	-	-	-
④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4	14.8	**7,436**	**22.6**
⑤ 재원분담주체 간 분담비율 미정	2	7.4	5,227	15.9
⑥ 총사업비 미확정	**6**	**22.2**	403	1.2
⑦ 지방비, 민자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점검 필요	3	11.1	67	0.2
⑧ 타당성재조사 등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1	3.7	1,189	3.5
⑨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	1	3.7	4	0.0
⑩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 개편 예정	1	3.7	47	0.1
⑪ 재원분담 조건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필요	**6**	**22.2**	**18,006**	**54.8**
합 계	27	100.0	33,805	100.0

주: 사업수는 내역사업 기준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2025회계연도 수시배정대상액 규모순 수시배정사업 현황

2025년도 수시배정사업을 수시배정대상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1조 338억원으로 가장 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교육부, 6,892억원),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국토교통부, 5,224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4,116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1,646억원)의 순으로 나타난다.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240억원)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가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사업(1,189억원),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1,175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지원 펀드(6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400억원)도 규모가 큰 10개 사업 내에 포함되었다.

[2025년도 수시배정대상액 규모순 수시배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부처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수시배정사유	국회증액규모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육부	1,033,814	1,033,814	1,033,814	100.0	11	-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	689,165	681,636	681,634	98.9	4	-
3	가덕도신공항건설(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국토부	522,364	0	0	0.0	5	-
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행안부	411,595	411,595	411,595	100.0	11	-
5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행안부	164,638	164,638	164,638	100.0	11	-
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육부	123,953	123,953	123,953	100.0	11	-
7	남부내륙철도	국토부	118,863	0	0	0.0	8	-
8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전공의 등 육성지원)	복지부	117,506	117,506	117,506	100.0	2	-
9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지원 펀드	기후부	60,000	60,000	60,000	100.0	11	-
10	K-콘텐츠 펀드 출자(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문체부	40,000	40,000	40,000	100.0	4	-
1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	질병청	25,387	16,986	16,986	66.9	6	-
	(①mRNA 백신 비임상 지원)		23,333	15,709	15,709	67.3	6	-
	(②mRNA 백신 임상 지원)		1,313	876	876	66.7	6	-
	(③운영비)		741	401	401	54.1	6	-
12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과기부	15,400	15,400	15,400	100.0	2	-
13	철도기본계획수립	국토부	9,995	3,110	3,110	31.1	4	-
14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사업	과기부	9,800	6,643	6,643	67.8	2	-
15	법원시설관리 등(법원청사 증개축 설계비 및 노후청사 유지보수비)	대법원	6,624	6,566	6,566	99.1	11	-
16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행안부	5,392	5,392	5,392	100.0	6	-
17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산업부	5,000	800	800	100.0	6	-
18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해수부	4,749	0	0	0.0	10	-
19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기후부	4,500	0	0	0.0	7	-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부처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수시배정사유	국회증액 규모
20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과기부	4,472	4,472	4,472	100.0	6	-
21	전략적 협력강화 (전략사업비)	외교부	4,400	0	0	0.0	4	-
22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인프라조성)	해수부	2,000	2,000	2,000	100.0	7	2,000[1)]
23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행복청	420	420	220	100.0	9	-
24	참전기념사업지원	보훈부	300	300	300	100.0	5	-
25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 (농촌소멸대응빈집재생지원)	농림부	189	189	189	100.0	3	-

주: 1) 제2회 추경에서 증액
1. 대상액 기준으로 정렬함
2. 수시배정사유의 번호는 본문의 "수시배정 사업 선정기준" 참고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5회계연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① 총 괄

2025년도 수시배정사업의 결산 결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25개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대상액은 3조 3,805억원이며, 이 중 2조 6,954억원이 배정(배정률 79.7%)되었고, 배정된 금액 중 2조 6,952억원이 집행(배정액 대비 집행률 100.0%)되었다.

최근 5년간 배정률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배정률은 79.7~99.1%, 집행률은 94.0~100.0% 범위에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배정률과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021~2025년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중앙관서 수	세부사업 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2021	26	105	2,647,208	2,521,637	95.3	2,370,620	94.0
2022	25	81	4,598,167	4,552,723	99.0	4,503,840	98.9
2023	22	69	15,900,340	15,762,361	99.1	15,751,725	99.9
2024	26	107	6,545,560	6,189,666	94.6	6,019,500	97.3
2025	15	25	3,380,526	2,695,420	79.7	2,695,218	100.0

주: 대상액(A)은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액이며, 배정액(B)은 대상액(A) 중 부처에 배정된 금액임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수시배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의 배정률이 낮을 경우 다른 사업들의 배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배정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 배정률의 합계를 사업 수로 나눈 사업별 배정률의 평균을 구해보아도, 2025년 사업별 배정률의 평균은 40.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배정률을 보였다.

[2021~2025년도 연도별 배정률]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액 대비 배정액(배정률)	95.3	99.0	99.1	94.6	79.7
사업별 배정률의 평균	89.4	73.0	64.9	64.3	40.8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수시배정사업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중앙관서별

2025년도 중앙관서별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 중앙관서에 지정되었는데,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3개로 가장 많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각각 2개의 순이다. 대상액 기준으로는 교육부가 1조 8,469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토교통부 6,512억원, 행정안전부 5,816억원 순이며,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2개 부처의 대상액 합계가 2조

4,286억원으로 수시배정사업 전체 대상액(3조 3,805억원)의 71.8%를 차지한다.

배정률(수시배정 대상액 대비 배정액)을 살펴보면, 전체는 79.7%이나, 국토교통부(0.5%), 해양수산부(29.6%)는 배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외교부는 대상액 전액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집행률(배정액 대비 집행액)은 수시배정사업 전체는 100.0%이나, 외교부의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전략사업비)는 수요 미발생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은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주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52.4%에 그쳤다.

[2025년도 중앙관서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중앙관서명 (15개)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교육부	3	1,846,932	1,839,403	99.6	1,839,401	100.0
국토교통부	3	651,222	3,110	0.5	3,110	100.0
행정안전부	3	581,625	581,625	100.0	581,625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9,672	26,515	89.4	26,515	100.0
기후에너지환경부	2	64,500	60,000	93.0	60,000	100.0
해양수산부	2	6,749	2,000	29.6	2,000	100.0
보건복지부	1	117,506	117,506	100.0	117,506	100.0
문화체육관광부	1	40,000	40,000	100.0	40,000	100.0
질병관리청	1	25,387	16,986	66.9	16,986	100.0
대법원	1	6,624	6,566	99.1	6,566	100.0
산업통상부	1	5,000	800	16.0	800	100.0
외교부	1	4,400	0	0.0	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420	420	100.0	220	52.4
국가보훈부	1	300	300	100.0	300	100.0
농림축산식품부	1	189	189	100.0	189	100.0
합 계	25	3,380,526	2,695,420	79.7	2,695,218	100.0

주: 1.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수가 많은 부처순으로 정렬
2. 대상액(A)은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액이며, 배정액(B)은 대상액(A) 중 부처에 배정된 금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회계·기금별

2025년 수시배정사업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보훈기금 등 7개 회계 및 기금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수는 일반회계가 17개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각각 2개의 순이다. 대상액 기준으로는 일반회계가 1조 9,847억원으로 가장 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89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412억원 순으로, 일반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합친 3개 회계 사업들의 대상액이 3조 3,151억원으로 전체 대상액 3조 3,805억원의 98.1%를 차지한다.

배정률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보훈기금 등 3개의 회계·기금은 100%를 배정받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액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집행률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보훈기금은 100%인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배정액이 없어 미집행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는 집행률이 52.4%에 그쳤다.

[2025년도 회계·기금별 수시배정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회계·기금명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일반회계		17	1,984,725	1,952,875	98.4	1,952,875	100.0
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2	641,227	0	0.0	0	0.0
	환경개선특별회계	2	64,500	60,000	93.0	60,000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689,165	681,636	98.9	681,634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	420	420	100.0	220	5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189	189	100.0	189	100.0
기금	보훈기금	1	300	300	100.0	300	100.0
합 계		25	3,380,526	2,695,420	79.7	2,695,218	100.0

주: 1.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수가 많은 회계·기금 순으로 정렬
2. 대상액(A)은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예산액이며, 배정액(B)은 대상액(A) 중 부처에 배정된 금액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분기별 배정액

수시배정 대상액 3조 3,805억원 중 2조 6,954억원이 배정(배정률 79.7%)되었는데, 분기별로 배정액의 편차가 있다. 1분기에는 1조 22억원(37.2%)이 배정되었고, 2분기에 1,312억원(4.9%), 3분기에 1조 514억원(39.0%), 4분기에 5,106억원(18.9%)이 배정되어 1분기와 3분기에 수시배정사업 배정액의 76.2%가 집중되었다.

[2025회계연도 수시배정사업 분기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대상액(A)	배정액					배정률 (B/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B)	
금액	3,380,526	1,002,164	131,237	1,051,431	510,588	2,695,420	79.7
(비중)		(37.2)	(4.9)	(39.0)	(18.9)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분기별 배정액 규모는 수시배정 대상액이 큰 사업이 어느 분기에 배정되었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1분기 배정액의 대부분은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9,988억원)에 의한 것이고, 2분기 배정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지원 펀드(600억원), 행정안전부의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456억원), 3분기 배정액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5,528억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4,116억원), 4분기 배정액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1,288억원)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240억원),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1,175억원) 사업에 의해 높게 나타난다.

[2025회계연도 분기별 배정액 상위 3개 사업]

분기	배정액 규모가 큰 상위 3개 사업	
1분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교육부)	9,988억원
	철도기본계획수립(국토교통부)	31억원
	참전기념사업지원(국가보훈부)	3억원
2분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지원 펀드(기후에너지환경부)	600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456억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보건복지부)	426억원
3분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교육부)	5,528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4,116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문화체육관광부)	400억원
4분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교육부)	1,288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교육부)	1,240억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보건복지부)	1,175억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⑤ 예산 미배정 사업 현황

2025회계연도 수시배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내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 남부내륙철도 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외교부의 전략적 협력강화(전략사업비) 사업 등 5개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 미배정사업 중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없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24.6.)에 따라 착공이 '24년 말에서 '25.12월로 지연되면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미배정되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사업은 2회 추경 시 수시배정예산 전액이 감액됨에 따라 미배정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법인 설립 지연('26.3월 예정)에 따라 예산이 미배정되

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이 미배정되었으며, 외교부의 전략적 협력강화(전략사업비) 사업은 사업 수요가 미발생하여 예산이 미배정되었다.

[2025회계연도 수시배정사업 중 예산 미배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중앙 관서	예산액	대상액	배정액	국회증액 규모
1	가덕도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국토부	964,025	522,364	0	-
2	남부내륙철도	국토부	118,863	118,863	0	-
3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해수부	80,067	4,749	0	-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기후부	87,815	4,500	0	-
5	전략적 협력강화 (전략사업비)	외교부	6,400	4,400	0	-

주: 수시배정 대상액 규모가 큰 사업 순으로 정렬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수시배정이 필요한 사업들로 선정되었는지(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대상액 결정은 합리적인지(대상액 결정의 합리성), 그리고 법적근거 등 제도 운영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① 법정지출인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수시배정사업 지정 문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규모가 세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지방이전재원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6] 중 2025년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교육부) 등 4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지방이전재원의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는 2020년과 2024년에 3개 사업이 모두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다가 2024년 다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후 2025년에는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2023년에만 수시배정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특별교부금은 2020년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3개 사업이 모두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부터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수시배정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만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고 있다.

---

6)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금)와 특별교부세(금) 등으로 나뉘며, 특별교부세는 다시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종류와 교부기준, 배분비율]

구분		교부기준	배분비율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의 4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의 5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의 10%
특별교부금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의 6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의 3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의 10%

자료: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지방이전재원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

지방이전재원 (소관부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지정				지정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지정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⑪ 재원분담 조건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 필요"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예산규모가 세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고[7], 사업여건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해당연도 재원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 지방이전재원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취하고자 하는 수시배정제도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매년 이들 사업들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고 있다.

지방이전재원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인 적절한지를 법 해석 측면에서 보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수시배정제도의 대상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법정의무지출도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국가로부터 단순히 지원받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부되는 '세(稅)'수입의 일종으로 간접 과징형태의 지방세라 할 수 있는데,

7)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등

법률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근거하여 집행 여부와 그 시기를 조정하는 수시배정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8)]

운영상으로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금)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재난 발생이 없더라도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결국 연도말에 교부하여야 하거나 최소한 결산상 차액(세계잉여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9)]도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부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또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행정안전부의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0)]는 2023년 수시배정사업에서 제외되었다가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지정되어 선정기준의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재원의 특성상 소관부처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배분과 집행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어,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는데,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9년부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등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기획예산처의 집행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모두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결산현황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경우 미리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8)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7.

9) 교부대상 정책사업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지원, 디지털 교육 혁신 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이 있다.

10)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방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방행·재정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는 특별교부세 3개 사업과 특별교부금 3개 사업이 모두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21년 이후 수시배정사업 지정은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등 3개 사업만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에 다시 특별교부세 3개 사업과 특별교부금 2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수시배정사업이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가 제외되어 특별교부세 2개 사업과 특별교부금 2개 사업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연도별로 지정 현황의 변동이 있어 왔다.

기획예산처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 시 총액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미정이므로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수시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연도별 수시배정 지정 여부는 지자체의 재정여력 및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경우 2025년까지는 예산액의 100%를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였으나, 2026년에는 예산액의 50%만 수시배정 대상액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배정 대상액 규모를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고, 사업여건이나 추진상황 등에 관계없이 예산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수시배정을 통해 교부세 및 교부금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라는 수시배정제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수시배정사업 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지정

2025회계연도의 경우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의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국회 증액사업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행정부 동의하에 증액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시배정사업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향후 시행예정인 국가재정법[11]에 따라 수시배정 필요성, 배정 규모의 합리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시배정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이하 "국회 증액사업"이라 한다)이 주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고 있었으나, 2025년에는 세부사업 기준 전체 수시배정 지정사업 25건 중 1건만 국회 증액사업이었다. 최근 3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의 비중(사업 수 기준)을 살펴보면 2023년 81.2%, 2024년 62.6%, 2025년 4.0%로, 2025년에는 비율이 급감하였다.

2025년의 경우 수시배정 지정사업 대비 국회 증액사업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감액사업에 대해서만 국회 의결이 되고, 증액사업은 의결되지 못해 2025년 전체 재정사업 9,435개 중 국회 증액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증액사업 1건은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육성(해양관광인프라조성)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서 국회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사업 현황(사업 수 기준)]

(단위: 개, %)

연도	재정사업			수시배정사업		
	전체 (A)	국회 증액사업 (B)	비중 (B/A)	전체 (C)	국회 증액사업 (D)	비중 (D/C)
2023	9,505	704	7.4	69	56	81.2
2024	9,435	871	9.2	107	67	62.6
2025	9,435	0	0.0	25	1	4.0

주: 총지출 및 세부사업, 본예산 기준
자료: 열린재정사이트(www.openfiscaldata.go.kr)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2027.1.1.부로 시행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국회 증액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12월에서야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예산규모가 결정되므로 사업계획이 충분히 완비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 증액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규모가 확대된 사업으로, 행정부 동의 절차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증액사업 중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재정당국이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증액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수시배정제도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시행여부·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재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배정제도는 가급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19호)[12]이 공포되어 2027.1.1. 시행예정이며, 2024회계연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3.10., 시행 2027.1.1.)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13]에 따라 2025년부터 수시배정 지정 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5년부터 제출하고 있는 수시배정 지정 내역에는 수시배정대상 사업명과 대상금액만 명시하여 연초에 한 차례만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획예산처는 향후 시행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시배정 사유와 실제 배정내역 등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수시배정 필요성, 배정 규모의 합리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3)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기획예산처)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국회 증액사업의 수시배정 과다 및 미배정 (제도개선)	ㅇ [지적사항] 2024년 수시배정된 사업 중 국회 증액 사업의 수시배정 비중이 과다한 문제 발생 ㅇ 특히 국회 증액 사업 중 예산액이 전액 미배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 발생 ㅇ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처는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과다 문제 및 전액 미배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수시배정 내역 및 사유를 보고할 것	ㅇ '25년부터 수시배정 지정후 내역을 국회에 기제출하고 있음 ㅇ '26년 수시배정 지정 건수를 축소하여 운영 중* '24년 98건 → '26년 64건 ㅇ 또한, 수시배정 사업의 배정계획 변경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중 (12.10일 법사위 의결)으로 개정안 시행시 정기적으로 보고 예정 *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조치예정일: 2026년 중

(2) 대상액 결정의 합리성

수시배정사업 대상액 결정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액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2020년까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예산액 전액을 수시배정대상액으로 지정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예산액 전액 또는 절반 수준을 대상액으로 지정하는 등 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수시배정대상액을 검토해보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2020년은 예산액 전액을, 2021년부터는 매년 예산액의 절반 수준을 대상액으로 지정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는 예산액 전액을 수시배정대상액으로 지정하였으나, 2021년에는 예산액의 절반 수준을, 2022년과 2023년은 예산액 전액을, 2024년부터는 다시 예산액의 절반 수준을 수시배정대상액으로 지정하였다.

[최근 지방이전재원 수시배정사업 지정 현황 및 대상액, 배정액]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소관부처)	연도	본예산(A)	추경(B)	대상액(C)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배정액(D)	배정률 (D/C)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2020	712,573	694,739	694,739	97.5	100.0	694,739	100.0
	2021	688,727	777,095	339,300	**49.3**	**43.7**	339,300	100.0
	2022	852,127	1,013,150	506,064	**59.4**	**49.9**	506,064	100.0
	2023	1,030,586	1,030,586	515,293	**50.0**	**50.0**	515,293	100.0
	2024	925,421	925,421	462,711	**50.0**	**50.0**	462,711	100.0
	2025	823,189	823,189	411,595	**50.0**	**50.0**	411,595	100.0
	2026	954,058	1,024,248	477,029	**50.0**	**46.5**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육부)	2020	156,086	149,974	149,856	96.0	99.9	149,856	100.0
	2021	148,842	167,940	74,421	**50.0**	**44.3**	74,421	100.0
	2022	184,155	218,954	184,155	100.0	84.1	184,155	100.0
	2023	222,722	222,722	222,722	100.0	100.0	152,719	68.6[1)]
	2024	200,142	200,142	100,071	**50.0**	**50.0**	89,106	89.0[1)]
	2025	247,905	242,306	123,953	**50.0**	**51.2**	123,953	100.0
	2026	210,304	225,473	105,152	**50.0**	**46.6**	-	-

주: 1)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미교부 불용 처리하여 배정률이 각각 68.6%, 89.0% 로 나타남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수시배정 대상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수시배정대상액을 예산액의 50%로 결정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금)는 보통교부세(금) 산정 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원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예산액의 50%는 집행가능하고 50%는 집행이 어려운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액의 50%를 수시배정대상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에 바탕한 결과가 아닌 기획예산처의 임의적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의 경우 2021년에는 예산액의 50%를 수시배정금액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100%를,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지정하였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렇듯 수시배정 대상액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추경이 있는 경우 본예산이 감액되면 추경금액 기준, 증액되면 본예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국가시책특별교부금(교육부)을 보면 2020년 추경에서 감액된 경우 대상액은 추경금액과 유사하고 2025년 추경에서 감액된 경우 대상액은 추경금액과 동일하나, 2021~2022년 추경에서 증액이 된 경우 수시배정 대상액은 본예산과 동일하다. 수시배정금액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교육부) 추경 증감에 따른 수시배정 대상액 비중 변화]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추경(B)	대상액(C)	본예산대비 (C/A)	추경대비 (C/B)	배정액(D)	배정률 (D/C)	비고
2020	936,513	899,836	899,133	96.0	99.9	899,133	100.0	추경감액
2021	893,054	1,007,639	893,054	100.0	88.6	893,054	100.0	추경증액
2022	1,104,930	1,313,725	1,104,930	100.0	84.1	1,104,930	100.0	추경증액
2025	1,067,409	1,033,814	1,033,814	96.9	100.0	1,033,814	100.0	추경감액
2026	1,261,828	1,352,842	630,914	50.0	46.6	100,947	16.0	추경증액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수시배정제도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법률에서 인정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수시배정 대상액 결정 방식은 기획예산처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기금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수시배정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지출전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제도 운영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제도”를,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전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합한 수시배정사업은 총 25개 사업, 3조 3,763억원으로, 이 중 수시배정사업(예산)이 24개, 3조 3,760억원이고, 지출전 협의사업(기금)이 1개, 3억원이 지정되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은 예산(제3장)과 기금(제4장)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앞서 개념 및 법적근거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시배정제도(예산)는 「국가재정법」에 명시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수시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지출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면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수시배정 및 지출전 협의 제도 비교]

구분	수시배정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용	제43조(예산의 배정)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수 있다.	◦ 지원 대상·기준·규모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국회부대의견제시 등으로 집행 전에 사전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즉, 현행 규정으로는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전 사전협의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기획예산처는 대상사업 선정을 통보하고, 분기별 예산 배정이 아닌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예산에 대한 수시배정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금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4] 그러나 수시배정제도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금은 예산과 달리 운영 주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시배정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전 협의제도 운영의 필요성, 현행 법령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경우에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15]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집행 관련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 검토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예정으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현재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

14) 「국가재정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수시배정사업 분석”, 2025.7.

17 재해·재난대책비 분석

「2025년도 예산총칙」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1]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기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등 5개 부처 소관으로 총 6개의 재해대책비 사업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2]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것이다.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1,072억 7,400만원 중 1조 1072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68억 4,9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3]는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및 가축,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지자체를 대상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600억원 중 전액이 교부되고 이 중 1,512억 7,3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양식등 재해대책비'[4] 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고, 국가·지방어항 등 피해를 복구하며, 이상수온에 대응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443억 1,400만원 중 412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5] 및 '재해대책비'[6] 사업은 태풍, 집중호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2025년도 예산총칙」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2734-300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3-302

5) 코드: 일반회계 5340-300

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7140-300

우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피해 복구, 폐기물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복구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부터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은 예산현액 2,222억 3,600만원 중 2,210억 6,500만원 집행, 4억 2,800만원 이월, 7억 4,300만원 불용되었고, 재해대책비 사업은 예산현액 1,708억 3,200만원 중 1,638억 5,300만원 집행, 69억 7,900만원 불용되었다.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7]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및 피해지 복구를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890억 3,800만원 중 2,790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83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부처별 재해대책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대책비 (행정안전부)	360,020	1,020,020		47,948	1,107,274	1,107,273 [756,849]		-	1,010,040
재해대책비 (농림축산식품부)	160,000	160,000	-	-	160,000	160,000 [151,273]	-	-	250,000
양식등 재해대책비 (해양수산부)	25,000	27,000	17,314	-	44,314	41,266 [40,206]	-	3,048	49,310
하천재해대책비 (기후에너지환경부)	232,000	232,000	110	△9,874	222,236	221,065 [155,979]	428	743	400,000
재해대책비 (기후에너지환경부)	50,000	162,000	832	8,000	170,832	163,853 [132,084]	-	6,979	50,000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청)	100,000	274,000	3,765	11,273	289,038	279,014 [183,855]	8,354	1,670	250,000

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사업의 경우 393억 6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7) 코드: 일반회계 2331-300

17-1. 재해대책비 사업 내 전년도 피해복구비와 당해연도 재난대책비의 통합편성으로 인한 문제점

가. 현 황

각 재해대책비 사업은 ① 당해연도 재해대책비(당해연도 유보금)뿐만 아니라 ② 과년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용을 포함하여 편성·집행되고 있다.

20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당해연도 유보금이 36.8%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본예산 합계 9,270억원 중 당해연도 유보금은 4,679억원으로 50.5%를 차지하여, 비록 그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과년도 피해복구비가 전체 예산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024~2025 재해대책비 본예산 중 당해연도 유보금]

(단위:억원)

소관	사업명	2024			2025		
		본예산(A)	과년도 피해복구	당해연도 유보금(B) (B/A)	본예산(A)	과년도 피해복구	당해연도 유보금(B) (B/A)
행안부	재난대책비	6,000	5,403	597 (10.0)	3600	2,376	1,224 (34.0)
농림부	재해대책비	2,800	-	2,800 (100)	1,600	-	1,600 (100)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0500	-	500 (100.0)	250	-	250 (100.0)
기후부	하천재해 대책비	2,500	2,137	363 (14.5)	2,320	1,984	336 (14.5)
	재해대책비	500	59	441 (88.2)	500	165	335 (67.0)
산림청	산림재해 대책비	1,000	811	189 (18.9)	1,000	66	934 (93.4)
합 계		13,300	8,410	4,890 (36.8)	9,270	4,591	4,679 (50.5)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나. 분석의견

재해대책비 사업은 재해 발생 시 빠른 지원을 위해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취지와 달리 예산 상당부분이 다년차 복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피해복구비로 구성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활용가능한 재원 규모 확인에 제약이 있고, 당해연도 발생한 지출소요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당과정에서 대규모 이·전용이 반복되므로 당해연도 유보금과 과년도 피해복구비 예산의 분리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그 피해지원 및 복구 관련 지출소요가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출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교부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해대책비' 사업이 일반회계에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에는 당해연도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금 성격의 예산과, 과거 발생한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다년차 사업 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다. 당초 당해연도 발생 재해에 대해서는 통상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년에 걸쳐 집행되는 피해복구비를 '차년도' 예산소요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라 차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피해발생으로 인한 복구비(공사비)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① 행정안전부의 경우, 실제 동 사업이 편성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억~1,500억원을 재난대책비로 편성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및 긴급복구비 등에 이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재원은 복구계획 수립 후 당해연도 예비비로 충당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즉 당해연도 지원금, 긴급복구비를 모두 당해연도 예산(재난대책비 사업 및 예비비)으로 충당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재난지원금 및 소규모 기능복구비, 개선복구 사업 설계비 일부만 동 사업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연도에 교부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은 6,000억원이나 이 중 5,403억원

(90.0%)은 2023년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실질적인 2024년 재난대책 예산은 597억원(10.0%) 수준이다. 2025년도 역시 재난대책비 본예산 3,600억원 중 2,376억원(66.0%)은 2024년 재난피해 복구비로, 나머지 1,224억원(34.0%)이 당해연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2021~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지원·복구소요			예산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 소요액
	계	사유 시설	공공 시설	본예산	추경	이·전용	예비비	
2021	724	257	467	8,200	-	58	166	-
2022	6,321	2,004	4,317	1,000	-	626	4,695	-
2023	7,087	1,388	5,699	1,500	-	184	-	5,403
2024	3,547	414	3,133	6,000 (597)	-	537	-	2,413
2025	8,641	5,752	2,889	3,600 (1,224)	6,600	479	393	8,100

주: 괄호 안 금액은 본예산 중 전년도 피해복구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재난대책 예산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예산안에도 1조 10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8,100억원(80.2%)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소요로 2026년 재난에 대한 대비재원은 1,999억 4,000만원(19.8%)이다.

② 산림청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동 사업이 편성된 2015년부터[1] 매년 3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의 재해대책비가 편성되어, 동 사업 본예산 부족액은 당해연도 예비비 등을 통해 충당해 왔다.[2]

그러나 2023년부터는 산림재해 발생시 동 사업 예산으로 긴급벌채 등 조속한

1) 다만 예외적으로 2021년 예산은 1,800억원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2020년 집중호우, 연달아 발생한 태풍(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급증한 산사태 피해의 복구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 2015~2020년 산림재해대책비 본예산은 다음과 같다.
- '15: 300억원, '16~'18: 각 350억원, '19: 332.5억원, '20: 300억원

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피해복구비는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의 경우 본예산 200억원과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33억 3,000만원으로 피해복구를 한 후 부족한 피해복구비 813억 2,6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1,000억원 중 당해연도 재해대책비 가용재원은 186억 7,400만원에 불과하여 302억 3,1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잔여 부족액 66억 1,500만원은 다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2025년의 경우, 본예산 1,000억원 중 전년도 피해복구비는 66억 1,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유례없는 대형 산불 발생으로 추경 1,740억원 증액, 이·전용 112억원 증액 등으로도 부족한 피해복구소요가 1,000억원 발생하여 이를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2026년에는 본예산 2,500억원 중 당해연도 재해대책비는 1,500억원에 불과하다.

[2021~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복구소요				예산				차년도예산에 반영된 소요액
	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본예산[1]	추경	이·전용	예비비[2]	
2021	12,141	1,364	7,523	3,254	180,000 (12,141)	-	-	-	-
2022	67,626	7,464	53,995	6,167	50,000 (50,000)	-	△19,966	40,072	498
2023	98,141	2,445	88,296	7,400	20,000 (19,502)	-	3,330	-	81,326
2024	55,020	-	37,189	17,831	100,000 (18,674)	-	30,231	-	6,615
2025	361,114	174,000	114,187	72,927	100,000 (93,385)	174,000	11,200	-	100,000

주: 1) 괄호 안 금액은 본예산 중 전년도 피해복구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재난대책 예산을 의미
2) 예비비: 국고채무부담 포함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사업 편성 취지인 국비 지원의 신속성, 재난발생 시 가용재원 파악의 용이성, 회계연도별 재정 상태와 성과의 명확성 등의 측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먼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의 상당비중이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로서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한 재원 파악에 제한이 있고, 유보금 부족으로 본예산 편성 취지인 신속한 국비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①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사업을 예로 들면, 2025년 대형산불 발생 당시 재난대책비는 3,6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전년도 말에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금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1,187억원 수준[3]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반해 산불 발생으로 빠른 집행이 필요한 생활안정지원(사유재산 피해지원 및 복구비) 국비 소요만 약 2,619억원이 예상되어[4]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심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5월 말 중순에 교부가 이루어져 재난대책비 사업예산이 충분하였을 경우 혹은 예비비[5]로 부족분을 집행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할 경우 지연이 불가피하였던 측면이 있다.

② 산림재해대책비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액에서 당해연도 재해대책 가용재원이 한정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대책비 사업예산을 집행하였을 경우 혹은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대비 지연이 불가피했다. 산림재해대책비의 경우 산불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 피해 발생[6] 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늘어나고 피해복구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지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3) 당시 예측치 기준

4)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복구소요는 총 1조 1,060억원으로 이에 대한 국비소요 6,600억원을 감안하여(사유재난 재난지원금 2,619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3,981억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복구계획 수립 후 복구소요가 1조 8,80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5) 사업예산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반면 예비비의 경우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재난대책비 집행 대비 약 3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빠른 집행이 가능하며, 실제 2022년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여 5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 7일이었다.

6) 예를 들어,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불피해목을 적기 벌채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더불어 이러한 예산 편성방식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출소요 대비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타 사업에서 이·전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정운용과 성과평가의 명확성,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한 해부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하반기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133억원의 이·전용이 있었지만 2024년의 경우 35개 사업에서 총 537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이·전용이 이루어졌다. 2024년에는 제주 4·3 피해보상의 집행이 지연되면서 해당 사업에서 288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고,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에서 공사 지연으로 86억원 이상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2025년 재난복구비 마련을 위한 이·전용 내역]

구분	7월 호우피해 복구	9월 호우피해 복구
이·전용내역	1개 사업으로부터 241.2억원	3개 사업으로부터 238.2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의 경우 7월과 9월 발생한 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3개 사업으로부터 총 479억 4,800만원의 이·전용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비하여 이·전용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규모이다. 통상의 경우 이·전용을 통해 대규모의 긴급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연초에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 감액한 사업에서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다시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각 사업들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위해 필요한 소요를 기본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 편성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대규모 이·전용의 반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7)]

7) 2025년에는 8월 호우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310억 600만원과 9월 호우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83억원, 도합 393억 6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이·전용 규모에 비추어 예비비의 규모가 충분하였는지, 그리고 적시에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

종합하면, 재해대책비 예산에 전년도 피해복구비와 당해연도 재해대책비가 혼재되어 있어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가용재원 파악이 어렵고,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피해복구가 지연되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 시 가용재원 파악의 용이성, 회계연도별 재정상태와 성과의 명확성, 국비 지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전년도 피해복구비와 당해연도 재해대책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액	대통령결재일	지출목적
31,006	2025-09-30	8.3.~14.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8,300	2025-11-11	9.6~7. 호우피해의 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 예비비총괄명세서」

17-2. 재난대책비의 예비비적 성격을 고려한 본예산 규모 설정 필요

가. 현 황

재해·재난대책비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또는 대형 산불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파손된 공공·사유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자치단체 보조 및 직접 수행 방식으로 집행된다.

과거 정부는 재해·재난대책비를 예비비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당해 연도에 사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예비비 집행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교부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최근에는 예산총칙에 따라 각 부처·회계의 세출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고온, 집중호우,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대책비의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 1,000억 3,500만원에서 2025년 1조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해수부의 양식등 재해대책비는 80억원에서 493억원으로,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2022~2026 재해 재난대책비 연도별 규모(추경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행안부	재난대책비	100,035	150,035	600,040	1,020,020	1,010,040
농림부	재해대책비	150,000	200,000	280,000	160,000	250,000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8,000	8,000	50,000	27,000	49,310
기후부	하천재해대책비	-	-	250,000	232,000	400,000
	재해대책비	-	-	50,000	162,000	50,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50,000	20,000	100,000	274,000	250,000
합 계		308,035	378,035	1,330,040	1,875,020	2,009,350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재해·재난대책비 중 당해연도 재난대책비의 경우, 그 특성상 사전에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비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규모 설정에 있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본예산은 적정규모로 편성하여 불용을 줄이고,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 사업의 규모 확대 사유로 예비비 신청 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으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예측치와의 괴리가 지속되어 불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이·전용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비비 제도로 운영되었다면 타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었던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에 기속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의 '양식등 재해대책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어항등피해복구'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국가어항 피해시 복구를 위한 직접 사업인데, 2025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6,000만원, 공사비 19억 5,000만원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국가어항 복구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동 사업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4년에도 26억원 편성 후,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된 바 있다.

[2024, 2025 국가어항등피해복구 내역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집행
2024	합 계	2,600	-
	실시설계비	260	-
	공사비	1,950	-
	감리비	260	-
	시설부대비	130	-
2025	합 계	2,600	-
	실시설계비	260	-
	공사비	1,950	-
	감리비	260	-
	시설부대비	130	-

자료: 해양수산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방어항등피해복구'사업은 지방어항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0%의 국비를 보조하는 보조사업인데, 해당 사업 역시 2024년 20억원 편성 후 복구소요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2025년의 경우 20억원 편성 후 12억 8600만원 이전용 감액 후 1억 1,000만원만이 집행된 바 있다.

[2024~2025 지방어항등피해복구(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교부액)	실집행액
2024	2,000	2,000	-	-
2025	2,000	714	285 (본예산比 14.2%)	111 (교부액比38.9%, 본예산比 5.6%)

자료: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의 경우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직접사업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동 사업 중 직접사업인 '국가하천피해복구'사업의 경우, 24년과 25년 순수 당해연도 유보금 기준으로 각각 8.0%, 58.6% 집행하는데 그쳤다.

[2024~2025 국가하천피해복구사업 당해연도 유보금 대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당해연도 유보금(A)	집행액(B)	(B/A)
2024	21,700	1,600	8.0
2025	16,900	7,000	58.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재난대책비를 통해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불용 최소화를 통한 예산운영 효율성 확보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본예산 규모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가재정법」[1]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여 5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2년 9월 7일이었다.

이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와 유사한 속도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신속한 재난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 확대가 아닌 재난복구계획의 신속한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대한 재난대책비 교부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22.9.6.	태풍 힌남노 한반도 통과
2022.9.7.	예비비(50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9.16.	재난대책비 중 일부(185억원) 선교부
~2022.10.	재난복구계획 확정 및 재난대책비 교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난대책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산 및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2]과 재해구호기금[3]을 통해 시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책비의 특성상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난규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복구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7-3.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재해대책비 사업은 부처의 직접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및 비목별로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을 보면, 농림부의 재해대책비는 78.7%, 해수부의 양식등재해대책비는 89.0%로 실집행률이 양호하나,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의 경우 64.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의 경우 41.9%로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재해대책비 사업 비목별 보조금 실집행률(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교부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행안부	재난대책비	330-03	1,107,214	756,849	74.2
농림부	재해대책비	330-03	48,906	38,507	78.7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330-01	3,531	2,708	76.7
		330-03	6,181	5,500	89.0
		소 계	9,712	8,208	84.5
기후부	하천재해 대책비	330-03	221,065	92,536	41.9
	재해대책비	330-01	131,462	116,946	88.9
		330-03	26,940	9,688	35.9
		소 계	158,402	126,634	79.9
산림청	산림재해 대책비	330-01	119,124	66,335	55.7
		330-03	145,686	103,930	71.3
		소 계	264,810	170,265	64.3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나. 분석의견

첫째, 재해대책비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재해 빈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부시기에 따른 구조적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실소요, 지방비매칭액 조달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책비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피해 발생 이후 "피해현황 조사, 복구계획 수립·확정, 예산배정, 보조금 교부, 복구사업 시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해대책비 사업 추진절차 예시(기후에너지환경부 "재해대책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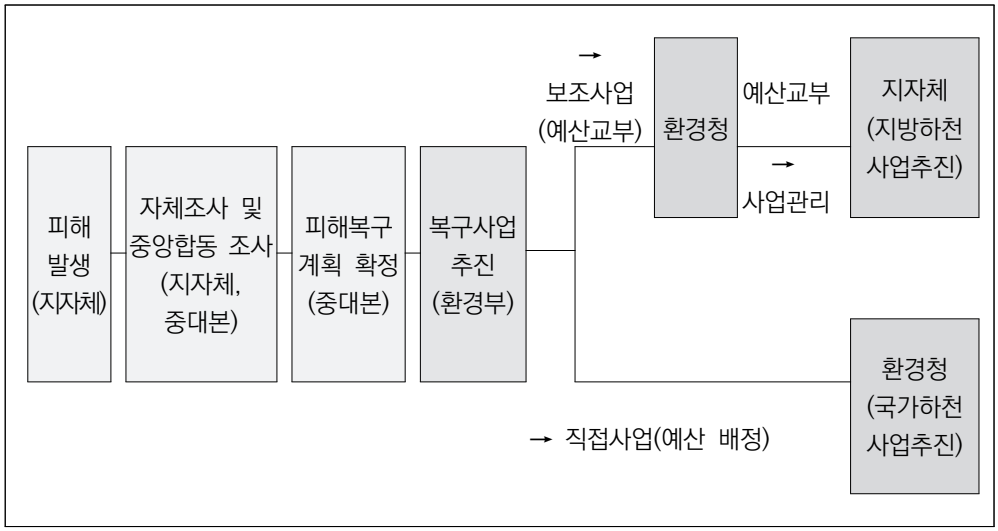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은 하절기 이후 빈발하는 경향이 있어 공사의 착공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해 피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이후에야 재해대책비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난 발생시점과 복구 착수 시점 간에 물리적 시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당해연도 재해복구비 중 공사비 상당액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①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사업[1](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연례적 실집행부진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지방자치단체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난폐기물의 방치는 주민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이후 재난복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재난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 각각 47.0%, 42.0%의 실집행률을 보인데 이어, 2024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345억 9,000만원 중 연내 집행한 예산은 151억 9,400만원으로 실집행률 43.9%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보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연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82.5%로 예년에 비해 반등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용률이 17.4%에 달하는 등, 과년도의 집행률 및 불용규모에 기반한 적정 예산규모가 편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불용액 규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025년 247억 1,000만원. 2024년 113억 6,400만원, 2023년 160억 5,500만원, 2022년 33억 6,800만원 등 매년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국가재정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자						
	추경예산	이전용 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	2,426	2,426	2,426	52,540	54,966	28,856	102	26,008	52.5
2022	-	43,627	39,600	39,600	102	39,702	18,644	17,690	3,368	47.0
2023	-	48,697	46,842	46,842	17,690	64,532	27,107	21,370	16,055	42.0
2024	35,000	825	13,220	13,220	21,370	34,590	15,194	10,238	11,364	43.9
2025	147,000	△9,934	131,462	131,462	10,238	141,700	116,946	44	24,710	82.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해대책비(7140-300)의 내역사업

한편, 동 사업의 불용액 발생에는, 사업지연 외에 재난 폐기물 수분증발에 따른 중량 감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난폐기물은 수거·적치 과정에서 자연 건조가 발생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당초 확정된 중량 대비 실제 처리 중량이 감소하므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분 증발로 인한 폐기물 중량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규모 설정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 처리기간, 계절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처리 물량 및 예산소요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산림재해대책비(산림청)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부진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의 경우에도 자치단체보조비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사업 예산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산림청은 총 4,162억 1,4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는 이 중 2,70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308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3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4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65.1%에 그치고 있다.

[산림재해대책비 중 지자체 보조사업비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 액(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38,600	38,600	3,267	41,867	21,861	21,861	-	21,861	11,334	9,102	1,425	51.8
2023	15,200	15,200	△320	14,880	14,880	14,880	20,006	34,886	28,248	3,721	2,917	81.0
2024	77,200	77,200	12,687	89,887	89,887	89,887	4,770	94,657	61,088	26,603	6,966	64.5
2025	77,400	130,094	108,110	238,204	238,204	238,204	26,606	264,810	170,265	91,460	3,085	64.3
합계 ('22~'25)	208,400	261,094	124,384	384,838	364,832	364,832	51,382	416,214	270,935	130,886	14,393	65.1

주: 이 표의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을 의미하나, 합계액의 경우 연도별 교부액 합계 대비 실집행액 합계액의 비율로 계산함

자료: 산림청

이러한 실집행부진의 원인은 절대공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미비 등에 기인한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하절기 재해발생 후 복구계획 확정 등이 지연되며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하절기 폭우 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과 사업물량 확정 이후 9~10월 경 산림재해대책비를 교부함에 따라 12월에서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이후 동절기 기상여건 및 산주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추진이 제한되어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보조금 집행부진 사례(예시)]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교부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경기도	6,473	3,918	60.5
경상남도	43,131	18,672	43.2

자료: 산림청

다른 한편, 예산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산림재해대책비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경북과 울산 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50%)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2] 사업이 지연되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대거 이월되었다.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집행부진 사례(지방비 확보 지연: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교부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울산광역시	7,749	4,868	62.8
경상북도	162,228	102,237	63.0

자료: 산림청

2) 12월말 기준으로 지방비는 모두 확보를 하였다.

③ ‘양식등 재해대책비’ 사업(해양수산부)의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문제

해양수산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중 ‘유해생물구제(적조) 내역사업은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실소요 파악 한계로 인하여 연례적인 보조금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적조 구제를 위한 황토 등의 물자를 구입하고 중장비를 임차하려는 등의 사업인데, 적조 대응은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달리 그 발생규모를 예상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적조 발생시 미리 구비해둔 장비를 통한 즉각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적조의 발생추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교부한다.

적조사업의 특성상 발생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미리 교부해야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불용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근 수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과 기후 변화에 따른 적조 발생 빈도의 추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초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양식등 재해대책비 내역사업(유해생물구제) 보조금 집행부진 사례(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조 사업자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실집행 부진 상세사유
2024	전남	2,547	1,651	189	707	64.8	유해적조 미발생하여 불용
	경남	2,576	1,253	298	1,025	48.6	유해적조 미발생하여 불용
2025	부산	100	17	-	83	17.0	유해적조 미발생하여 불용
	울산	79.5	49.5	-	30	62.3	유해적조 미발생하여 불용
	경북	707	423	174	110	59.8	유해적조 미발생하여 불용

정리하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각 부처는 재해대책비 예산소요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교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5년 산불피해 관련 피해지원 및 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 세대 규모를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사업으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 직후('25.4.) 전액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이상이 이월되었으며, 산림시설 복구 또한 위험목 벌채 및 사방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률이 3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회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지원 및 복구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정부의 대형산불 사회재난 피해지원 및 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기후부·산림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공사비 등을 보조한다(자치단체보조, 보조율 70%). 기후부는 주택·농업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 및 환경기초시설 복구비 지원과 국립공원공단 시설복구를 담당하며, 산림청은 피해지역 산림 내 위험목 벌채와 산사태 복구·예방을 위한 사방공사(砂防工事)를 지원한다(자치단체보조, 보조율 50%).

제1회 추경예산에는 이를 위해 총 8,88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5,576억원(62.7%)이 실집행되고 1,084억원이 이월되었다.

[피해지원 및 복구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내 용	추경 증액분	실집행현황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재난대책비	사유시설 피해 긴급생활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660,000	388,058	46,120	19,271	68.7
재해대책비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112,000	87,898	-	13,068	78.5
산림재해대책비	피해지 고초목 제거 및 사방공사	116,745	81,714	62,327	725	69.9
합 계		888,745	557,670	108,447	33,064	62.7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13.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분석_산불피해대응' 파트 참고

먼저, 긴급생활지원금은 사회재난으로 주거불능 또는 생계곤란 상태에 처한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실거주하는 세대주(또는 세대원) 등에 지급되는 것으로 신속한 교부를 원칙으로 하여 복구계획 수립 이후 수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교부 실적을 보면 일부 불용 외에 매년 97%를 상회하는 실집행률을 보인다.[4)]

그런데 2025년의 경우 실집행내역을 보면 8개 특별재난지역 중 2곳을 제외하면 80% 수준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50.6%에 불과하다. 교부액 3,467억원 중 피해금액 재조사 등에 의해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된 금액은 1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마련이나 자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특별재난지역 긴급생활지원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명	교부현액(A)	실집행액(B)	불용액	이월액	실집행률(B/A)
울산 울주군	318	161	-	157	50.6
경북 의성군	34,349	30,288	-	4,061	88.2
경북 안동시	114,608	111,113	-	3,495	97.0
경북 청송군	84,069	68,302	-	15,767	81.2
경북 영양군	12,778	11,581	969	228	90.6
경북 영덕군	93,343	78,525	-	14,818	84.1
경남 산청군	6,130	5,075	-	1,055	82.8
경남 하동군	1,123	1,055	46	22	93.9
합 계	346,718	306,100	1,015	39,603	83.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5. 10.) 등으로 인해 지원단가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월이 발생했다고

4) 2023년 8월말 태풍 '카눈'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합하여 총 1,351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97%인 1,351억원이 실집행되었다. 2024년에는 414억원 중 252억원(61%)이 실집행되었으나 이는 11월말 발생한 대설관련 복구계획이 연말에 수립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건을 제외하면 모두 복구계획 수립 직후 98%이상 실집행되었다.

설명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지자체별 집행률 간 격차가 상당하고 긴급지원금 1차 지급 후 단가 조정에 따른 변경액을 추가지급 하는 방안, 선지급 후 사후조사에 따른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 무엇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재난 직후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일로부터('25.3.) 1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일부 지역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농·임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 주택 피해 외에도 농어업시설 등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시 지급되는 농림재해대책비 및 양식등재해대책비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농작물·채취임산물 피해와 소상공인 사업장 소실 피해까지 동 지원금에 포함하여 편성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미지급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피해복구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평균 62.7%이며, 각 사업별로는 68~78%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각 사업별·지역별 실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편차가 상당하고 실집행부진의 원인도 상이하다.

[재난피해 시설·산림복구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추경 증액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A)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공공시설 복구	울산	398,100	34	34	34	-	-	100.0
	경북		106,413	106,413	81,762	6,517	18,134	76.8
	경남		284	284	162	-	122	57.0
폐기물처리·환경시설 복구	울산	112,000	69	69	69	-	-	100.0
	경북		93,396	93,896	86,447	-	7,449	92.6
	경남		6,939	7,001	1,382	-	5,619	19.7
고사목 제거 등	울산	-	973	973	945	-	28	97.1
	경북	-	114,006	114,006	63,392	50,609	5	55.6
	경남	-	1,766	1,766	1,536	-	230	86.9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울산	185	185	185	179	-	6	96.8
	경북	23,458	23,458	23,458	14,820	8,147	490	63.2
	경남	4,413	4,413	4,413	842	3,571	-	19.1

자료: 행정안전부·기후환경에너지부·산림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공공시설복구 및 폐기물처리·환경시설복구사업은 불용액 중심으로 미집행이 나타난다. 공공시설 복구는 예산 3,98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실제 소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6.8%인 1,064억원만 교부했음에도 복구 공사 완료 후 정산 결과 181억원 이상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이 지역별로 76.8%, 57.0% 수준이다. 폐기물처리·환경시설 복구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남의 경우 실집행률이 19.7%을 나타낸다. 즉, 두 사업의 실집행부진은 사업의 실소요 대비 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교부한 결과에 기인한다.

반면 고사목제거 및 사방공사 등 산림지 피해복구 사업은 불용보다 이월의 비중이 크다. 경북은 고사목제거 등을 위한 예산의 44.4%인 509억원을 이월하였고, 산사태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의 경우 경북과 경남 모두 예산의 34.7%, 80.9%를 이월하여 공사가 계획 대비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사목이 잔존하거나 산불로 인하여 산지 사면이 훼손된 지역은 호우 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가중되는 만큼, 우기 도래 이전에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제거 및 산사태 방지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을 조속히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18 지방이전재원 결산 분석

가. 현 황

(1) 지방이전재원의 의의

우리나라 조세 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국세가 약 75%, 지방세가 약 25%를 차지한다.[1]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사용액인 통합재정사용액의 비중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51.5%,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48.5%인바,[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지방의 일반재정(시도, 시군구)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교육재정(시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4] 전출금이 이전된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와 교육재정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원이 이전된다. 시도에서 시군구로는 조정교부금과 시도보조금이 이전된다.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 일부 및 시도세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구성되는 법정전출금과 조례에 따른 비법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최근 5년(2020~2024) 평균으로, 2024년도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조세 총액 중 국세, 지방세 규모 및 비중(2020~2024)]

(단위: 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 총액	3,875,950	4,568,766	5,145,100	4,565,320	4,506,178
국세	2,855,462	3,440,782	3,959,393	3,440,711	3,365,324
(비중)	73.7	75.3	77.0	75.4	74.7
지방세	1,020,488	1,127,984	1,185,707	1,124,609	1,140,854
(비중)	26.3	24.7	23.0	24.6	25.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상)」, 2025. 6.

3) 재원 이전을 반영하기 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순계) 비중은 각각 61.9%, 38.1%이다.

4) 2026년도부터 영유아특별회계로 개편되었다.

정전출금 등이 이전되고, 시군구도 시도교육청에 일부 비법정전출금을 이전한다.[5)]

[지방이전재원 개관]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근거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재원	- 법정교부금: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의 45%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예산으로 정함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농특세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규모	67조 385억 원 (27.0%)	70조 7,542억 원 (28.4%)	107조 6,911억 원 (43.3%)	15조 8,368억 원 (6.4%)
성격	일반 재원		목적사업	포괄 보조

주: 1.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2. 특별회계 전입금(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이전재원 규모는 73조 9,850억 원(2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동일 계층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수평적 재정조정이 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재원을 출연하여 17개 시도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1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5)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5. 9. 참조

(2) 지방이전재원의 유형

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자 무조건부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지방교부세법」제3조에 따라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활용된다.

특별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연도 중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면서 2005년에 신설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재정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50조 2,921억 원에서 2022회계연도 74조 9,59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 2024회계연도에는 세수 결손으로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는 결산 기준 67조 385억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 현황(2020~2026)]

(단위: 억 원)

구분	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의 97%	448,965	502,521	655,171	594,757	577,932	604,018	616,984
특별교부세	내국세 19.24%의 3%	13,895	15,542	20,263	20,612	17,875	16,464	19,081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10%	1,389	1,554	2,026	2,061	1,788	1,646	1,908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40%	5,558	6,217	8,105	8,245	7,150	6,586	7,63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50%	6,947	7,771	10,132	10,306	8,937	8,232	9,541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100%	33,210	49,357	65,513	47,133	41,098	40,047	46,982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45%	6,851	9,039	8,648	8,692	8,325	9,856	10,503
계		502,921	576,459	749,594	671,194	645,230	670,385	693,550

주: 2020~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및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서 각각 60%, 30%,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 20.79%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초중고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2020~2026)]

(단위: 억 원)

구분	재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의 96.2% 및 교육세 일부[1]	526,574	588,595	747,649	643,193	631,688	682,052	695,834
보통교부금		520,114	579,164	738,554	634,165	622,249	677,323	690,049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	6,460	9,431	9,094	9,028	9,439	4,729	5,785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의 3.8%	14,997	16,794	21,895	19,472	23,958	25,489	26,639
국가시책	내국세 20.79%의 3%의 60%	8,998	10,076	13,137	13,363	11,351	10,338	12,618
지역현안	내국세 20.79%의 3%의 30%	4,499	5,038	6,569	4,582	5,675	7,269	6,309
재난안전 관리	내국세 20.79%의 3%의 10%	1,500	1,679	2,190	1,527	1,892	2,423	2,103
디지털 교육혁신	내국세 20.79%의 0.8%	-	-	-	-	5,041	5,459	5,608
계		541,572	605,389	769,544	662,665	655,647	707,542	722,473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6년도부터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1. 2020~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③ 국고보조금(자치단체 보조사업) 세부 유형 및 재정 규모 현황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률이다.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달리 재정의 사용처가 지정된 조건부 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 예산	내국세의 19.24%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자료: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중앙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지원 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행하는 경상적 경비(기관운영비나 인건비, 여비 등)에 대한 보조금이고, 자본보조금은 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계정의 재원은 주세의 40%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50% 등이 있고, 지역

지원계정의 재원은 주세의 60%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40% 등이 있다.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다.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조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정하는 보조금으로, 총액과 지방비의 범위만 지정해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준)의 연도별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86조 7,076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까지 다소 감소 추세였으나, 2025회계연도에는 107조 6,91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자치단체 보조) 현황(2020~2026)]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회계	649,530	623,652	588,951	553,269	609,772	779,104	630,500
특별회계	137,317	152,401	158,365	170,170	169,127	212,431	326,831
지역균형발전	61,190	62,959	65,765	93,165	97,317	120,559	179,616
기금	80,230	81,306	82,586	83,176	83,059	85,377	97,206
계	867,076	857,359	829,902	806,616	861,959	1,076,911	1,054,538

주: 2020~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지방이전재원 2025회계연도 결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았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입 감액 경정에 연동되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인 국세가 증감하면 함께 조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 세입이 감액 경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지 않고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6][7]

---

6)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

[2025회계연도 지방교부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 등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보통교부세	60,401,769	60,401,769	0	60,401,769	0	0	61,698,352	66,237,321
특별교부세	1,646,378	1,646,378	0	1,646,378	0	0	1,908,116	2,048,496
지역현안	658,551	658,551	0	658,551	0	0	763,247	819,399
국가지방협력	164,638	164,638	0	164,638	0	0	190,811	204,849
재난안전관리	823,189	823,189	0	823,189	0	0	954,058	1,024,248
부동산교부세	4,004,709	4,004,709	0	4,004,709	0	0	4,698,208	4,698,208
소방안전교부세	985,649	985,649	0	985,649	0	0	1,050,277	1,050,277
계	67,038,505	67,038,505	0	67,038,505	0	0	69,354,953	74,034,302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 등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0	67,732,259	0	0	69,004,889	73,582,087
특별교부금	2,619,866	2,548,944	0	2,548,944	0	0	2,663,859	2,855,999
지역현안	743,713	726,916	0	726,916	0	0	630,914	676,421
재난안전관리	247,905	242,306	0	242,306	0	0	210,304	225,473
국가시책	1,067,409	1,033,814	0	1,033,814	0	0	1,261,828	1,352,842
디지털교육혁신	560,839	545,908	0	545,908	0	0	560,813	601,263
계	72,279,438	70,281,203	0	70,281,203	0	0	71,668,748	76,438,086

주: 2025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93조 9,90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08조 2,617억 원 중 99.5%인 107조 6,911억 원이 집행(지방자치단체 교부)되었고, 1,20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조 3,816억 원이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4	2025					
	결산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자치단체 보조	861,959	939,901	1,082,617	1,076,911	1,206	13,816	99.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5조 원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 대비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규모는 15.7%로 전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조사업 중 민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비중은 83.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치단체 보조사업(A)	85.7	83.0	80.7	86.2	107.7
정부 총지출(B)	601.0	682.4	610.7	638.0	684.1
전체 보조사업(C)	128.0	145.8	99.1	105.3	129.8
총지출 대비(A/B)	14.3	12.2	13.2	13.5	15.7
전체 보조사업 대비(A/C)	67.0	56.9	81.4	81.9	83.0

주: 전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민간 보조사업의 합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5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총 32개이며, 전체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로 가장 크다.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처별 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부처	예산	예산현액	결산	비중
보건복지부	559,501	557,260	558,533	51.9
행정안전부	17,488	156,333	156,673	14.5
교육부	75,263	75,793	76,626	7.1
기후에너지환경부	81,047	80,694	75,451	7.0
국토교통부	72,009	74,728	72,497	6.7
농림축산식품부	57,451	61,140	57,539	5.3
성평등가족부	14,849	14,846	14,824	1.4
문화체육관광부	13,544	13,614	12,999	1.2
산림청	10,961	11,683	12,703	1.2
해양수산부	10,935	11,198	10,849	1.0
국가유산청	6,689	6,695	6,686	0.6
기획재정부	6,322	6,397	6,371	0.6
산업통상부	5,264	5,464	4,809	0.4
고용노동부	1,974	2,274	2,251	0.2
농촌진흥청	2,065	2,065	2,017	0.2
중소벤처기업부	1,678	2,026	1,814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6	1,506	1,498	0.1
식품의약품안전처	771	771	770	0.1
외교부	501	636	636	0.1
법무부	387	387	387	0.0
소방청	287	338	338	0.0
대법원	112	112	112	0.0
질병관리청	108	108	108	0.0
통일부	115	115	104	0.0
새만금개발청	93	93	93	0.0
경찰청	77	77	77	0.0
국가보훈부	67	67	58	0.0
국방부	1	1	43	0.0
방위사업청	30	30	30	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8	8	8	0.0
재외동포청	7	7	5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	1	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의 연례적인 수시배정 사업 지정 문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매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연례적으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이전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중 일부 유형을 매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지정 현황(2020~2025)]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계
2020	예산액	578,059	144,515	712,573	1,435,147
	대상액	578,059	144,515	712,573	1,435,147
	비율	100%	100%	100%	100%
2021	예산액	550,982	137,746	688,727	1,377,455
	대상액	-	137,746	339,300	477,046
	비율	-	100%	50%	35%
2022	예산액	681,701	170,426	852,127	1,704,254
	대상액	-	170,426	426,064	596,490
	비율	-	100%	50%	35%
2023	예산액	824,469	206,117	1,030,586	2,061,172
	대상액	-	-	515,293	515,293
	비율	-	-	50%	25%
2024	예산액	740,337	185,084	925,421	1,850,842
	대상액	200,000	185,084	462,711	847,795
	비율	27%	100%	50%	46%
2025	예산액	658,551	164,638	823,189	1,646,378
	대상액	-	164,638	411,595	576,233
	비율	-	100%	50%	35%

자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수시배정 지정 현황(2020~2025)]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역현안	국가시책	재난안전관리	계
2020	예산액	449,919	899,836	149,974	1,499,729
	대상액	449,919	899,836	149,974	1,499,729
	비율	100%	100%	100%	100%
2021	예산액	503,819	1,007,639	167,940	1,679,398
	대상액	-	893,054	74,421	967,475
	비율	-	100%[1)]	50%[1)]	57.6%
2022	예산액	656,863	1,313,725	218,954	2,189,542
	대상액	-	1,104,930	184,155	1,289,085
	비율	-	100%[1)]	100%[1)]	58.9%
2023	예산액	668,167	1,336,333	222,722	2,227,222
	대상액	-	1,336,333	222,722	1,559,055
	비율	-	100%	100%	70%
2024	예산액	600,426	1,200,852	200,142	2,001,420
	대상액	-	1,200,852	100,071	1,300,923
	비율	-	100%	50%	65%
2025	예산액	726,916	1,033,814	242,306	2,003,036
	대상액	-	1,033,814	123,953	1,157,767
	비율	-	100%	50%[1)]	57.8%

주: 1) 본예산 대비
자료: 교육부

2025회계연도에는 특별교부세 중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1분기에 57.6%, 2분기에 2.6%, 3분기에 25.9%, 4분기에 13.9%를 각각 배정하였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2분기에 27.7%, 3분기에 22.8%, 4분기에 49.5%를 배정하였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분기에 96.6%를 배정하고 잔액은 4분기에 배정하였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된 예산(전체 세부사업 예산의 50%)을 전액 배정하였다.

[2025회계연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수시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분		수시배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	164,638	0	45,600	37,500	81,538
		100	0	27.7	22.8	49.5
	재난안전관리	411,595	0	0	411,595	0
		100	0	0	100	0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1,033,814	998,754	0	0	35,060
		100	96.6	0	0	3.4
	재난안전관리	123,953	0	0	0	123,953
		100	0	0	0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과거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①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②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의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③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④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다.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 ㅇ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 ㅇ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 ㅇ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 ㅇ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 의무 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 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 ㅇ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 ㅇ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 ㅇ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ㅇ 수행주체, 지원조건, 추진방식 및 계약내용 변경 등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ㅇ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ㅇ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5. 1.)

그러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수요를 제출하고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각 사업별 주관 부서가 전년도에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부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별 예산을 확정, 통지하므로 수시배정으로 유보해두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매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연례적으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유보통합,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데,[8]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에 연동하여 규모가 정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중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공립 유치원과 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소속 교원 수를 측정 단위로 하고, 유아교육비 측정항목을 포함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학급경비 측정항목 중 학급수 측정 단위나 학생경비 측정항목 중 학생 수 측정 단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구성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총세입의 65%를 차지한다.[9]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5.6% 증가하였다.[10] 특히 2026년 반도체 부문의 호황 등에 따라 세수 확대가 예상되는바 향후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6]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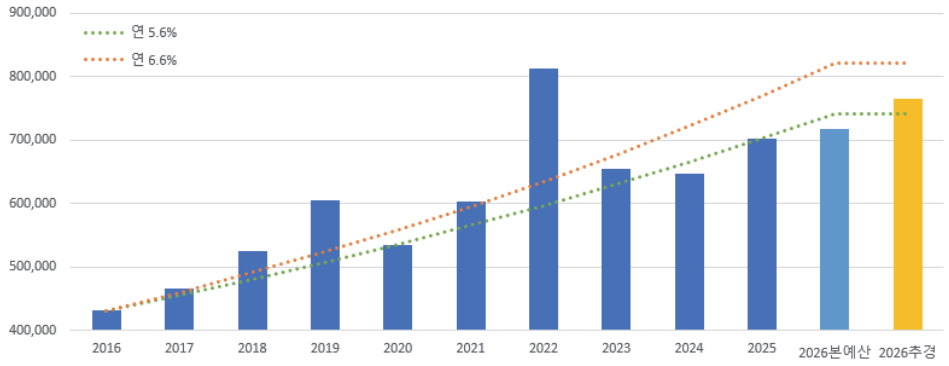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2016~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5.6%) 또는 증감률 평균(6.6%)을 적용한 추세선
2. 2016~2024년은 결산액과 세계잉여금 정산액의 합, 2025년은 결산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11]의 감소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억 원, %, 만 명, 만 원/명)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B)		1인당 교부금(A/B)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6	431,615	9.5	602	△3.4	716	15.5
2017	465,910	7.9	583	△3.2	799	11.6

9) 다만, 정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만으로 구성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이 포함된다.

10) 이는 기하평균 값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감률의 산술평균은 6.6%이다.

11) 참고로 학령인구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6~21세 인구이다.

(단위: 억 원, %, 만 명, 만 원/명)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B)		1인당 교부금(A/B)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8	524,528	12.6	570	△2.2	920	15.1
2019	605,305	15.4	556	△2.5	1,088	18.3
2020	535,431	△11.5	544	△2.2	985	△9.5
2021	603,371	12.7	535	△1.7	1,128	14.5
2022	812,976	34.7	532	△0.6	1,528	35.5
2023	653,637	△19.6	526	△1.1	1,241	△18.8
2024	646,572	△1.1	520	△1.1	1,243	0.2
2025	702,812	8.7	513	△1.3	1,371	10.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억 원, 만 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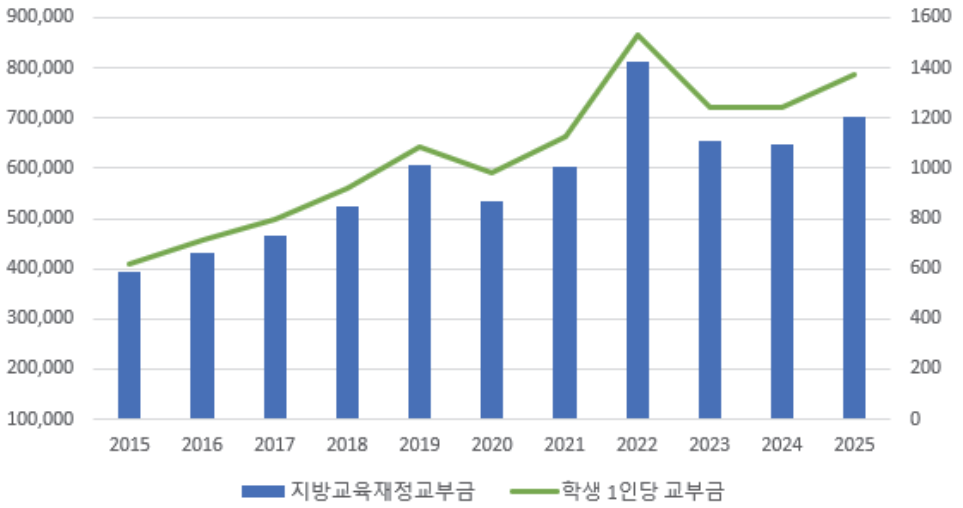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만 6,140명(6.8%) 증가하여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반등 추세이나, 10년 전인 2015년[12] 43만 8,420명 대비 42% 감소한 수준으로 당분간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13]

12) 2026학년도 유·초·중·고등학생(2008~2022년)의 중위 출생연도이다.

13) 예를 들어 2027학년도에는 2008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

[출생아 수 추이: 2008~202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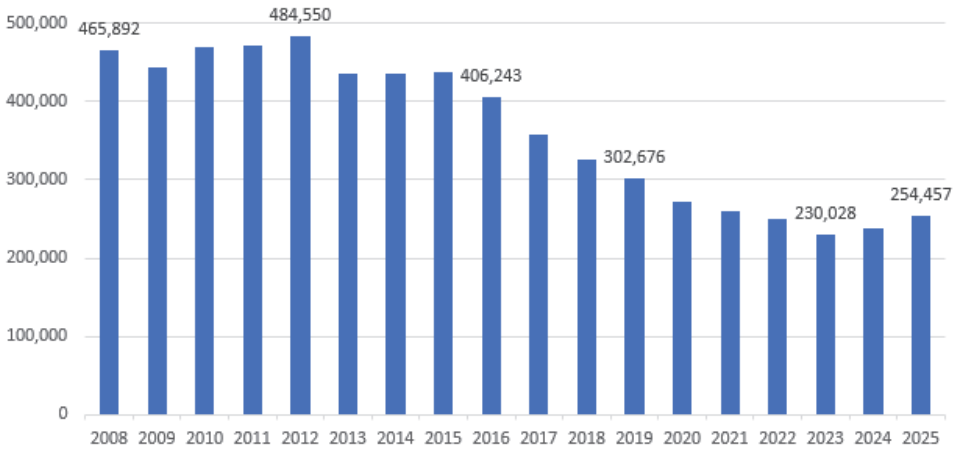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런데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중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및 교원 수의 추이를 보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밖에 학교 수,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023년, 교원 수는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생 수가 2026년에 소폭 반등하기 전까지 지난 10년간 매해 감소하였던 상황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5%(연평균 1.6%)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5%(연평균 0.2%), 교원 수는 5%(연평균 0.5%) 증가하였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추이: 2016~2026]

(단위: 명, 개, %)

연도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2016	6,026,499	16,144	240,348	391,798
2017	5,834,287	16,213	238,879	389,506
2018	5,698,732	16,357	238,958	396,114
2019	5,561,934	16,380	239,712	399,032
2020	5,437,109	16,478	241,035	402,396
2021	5,350,399	16,611	241,824	405,720

하므로 23만 명 이상이 감소한다.

(단위: 명, 개, %)

연도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2022	5,322,321	16,636	243,215	405,095
2023	5,267,312	16,749	247,109	408,500
2024	5,203,340	16,694	246,350	415,002
2025	5,125,457	16,551	245,682	412,818
2026	5,128,812	16,551	246,410	411,779
연평균 증감률	△1.6	0.2	0.2	0.5

주: 교원 수는 공립, 사립, 정원외 기간제 합계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1인당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학교, 학급당 연평균 5.3% 증가하였고, 교원 1인당 연평균 5.0% 증가하여 학생 1인당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만 원/명, 만 원/개, %)

구분	학생당	학교당	학급당	교원당
2016	716	267,353	17,958	11,016
2017	799	287,368	19,504	11,962
2018	920	320,675	21,951	13,242
2019	1,088	369,539	25,251	15,169
2020	985	324,937	22,214	13,306
2021	1,128	363,236	24,951	14,872
2022	1,527	488,685	33,426	20,069
2023	1,241	390,254	26,451	16,001
2024	1,243	387,308	26,246	15,580
2025	1,371	424,634	28,607	17,025
연평균 증감률	7.5	5.3	5.3	5.0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생당, 학급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만 원/명, 만 원/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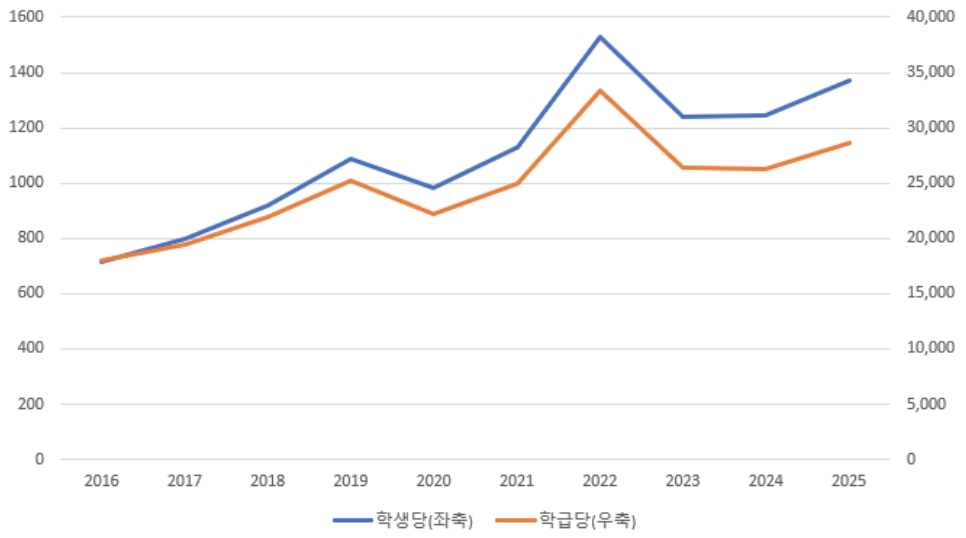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2016~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경우 낮은 구조이다.

[학교 단계별 교육 재정의 국제 비교(2022)]

(단위: $/학생)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순위	국가	교육재정	순위	국가	교육재정	순위	국가	교육재정
1	룩셈부르크	22,678	1	룩셈부르크	54,384	1	룩셈부르크	29,531
2	**대한민국**	**21,476**	…			…		
3	스위스	21,091	**34**	**대한민국**	**6,617**	**9**	**대한민국**	**16,363**
…			…			…		
36	멕시코	2,790	37	멕시코	4,430	37	멕시코	3,053
OECD 평균		12,438	OECD 평균		15,102	OECD 평균		12,780

주: 1.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
2. 국가장학금은 민간이전재원으로서 제외(최종재원 기준)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2025. 12.
(Government Expenditure 항목)

한편, 시·도교육청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증액 추경이 있었던 2021년, 2022년에는 조성액이 크게 늘어 2022년 말 잔액이 11조 5,845억원에 달하였으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불용되었던 2023년, 2024년과 감액 추경이 있었던 2025년에는 지속적으로 기금 잔액이 감소하여 2025년 말 잔액은 3조 7,493억원이다.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19	6	6	11,828	0	11,828
2020	17	13	11,228	0	23,056
2021	17	14	13,838	6,774	30,121
2022	17	17	90,443	4,719	115,845
2023	17	17	6,724	26,575	95,994
2024	17	17	2,796	37,168	61,622
2025	17	17	3,186	27,315	37,493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에 21조 3,811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 말 기준으로 7조 7,311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14]

14)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용처가 한정된 기금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두 기금 잔액의 합계는 2022년 말 20조 3,918억원에서 2025년 말 6조 8,2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21	14	13	18,721	207	18,514
2022	17	16	71,895	2,335	88,074
2023	17	17	4,625	11,447	81,252
2024	17	17	3,728	31,786	53,195
2025	17	17	1,379	23,819	30,755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 원)

연도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
2017	9	3,566	359	3,207
2018	10	1,462	331	4,338
2019	20	13,643	823	17,157
2020	31	12,604	813	28,948
2021	44	32,729	7,636	54,041
2022	55	167,770	7,860	213,811
2023	54	12,300	39,135	186,976
2024	54	7,940	71,112	123,804
2025	57	7,129	53,622	77,311

주: 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조성액(A) - 당해연도 사용액(B)
자료: 교육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교육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한편,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나 특수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개편에 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자치단체 보조사업 주요 분석의견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분석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다. 실집행 부진 유형이 가장 많고, 그 밖에는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사업 설계 미흡, 성과관리 개선 필요, 제도개선 필요 등의 문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①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15]은 각 권역의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이다. 3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은 사업 성격과 지원하는 예산 비목에 따라 개발사업과 진흥사업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공원, 산책로, 데크, 조경 등 건축 및 시설을 조성한다. 진흥사업은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안내 체계 구축, 관광 품질인증, 홍보 및 이벤트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경상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에 편중되어 있어 집행 지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발사업과 진흥사업 간의 적정 비중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16]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 감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격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위탁 사업이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9세 미만 영유아는 위 유형의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그런데 이 사업은 이용자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 인원이 편성 기준을 초과하고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비 기준 예산은 2020년 889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1,673억 8,8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은 6만 1,094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이용 인원은 7만 8,782명에서 11만 7,182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단가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3.4%(1만 212원) 상승하였으나 바우처 지원단가는 2023년 이후 월평균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바우처의 실질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수요 기반 예산 편성, 대기자 관리, 지원단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17]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보조율은 50%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내역변경이 발생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에도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으로 15억 원이 내역변경되었다. 이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최근 3년간 평균 188.4% 수준이나,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은 5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시설별 기능보강 수요 및 지원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사업[18]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대국민의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접종시행비)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HPV,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0~1세 인구가 당초 편성인구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위탁의료기관 관련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한 미지급금도 조속히 정산할 필요가 있다.

② 실집행 부진

교육부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19]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보조율은 50%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가 17개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추경예산 대비 42.0%로 부진하다.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등 영유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인바, 어린이집의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20]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안동시, 영덕군, 의성군)의 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 체계적인 마을단위 복구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00억 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재민 주거시설을 포함한 마을단위 주요시설 복구, 재생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미집행 이월되었으므로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주요 시설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2026. 7.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 7.

행정안전부의 **'민주화운동지원'** 사업[21]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상급 지급은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100%)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8차 보상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8차 5·18민주화운동 손실보상은 제1~7차의 집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집행가능성 검토 없이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실집행률이 44%에 불과하다. 향후 차수별 집행 실적 및 대상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절차상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2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매년 50억 원 규모로 3년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2025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100억 원)하여 2025년에 종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4회계연도 실집행률이 26.6%이고 시범사업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을 100% 증액 편성하여 추진한 결과,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73.7%로, 17.7%를 상회하는 실집행이월이 발생한 채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밀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들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빈집 철거로 관련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비개소 1,584호 중 인구감소·관심지역 비율이 60.7%에 그치고 지역별 빈집현황과 정비개소 비중 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하여 정책 의도가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 7.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 7.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23]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유적지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정액)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 30% 이내)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 2021년 69.0%, 2022년 61.8%, 2023년 52.5%, 2024년 47.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5회계연도에 50.6%에 그쳤다. 집행 부진의 원인은 대부분 사전행정절차 지연(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건축인허가 등), 설계 변경 및 설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폐지 등이며, 특히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24]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 문화향유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고,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41.2%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보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더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된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한편,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속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메뉴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편성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재정당국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자율계정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2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5]은 각 권역의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이다.

그런데 세 사업은 모두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의 구조적 지연에 기인하고 있는데, 사전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지연, 설계 및 사업계획의 빈번한 변경, 부지 및 예산 확보 난항 등 물리적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26]은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 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 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2025회계연도에도 실집행률이 54.8%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률 50% 미만의 부진한 실집행 현황을 보이고 있다.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27]은 수영장, 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액지원)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체육센터의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2025회계연도에도 실집행이 저조하였다. 최근 4년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계

2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2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2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획된 예산액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매년 당해연도 교부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35.1%에 그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7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속적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28]은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원 비율은 중앙도매시장(가락시장, 인천삼산시장, 울산시장)의 경우 국비 30%, 지방도매시장(청주시장)의 경우 국비 20%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매시장 개설자)이다. 2025년 사업 대상은 가락시장, 인천삼산시장, 청주시장, 울산시장 4개소이다.

그런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가락시장, 인천삼산시장, 울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정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잔여 단계 및 사업장별로 필수 행절차의 완료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29]은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로 20~50인 이상 집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당 2년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율은 50%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모를 실시하여 전남 무안군과 경북 경산시 2개 시군을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10억 원씩 교부하였다. 그런데 전남

2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 7.

2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 7.

무안군은 국비 교부액의 98.2%를 차년도로 이월하고, 경북 경산시는 33.9%를 이월하는 등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이 사업 추진 시 연례적으로 예산 이월 및 사업 일정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30]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을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2025년에 신규 편입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대상자 44,563명 중 실제 가입 인원이 21,232명으로 가입률이 47.6%에 그쳤고, 저축률 역시 8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5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30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77.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가입률, 저축률이 저조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입률, 저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수요 기반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31]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보조율은 50%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데, 2022, 2023회계연도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 공사 지연 등 사업 지연 요인으로 인해 연내에 사업 완료 및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49.1%, 53.8%로 부진하였다. 2024회계연도는 실집행 실적이 85.2%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2025회계연도의 경우 71.7% 수준으로 재차 악화되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부족 및 연도내 집행 가능한

3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3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지연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절차 보완 및 연차별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32]은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에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한 8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매월 400만 원씩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그런데 사업 준비절차 및 전문의 채용 지연 등으로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의 실집행률도 56.3%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6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33]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및 국가유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골목·담장·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 유산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로 마을당 50억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 첫해인 2024회계연도에는 실집행률이 49%였고, 2025회계연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4,900만 원 중 실집행이 12억 4,4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55.3%였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고려한 보조금 교부와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의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34]은 고도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추진

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3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에는 부여,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비목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이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집행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2024회계연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도의 실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특히, 2025회계연도는 실집행률이 13.5%로 급감하였다. 각종 행정절차 지연, 대체부지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의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35]은 양산 통도사 부지 내 도서관, 전시실, 북카페 등 문화시설 2개동과 사찰음식점, 카페, 불교용품점 등 편의시설 2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2~2027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로 추진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편성 첫해부터 사업 지연이 지속되어 2025회계연도에도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③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6]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높은 중도탈락률과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도 일몰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최소 2년의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채용을 실시하였다.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3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 7.

3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 7.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교부예산을 이월, 집행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회 차원의 집행결과 및 성과 점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37]은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중소 유통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며, 국비 지원비율은 50%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과제 중 일부 사업은 당초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전통시장 소비 환급금 지급 등으로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④ 사업 설계 미흡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38]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1인당 지원 금액은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상이하였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분담비율 설정으로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정책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구조적 미비로 사업경비의 이전용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구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편성 시 이를 환류하지 않고 기존 편성 방식을 답습하는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

3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 7.
3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 7.

한 사전적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부의 **'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 구축'** 사업[39]은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중소 유통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며, 국비 지원비율은 50%이다.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율 50%로 최대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25년 사업 집행 결과 4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20억 원 중 8억 4,800만 원만 집행되었고 11억 5,2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2026년에는 2025년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안성시)만 5,000만 원을 지원한 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게 되었다.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중하였고 경상보조 비목의 한계로 자본보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집행이 제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공고 중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⑤ 성과관리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40]은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로 20~50인 이상 집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당 2년간 국비 25억 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율은 50%이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나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축비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센터별 장비 활용 건수, 전시회·세미나 개최 건수,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

3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 7.
4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 7.

기술교육 현황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 센터 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추이 등의 자료를 센터별로 모두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운영 중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용, 미이용 소공인의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생존율 등의 기간별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⑥ 제도개선 필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41]은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0% 이상 의무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이다.

한편,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대학에 파격 투자하여 혁신 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며, 학교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여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한다.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 지정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27개교(공동 신청 포함)를 지정하여 글로컬대학 선정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 RISE 사업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포함되었다. RISE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반면,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하므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교육부가 RISE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개편한 것을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42]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을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4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2026. 7.

4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 확대와 함께 중도해지 및 미수납 환수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환수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계좌 유지 여건을 고려한 조기인출, 사후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만기 도래 계좌와 민간 후원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 만기계좌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후원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민간후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43]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등에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환자의 처치, 전원, 영상판독 등 자문에 필요한 원격협진을 위하여 거점병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응급원격협진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운영비 등을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선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및 보상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원격협진망 실제 활용 및 원격협진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협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44]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특별시 40%, 그 외 지방자치단체 50%이다. 2025년 말 K-패스(현 모두의 카드) 가입자 수는 426만 7,000여명으로, 이 중 238만 5,000여명이 2025년에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 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더하여 환급금 산정,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부한다.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공단이 통보한 금액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가 선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약 1개월 뒤에 정산해주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4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 7.

4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6. 7.

그런데 2025회계연도에는 3개 지자체(강원 영월, 횡성 및 전북 김제)의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환급금이 이용자에게 선지급되었음에도 지방비 미편성으로 연내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력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적정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45]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고, 매칭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지방비 40:60, 그 외 지역은 국비:지방비 50:50의 비율로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고려하여 연간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 이후 지방자치단체 수요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수량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6. 7.

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분석

가. 개 요

(1)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 투자시기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및 지능정보화 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 유형	요건
·(제38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제38조제1항제2호) 지능정보화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제38조제1항제4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으나, 「국가재정법」이 개정(2026. 2. 10.)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개정(2026. 2. 10.)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제12조의2)[2] 또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3)·계획변경심사(제12조의4)[3]의 대상이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제4항[4]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선정하였거나, 국회가 그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제1항[5]에 따라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이루어지지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6]

---

2)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연계하여야 한다.

3)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사업추진심사) 및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

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성장 요인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을 검토하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 중 법령 제·개정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게 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7]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으로 지정되어 있다.[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한 경제성 분석결과[9], 사업추진 여건 및 정책효과 등 정책성 분석결과, 지역균형성장

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성장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9)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고,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계량적인 수치[10]로 도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발간 ·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10개 사업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사업, ② 국가유산 복원사업, ③ 국가안보사업 ·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④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른 사업, ⑤ 도로 · 상수도 등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⑥ 재난복구,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⑦ 재난예방사업(단,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⑧ 법령상 의무사업, ⑨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⑩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구분	면제 대상
제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 사업
제2호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제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제4호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제6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제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제9호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분	면제 대상
제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단,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11]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제 대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12]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13]에 따라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면제사업(이하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1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14]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62개로, 총사업비는 76.5조원 규모이다. 2024년에는 가장 많은 39개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건 감소한 3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19.4조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이다.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 2021~2025]

(단위: 개, %,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신청건수	58	51	49	51	60	269
면제건수	31	26	28	39	38	162
(비율)	(53.4)	(51.0)	(57.1)	(76.5)	(63.3)	(60.2)
총사업비 (면제사업)	10.5	17.2	12.0	17.4	19.4	76.5

주: 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15]로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52개, 경찰청 11개, 산업통상부 10개,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9개, 국토교통부 8개 순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많았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 23조 8,598

1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출 내용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2026. 2. 10.)은 2027년도 예산안 제출시부터 적용된다.

1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 선정 시점의 소관 부처를 기준으로 하며, 정부조직 개편(2025. 10.) 이후 2025년 말 기준으로 부처명을 통일하였다.

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2조 7,553억원, 산업통상부 7조 2,756억원, 보건복지부 6조 8,37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조 336억원 순으로 면제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 2021~2025년]

(단위: 개, 억원)

부처	사업 수	총사업비	부처	사업 수	총사업비
기후부	52	127,553	문체부	3	8,956
경찰청	11	8,855	행복청	3	5,330
산업부	10	72,756	외교부	3	4,295
복지부	9	68,375	우주청	1	7,581
과기정통부	9	50,336	질병청	1	5,483
기재부	9	10,163	조달청	1	3,116
국방부	9	8,000	방사청	1	2,873
국토부	8	238,598	행안부	1	1,780
법무부	6	6,474	대법원	1	1,584
해수부	5	5,880	관세청	1	1,270
농식품부	4	14,722	대통령비서실	1	879
중기부	3	37,200	기상청	1	683
교육부	3	34,475	다부처	6	38,179
			합 계	162	765,396

주: 총사업비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면제사유에 따라 구분하면, 제8호(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사유에 따른 면제사업이 51개로 가장 많았고, 제1호(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사유 및 제10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사유 36개, 제9호(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사유 15개, 제3호(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사유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제10호 면제사업이 42조 70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0%)을 차지하였고, 제8호 면제사업이 12조 569억원으로 그 다음 높은 비중(15,8%)을 차지하였다.

[면제사유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 2021~2025년]

(단위: 개, 억원)

면제사유	사업 수	총사업비
(제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 중등 교육시설의 신 · 증축 사업	36	42,338
(제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11	29,240
(제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	5,581
(제6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16,651
(제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12,253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1	120,569
(제9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5	118,055
(제10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6	420,709
합 계	162	765,396

주: 1. 총사업비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
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국토부, 2022년 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복지부, 2023년 면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국토부, 2023년 면제)은 제8조 및 제10호 사유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제10호 사유에 따른 면제사업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제10호 면제사업은 17개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총사업비 3조 2,547억원), 용인 ·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조 5,363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총사업비 1조 29억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 글로벌 실증(R&D)(총사업비 1조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총사업비 1조원)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9,97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8,516억원) 등이 포함되었다. 2025년에는 AI 관련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2025년 제10호 면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2025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1,400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AI 완전자율 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6,035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5,475
2025	AX 실증 밸리 조성(R&D)	6,000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9,973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2,69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516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5,363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32,547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2,05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7,818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10,000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5,510
	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10,000
합 계		137,828

주: 총사업비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제8호 면제사업은 12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16]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총사업비 6,475억원), 용인 그린 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3,867억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총사업비 3,622억원) 등 「폐기물 관리법」 제4조제4항[17]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1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7)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제8호 면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2025	경주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1,61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	6,475
	공주시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61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	3,622
2025	시흥스마트 허브 하수관로 정비(2권역) 임대형민간 투자사업(BTL)	729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1,535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3,428
	용인 그린 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천안시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포천시 에코 콤플렉스 조성사업	2,600
	화성오산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	3,185
합 계		31,334

주: 총사업비는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10호 면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면제사업 중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1) 제10호 면제사업 분석

제10호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18]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은 다른 면제사유와 달리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①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②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10호 사유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회피 등에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분석

제10호 사유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19]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10호 사유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총 16개 사업이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모두 완료되었다.

---

18)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경제 · 사회적 여건 변동을 의미한다.

1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제10호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 2021~2024년]

(단위: 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요구액	조정액
2021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22~'23	3,003	2,997[1]
	복지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23~'25	2,087	1,805[1]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	'21~'25	1,326	1,759[1]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21~'26	2,187	1,932[1]
2023	문체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23~'27	5,812	6,203[1]
	복지부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24~	7,892	3,231[1]
	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4~'33	19,314	11,628[2]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24~'31	6,161	3,808[2]
2024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25~	14,677	12,575[1]
	국토부	국도45호선(용인 이동~남동) 건설	'25~'31	8,843	9,526[1]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25~'32	7,292 (1단계) 4,441	미정 (1단계) 3,604[2]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25~'33	9,790	추정 불가
	질병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25~'28	5,483	5,052[3]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25~'29	11,971	10,445[2]
	산업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25~'34	9,743	3,026[2]
	교육부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25~'29	874	828[1]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검토안) 기준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대안) 기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제10호 면제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교부하였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2021~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제10호 사유)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요구액 대비 감액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개이다. 이 중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사업 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요구액 대비 1,0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단위: 억원, %)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감액규모
			요구액	조정액	(감액률)
2023	복지부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7,892	3,231[1)]	△4,661 (△59.1)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9,314	11,628[2)]	△7,686 (△39.8)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6,161	3,808[2)]	△2,353 (△38.2)
2024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14,677	8,864[2)]	△5,813 (△39.6)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11,971	10,445[2)]	△1,526 (△12.7)
	산업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9,743	3,026[2)]	△6,717 (△68.9)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검토안) 기준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대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시스템 보강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원 대상 규모와 재정소요를 전제로 예산이 우선 편성됨에 따라, 실제 사업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비해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3,231억원으로 요구액 7,892억원 대비 4,661억원(△59.1%) 감액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하반기(6개월) 사업 시행 시 우울 위험군 약 160만명 중 5% 수준인 8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참여자가 48,386명에 그쳤고, 국비 교부액 285억 8,900만원 중 실제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은 86억 1,608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20) 코드: 일반회계 3345-3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2026. 7.

30.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사업 초기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21]

[2024년 사업 참여자 및 예산 실집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월별 신규참여자	월별 누적참여자	실집행 실적			
			교부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4-07	6,872	6,872	28,589	8,616	19,973	30.1
2024-08	7,292	14,164				
2024-09	6,471	20,635				
2024-10	8,722	29,357				
2024-11	9,641	38,995				
2024-12	9,388	48,386				

주: 실집행 실적은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내역사업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R&D) 사업[22]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과제를 추진하여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보건의료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수요 증가는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투자 결정의 지연은 국민 생명·건강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0호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2023년 9월에서 2024년 4월까지 수행하였다.

2024년 4월 완료된 ARPA-H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1,628억원으로 요구액 1조 9,314억원 대비 7,686억원(△40.0%) 감액 조정되었다. 2024년 예산의 적정 수준은 285.2억원으로 도출되어, 2024년도

21) 2025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25. 1.)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를 약 10.7만명으로 조정하였으며('25년도 본예산 대비 126.5억원 감액),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97.3%로 개선되었다.

22) 코드: 일반회계 3031-557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2025. 7.

편성예산의 57.6%에 불과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209억 8,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23]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사체 · 위성 · 연구 및 인재개발 3개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 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진주 · 사천을 위성 특화지구, 대전 유성을 연구 및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24년 7월 완료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3,808억원으로 조정되어 면제 신청 당시 요구액 6,161억원 대비 2,353억원(△38.2%)이 감액 조정되었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단 위탁관리 방식이 우주항공청 직접관리 체계로 변경되는 등 추진체계가 조정되었고, 그 결과 5개 내역사업의 수행기관 협약과 사업비 교부가 2024년 10~12월에야 이루어져 2024회계연도 내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추진 경위 및 집행 지연 경과]

시 기	주요 경과	주요 내용
2022. 12.	(국가우주위)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지정	* 사업 기간: `24~`31(8년) * 총사업비: 10,406억원
2023. 8.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총사업비 조정: 6,161억원
2023. 9..	(KISTEP)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개시	
2024. 5.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업무이관	과기부 → 우주청 업무이관
2024. 6.	(KISTEP)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조사기간 연장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사업 추진체계 개편 * 사업 기간: `24~`30(7년) * 총사업비: 3,711억원
2024.7.	(KISTEP)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총사업비: 3,808억원
2024.10.~12.	내역사업별 사업 수행기관 협약 체결 및 예산 교부	

23) 코드 : 일반회계 1333-30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시 기	주요 경과	주요 내용
2025. 1.~2.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 3.	(과기부)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기본계획 검토 완료	
2025. 5.~6.	(기재부) 기본계획 협의 및 확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기본계획 고시	
2025. 7.	기본·실시설계 추진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면제 당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4년의 사업 착수 지연에 따라 이 중 85억 5,063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에도, 2025년 예산 230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배정 · 교부되면서 2025회계연도도 실집행은 부진하였다. 수행기관 가용예산은 약 315억 5,063만원에 이르렀으나, 실집행액은 38억 6,096만원으로 가용예산 대비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가용예산 대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전년도 이월액(A)	2025 당초예산 (B)	가용예산 (A+B)	실집행액	실집행률
합 계	8,551	25,856	34,407	3,861	11.2
민간발사장 구축	1,891	2,600	4,491	550	12.3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419	6,456[1)]	7,875	1,831	23.3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089	10,000	12,089	351	2.9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456	3,200	4,656	287	6.2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1,696	3,600	5,296	842	15.9

주: 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기관부담 현물 18억 4,575만원 포함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내역사업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공의 등 육성지원[24]'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충원율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과목[2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수당, 술기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전공의에게 다양한 임상 및 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학습·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기관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도 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내내역사업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밀도 높은 수련 교육을 제공하고, 전공의가 향후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련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는 수련 내실화의 핵심인 지도전문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전공의에 대한 밀착 지도, 평가 등 체계적인 수련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르는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은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의 수련교육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전공의 교육연구 활동비, 수련위원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수련시설 개선 지원', '전공의 파견수련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세부 구성 및 지원 대상]

세부 구성	지원 대상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수련병원, 전문의·전공의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 지원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지원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병원, 전문의·전공의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전공의(학회)
전공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평가	학회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 2025.9.

24) 코드 : 일반회계 4331-300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6. 7.

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동 사업은 2024년 8월 제10호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조정액은 8,864억원으로 면제 신청 당시 요구액 1조 4,677억원 대비 5,813억원(△39.6%) 감액 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본예산에 동 내내역사업 예산으로 2,332억 4,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2025년도 적정 예산은 1,680억 8,2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더해 2025년의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인 수련병원의 신청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였고, 전공의 복귀 지연으로 예산 집행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 2,332억 4,4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157억 3,8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동 사업은 전공의 실제 수련 참여와 수련병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전제로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임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규모와 시점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연도말 불용예상액의 타 사업 이용, 당초 목표 대비 제한적인 실적 등이 발생하였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26] 사업은 향후 10~20년 후 신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소기술실증 및 시제품·생산공정 등 통합솔루션을 종합 개발·지원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① 생산 자동화 및 로봇, ② 에너지, ③ 모빌리티,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⑤ 바이오·의료 5개 전략분야에서 기존시장을 혁신하거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10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산업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며, 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연구소·기업 등이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1분기 중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총괄지원과제와 신규과제 12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기획의 미비로 적정성 검토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5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

26) 코드: 일반회계 3174-36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7.

못하였으며, 예산의 84%가 불용되는 등 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원안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테마별 RFP(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고, 총괄 과제의 경우 기존 유사사업(산업기술알키미스트)과의 단계별 지원전략에서 중복 수행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민간참여 및 분담 의향도 원안에서 다소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사업계획서(원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대안)
사업기간	2025~2034년 (총 10년)	2025~2035년 (총11년)
총사업비	9,785.82억원 (국고 7,250억원, 민자 2,535.82억원)	3,026억원 (국고 2,726억원, 민자 300억원))
비고	· 당초 사업비는 미확정된 테마별 RFP를 기반으로 도출되어 산정 근거 미약 · 총괄 과제는 단계별 지원전략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복 수행되는 활동이 포함되는 등 예산 과다	· 사업의 추진 방식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테마별 사업비와 민간분담금은 유사사례를 통해 산정 · 총괄 과제는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 확보 후 중복 활동 등을 조정하여 효율화
비고	· 민간참여의향 조사 결과 당초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일부 테마의 분담 의향이 과소하고, 일부는 분담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사업 착수 첫해에는 신규 테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종합하면, 제10호 면제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 · 교부하였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가재정법」 개정(2020. 3.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을 통해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및 범위, 대상별 지원 단가, 국고보조율, 자부담률, 사업 추진 방식,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10호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둘째, 제10호 면제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이 부실하였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소명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정 총사업비가 산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1~2024년 제10호 면제사업 중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일부만 산출되었거나 추정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업은 2개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제10호 사유) 총사업비 조정 현황 : 2021~2024년]

(단위: 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요구액	조정액[1)]
2024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25~'32	7,292	미정
				(1단계) 4,441	(1단계) 3,604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25~'33	9,790	추정 불가

주: 1) 조정액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컴퓨팅)(R&D)[27] 사업은 임무지향형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및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은 2025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는데, 적정성 검토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총사업비가 3,604억원으로 조정(사업계획상 1단계 총사업비 4,441억원) 되었다.

KISTEP은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세계적인 기술개발 트렌드를 적절히 담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사업비 추정을 위한 사업

27) 코드: 일반회계 1159-433

설계 기준이나 세부 산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주관부처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2단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아 2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사업계획(1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단계 대안)
사업기간	2025~2029년 (1단계, 4년)	2025~2029년 (1단계, 4년)
총사업비	4,441억원	3,026억원
비고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 과제는 사업 1단계부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 높거나 기술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들 존재 ·일부 과제는 단가 과다 책정	·개발된 QPU를 기반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 과제는 QPU 개발 성과 확인 후 추진 필요 ·중복 가능성이 높거나 기술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들은 국내 한정된 인력 현황과 타 사업들과의 효율화를 고려하여 조정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단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

자료: KISTEP,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28]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지원금은 연구실의 수주한 R&D 과제의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지급수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을 2025년에 도입(2025~2033년)하였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기준금액(석사 月80만원, 박사 月11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

28)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31-30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7.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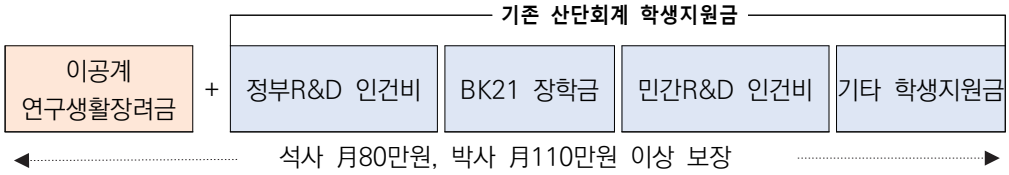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지원에 대해 대학단위 책임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계정이 갖춰진 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하였다.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은 35개이며, 2026년 8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43개 대학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대학계정을 갖춘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R&D를 수행하는 전체 대학 대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이 24.6%에 불과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현황]

2025년	2026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운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35개	8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I는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지원대상 및 범위확정을 위한 현황 조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

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 참여대학을 확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최저기준액 미만 수급 대학원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학별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수, 대학별 R&D 수행 규모, 기타 대학원생 지원사업 규모 등)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 적정 사업비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 도출 및 사업계획 변경을 권고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수요는 최종 수혜자인 대학원생이 아니라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도입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의 대학원생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향후 철저한 운영 성과 분석과 현장점검을 거쳐 소외되는 대학원생이 없도록 대학이 학생인건비 대학계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제10호 면제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사업 목적 · 범위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적정 사업비 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할 정도로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는 등 문제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일부만 산출되었거나 산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10호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성에 대한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책적 추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고 추진되는 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10호 면제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면제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목표 · 범위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제10호 면제사업 비중 및 면제 선정률 분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제10호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제10호 면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5년간 제10호 사유로 면제를 신청한 사업 중 80%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타 사유 대비 면제 선정률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제10호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0호 면제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총사업비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최근 10년(2016~2025년) 사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제10호 면제사업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 수를 기준으로 2020년 54.8%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22년에는 3.8%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5년 43.6%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017년에 9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8.2%까지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71.1%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

(단위: 건, 억원, %)

연도	사업 수 기준			총사업비(요구액) 기준		
	전체 면제 (A)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B)	비중 (B/A)	전체 면제 (C)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D)	비중 (D/C)
2016	17	-	-	28,060	-	-
2017	12	2	16.7	176,421	163,318	92.6
2018	30	16	53.3	128,798	109,638	85.1
2019	47	25	53.2	359,750	250,089	69.5
2020	31	17	54.8	300,215	249,151	83.0
2021	31	4	12.9	105,020	8,603	8.2
2022	26	1	3.8	172,438	137,584	79.8
2023	28	6	20.8	119,999	68,021	56.7
2024	39	8	20.5	173,700	68,673	39.5
2025	38	17	43.6	194,238	137,828	71.1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면제사유별 면제 선정률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면제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3개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여 126개(56.5%)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96.0조원 규모의 사업이

면제를 신청하여 34.5조원(35.9%) 규모의 사업이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제10호 면제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45개(총사업비 50.6조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여 36개(80.0%) 사업이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기준 신청사업의 83.1%에 해당하여 타 사유 대비 면제 선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1호~제9호 면제사업 현황 : 2021~2025년]

(단위: 건,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예타 면제 요구(A)	사업 수	51	49	41	40	42	223
	총사업비	22.2	29.1	23.6	11.5	9.6	96.0
예타 면제 대상 선정(B)	사업 수	27	25	22	31	21	126
	총사업비	9.6	3.5	5.2	10.5	5.6	34.5
면제 선정률(B/A)	사업 수	52.9	51.0	53.7	77.5	50.0	56.5
	총사업비	43.4	12.0	22.1	91.3	58.5	35.9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10호 면제사업 현황 : 2021~2025년]

(단위: 건,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예타 면제 요구(A)	사업 수	7	2	8	10	18	45
	총사업비	1.9	13.9	11.2	8.5	15.2	50.6
예타 면제 대상 선정(B)	사업 수	4	1	6	8	17	36
	총사업비	0.9	13.8	6.8	6.9	13.8	42.1
면제 선정률(B/A)	사업 수	57.1	50.0	75.0	80.0	94.4	80.0
	총사업비	44.8	98.9	61.0	81.2	90.8	83.1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제2항[29]에 따라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하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하여 타 사유 대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0호 면제사업의 선정률이 타 면제사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재정법」이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자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결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차관이 위원장인 재정투자평가위원회[30]나 기획예산처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 · 평가하여 면제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정부는 제10호 면제사업의 국무회의 의결 전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③ 심의기간 부족 등 면제제도 부실 운영 문제

일부 제10호 면제사업의 경우 면제 신청일로부터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

2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3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 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 · 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수자원 · 정보화 · 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 · 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이하 생략)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31]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을 면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부처의 면제요구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자료(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에 대한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2024년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부터 선정까지 1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32]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10호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례가 지적되었다.

감사원이 주요 문제사례로 지적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33]은 하수처리의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의 스마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동 사업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34]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

3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32) 감사원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일 초과 7일 이내의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46.1%)를 차지하였으며, 1일 이내의 기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3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9

3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경기침체 및 일자리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수립·시행("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 7. 14.)

다음날인 7월 29일 동 사업을 제10호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환경부가 동 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용역을 수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었고, 동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최소 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준비와 성과검증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감사원이 시범사업 대상지인 여주 공공하수처리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센서 교체 및 유지관리 인력 등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전기료, 약품 구입비 등에서 절감되는 사업효과 부분보다 많아,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1억원의 비용 투입이 필요하여, 준공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비 확보, 설계용역 발주 이전 행정절차의 이행, 사업부지 선정 등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실집행률 0.2%, 2024년 실집행률 1.9%로 집행이 부진하였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스마트하수관로 내역사업에 44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어 제2회 추경을 통해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기도 하였다. 각 지자체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교부현액 333억원 중 131억 1,300만원(추경예산 대비 41.0%)만 실집행되었으며 243억 5,600만원은 이월되었고, 14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 되는 등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지자체의 실집행부진과 사업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기간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그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회계연도 스마트하수관로 내역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소계	44,168	31,977	33,300	33,300	14,624	47,924	22,081	33,300	13,113	24,356	1,487	41.0
광양시	3,906	3,906	4,221	4,221	-	4,221	3,226	4,221	3,226	995	-	82.6
광주광역시	31,260	19,069	20,193	20,193	-	20,193	8,625	20,193	6,719	11,568	-	35.2
군포시	2,336	2,336	2,400	2,400	235	2,635	-	2,400	-	2,400	235	0.0
대구광역시	2,617	2,617	2,617	2,617	4,341	6,958	6,958	2,617	2,617	-	-	100.0
양평군	-	-	-	-	43	43	41	-	-	-	2	-
인천광역시	2,167	2,167	1,987	1,987	1,250	3,237	-	1,987	-	1,987	1,250	0.0
포항시	1,882	1,882	1,882	1,882	8,755	10,637	3,230	1,882	550	7,407	-	29.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선정된 제10호 면제사업의 검토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36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부터 선정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 이내인 사업이 25개(69.4%)로 전반적으로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일부터 선정일까지 소요일이 1일 이내인 사업은 5개(13.9%)로 2025년에는 용인 ·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획예산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제5항[35]을 개정(2025. 4. 16.)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심의기간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회의)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는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심의기간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2025년 면제사업 심의 현황을 보면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 글로벌 실증(R&D)' 사업 등 14개 사업이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주일의 기간 내 일괄 심의 · 면제되었으므로,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면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제 결정된 제10호 면제사업 현황 : 2021~2025년]

(단위: 억원, 일)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요구액)	사유	신청일	선정일	소요일
2021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22-23	3,003	제10호	2021-08-23	2021-08-24	1
2021	복지부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	21-25	1,326	제10호	2021-01-27	2021-01-27	0
2021	복지부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21-26	2,187	제10호	2021-01-27	2021-01-27	0
2023	복지부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24~	7,892	제10호	2023-08-18	2023-08-23	5
2024	국토부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건설	25-31	8,843	제10호	2024-08-21	2024-08-22	1
2024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25-32	7,292	제10호	2024-08-20	2024-08-22	2
2024	과기정통부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25-33	9,790	제10호	2024-08-20	2024-08-22	2
2024	질병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25-28	5,483	제10호	2024-08-19	2024-08-22	3
2024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25-29	11,971	제10호	2024-08-20	2024-08-22	2
2024	산업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25-34	9,743	제10호	2024-08-16	2024-08-22	6
2025	과기정통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26-30	10,000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과기정통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26-30	10,000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산업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26-30	9,973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교육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26~	32,547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단위: 억원, 일)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요구액)	사유	신청일	선정일	소요일
2025	다부처	AX 실증 밸리 조성(R&D)	26-30	6,000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다부처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R&D)	26-30	5,510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산업부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26-30	10,029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6-27	8,516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산업부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26-31	2,695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6~	7,818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다부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6-27	5,475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문체부	청년 문화예술 패스	26~	2,494	제10호	2025-08-13	2025-08-20	7
2025	산업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26-28	2,053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산업부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26-30	1,400	제10호	2025-08-14	2025-08-20	6
2025	산업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25-38	15,363	제10호	2025-04-15	2025-04-15	0

자료: 기획예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감사원은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한 심의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론(심의안건)에 작성된 그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6] 이에 정부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자료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였으나, 면제여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심의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6)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2024. 5.

(2) 제6호 · 제7호 면제 사업 지연 실태 분석

안전성 확보, 재난 예방 등을 위한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제6호 및 제7호 면세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들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6호 면제사업은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고, 제7호 면제사업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다. 두 유형 모두 시급성을 면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제6호 및 제7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제6호 면제사업은 4개이고, 제7호 면제사업은 7개로 총 1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2021~2025년 제6호 · 제7호 면제사업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소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요구액)
2021	교육부	목포해양대 노후선박 대체선 건조	'21~'25	1,054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2~	13,000
	해수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23~'29	1,374
2022	해수부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23~'26	1,223
	기후부	강남역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23~'27	3,500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23~'27	2,500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23~'27	3,000
		항사댐 건설사업	'23~'29	900
2024	해수부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25~'29	584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25~'29	779
	기후부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25~'28	99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선박건조[37]는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산 · 해양계 대학의 해기사 양성교육 및 해양조사를 목적으로 보유한 실습선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선박의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도 평가에 따른 친환경 노후선박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목포해양대 노후선박

37) 코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40-301의 내역사업

대체선 건조 사업이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목포해양대 새누리호(LNG선)의 설계 ·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당시 동 사업의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에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급성을 고려하면 2026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 동 사업의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2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설계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목포해양대 새누리호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억원)

선박수	대학 (선박명)	사업기간	규모 (톤)	총사업비	선박건조 투자계획						비고
					'22	'23	'24	'25	'26	'27	
1척	목포해양대 (새누리호)	'22~'28	5,314	66,314	1,008	-	1,838	2,846	-[1]	63,174	LNG (설계, 건조)

주: 1) 선박 설계 지연에 따른 예산 미편성
자료: 교육부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38]은 해양수산부 소관 광양(여천)항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묘도수도는 석유화학산업이 주종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 배후단지가 인접해 석유 운반선, 가스 운반선 등의 위험물 취급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형 특성상 항로의 폭이 좁고 불규칙해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해상 충돌에 따른 유류 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39] 묘도수도의 일부 구간(송도~소당도)은 선박의 속력을 제한(12 노트 → 8 노트)하고 교행을 금지하고 있어 부두 체선율이 증가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당도(3,999㎡) 전부를 제거하고 송도(21,000㎡) 일부를 제거하여 항로폭 300m를 일정하게 확보하고 준설심도를 10.5m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8)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59-303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 10.

39) 광양항 안전항로 타당성검토용역에서 항로이탈(충돌) 확률이 권고기준 대비 663배를 초과하였다.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개요]

- ㅇ 사업목적 :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정성 등 확보
- ㅇ 사업규모 : 항로폭(300m), 준설심도 DL(-) 10.5m 확보
- ㅇ 사업기간 : 2023~2032년
- ㅇ 총사업비 : 2,320억원(국비 100%)
- ㅇ 사업수행 :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업 위치도〉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당시에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초조사용역을 통해 지질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저 암반층이 당초 예상보다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암반을 제거하고 준설하기 위한 공사물량 및 공사 난이도가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도 898억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4. 12. ~ '25. 7.)를 수행하였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 2년 이상 추가 지연될 전망이다.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총사업비 등 변경(안)]

(단위: 억원)

구분	예타 면제 (2021년)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2022년~현행) (A)	해수부 변경요구 (2023년 요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5년) (B)	(B-A)
총사업비	1,374	1,422	2,332	2,320	898
사업기간	2023~2029년	2023~2030년	2023~2032년	2023~2032년	+2년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수국가산단을 왕래하는 선박은 대부분 석유정제품 운반선으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묘도수도의 선박 이격 거리 부족으로 선박 충돌 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및 해상재난 발생 가능성도 높아 통항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측면이 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40]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41]을 설치하는 것이다. 2022년 8월 수도권 등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 강남역 일대 구간과 광화문 일대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강남역 일대 구간이 5,356억원, 광화문 일대 구간은 3,272억원으로 2차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총 2,630억원이 증가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당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1년 간의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강남역, 광화문) 주요내용]

구분	강남역 일대	광화문 일대
총사업비	3,500억원 → 5,356억원	2,500억원 → 3,274억원
사업규모	직경: 10.6m, 길이: 5.8km 저수용량: 48.5만㎥	직경: 9.2m, 길이: 2.3km 저수용량: 12.2만㎥
사업구간	역삼무궁화공원~반포유수지	효자주차장~청계천
사업기간	2023~2027년→2023~2030년(시운전기간 포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40)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2-312의 내역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41)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큰 저류조(터널)을 설치하여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집중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잦은 유찰[42]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2025년에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43]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일대[44]의 홍수량 분산을 위해 신대방 보라매공원(유입부)에서 노량진 수도자재센터(유출부)로 이어지는 도림천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 2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6년 2월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4,977억원[45]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당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계획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계획상 2개 노선[46]에서 통합노선 1개로 최종 변경됨에 따라 공사구간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현재는 1년 간의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도림천 방수로 설치를 통해 방재 성능 향상 및 도림천 일대 침수 피해 예방
사업위치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 노량진동 수도자재센터
사업규모	L=4.5km, D=10.4m(일부 구간 12m), V=40.1만m3
시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 감리사 : ㈜ 건화 컨소시엄
공사기간	2024.12. ~ 2030.1.(61개월) ※ 종합시운전 12개월 포함
총사업비	4,977억원(국비 1,110억원, 지방비 3,867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42) 턴키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회 유찰되었다.

43) 코드: 일반회계 5338-30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7.

44) 도림천 유역은 상류부 관악산의 영향으로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시 홍수가 빠르게 유입되어 하천 하류부가 홍수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45) 국비: 111,043백만원, 지방비: 386,691백만원

46) 당초 계획은 2개 구간(도림천~샛강, 대방천~샛강)으로 나누어 각각 유출부를 설치할 예정이었음

2025년 동 사업에 편성된 국비 50억원은 2024년 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우선 시공분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47]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토지보상비 집행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2025년 12월 전액 서울시·경기도의 하천편입토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전성 확보, 재난 예방 등을 위한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제6호 및 제7호 면제사업 중 일부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를 고려하여 제6호 및 제7호 면제사업들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7)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내 지목별 소요면적에 대하여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방비와의 매칭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비 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결산 분석

가. 현 황

(1) 의 의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며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다만,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단순 개량·유지·보수 사업, 시설 또는 장비 구축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등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2)]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과 대상]

구 분	주요 내용
목 적	◦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사업추진 부처가 단계별로 협의·조정·관리하는 제도
대 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등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자료: 「국가재정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는 총칙,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총사업비 관리절차,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조정기준,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절차는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경우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7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화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등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4] 중앙관서의 장은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3)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2021.7.21.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과 정보화사업의 관리절차 구성이 별도로 구분됨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절차(건설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단 계	주요 내용
사업구상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규정에 의해 실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 ◦ 기본계획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 내에서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에 충분한 용역기간과 용역비를 부여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을 적절히 관리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변경 금지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 ◦ 기획예산처장관은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발주 및 계약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의뢰 ◦ 발주 의뢰를 받은 조달청장은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공고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사업비 감액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자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장(총사업비 관리절차)을 바탕으로 작성

(2) 국회 심의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국회 심의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를 개정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5)]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였다.[6)]

이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총사업비관리대상 현황」, 결산 부속서류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별 사업기간·총사업비·누적집행액·당해년도 집행현황 등 기초 자료만 제공될 뿐 기타 세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수록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7)]이 있었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사업별 개요(목적·내용)·국고지원율·총사업비 증감 현황 및 사유 등 세부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대규모 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조정이 잦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적인 국회 심의를 위해서는 향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에 사업기간 연장 또는 집행부진 사유, 장기계속계약 현황 등에 관한 정보 또한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6)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7)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6. pp.138-143

(3)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결산 현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1,001개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301조 9,163억원이고, 2025년까지의 누적집행액은 139조 2,004억원이다.

1,001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9조 2,883억원으로 이 중 15조 6,300억원이 집행되고 2조 9,955억원은 이월되었으며 6,629억원은 불용되어 81.0%의 집행률을 보였다. 1,001개의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111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890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6년 이후 집행예정액은 162조 6,994억원이다.

예산 및 기금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산사업은 총 765개 사업에 총사업비 합계는 279조 8,924억원으로 총사업비관리사업대상사업의 대부분(사업수 기준 76.4%, 총사업비 합계 기준 92.7%)을 차지하였고, 기금사업은 총 236개 사업에 총사업비 합계는 22조 240억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 수치는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 중인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대상사업은 제외된 것이다.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사업 개수	총사업비	'25년까지 집행액	2025년					'26년이후 집행예정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1,001	3,019,163	1,392,004	167,270	192,883	156,300	29,955	6,629	1,626,994
(계속)	890	2,867,707	1,240,713	160,983	184,753	148,335	29,955	6,463	1,626,994
(종료)	111	151,456	151,291	6,287	8,130	7,965	-	165	-
예산	765	2,798,924	1,287,174	156,917	180,749	146,767	28,287	5,696	1,511,674
(계속)	671	2,657,999	1,146,325	151,901	174,242	140,336	28,287	5,620	1,511,674
(종료)	94	140,925	140,849	5,016	6,507	6,431	-	76	-
기금	236	220,240	104,830	10,353	12,134	9,533	1,668	933	115,320
(계속)	219	209,708	94,388	9,082	10,511	7,999	1,668	844	115,320
(종료)	17	10,531	10,442	1,271	1,623	1,534	-	89	-

주: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 중인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2026.5.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에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는 2023년 941개에서 2025년 1,001개로 60개(6.4%) 늘어났고, 총사업비 합계는 2023년 285조 6,406억원에서 2025년 301조 9,163억원으로 16조 2,757억원(5.7%) 증가하였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 수	941	996	1,001
부처 수[1)]	38	41	40
총사업비 합계	2,856,406	2,922,486	3,019,163

주 1)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 191개 사업을 실제 집행 관리하는 부처 소관으로 작성
1.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소관 기관은 총 40개인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편성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을 실제 집행 관리하는 부처 소관으로 작성한 결과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은 정부 각 기관에서 사용할 청사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로는 청사 등 건물을 사용할 기관에서 사업 집행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은 총 191개 사업으로 경찰청 94개, 법무부 25개, 국세청 20개, 기획재정부 12개, 대법원 11개, 해양경찰청 8개, 외교부 6개, 행정안전부 3개, 관세청·기상청·소방청 각 2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토교통부·국회·대통령경호처·병무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1개씩 17개 기관에서 실제 집행 관리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을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301개, 기후에너지환경부 110개, 경찰청 94개, 해양수산부 68개 및 교육부 65개 순으로 많았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 219조 3,139억원, 해양수산부 15조 4,322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4조 6,44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0조

2,801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조 2,67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25년 집행액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 11조 8,460억원, 해양수산부 1조 1,703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조 23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54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의 주요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 · 철도 · 공항 등 SOC 건설 및 유지 · 보수 사업,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 및 유지 · 보수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과 같은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주로 편성 · 집행되었다.

반면 2025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기관을 살펴보면, 병무청과 같이 2025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재외동포청 2.0%, 통일부 39.3%, 외교부 41.9%, 국세청 51.4% 순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소관기관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2025년까지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경찰청	94	36,785	7,936	2,203	2,656	2,361	243	52	88.9
고용노동부	12	4,369	2,283	721	1,139	727	402	9	6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389	9	10	10	9	1	-	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51,473	23,435	6,852	8,349	5,954	1,861	534	71.3
관세청	2	1,394	337	203	203	198	-	5	97.5
교육부	65	32,767	8,533	2,299	3,454	1,921	1,497	36	55.6
국가보훈부	11	5,125	1,933	473	536	452	71	12	84.3
국가유산청	6	2,218	482	256	300	200	96	4	66.7
국세청	20	6,796	1,481	631	508	261	214	33	51.4
국토교통부	301	2,193,139	1,044,550	107,048	118,460	102,775	13,067	2,620	86.8
국회	2	756	58	42	67	58	0	9	86.6
기상청	3	1,640	348	164	187	99	87	1	52.9
기획재정부	15	7,854	3,447	624	682	655	15	13	96.0
기후에너지환경부	110	146,443	47,588	11,219	13,543	10,230	2,611	703	75.5
농림축산식품부	29	102,801	70,453	2,907	3,438	2,656	672	109	77.3
농촌진흥청	6	10,298	2,878	626	736	535	22	179	72.7
대법원	14	12,823	4,414	1,123	1,323	1,120	143	60	84.7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2025년까지 집행액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대통령경호처	1	137[1)]	137	129	166	102	55	9	61.4
문화체육관광부	43	22,135	8,314	2,145	3,653	2,351	1,097	205	64.4
법무부	26	28,610	8,580	1,627	1,713	1,565	142	6	91.4
병무청	1	939	0	-	-	-	-	-	-
보건복지부	14	30,251	19,828	1,233	1,814	1,202	594	17	66.3
산림청	9	6,835	2,175	583	586	343	223	20	58.5
산업통상부	15	26,419	10,953	2,686	3,427	2,136	1,285	5	62.3
새만금개발청	1	11,330	441	402	407	406	-	2	99.8
성평등가족부	4	1,397	120	122	135	74	-	61	54.8
소방청	5	3,091	2,148	770	982	848	108	26	86.4
외교부	6	2,458	523	86	105	44	25	36	41.9
우주항공청	6	4,032	1,107	820	826	808	18	-	97.8
인사혁신처	1	2[1)]	2	2	2	2	-	0	100.0
재외동포청	1	300	10	72	150	3	147	-	2.0
조달청	3	4,349	1,284	163	193	185	-	7	95.9
중소벤처기업부	6	3,349	773	214	261	213	45	3	8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32	231	130	130	129	-	1	99.2
질병관리청	8	4,346	337	93	324	178	137	9	54.9
통일부	2	2,242	626	263	295	116	48	131	39.3
해양경찰청	9	4,536	2,921	1,160	1,198	908	19	270	75.8
해양수산부	68	154,322	80,579	13,307	15,878	11,703	2,919	1,256	73.7
행정안전부	16	28,104	20,508	1,992	2,264	1,325	774	163	5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62,675	10,243	1,871	2,782	1,448	1,314	20	52.0
합계	1,001	3,019,163	1,392,004	167,270	192,883	156,300	29,955	6,629	81.0

주: 1) 표상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업 수치는 '(참고3) 국유재산기금 관리주체별 집행 현황', 인사혁신처 소관 사업 수치는 '(참고2)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현황(기금)' 자료에 따른 수치이며, 이와 달리 '사업별 집행명세서(상세)'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처 특수운전훈련장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341억원, 인사혁신처의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430억원

1. 기획재정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 191개 사업을 실제 집행 관리하는 부처 소관으로 작성
2.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제외
3. 2025년 예산액이 없더라도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상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인 경우 이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나. 분석의견[8)]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81.0%로 전년도 집행률 79.7%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부 사업들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19조 2,883억원 중 15조 6,300억원이 집행되고 2조 9,955억원은 이월되었으며 6,629억원은 불용되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0%로, 전년도 79.7%보다 1.3%p 상승하였다.

[2023~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현황]

(단위: 개, 억원, %)

연도	사업수	총사업비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941	2,856,406	171,759	206,607	156,000	29,328	21,279	75.5
2024	996	2,922,486	175,021	202,607	161,459	27,925	13,224	79.7
2025	1,001	3,019,163	167,270	192,883	156,300	29,955	6,629	81.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집행실적이 없거나 부진할 경우 당초 계획하였던 연차별 사업추진 일정이 순연되면서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지연 없이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8)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여부,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등은「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집행명세서와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집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①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기준으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1,001개 중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허준이 기념관 신축 사업 등 10개 부처 53개 사업으로 파악된다.

53개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2,360억 5,6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2,710억 3,3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964억 7,600만원(35.6%)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745억 5,700만원(64.4%)은 불용처리되었다.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상 2025년도에 집행실적이 전무했던 사업 중 불용액 규모가 컸던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으로 불용액이 688억 6,300만원이었고, 그 다음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으로 불용액은 664억 5,300만원이었다.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준이 기념관 신축	22,000	930	930	0	930	0
	서울성동우체국 건립공사	48,000	1,115	1,115	0	0	1,115
교육부[9]	전남대병원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	41,289	9,002	22,588	0	22,588	0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신축사업	35,033	677	677	0	677	0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사업	41,183	2,265	2,265	0	2,265	0
국가유산청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30,430	9,000	9,000	0	9,000	0
국토교통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568,549	1,000	8,358	0	8,358	0
	서평택-안산 고속도로 확장	1,000,157	742	2,559	0	2,559	0
	안산~인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1,688,900	1,100	3,854	0	3,854	0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7,097,400	68,863	68,863	0	0	68,863
	대구경북신공항건설	2,698,907	66,653	66,653	0	200	66,453
	새만금신항인입철도	1,585,941	5,400	5,400	0	0	5,400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1,071,918	1,000	1,000	0	0	1,000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3,233,020	2,500	2,500	0	0	2,500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건설	884,300	500	500	0	500	0
	울산 도시철도 1호선	381,440	6,000	6,000	0	6,000	0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건설공사	72,395	2	2	0	2	0
	충북선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2,129,123	9,900	9,900	0	0	9,900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918,947	1,000	1,000	0	0	1,00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영월 주천 주천-판운	70,871	786	786	0	786	0
기획재정부	강원 인제경찰서 이전 신축	25,599	158	0	0	0	0
	강원 경찰특공대 신설 신축	22,596	260	0	0	0	0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52,862	2,386	3	0	0	3
	경기경찰청 통합숙영시설 신축	32,350	1	1	0	0	1
	경기북부 연천경찰서 이전 신축	22,511	104	6	0	0	6
	광주동부서 신청사 신축공사	37,193	652	416	0	330	85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타운 재건축	46,089	2,082	5	0	0	5
	부산 연제경찰서 신축	39,790	350	0	0	0	0
	서울 중부경찰서 신축	64,056	3,165	419	0	0	419
	서울 용산경찰서 신축	47,962	952	590	0	590	0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37,392	57	57	0	57	0
	경찰청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축	32,053	243	0	0	0	0
	서울 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 이전신축	28,389	2,868	0	0	0	0
	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28,511	413	534	0	413	121
	국세청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29,369	1	319	0	1	318
	국세청 잠실세무서 청사 재건축	27,850	1	387	0	1	386
	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24,091	827	687	0	0	687
	전주 로파크 신축	21,203	1	1	0	0	1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58,034	301	0	0	0	0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34,256	233	233	0	0	233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	30,950	1,588	1,595	0	1,588	7
기후에너지환경부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46,251	620	620	0	605	15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80,077	132	326	0	326	0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소각) 증설사업	47,025	5,460	16,004	0	9,996	6,00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31,680	600	975	0	975	0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5,377	1,780	8,523	0	6,508	2,015
	울산청량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	65,978	510	1,431	0	1,421	10
문화체육관광부	정동극장 재건축	32,118	923	923	0	0	923
해양수산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38,983	2,743	2,743	0	2,743	0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40,000	7,714	8,789	0	8,789	0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48,000	3,540	3,540	0	0	3,540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행정안전부[10]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건립	24,996	3,456	3,456	0	0	3,4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384,555	3,500	4,500	0	4,412	88
합 계		25,227,949	236,056	271,033	0	96,476	174,557

주: 1. 2025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업은 제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2025년도 부처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실적이 전무하였던 주요 사업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산청의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11]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산 통도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통도사 부지 내 도서관, 전시실, 북카페 등 문화시설 2개동과 사찰음식점, 카페, 불교용품점 등 편의시설 2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6억 300만원이다.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23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건립 위치 및 내부 평면 조정 등이 발생하며 기본계획 확정이 2023년 12월로 지연되었다. 또한, 2024

9)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상 수치 오류는 디브레인시스템상 입력 오기재로 인한 것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육부	전남대병원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	41,289	2,566	2,566	0	2,566	0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신축사업	35,033	500	500	0	500	0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사업	41,183	500	500	0	500	0

10)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행정안전부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건립	24,996	1,728	28	0	0	28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7.

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2026년 3월에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완료되었다. 즉, 문화유산 심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속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실제 공사는 2026년 4월에야 착공되었다.

이로 인하여,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6억원의 경우 국가유산청은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신규 본예산 편성 없이 이월된 설계비만이 집행되었다. 또한, 2025년에도 앞서 살펴본 공사 발주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에 편성된 공사비 45억원을 국가유산청은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이처럼 동 사업은 편성 첫 해부터 사업 지연이 지속되어 2025년에도 편성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유산청은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공사 일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예산 미집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12]는 수도권과 경남 · 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조 1,073억원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나,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23.10. ~ '24.6.)하였다.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및 실시설계를 수행('24.6. ~ '25.10.)하였고, 「국가계약법」상 필수 행정절차(입찰 · 심사 등) 소요로 인해 전체 공사계약이 2026년 1월에야 체결되었다.

그 결과, 2025년 본예산 1,188억 6,300만원에 대해 제2회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감액하여 688억 6,300만원만을 편성하였음에도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 등 건설사업의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7.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13]은 국내 자원순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자원순환산업 연구·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이고, 총사업비는 462억 5,100만원이다.

동 사업은 사업 집행 지연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 감액, 불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설계일정 변경으로 12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 설계용역에 필요한 추가조사 등으로 169억 2,800만원을 전액 감액 변경하였고, 2024년에는 75억 1,800만원 감액 변경하였다.

2025년에는 타당성재조사 철회로 운영계획수립 용역 사업 공고, 협상 등의 용역계약 행정절차기간 절대 부족으로 일반연구비 5억원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설계용역 재개 및 준공 지연으로 설계용역비 준공금 6억 500만원을 이월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건축인허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8월에 공사 사업공고를 한 뒤,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전 행정절차는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동절기 공사도 기후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2026년에도 예산 집행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허가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공사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14]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기자재의 국산화,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전환 필요에 따라 수산양식 기자재 생산·유통, 실증 등이 연계되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80억원이다.

---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1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동 사업은 2023년 착수 이후 2025년까지 보조사업자 기준 실집행액이 전무하다. 2023년 교부액 10억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교부현액 35억원 중 10억원은 불용, 25억원은 이월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5억원을 모두 불용 처리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25년 편성된 국고보조금 17억 7,0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집행 여건을 점검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2년 연속 교부액 전액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준비 미흡과 관리 소홀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의 수요와 사업 수행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갯벌유산보전원 건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15]은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대하여 통합 관리하라는 권고를 근거로 이를 위한 보전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9억 8,3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2026년에 건립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 계획은 2026년 상반기에 설계 단계를 완료하고, 2026년 완공에서 2년 지연되어 2028년 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 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 내 착공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당초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2024년~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 시작 연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79억 7,000만원 중 9억 5,600만원(12.0%)을 집행하고 37억 8,700만원을 이월(47.5%)하였으며, 42억 6,400만원(53.5%)을 불용하였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예산 집행 관리 역시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이월된 예산이 재차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 관리 및 예산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16]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구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45억 5,500만원이다.[17]

2025년 동 사업의 예산에는 기본조사설계비 3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25년에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단계를 진행하는데 그쳤다. 그에 따라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한 기본조사설계비 43억원 중 8,800만원만 불용되고 나머지 42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다. 그 과정에서 9억 1,200만원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재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을 2026년 1월에 착수하였는데, 2026년 7월 완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이 구체화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의 발표가 계획(2026년 4월말) 대비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동 사업은 건축설계공모 발표 연장 등으로 이후의 절차가 순연될 수 있고, 기본조사설계는 이미 몇 년간 연기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2025년 주요 집행부진 사업

2025년도 기관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집행실적

1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7.

17)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명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041억 8,000만원이다.

이 부진하였던 주요 사업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18]은 초산업적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조 505억 7,700만원이다.[19]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2021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1년 4월에 완료되고 주관기관 선정(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사업단장 선정 및 사업단 조직 신설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1년부터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후에도 건설공사(기반시설)·장치(가속장치·빔라인)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2024.7. 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완료·기본계획 변경(2024.10.)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절차에 착수했으나, 4차례의 조달청 입찰공고('24.12월, '25.4월, 5월, 10월)가 모두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었고, 2025년 12월에야 단독응찰 시공사(POSCO E&C 컨소시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연구개발활동비등의 실집행률은 2021년 0.5%, 2022년 24.5%, 2023년 37.8%, 2024년 53.4%. 2025년 38.1%,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의 실집행률은 2022년 16.4%, 2023년 7.0%, 2024년 0%, 2025년 0%, 그리고 연구개발건축비 실집행률은 2024년 0%, 2025년 0%이다.

그리고 2025년의 경우 예산현액 1,257억 6,800만원 중 257억 4,700만원을 실집행하였고, 1,000억 2,1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이처럼 동 사업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교부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7.

19)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조 1,643억 1,900만원이다.

국가보훈부의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0]은 개원 후 30년 경과하여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하고 재건축(증축)하기 위한 재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60억 7,000만원이다.

국가보훈부가 당초 202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공사 계약 체결 후 4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25년 예산에는 3년차 사업비 중 공사비 4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설계 단계는 지연되어 2025년 10월에야 완료되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공사비로 편성한 2025년 보조금 44억 9,000만원 중 41억 9,000만원을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사업으로 전용(2025.12.22.)하였고, 나머지 3억원의 공사비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되었으나 공단은 피교부액 3억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이처럼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 전액을 전용하거나 실집행기관 차원에서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인바,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의 변경된 완공 예상 시점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사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공정률에 대한 점검 등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계 완료(2025.10.) 후 202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실제 입찰을 비롯한 계약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억원의 보조금이 공단으로 교부된 시점(2025.12.22.)에서는 연내 계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국가보훈부는 보조금을 공단에 지급하였고 공단은 불용액을 정산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바,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실제 공정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기관에 유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7.

국토교통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21]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여 흑산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833억원이다.

동 사업은 2025년 2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9억 4,500만원은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1,000만원 중 100만원(10.0%)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 방안 검토'('23. 6.) 결과 흑산도 소형공항의 공항등급을 2C에서 3C로 상향함에 따라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500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23. 8.)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요청이 지연되었고,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수의계약 예비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설계비 증가분 지급을 합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인바,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22]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인 내역사업 강남역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356억 200만원이며, 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274억 2,100만원이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에 실집행액이 전혀 없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한 45억원 전부 2024년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7억 3,100만원 중 60억원을 서울시에 교부하였는데, 서울시는 45억 100만원만 실집행하였고 기후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7.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에너지환경부가 교부한 60억원 중 59억 9,900만원은 이월하였다.

2025년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교부액 15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9,900만원을 합한 209억 9,900만원 중 81억 4,5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사업비 추가 협의로 일정기간 소요되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턴키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잦은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순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 및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는 추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23]는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유역 일대의 홍수예방을 위해 지류인 도림천 유역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본류인 한강으로 배출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방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005억 1,900만원이다.

동 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2차례의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편성된 설계비 예산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30억 3,100만원도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24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5억원을 전액 서울시에 교부하였으나 서울시는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만 집행하였을 뿐 기후에너지환경부 교부예산은 전액 2025년도로 이월 처리하였다.

2025년 동 사업에 편성된 국비 50억원은 당초 2024년 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우선 시공분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였으나, 연내 토지보상비 집행이 곤란하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전액 미교부되었고, 이는 2025년 12월 서울시·경기도의 하천 편입토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전액 전용되었다.

이처럼 동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당초 편성된 토지보상비 50억원을 전액 전용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24]는 곰 사육 종식 및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제한에 따른 야생동물 유기·방치 증가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2억 7,900만원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준비 미흡으로 매년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5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2025년 9월 발생한 집중호우 사고로 인해 공사 지연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2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9억 2,400만원 중 44억 3,100만원만을 집행하였고, 63억 4,4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하고 61억 5,000만원은 불용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동 사업의 전체 공정은 52.71% 완료되었고, 2026년 2월 기준 54.19% 완료되었으며, 필수시설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곰 사육 종식에 따라 시급히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부터 사업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고, 2025년 집중 호우로 시설공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25]는 전기차

2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2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환경친화적 재활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25억 6,700만원이다.

동 사업은 2023년 10월 수시배정 후 총사업비 등록, 공공건축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4년 3월에 설계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2023년 예산 10억원을 이월하였다. 이후 2024년은 설계 미준공에 따라 2024년 공사비 등 44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년에는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절차가 연내 미완료 되어, 예산현액 75억 8,100만원 중 45억 1,800만원(2024년 이월예산 39억 7,400만원, 2025년 본예산 5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이처럼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 부진 및 예산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2026년에도 당초 예상보다 총사업비 재원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공사 시작 시점이 8월로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관리를 철저히하여 공사비 이월 및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26]은 자율주행·AI 기반 지능형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현장 실증단지(100ha)와 실증데이터 분석실·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30억 4,200만원이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조정 심의, 조달청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2023~2025년 실집행률은 21.6%, 18.2%, 5.2%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의 경우 교부현액 102억 1,200만원 중 2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1,9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이처럼 초기 단계의 지연이 이후 모든 단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사업 단계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27]는 노후화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관리대상인 내역사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939억 8,700만원이며, 내역사업 울산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802억 9,500만원이며, 내역사업 인천삼산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이고, 총사업비는 702억 6,000만원이며, 내역사업 청주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이고, 총사업비는 1,746억 4,500만원이다.

2025년 동 사업 추진 결과, 청주시장을 제외한 가락시장(18억원), 인천삼산시장(6억 7,400만원), 울산시장(4억 1,000만원) 편성 예산이 모두 전액 불용되었다.

가락시장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2024.11.~2025.11.)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고, 인천삼산시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5.7.~2026.1.)를 결정함에 따라 설계공모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울산시장은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되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다수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야 설계 착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착공 예정 시기가 지연되었다.

이처럼 가락시장·인천삼산시장·울산시장 모두 사업 선정 이후 당초 계획 대비 수년씩 지연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여 단계 및 사업장별로 필수 행정절차의 완료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의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28]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양파·마늘·파 등 파속채소의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43억

2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2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2,200만원이다.

2023~2025년 동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2023년 80.7%, 2024년 73.2%, 2025년 54.0%로 매년 하락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불용액이 6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132억 1,600만원)의 46.0%에 달하였다.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2024년 5월 시점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관로 이설 문제가 미완료된 상황으로 계획설계조차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진흥청은 2025년 하반기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중기사업계획서대로 2025년에 공사비 52억 5,200만원을 포함한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공사비 52억 5,200만원 전액과 감리비 8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설계 완료 및 인허가 취득 등 현장 여건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의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29]은 종전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2,446억 3,600만원이다.

2024년 7월 29일 동 사업의 사업자는 대법원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가 필요한바, 대법원은 같은 해 8~11월 동안 조달청에 3차례 사전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은 3차례 모두 반려하였고, 대법원은 202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분 2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였는바,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절한 이월에 해당한다.

또한, 2025년 3월 대법원이 조달청에 요청한 4차 사전검토도 증빙서류 누락으로 반송됨에 따라 대법원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2024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예산 미집행이

2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6.7.

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고이월과 불용은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원 배분·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추후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30]은 경기도 여주시에 가정법원의 각종 후견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건 당사자를 위한 관찰·교육·상담·집중치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서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78억 9,300만원이다.

당초 계획상 기본설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는 2026년 1월에는 완료되고, 2026년 6월경에는 착공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그런데 신축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필요해졌고, 당초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2025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에 실시설계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2025년 계획현액 35억 8,400만원 중 6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차년도로 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보상비로 편성된 25억 1,8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참고로, 2025년 4월 대법원은 여주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을 하였고, 최종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는 2025년 12월 18일에 이루어졌는데, 2026년 4월 조달청에 요청한 중간설계 적정성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실시설계 재개 및 완료, 적정성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은 추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후견·복지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바, 대법원은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취지를 적시에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6.7.

산림청의 산림휴양등산증진[31]은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중 총사업비관리대상인 내역사업 국립문경산림 레포츠진흥센터조성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65억 4,700만원이며, 내역사업 국립강릉산림 레포츠센터조성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3억 7,100만원이다.

국립문경산림 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의 경우 2022년은 예산액 5억원 중 3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4%)되었고, 2023년은 예산현액 16억 8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되었으며, 2024년(52.2%)과 2025년(57.5%) 모두 5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지연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5년도 예산에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총 53억 2,200만원을 과다 편성하였고, 그 결과 해당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되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결여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이다.

한편, 국립강릉산림 레포츠센터조성의 경우 사업 초기인 2023년에는 집행률 80.8%로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액 9억 6,200만원 중 3억 9,000만원(집행률 40.5%) 집행에 그쳤고, 2025년 역시 예산액 27억 9,700만원 중 7억 4,900만원(집행률 26.8%)을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을 최소한으로 예측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와 감리비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결국 공사비와 감리비 예산 전액(27억 9,000만원)을 타 사업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과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

3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성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사업 지연과 예산의 이월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이·전용을 발생시켰으므로, 향후 산림청은 사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의 국립산지생태원[32]은 대형 산불피해지 관련 연구, 교육, 전시기능을 갖는 국가 거점 연구기관 설립으로 산림복원 및 지역주민 삶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96억 200만원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24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전체 사업 일정이 단계적으로 순연되고 있다.

이에 2024년 예산액(17억원) 중 4억 1,3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액(17억원)의 81.2%에 해당하는 13억 8,00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하였다.

또한, 「202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 계상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 후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2025년도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모두 편성하여, 13억 8,000만원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였다.

이처럼 동 사업은 사전 기획 단계의 현장 여건 및 추진 전략 검토 부실로 사업 계획 변경과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고,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이·전용이 초래된바, 산림청은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추가 지연 없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33]은 기존 광역관광자원개발에서

3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중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인 내역사업 덕산온천휴양마을의 경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41억 4,800만원이며, 음식관광창조타운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16억원이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호우에 따른 사업장 침수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예산현액 68억 4,700만원 중 44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64.7%로 부진하였다.

또한, 음식관광창조타운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2025년 예산현액 51억 2,6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0.5%로 부진하였다.

이러한 공정 지연은 대규모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적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광역관광개발 사업 목적 달성마저 위협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자율계정 사업의 특성을 존중하되, 권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을 겪는 내역사업을 안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역자율계정 신규 사업 검토 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정 관리와 자발적인 실집행률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34]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사체·위성·연구 및 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관리대상인 내역사업 민간발사장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92억 6,000만원이며, 내역사업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9억 3,400만원이며, 내역사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

3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7.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7.

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39억 7,800만원이며, 내역사업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가 1,336억 8,700만원이며, 내역사업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71억 2,700만원이다.[35]

동 사업은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2024년 7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단 위탁관리 방식이 우주항공청 직접관리 체계로 변경되는 등 추진체계가 조정되었고, 그 결과 5개 내역사업의 수행기관 협약과 사업비 교부가 2024년 10~12월에야 이루어져 2024회계연도 내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어려웠다.

이러한 2024년의 사업 착수 지연은 2025회계연도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4년 사업 착수 지연으로 약 85억 9,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230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배정·교부되어 수행기관 가용예산은 약 315억 9,600만원 수준에 이르렀으나,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가용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실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은 장비 도입 관련 선행절차의 추가 진행에 있다.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 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5년 3~5월 장비수요 재조사를 실시하고, 5~6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7월에야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내역사업별 설계 공고 등 실집행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이 2024년 11월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상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이후에야 장비 도입이 가능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예외적으로 계획설계 이후 장비 발주가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해당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장비비의 실질적 집행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5)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우주항공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역사업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 ◦민간발사장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98억 4,700만원
-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9억 3,400만원
-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가 1,336억 8,700만원
-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71억 2,700만원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40억 300만원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은 단순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바,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을 단순히 교부액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실집행률, 기본·실시설계 진행 상황, 장비 심의 및 조달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미집행 예산의 수행기관 누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36]는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이다.[37]

당초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재검토 및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 사업시행주체가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변경된 후에도 2023~2024년 동안 서울대학교와의 시설사업 및 임대차 비용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재외동포협력센터 내부에서 유보된 상태로 2025년까지 대부분 이월되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5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기에 공사비 7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설계 및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

건축허가를 접수한 이후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31일에 출연금 72억 3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관계로 중간설계에 소요된 3억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집행 출연금 146억 7,6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026년 하반기 종료된 후 실시설계,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7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

3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7.

37)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재외동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이다.

이는바,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2025년 출연금은 교부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에서 불용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교육문화센터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추가적인 지연요소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8]은 현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 및 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술·연구 지원, 정보교류·전시·체험·소통 등 사료관·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50억 7,200만원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10.) 등으로 건립 일정이 지연되어 2026년 말 준공, 2027년 개관으로 설립 일정이 지연되었다.

그 과정에서 2024년 건축 공사 및 관련 감리 용역계약이 연도 말에 뒤늦게 체결되었고, 해당 예산의 상당 부분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5년 공사비도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그 결과 2025년 예산현액 160억 970만원 중 건설보상비 46억 1,100만원, 공사비 55억 4,800만원, 감리비 10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등 112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9%)되었고, 48억 3,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월률 30.0%)되었으며, 200만원은 불용되었다.

그런데 2026년 통일정보자료센터 준공 및 2027년 개관 준비를 위하여 2026년 예산에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설치를 위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사업 예산 6억 8,500만원과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36억 5,3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2026년 말 통일정보자료센터 준공이 필수적인바,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2026년 준공 일정에 맞추어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3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6.7.

해양수산부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는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421억 9,800만원이다.

당초 2024년 10월 1단계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본공사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신관 종사자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선행 공정인 1단계 철거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본공사 착공 또한 지연되었다.

또한, 2025년 1월 조달청 발주 후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기술협의 및 설계 보완 등 행정 절차가 추가 소요되면서 2025년 11월에야 최종 계약이 체결된바,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보조사업자(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 기준 2025년 예산현액 878억 5,100만원 중 102억원을 집행(실집행률 11.6%)하고 776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 시에는 사업 공정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의 이월 및 재이월을 야기하였고, 2015년부터 지속된 이월의 연례적 반복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만성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수행하고, 아울러 현장의 실제 집행 속도와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향후 관행적인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광양항)[40]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598억 7,100만원이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 시에는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공사 유찰(장비 6회, 공사 2회)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2026년 5월 기준 2028년 완공 및 2029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39)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4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7.

사업지연에 따라 실집행률도 저조하여 2022년에는 보조사업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 45억 9,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29.3%인 13억 4,6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3년 및 2024년에는 교부액 전액이 이월되었다. 그리고 2025년의 경우도 당해 교부액 55억 4,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동 사업은 실제 공정률과 무관하게 연부액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의 이월 및 재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보조금 관련 지침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예산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추가적인 지연이나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설[41]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33억 200만원이다.[42]

2025년 예산은 설계용역 추진 및 착공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공사금액 소요비용과 감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2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공모 절차이행('25.5.)으로 설계 용역이 6월에 실시되었으며,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액 중 설계공모 포상금 5,600만원과 설계용역기성금 5억 1,300만원 등 설계비 5억 6,9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미집행 불용되어 집행률이 24.45%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기존 수장고의 가용 공간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규 기록물의 수용 여력이 소진된 상태로, 기록 보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시설 확충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4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7.

42) 「2025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와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19억 1,400만원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착공 지연에 따른 순연과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1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절약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전금(310) 목의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된다.

포상금에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포상금·상금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 관세청의 탈루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예산성과금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적극 행정을 통하여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 또는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에게 지급한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각 부처별 추진 과제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된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부서나 개인을 포상하거나 기관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아래에서는 위의 포상금 중 일반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제외하고, 범부처 대상으로 중앙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과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21-1 예산성과금

가. 개 요

(1) 의의

예산성과금 제도는「국가재정법」제49조[1]에 근거한 것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의미한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로 확보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 요건에는 지출절약과 수입증대가 있다. 지출절약의 경우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수입증대는 국고의 수입[2]이 늘어나거나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심사위원회[3]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며, 재원이 없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재원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가 발생한 비목에서 전용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을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1)「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의미한다.

3)「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아니다. 이때, 수입증대의 경우 재정경제부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은 전용이 곤란한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수입증대로 공적을 인정받은 기관은 세출예산에서 가능한 재원을 자체전용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위원회가 예산성과금 규모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창의성, 노력도, 재정개선효과 또는 수입증대, 파급효과가 있다. 각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며 이를 합산한 점수로 성과금 지급액이 정해진다. 다만, 국세청과 관세청은 타 부처 대비 징수활동을 통한 수입증대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 증대 항목에 있어 타 부처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산성과금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점수(점)	평가 기준
창의성	5	기존에 사례가 없는 창의적 결과물을 창작
	4	기존 제도·방법에 도입한 적이 없는 창의적 제도·방법을 마련
	3	기존 제도·방법을 상당히 변형하여 적용
	2	기존 제도·방법을 다소 변형하여 적용
	1	기존 제도·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
노력도	5	통상적 업무수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노력
	4	통상적 업무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력
	3	통상적 업무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노력
	2	통상적 업무수준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의 노력
	1	통상적 업무수준의 노력
재정개선효과 (지출절약)	5	100억원 이상
	4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	0.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	0.1억원 미만
수입증대	5	30억원 이상(국세청 300억, 관세청 150억원)
	4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국세청 1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관세청 8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3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국세청 8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관세청 3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2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국세청 2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관세청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	0.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국세청 20억, 관세청 10억원)

평가 항목	점수(점)	평가 기준
파급 효과	3	■ 법령 제·개정 등 개선방안의 제도화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 및 국가수입증대가 명확한 경우 ■ 해당 부처 외에도 파급된 경우(제도 수출 등)
	2	■ 새로운 기준 정립(매뉴얼, 내부지침, 훈령 등 제·개정), 신기술 개발, 특허취득 등을 통해 지속적 제도개선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1	■ 개선방안이 동일·유사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자료: 기획예산처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며,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 지급하되, 인당 6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산정된 금액의 30%가 가산되어 인당 7,8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한도)	비고
지출절약	정원감축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1명당 최대 60백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특별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되어 인당 7,800만원 한도로 지급
	경상적 경비 절약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약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의 10%	

자료: 「예산성과금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점수로 예산성과금 규모를 결정하며, S등급부터 Ⅵ등급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뉜다. Ⅰ등급은 13점 이상이며 예산성과금은 6,000만원이며, Ⅱ등급은 12점으로 5,00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1점이 낮아질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며 Ⅵ등급은 8점이며 600만원이 지급된다.

[예산성과금 등급별 평가점수 및 지급액]

등급	평가점수	지급액	비고
S등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성과금 지급 건이 「예산성과금 규정」 제1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 지급액에 30/100을 가산 * 1인당 6천만 원 한도 (가산 시 78백만 원 한도)
Ⅰ등급	13점 이상	60백만 원	
Ⅱ등급	12점	50백만 원	
Ⅲ등급	11점	35백만 원	
Ⅳ등급	10점	20백만 원	
Ⅴ등급	9점	10백만 원	
Ⅵ등급	8점	6백만 원	

자료: 기획예산처

(2) 현황

최근 10년(2016~2025년)간 부처별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수 및 지급액,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 등 재정효과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26개 부처에 대해 지급되었고 이중 행정안전부(2017년까지는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6개 부처가 5년 모두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기간 중 1년만 예산성과금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 병무청으로 6개 부처이다.

해당 기간 동안 관세청 및 국세청은 수입증대 요건으로만 예산성과금을 받았으며, 지출절감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없다. 반면 다른 부처는 2019년과 2020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출절감 요건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2021년부터 2025년의 경우 23개 부처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중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4개 부처는 5년 모두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그에 따라 관세청과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연속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경청 7개 부처는 같은 기간 중 1년만 예산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6~2020년도 부처별 예산성과금 사례 수 및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감사원	1	7	10,379	-	-	-	4	81	78,910	2	33.5	9,375	1	6	5,393
경찰청	2	10	3,158	2	12	8,674	1	10	334	1	6	224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2	10	628	5	34	12,634	6	91	32,100	-	-	-	-	-	-
관세청	7	33	96,448	4	65	89,864	7	107	77,411	5	87	75,451	4	42	62,598
교육부	1	10	5,190	-	-	-	-	-	-	-	-	-	1	10	2,845
국방부	7	36	75,789	9	76	39,201	14	109	39,111	21	160.4	39,836	10	86	74,781
국세청	10	56	232,137	17	253	333,699	12	121	586,086	10	134	168,277	6	62	307,618
국토교통부	7	32	34,906	10	93	9,550	7	83	30,939	6	68	24,451	4	28	64,369
기획재정부	-	-	-	1	6	358,661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3	17	23,429	4	46	37,461	3	22	179,474	-	-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1	16	164	-	-	-	-	-	-
방위사업청	5	31	10,764	2	30	5,655	7	46	30,206	4	28	34,737	5	52	54,702
법무부	1	7	9,200	3	28.8	554	3	36	7,539	1	10	254	-	-	-
병무청	-	-	-	-	-	-	2	12	174	-	-	-	-	-	-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보건복지부	-	-	-	1	6	9,410	1	6	1,500	2	40	57,042	1	10	5,322
국가보훈처	-	-	-	-	-	-	1	10	105	-	-	-	-	-	-
산림청	2	14	1,775	1	6	715	2	49.5	1,395	-	-	-	1	20	215
산업통상자원부	1	25	24,670	1	6	440	-	-	-	-	-	-	-	-	-
소방청	-	-	-	-	-	-	-	-	-	-	-	-	1	10	2,064
외교부	1	3	58	2	12	1,358	-	-	-	-	-	-	-	-	-
인사혁신처	1	15	1,600	1	20	1,970	1	20	816	1	9.7	97	-	-	-
조달청	4	12	254,664	1	6	114	2	30	1,973	1	10	207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3	751	2	26	3,194	-	-	-	-	-	-	-	-	-
해양수산부	1	3	100	3	51	17,390	2	45	1,104	-	-	-	3	46	10,356
행정안전부[2)]	1	7	714	1	60	570	2	20	3,846	3	57.7	13,859	2	20	34,972
합 계	58	331	786,360	70	836.8	931,114	78	914.5	1,073,187	57	644.3	423,810	39	392	625,235

주: 1) 2017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
2) 2017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2025년도 부처별 예산성과금 사례 수 및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감사원	-	-	-	3	22	25,098	-	-	-	1	6	40,232	1	6	239
경찰청	-	-	-	-	-	-	3	18	12,164	1	6	1,560	1	10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1	6	696	-	-	-	1	10	77	1	6	16,171
관세청	6	40	50,261	3	22	12,809	6	44	31,164	6	44	24,360	9	163	104,787
국방부	10	68	35,095	8	66	33,078	6	36	16,087	14	106	212,439	13	155	1,178,672
국세청	12	114	827,913	11	70	666,112	9	66	184,952	11	110	470,727	13	191	1,838,878
국토교통부	2	12	73,049	3	22	3,655	-	-	-	1	35	5,331	1	6	1,556
기획재정부	-	-	-	-	-	-	-	-	-	-	-	-	1	35	2,108,824
농림축산식품부	-	-	-	2	12	10,219	-	-	-	1	10	142	2	40	9,802
국가유산청	-	-	-	1	6	4,320	1	6	144	-	-	-	-	-	-
방위사업청	4	26	48,432	3	26	37,656	2	12	39,528	4	24	1,668,219	4	56	72,670
법무부	-	-	-	1	20	5,707	1	6	329	-	-	-	1	6	10,803
병무청	-	-	-	1	6	176	1	6	221	-	-	-	1	6	551

(단위: 개, 백만원)

부처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사례 수	성과금 지급액	재정효과
보건복지부	1	6	8,349	-	-	-	1	6	830	1	6	9,145	-	-	-
산림청	-	-	-	1	10	1,266	-	-	-	-	-	-	3	51	7,652
소방청	-	-	-	-	-	-	1	6	3,200	-	-	-	-	-	-
조달청	-	-	-	1	6	10,967	-	-	-	-	-	-	-	-	-
질병청	1	20	1,260,707	1	20	203,800	-	-	-	1	6	10,946	2	20	4,400
통계청	1	6	531	-	-	-	-	-	-	-	-	-	-	-	-
특허청	-	-	-	-	-	-	1	1	10	-	-	-	-	-	-
해양경찰청	-	-	-	1	6	330	-	-	-	-	-	-	-	-	-
해양수산부	1	6	383	3	26	205,012	3	18	3,950	-	-	-	1	20	825
행정안전부	3	32	4,889	1	6	12,014	1	6	109	-	-	-	-	-	-
합 계	41	330	2,309,609	45	352	1,232,915	36	231	292,688	42	363	2,443,178	54	771	5,355,96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무원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한 재정효과와 예산성과금 결정액을 살펴보면, 재정효과의 경우 2025년에 5조 3,560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2024년이 2조 4,432억원, 2021년이 2조 3,096억원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2023년에는 2,927억원으로 해당 기간 내 가장 재정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성과금 1원당 재정효과의 경우 재정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2021년과 2024년, 2025년에 6,000원대 후반 규모로 높게 나타나며 그 외의 기간에는 2022년의 3,503원을 제외하면 2,5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재정효과 및 예산성과금 결정액]

(단위: 백만원, 원)

연도	재정효과(A)	예산성과금 결정액(B)	예산성과금 1원당 재정효과(A/B)
2016	786,360	331	2,375
2017	931,114	836.8	1,113
2018	1,073,187	914.5	1,174
2019	423,810	644.3	658
2020	625,235	392	1,595
2021	2,309,609	330	6,999
2022	1,232,915	352	3,503
2023	292,668	231	1,267
2024	2,443,178	363	6,731
2025	5,355,967	771	6,94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에게 재정절약 유인을 부여하고 성과금 지급을 통하여 사기를 북돋우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예산성과금 참여 실적 저조 기관 대상 우수사례 발굴 장려 필요

최근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이 특정 부처에 편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기인하는바, 다수의 부처에 지출절감 및 수입증대 유인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방위사업청에는 10년 모두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9년 간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다. 2019년을 제외하면 국세청에 지급된 예산성과금이 매년 가장 가장 많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관세청과 국방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10년간 6년 이상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부처 현황]

지급 연도 수	부처
10년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9년	국토교통부
8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7년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6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주: 기준연도에 1건 이상 예산성과금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예산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타 부처 대비 수입증대에 유리한 조건에 있어 수입증대 항목 평가시 보다 높은 액수 기준을 적용받음에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성과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년 상반기 국세청 및 관세청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	신청사례	재정 효과	성과금 결정액
국세청	동일 쟁점 패소에 따른 경정청구에서 찾아낸 1,289억원	128,924	20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주식 양도세 수입증대	16,200	10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판결 승소로 수입증대	18,902	6
	무형자산 해외 이전에 따른 소득유출 방지	52,758	6
	특정 법인을 통한 변칙적 부의 이전 과세	7,143	6
	AI기반 가상자산 분석 프로그램 자체 개발	19,684	6
	프로게이머 소속사 조세포탈 제세 추징	8,411	6
	카드사 청구할인이 상품대금 할인 예외대상 정정 판결 도출	310,700	6
관세청	글로벌 명품업체의 편법적 가격 정책 개선으로 공정과세 질서 확립	21,791	20
	주류 취급 다국적기업과 납세 협력을 통한 세수 증대	8,951	10
	재고관리 기법을 악용한 부정환급 최초 적발	7,775	6
	다국적기업 AEO와 소통·협력을 통한 과세가격 산출 오류 등 치유	8,186	6
	국세청 등 협업 해외도피 체납자 최초 징수	312	6

자료: 기획예산처

이러한 결과에는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속한 공무원의 역량이 작용한 측면이 있겠지만 10년간 한번도 예산성과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처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부처 간 재정절감액과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맡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수입이 적거나 재정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절감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나 그 중 30~50% 정도만 선정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31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41건이 선정되었고, 2025년에는 102건의 신청 중 54건이 선정되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이 매년 다수의 사례를 신청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는 신청 사례 대비 선정 사례의 비율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별 예산성과금 신청 및 지급 사례 수]

(단위: 건)

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합 계	131	41	112	45	104	36	103	42	102	54
감사원	3	-	3	3	-	-	3	1	1	1
경찰청	1	-	1	-	4	3	4	1	2	1
과기부	-	-	3	1	1	-	2	1	1	1
관세청	9	6	9	3	14	6	10	6	14	9
국방부	34	10	32	8	20	6	23	14	25	13
국세청	36	12	21	11	26	9	25	11	19	13
국토교통부	9	2	9	3	5	-	7	1	5	1
농림축산식품부	2	-	3	2	3	-	2	1	2	2
국가유산청	-	-	1	1	1	1	-	-	1	-
방위사업청	7	4	6	3	7	2	8	4	8	4
법무부	4	-	1	1	2	1	-	-	1	1
병무청			2	1	1	1	1		1	1
국가보훈부	1	-	-	-	-	-	-	-	-	-
보건복지부	2	1			3	1	1	1	-	-
산림청	1		2	1	1		1		6	3
산업통상부	1	-	-	-	-	-	-	-	-	-
소방청	-	-	-	-	1	1	-	-	1	-
외교부	3	-	1	0	3		2	-	2	-
인사혁신처	-	-	1	0	1	-	1	-	-	-
조달청	1		1	1	-	-	-	-	-	-
선거관리위원회	-	-	1	0	-	-	-	-	-	-
질병청	2	1	4	1	3	-	5	1	3	2
국가데이터처	3	1	-	-	-	-	-	-	-	-
지식재산처	-	-	-	-	1	1	-	-	-	-
해양수산부	6	1	8	3	6	3	5	-	6	1
행정안전부	6	3	2	1	1	1	2	-	1	-
해양경찰청	-		1	1	-	-	-	-	-	-
행복청	-	-	-	-	-	-	-	-	1	-

주: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 변경된 기관명으로 작성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획예산처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도 있지만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부처도 존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직원들에게 반기별로 예산성과금 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부처 내 예산성과금 신청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17년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사례로, 통일부는 2020년 소속기관 전기요금 효율화로 5,8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용노동국가조사통계 분석추정시스템 자체개발을 통한 2억 1,3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사례로, 산업통상부는 202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내실화로 80억 6,8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사례로 각각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선정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획예산처 심사결과 탈락하는 것이 아닌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지출절감 또는 수입증대 실적이 있더라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절감효과를 창출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중앙관서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출절감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의 노력으로 달성한 우수한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특별성과 포상금 중복지급 여부 및 한도 논의 필요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정해져있다는 점, 특별성과 포상금 중복지급 여부를 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 재정절감성과에 대한 보상규모에 있어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공적에 대해 예산성과금과 특별성과 포상금 중복 지급 여부 및 그 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현 정권의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 혁신 기조에 따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개인에게 최대 3,000만원 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업무절차·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직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각 중앙부처에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배포하고 제도의 운영실적을 점검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이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 안내서에 따를 때, 특별성과 포상금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임기제 등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로만 평가되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특별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①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②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③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세부 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포상금 산정 및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가 제시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성과금과 비교하였을 때, 지급대상에 있어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 및 수입

4) 협업 결과로 성과가 도출된 경우 협업 단위 포상을 허용하나 이 경우에도 균등배분이 아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을 하여야 한다.

증대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경우 국익에 기여하거나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이 예산성과금 대비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성과 포상금의 핵심인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업무성과는 난이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성과금 평가 항목 중 통상적인 업무수준에 비하여 들인 노력을 평가하는 노력도 항목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예산성과금의 평가 기준인 파급효과와 특별성과 포상금의 파급력 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동일한 공적이 예산성과금 및 특별성과 포상금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근거규정에서 다른 보상과의 중복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상과의 중복 지급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하고, 동일한 공적으로 예산성과금이나 상여금 등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와 보상규모의 적정성에 다한 고려를 거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성과금 및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기준]

예산성과금	특별성과 포상금
□ 성과금 산정 및 평가 기준 1) 창의성 **2) 노력도** 3) 재정개선효과(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4) 파급효과**	□ 포상금 산정 및 평가 기준 **1) 파급력** **2) 난이도** 3) 기여도 □ 특별성과 대상 1)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2)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3)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4) 기타: 상기 세 개 항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한 경우

예산성과금	특별성과 포상금
	□ 타 보상과의 중복 여부 - 행정업무규정에서는 타 보상과의 중복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타 규정에 관련 기준이 명시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 동일한 공적으로 예산성과금이나 제안 상여금 등 다른 금전적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와 보상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범위 결정

자료: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별성과 포상금에서 타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급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안내서에 따를 때 동일한 공적으로 예산성과금이나 제안 상여금 등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제도의 취지와 보상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중복 지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별로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하게 되면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규모에 있어 기관 간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예산성과금은 최대 한도를 6,000만원(예외적으로 7,8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한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2017년을 제외하면 최대 한도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고 2025년에 2건의 사례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도를 책정하여 결정한 성과금이 지급한도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동일한 공적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가 실시한 평가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이라는 동일 공적에 대해서 예산성과금과 특별성과 포상금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할지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2.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가. 개 요

(1) 의의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제2항[1]에 따른 것으로 정부업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로 구성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총괄하여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후 통보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특정평가 구성도]

(단위: 백만원)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역점정책	이행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지역균형발전 및 주요 법안 처리 노력, 리스크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책효과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 역점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효과 등
	국민만족도	○ 기관 소관 역점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규제합리화	기존규제 규제 개선	○ 중점과제 개선 - 핵심규제 개선실적·신산업 규제합리화 추진실적 및 효과를 포함한 기관의 중점과제 발굴·개선 노력, 범부처 역점과제인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성과노력 등 ○ 건의과제 개선 - 규제신문고를 통한 현장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규제 품질관리	○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성과 등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	○ 규제합리화 국민소통(홍보) 실적 ○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정부혁신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혁신성과	○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정부 ○ AI로 혁신하는 정부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자율) 기관별 대표혁신 과제	
	(자율) 국민 체감도 평가	
정책소통	정책소통활동	○ 부처 정책홍보 참여 활동부처 보유매체 협업 홍보 실적
	정책소통성과	○ 주요 정책 발표 컨설팅 이행 성과 ○ 소통 성과 우수사례 ○ 언론보도 대응 및 우수사례 ○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 디지털 광고(캠페인) 활용도 등 디지털 소통 성과 ○ 기관장 소통 성과, 이슈관리
	체감도	○ 부처 소통 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전문 기관 조사) ○ 빅데이터 분석 및 SNS 채널 이용자 반응 조사 등

자료: 국무조정실

특정평가의 경우 과제별로 ① 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 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③ 국민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①과 ②의 정성평가의 경우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며, ②의 정량평가의 경우 기관별로 제시한 계획이행 및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에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를 평가하는 주요정책 부문이 있고 이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한다. 그 외에 일반재정,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일자리,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재정사업 부문이 있고 유형별로 총괄기관이 있다.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하며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가 총괄기관이 된다.

[자체평가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총괄기관(~2025년)]

평가부문		평가대상	총괄기관
주요정책(성과관리)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일반재정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사업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평가,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일자리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대상사업은 제외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R&D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사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균형발전세부사업	지방시대위원회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관리역량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자료: 국무조정실

다만, 2026년부터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평가는 자체평가 분류에서 제외된다.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의 경우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목표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고 국정과제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는 자체평가시 가점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참고사항이 있다.

아울러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간 순위를 매겨 1등급(매우 우수)부터 7등급(부진)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공개되며,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를 강화하고 미흡·부진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는 통합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이나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개별평가이다.

개별평가는 평가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2) 현황

정무업무평가 포상금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포상금 비목으로 집행되며, N년도 예산은 N-1년도 성과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된다.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업의 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예산	3,353	3,283	3,414	2,724	2,845
	결산	3,320	3,230	3,378	2,637	2,813
포상금	예산	1,400	1,400	1,400	600	600
	결산	1,396	1,399	1,386	600	599

주: 매년도 예산은 각 연도 마지막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정평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하 설치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부문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부문별로 장관급 기관 6개, 차관급 기관 4~6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가부문별 포상금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상황

에 따라 상이한데 2026년에 2025년의 업무실적에 대해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에게는 기관당 5천만원, 규제합리화 부문 및 정부혁신 부문, 정책소통 부문 각각의 우수기관에게는 기관당 1천만원이 지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8천만원의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5년간 특정평가에 따른 포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장관급 기관 10개, 차관급 기관 12개에 총 13억 6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24년의 경우 장관급 기관 13개, 차관급 기관 11개로 포상금 지급대상 기관 수는 증가하였으나 포상금 액수는 5억 9천만원으로 2022년 및 2023년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의 경우 2024년과 유사한 규모의 포상금이 집행되었다가 2026년에 장관급 기관 11개, 차관급 기관 12개에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액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특정평가 포상금 집행내역]

지급 연도	포상대상 및 포상액		총액
	부 단위	청 단위	
2022	과기부(1.15억원) 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각 1.05억원) 환경부·중기부(각 0.95억원) 행안부·산업부·고용부(각 0.2억원) 보훈처(0.1억원)	식약처(1.15억원) 산림청(1.05억원) 법제처·질병청·해경청(각 0.95억원) 농진청(0.85억원) 경찰청·특허청(각 0.2억원) 인사처·조달청·통계청·기상청(각 0.1억원)	13억 6천만원
2023	과기부(1.15억원) 환경부(1억원) 국토부(0.9억원) 해수부·보훈처(각 0.75억원) 농식품부(0.7억원) 중기부(0.4억원) 외교부·산업부(각 0.3억원) 복지부·고용부(각 0.25억원) 교육부(0.15억원)	식약처·산림청(각 1.15억원) 기상청(1억원) 법제처·방사청(각 0.75억원) 농진청(0.55억원) 행복청·문화재청(각 0.3억원) 인사처·조달청·경찰청(각 0.15억원) 국세청·관세청(각 0.1억원)	13억 5천만원

지급 연도	포상대상 및 포상액		총액
	부 단위	청 단위	
2024	기재부·환경부(각 0.5억원) 외교부(0.45억원) 고용부(0.425억원) 농식품부·국토부(각 0.375억원) 복지부(0.225억원) 과기정통부(0.175억원) 공정위(0.15억원) 중기부(0.1억원) 해수부(750만원) 행안부·산업부(각 500만원)	산림청(0.425억원) 국세청·식약처·관세청(각 0.325억원) 인사처·해경청(각 0.3억원) 조달청·특허청·경찰청(각 0.1억원) 농진청·기상청(각 0.075억원)	5억 9천만원
2025	농식품부(4,825만원) 고용부(4,400만원) 과기정통부(4,300만원) 해수부(4,125만원) 문체부(3,525만원) 공정위(3,000만원) 환경부(1976만원) 금융위(1,800만원) 행안부(1,425만원) 산업부(1,390만원) 국토부(1,084만원) 기재부(725만원) 중기부(525만원) 교육부(400만원) 복지부(325만원) 여가부(125만원)	조달청(3900만원) 산림청(3725만원) 농진청(2800만원) 통계청(2600만원) 방사청·국가유산청(각 2000만원), 식약처(1,725만원) 기상청(850만원) 관세청(600만원) 법제처·경찰청(각 125만원)	5억 4400만원
2026	과기정통부(8000만원) 해수부(8000만원) 농식품부(6000만원) 산업부(6000만원) 외교부(5000만원) 공정위(5000만원) 기후부(3000만원) 중기부(2000만원) 복지부(2000만원) 국토부(2000만원) 노동부(1000만원),	식약처(7000만원) 산림청(7000만원) 국가유산청(6000만원) 농진청(6000만원) 기상청(6000만원) 방사청(5000만원) 관세청(3000만원) 조달청(2000만원) 인사처(1000만원) 경찰청(1000만원) 소방청(1000만원) 국세청(1000만원)	9억 4000만원

주: 지급연도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연도로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상금을 지급함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자체평가에 따른 포상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 2021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 13개 기관에 300만원씩 총 3,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24년 기관별 포상금 액수는 33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개 기관에 대해서만 지급되어 포상금 총액은 990만원이었다. 2025년의 경우 기관별 포상금 액수가 500만원으로 증액되고 11개 기관에 집행됨에 따라 총 5,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자체평가 포상금 집행내역]

지급연도	포상대상 및 포상액		총액
	부 단위	청 단위	
2022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권익위 (각 300만원)	관세청, 경찰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각 300만원)	3,900만원
2023	과기부, 농식품부, 국토부, 교육부, 환경부, 보훈처 (각 300만원)	식약처,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각 300만원)	3,600만원
2024	환경부 (330만원)	병무청, 농진청 (각 330만원)	990만원
2025	기재부, 법무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권익위 (각 500만원)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각 500만원)	5,500만원
2026	2026년 상반기 중 집행예정		6,000만원 이내

주: 1. 지급연도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연도로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상금을 지급함
2. 해당자체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임
자료: 국무조정실

나. 분석의견

소관 정책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부서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련 부서 및 구성원에게 공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부서의 업무 역량 향상 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업무평가 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상금 규모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매년 전체적인 포상금 규모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규모에 있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바, 정부업무평가 포상금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부문별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문별 포상금 지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기관종합 평가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5,000만원을 받았으나 2024년의 경우 장관급 기관에 대해서는 3,000만원, 차관급 기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항목의 경우도 연간 포상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정부혁신의 경우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포상금 기준에 따라 2021년 업무실적에 대해 5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발된 경우 2022년에 1억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나 2025년 실적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원, 2023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장관급 기관은 최대 5,750만원, 차관급 기관은 최대 4,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문별 포상금 지급액]

(단위: 만원)

지급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특정평가 평가항목 (지급액)	기관종합 (5,000)	기관종합 (4,500)	기관종합 (장관급 3,000 차관급 2,000)	주요정책 (장관급 3,000 차관급 2,000)	역점정책 (5,000)
	일자리·국정과제 (3,500)	주요정책 (3,000)	주요정책 (장관급 1,500 차관급 1,000)	협업 (전략 1,000 일반 800)	규제합리화 (1,000)
	규제혁신 (1,000)	규제혁신 (1,500)	규제혁신 (500)	규제혁신 (600)	정부혁신 (1,000)
	정부혁신 (1,000)	정부혁신 (1,000)	정부혁신 (250)	정부혁신 (600)	정책소통 (1,000)
	정책소통 (1,000)	정책소통 (1,500)	정책소통 (500)	정책소통 (600)	-
자체평가 지급액	300	300	330	500	지급예정

주: 1. 연도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연도로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상금을 지급함
2. 지급액은 해당 평가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여러 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하는 항목의 포상금을 모두 지급받음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평가 기준으로 2022년에는 총 13억 6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024년의 포상금 액수는 5억 9천만원으로 2022년 및 2023년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에는 9억 4천만원으로 2025년의 5억 9천만원 대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업무평과 성과금에 있어서 연도별 평가항목별 지급액 및 전체 포상금 액수가 매년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기관 선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고 집행하는데 매년 예산 규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체평가에 따른 포상금도 2022년과 2023년에 300만원, 2024년에 330만원, 2025년에 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역점 정책과제 수행, 정책소통, 규제합리화 등에 있어 유의미한 실적

을 보이기 위하여 투입하는 노력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연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액수가 연도별로 차이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도별로 평가대상 기관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난이도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편성된 예산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크게 변동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부문별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매년 포상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공 개인에 대한 포상 강화 등을 통한 업무성과 제고 유인 확보 필요

각 부처에 지급된 포상금 배분 시 부처의 자율성이 크게 작용하여 다수의 부처에 소액의 포상금 또는 격려금이 지급되어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 및 개인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상금이 정책성과 향상에 유공이 있는 직원이나 부서에 전달되고 각 부처의 업무역량 및 성과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은 유공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소속직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선정을 기념하는 직원 격려 등 조치 등의 용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용도 외의 현금성 배분이나 기부금 지출, 목적불명의 단순 행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임이 드러나지 않는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사용용도]

구 분	배 분	용 도		비 고
		목 적	사용처 (예시)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	기관장 재량	유공부서 또는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개별 직원 또는 부서 단위 격려금	해당 부문 담당 부서 또는 직원에게 우선 배분

구 분	배 분	용 도		비 고
		목 적	사용처 (예시)	
기관 업무 역량 제고		소속직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워크숍	내부·소속기관 직원 참여
			•정책제안 경진대회	내부·소속기관 직원, 일반인 참여
			•심포지엄, 세미나	외부인사 참여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기념 직원 격려	기관장 재량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한 全 직원의 직간접적 기여 인정	•온누리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 지원
			•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념품* *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표기	중소업체 물품 등 구매·이용 촉진 지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기관소유의 시설, 장비, 프로그램, 서비스 등 구매* * 운동장비 구입, 외국어 강좌 개설 등	개인에 대한 개별 지원 용도*로 사용 불가 * 수강료 지원 등
기타	-	기관의 업무역량·성과향상 등 기타 기관장이 포상금 용도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

자료: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집행지침

각 중앙행정기관은 내역별 총금액 및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목적 등을 포함한 포상금 집행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다시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나 유공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규모, 전 직원에 대한 격려금 또는 지급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령한

기관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기관별,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된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2024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 2025년에 포상이 실시된 상위 4개 장관급 기관과 2개 차관급 기관의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정책 유공이 인정되는 4개 과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협업과제 부문에 있어 2개 과에 490만원을 지급하여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으로 1,54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 외에 본부직원 전체에게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금 인원이 많은 관계로 총 2,760만원을 집행하여 유공부서 포상금 대비 전 부처 직원 격려금에 80% 정도의 포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정책소통 부문, 협업 부문, 주요정책 부문 유공부서 8개 실·국에 대해 400만원 또는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4,400만원의 포상금을 모두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에 집행하였다. 전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 등은 지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비 실적과 보상 간 연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부분의 부서를 평가 유공부서로 선정하여 1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세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전체 포상금 4,825만원 중 72.5%인 3,500만원을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에 집행하였다. 675만원은 기관 업무역량 제고에, 나머지 650만원은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소속기관에 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이와 유사하게 모든 부서를 유공 부서로 인정하여 성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하여 전체 4,125만원 중 4,025만원을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에 집행하였다.

차관급 기관인 조달청과 산림청의 경우 다수의 유공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포상금 규모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경우 3,900만원의 포상금 전체를 성과기여도를 고려하여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에 차등 집행하였으며, 산림청의 경우 3,725만원 중 2,935만원을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에 집행하였고 나머지를 기관 업무역량 제고에 집행하였다.

[2025년 기관별 특정평가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만원)

기관명	전체 포상금	유공 부서 및 직원 포상	기관 업무역량 제고	직원 격려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00	1,540	-	2,760
고용노동부	4,400	-	-	-
농림축산식품부	4,825	3,500	675	650
해양수산부	4,125	4,025	-	100
조달청	3,900	3,900	-	-
산림청	3,725	2,935	790	-

주: 지급액은 해당 평가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여러 항목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하는 항목의 포상금을 모두 지급받음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무조정실이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지급한 포상금의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여 실제 우수한 정책성과를 낸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급이 지급되기보다 전직원에게 격려 차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한 정책성과를 낸 부서에 포상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이나 특별성과 포상금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 제고에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급된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 향상에 유공이 있는 직원이나 부서에 전달되고 각 부처의 업무역량 및 성과향상 등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국고금 관리체계 분석: 2025년 국방비 미지급 관련

지난 1월 일부 언론을 통해 2025년 연말 국방예산 미지급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다.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의 설명자료를 통해, 세출 예산의 일부 이월은 통상적인 집행으로, 오히려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하였고,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23년과 2024년을 포함하여 국방비가 미지급(이월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동 사안이 세입 부족 자체보다 연말 자금관리상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동 사안은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를 넘어, 연말 국고금 운용 과정에서 국방비 등 필수 지출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자금계획 신청 및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일시차입 등 가용한 유동성 대응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세외수입 결손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국고금 관리법」 및 국고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연말 국방예산 미지급 사안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 국방비 미지급 관련 상세한 부처별 분석의견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참고

22-1. 국고금 관리체계의 구조와 운영원리

가. 국고금 관리의 의의와 법적 체계

현행 「국고금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고자금 집행지침(재정경제부 지침) 등은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고금은 정부가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는 국고금을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1]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것, ②「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③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등,[3] ④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란 국고금의 조달·지출 등 세입·세출예산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국가 시재금(時在金)[4]의 관리를 의미한다.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

1)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기금(「국고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한한다. 따라서,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에 납입된 현금은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각각 그 관리·운용주체가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동 기금들에 납입된 현금은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3) 국고금 운용 시에는 계획한 세출시기에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등 일시적으로 세입-세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조기집행 강화 경향(조기집행비율: ('18년)62.1%→('20년)66.5%→('22년)64.4%→('24년)66.2%→('25년) 69.5%)에 따라 이와 같은 일시적 세입-세출 간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고금 출납 상 필요한 자금을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된 현금도 국고금에 포함된다.

4) 특정 시점에 국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수입 누계 - 지출 누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면서 자금조달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하고, 유휴자금은 최소화함으로써 재정활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는 국고금 관리의 원칙으로 ①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②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③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④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체계의 핵심은 국가재정의 현금흐름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제 수입·지출이 법정 절차와 권한 배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국고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국가예금의 형태로 예탁되어 관리되며,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출납 상황을 국가예금의 수급 형태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회계처리와 상호 대조·확인한다.

우리나라의 국고제도는 국고통일의 원칙 아래 한국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시행 이후 일부 국고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 예탁도 허용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 선사용자금[5], 정부보관금 및 일부 공공기금 등은 금융기관에 예탁되고 있으며,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나머지 국고금은 한국은행에 예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고금 관리체계는 한국은행 중심의 예금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예외적 국고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탁을 병행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고금의 범위는 단순한 세입금과 세출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국고금 회계처리는 수입금, 지출금 외에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자금관리용 국고금,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되며, 자금관리용 국고금에는 국고금 상호예탁, 국고금 운용,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결산상잉여금 처분 등 자금관리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국고금 관리체계는 단순한 "수납과 지급"만이 아니라, 연중 재정자금의 수급 불일치를 조정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5) 수입을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기 전에 미리 사용(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각각 수입금 및 지출금으로 대체 정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자금으로, 원래 국고금은 수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허용하고 있다(현재 우편·우체국예금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체신관서에서만 운용 중).

[국고금의 종류]

(1) 수입금
: 세입금(일반회계 국세수납정리계정 및 특별회계 수입)과 기금의 수입을 합쳐 수입금이라 하며 「국고금관리법」상으로는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으로 정의

(2) 지출금
: 세출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과 기금의 지출을 합쳐 지출금이라 하며 「국고금관리법」상으로는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으로 정의

(3) 기금에 준하는 국고금
: 과거에는 기금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금에서 제외된 국고금(특별계정으로 편입)
- 조달사업회전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이에 해당되며 복식부기에 의해 처리되는 다른 특별계정과 달리 기금에 준하여 세입·세출 외로 조성

(4) 자금관리용 국고금
: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금 관리 거래로 발생하는 국고금
- 국고금의 상호예탁·운용,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발행, 결산상잉여금의 처분[6] 등

자료: 「국고업무 해설」, 한국은행. 2025.12.

이러한 점에서 국고금 관리의 의의는 첫째, 국가재정의 현금흐름을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고, 둘째, 수입·지출 결정과 실제 출납을 분리하여 재정집행의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셋째,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과 같은 자금관리 수단을 통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국방예산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고금 관리체계가 단순한 회계절차가 아니라, 현금관리·권한배분·지급통제가 결합된 운영체계라는 점을 전제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자금관리 수단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충분히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결산상잉여금은 이월예산액과 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상잉여금 처분에는 세계잉여금 처분이 포함된다.

나. 국고지출 절차와 자금계획 제도

국고금의 지출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국고지출은 단순히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급되지 않으며, 예산배정과 자금계획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급의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신청→예산배정→지출원인행위(예산배정 범위 내)→자금계획 신청→자금 배정→지출결의 및 지급의뢰→지급"의 순서로 처리된다. 따라서 예산상 지출근거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배정되지 않으면 지출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국고지출 절차는 법적 권한과 현금성 집행 가능성을 구분하는 구조를 가진다.

예산배정은 예산 통제의 목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 후 자금수급 관리 목적으로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연초에 연간, 매월 월 단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이 이루어진다. 실제 지출은 자금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채권자, 수급권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자금계획[7] 제도는 국고지출 절차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는 중앙관서별로 자금계획을 배정하고, 각 중앙관서는 다시 이를 개별 지출관별로 재배정하며, 개별 지출관은 그 한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한다. 한편 한국은행도 재정경제부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 한도 내에서 중앙관서의 지출을 관리한다. 즉 자금계획 배정은 실제 지급 가능 범위를 정하는 지출권한 부여의 의미를 가진다.

---

7) 「국고금 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지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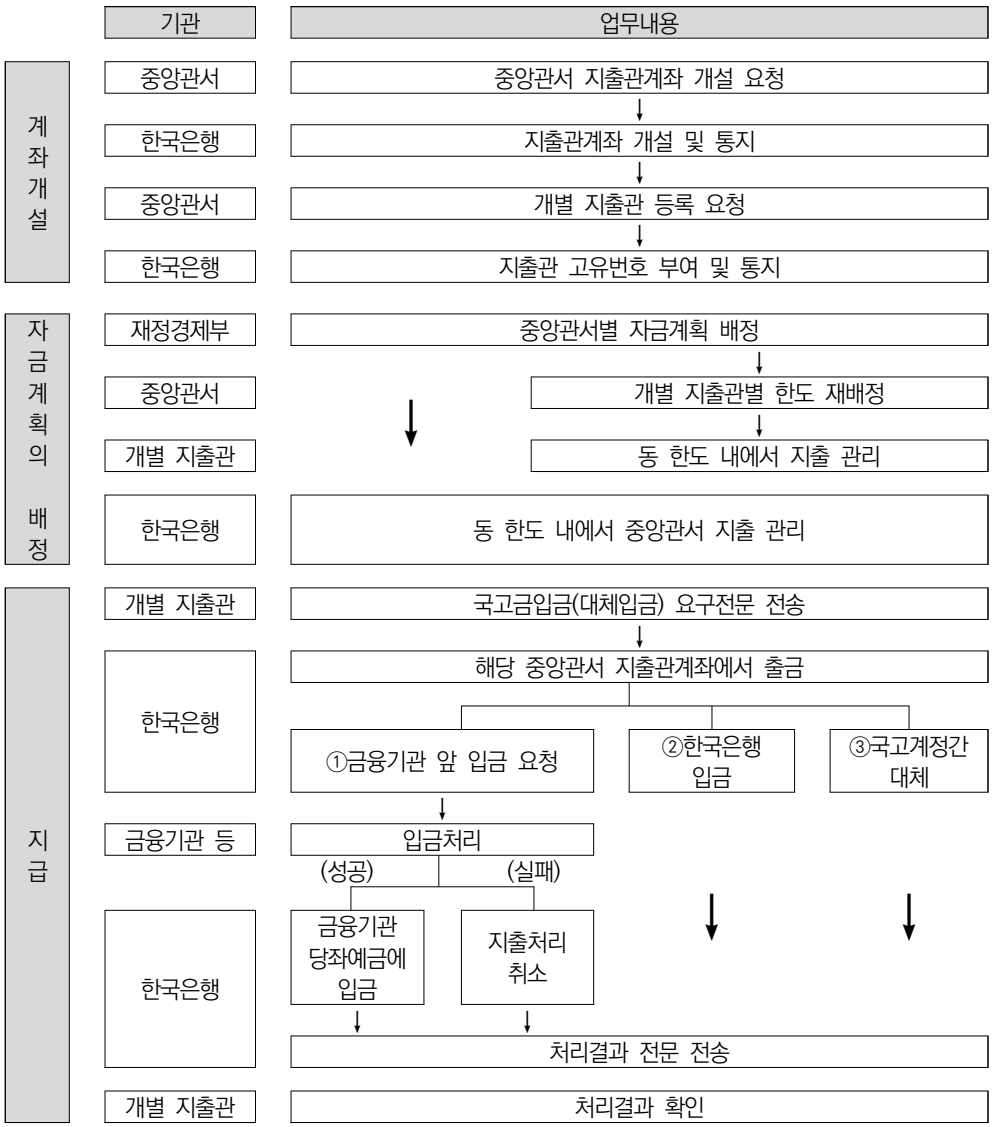

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앞 계좌입금 요구인 경우(금융결제원 앞 지로대금입금 요구인 경우 이와 유사)
② 한국은행 앞 계좌입금 요구인 경우
③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입금 요구인 경우

자료: 「국고업무 해설」, 한국은행. 2025.12.

자금계획이 배정된 이후에는 지출관이 구체적인 지출행위를 실행한다. 개별 지출관은 채권자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dBrain에 지출결의 및 지급 요청을 입력하고, dBrain은 이를 바탕으로 국고금입금 또는 국고금대체입금 요구전문을 생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지출결의와 지급의뢰는 단순한 회계기재가 아니라 실제 국고금 지급을 개시하는 전산적·법적 절차이다.

실제 지급 단계에서 한국은행은 자동적으로 지급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요구 금액이 해당 중앙관서 지출관 계좌의 자금계획배정잔액과 해당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출금한다. 즉, 한국은행의 역할은 재정경제부나 지출관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계획 한도와 회계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여부를 최종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산이 남아 있거나 정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자금계획배정잔액 또는 지출가능잔액이 부족하면 개별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국고지출 절차와 자금계획 제도는 사전에 배정된 자금한도와 실제 회계잔액의 범위 안에서 통제되는 현금지급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고금 관리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연말과 같이 자금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자금계획의 신청·배정·재배정 단계 중 어느 한 곳에서 병목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지급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등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

국고금은 조세납부시기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납되는 반면 지출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따라 일시 여유자금이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유자금은 국고금의 통합계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8]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일시차입은 수입과 지출 일정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한

8)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제도이다. 절차상으로는 국회가 예산총칙을 통해 한도[9]를 승인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도를 신청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며,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차입 신청에 따라 실제 차입이 실행된다. 즉 일시차입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국고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자금관리 수단이며, 그 실행 주체와 판단 책임은 기본적으로 재정경제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정증권 역시 수입과 지출 일정의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일시적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발행되는 단기 국채의 일종으로, 일시차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현행 국고금 관리체계는 중앙은행 차입과 시장성 단기증권 발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병행하여, 연중 자금수요 급증이나 세입 유입 지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10]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우선 활용한 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분석에서는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제 국방 관련 자금계획 배정으로 적시에 연결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9) 참고로 2026년도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다.

10)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22-2. 2025년 연말 국방예산 미지급 사안

가. 사안의 경위와 자금배정 현황

2025년 12월에 발생한 대규모 국방비 미지급 사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국방부·방위사업청에서 발표 및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상 자금배정 절차에 따라 매월 정기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수시 자금배정을 신청하였다.[11] 국방부는 2025년 12월 정기배정 1회와 수시배정 4회를 신청하여 신청액 5조 5,283억원을 전액 배정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정기배정 1회와 수시배정 1회를 신청하여 정기배정분 1조 8,765억원을 배정받았으며, 12월 29일 신청한 수시배정 3,497억원은 배정받지 못하였다.

[2025년 12월 국방부 자금배정(신청)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금배정 신청		실제 배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정기	’25.11.24.	45,904	’25.12.2.	45,904
수시	’25.12.1.	1,511	’25.12.1.	1,511
	’25.12.12.	2,982	’25.12.17.	2,982
	’25.12.16.	4,304	’25.12.18.	4,304
	’25.12.17.	582	’25.12.18.	582
-	**합 계**	**55,283**	**합 계**	**55,28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 자금배정은 ① 모든 부처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자금배정과 ②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한 부처에서 1일 1회 실시할 수 있는 수시 자금배정이 있다. 우선 각 부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그 다음달의 자금소요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게 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 및 한국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정기 자금배정 절차가 완료된다. 다음으로 정기 자금배정에서 확정된 자금보다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한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시 자금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방위사업청 자금배정(신청)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금배정 신청		실제 배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정기[1)]	'25.11.14.	18,765	'25.12.4.	3
			'25.12.8.	18,665
			'25.12.11.	16
			'25.12.16.	17
			'25.12.22.	40
			'25.12.26.	23
수시	'25.12.29.	3,497	미배정	
-	합 계	22,262	합 계	18,765

주 1) 방위력개선 예산을 사용하는 일선관서로 배정될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양 부처의 12월 자금배정 규모는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2025년 12월 배정액 비중은 전체의 12.8%로 최근 5년간 9.0~13.2% 범위 내에 있으며 가장 높았던 2021년(13.2%)보다도 낮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12월 배정액 비중이 10.6%로 2021~2024년 19.5~25.7%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방 분야의 12월 자금배정 신청·배정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1~2025년 분기별 국방부 자금배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전 체	12월 비중
2021	93,627	95,815	72,337	87,821	46,036	349,601	13.2
2022	100,221	92,555	94,198	105,594	35,491	392,567	9.0
2023	109,339	109,831	99,314	112,172	52,604	430,656	12.2
2024	116,353	108,641	86,073	105,219	49,030	416,286	11.8
2025	125,750	131,566	79,347	96,397	55,283	433,060	12.8

주: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자금 기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1~2025년 분기별 방위사업청 자금배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전 체	12월 비중
2021	44,569	53,973	33,570	35,771	32,753	167,883	19.5
2022	33,403	51,328	18,427	56,769	41,168	159,927	25.7
2023	33,043	57,549	22,204	58,159	38,632	170,955	22.6
2024	39,302	57,662	20,513	54,571	36,173	172,048	21.0
2025	41,131	70,462	24,474	41,366	18,765	177,433	10.6

주: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자금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이처럼 자금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국방부는 자금배정액 43조 3,060억원 중 5,002억원을, 방위사업청은 17조 7,433억원 중 8,036억원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합산 1조 3,038억원이 미지급되었다. 이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까지 완료되어 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충당할 현금이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2025년 세수 여건이 호전되어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집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금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배정 절차상 일시적인 국고 부족이 발생한 것이며, 「국고금 관리법」상 출납사무 완결 기한(익년 2월 10일) 내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설명과 달리, 이번 국방비 미지급은 단순한 회계상의 지급 이연에 그치지 않고 일부 부대 운영과 국방 관련 계약행위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력운영비는 각 군 부대가 물품 구매, 외주 용역, 장병 급식·피복 등 부대 운영에 사용하는 필수 경비로, 연말에 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면서 일선 부대 운영에 일시적 차질 우려가 지적되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개선비의 지급도 함께 지연되면서, 무기체계를 생산·납품하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계약대금 지급이 미뤄졌다. 이러한 대금 지급 지연은 방산업체와 그 하위 협력업체 등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는 한편, 국고에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 국방비 미지급 규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연말에 미지급된 국방비 규모는 총 1.3조원(국방부 0.5조원, 방사청 0.8조원)에 달하며, 부처별 현황을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국방부는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4조 2,111억원 중 42조 6,691억원을 집행하고, 7,685억원을 이월하고, 7,735억원을 불용하였다. 2024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976억원, 불용액은 1,733억원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42,728,582	44,211,107	+1,482,525
지출액	41,457,547	42,669,084	+1,211,537
집행률	97.0%	96.5%	△0.5%p
이월액	670,866	768,514	+97,648
불용액	600,169	773,509	+173,340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는 연말 국고금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5,002억원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6년 1월 초 각각 이월 또는 강제불용 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미집행액 처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추정)	결산 확정	증감
집행대기(지출결의)	5,002	-	△5,002
이월	5,536[1] ~ 6,337	7,685	+1,348 ~ 2,149
불용	4,081[1] ~ 4,882	7,735	+2,853 ~ 3,654
계	15,420	15,420	-

주: 1. 집행대기는 지출결의까지 완료하였으나 국고자금 부족으로 2025.12.31. 기준 미지급된 금액
1) 당초 계획상의 이월과 불용 규모는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계산한 통상적인 불용 예상액(2025년 기준 4,081억원)을 기반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당해연도 불용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통상 유사한 수준을 보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최근 3년 평균 이월액 수준인 약 8,000억원과 함께 미지급액 5,002억원도 이월시킬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26.1.5.)하였으나, 재정 당국의 이월 한도 제한 요청에 따라 전체 이월소요 중 약 3,654억원[12]은 불용 처리되어, 2025년 지출결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불용처리된 사업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국방부(일반회계)의 미지급액 5,002억원 중 각각 이월 및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예산정책처는 최대 3,654억원이 불용되었다고 추정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그보다 더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며, 이는 12월 31일 기준 계획하였던 이월 및 불용 규모가 국방부의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재정경제부 입장대로 당초 이월을 계획하였으나 자연불용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일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모두 당초 계획했던 이월 및 불용[13]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 적시된 2025회계연도 기준 국방부(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등 통상적인[14] 사유의 불용 규모가 4,88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경제부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국방부 강제불용 규모의 최소치는 2,853억원에 달한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미지급 사안 주요 경과]

2025.12.31.	◦회계연도 종료일('25.12.31.) 기준 최종 지급 지연금 5,002억원으로 확인
2026.1.5.	◦연말 지급지연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
2026.1.9.	◦2025회계연도 결산 조기 마감 후 이월명세서를 제출 ◦전체 이월액(7,685억원)을 배정받아 각 군 및 기관에 배정 완료

자료: 국방부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하는 강제불용 규모의 최대치 6,881억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이며, 재정경제부 입장을 반영한 최소치는 6,080억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2) 전술한 바와 같이 이월예상액 중 불용처리된 금액의 규모는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계산한 통상적인 불용 예상액(2025년 기준 4,081억원)을 기반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이다.

13) 연말에는 각 부처에서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이월 및 불용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즉, 전체 불용 규모 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불용을 제외한 규모

[국방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미지급액 현황]

(단위: 억원)

프로그램	미지급액	주요내역
급식 및 피복	610	- 주/부/후식 부대조달 농축산물 구매대금 사후정산 등 - 병사식당 민간위탁 운영비(급식대금 정산비용) 등
국방정보화	223	- 정보통신기반체계 금융리스 계약대금 등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준공 정산, 정보보호 등 납품 대금
군수지원 및 협력	2,203	- 기동, 화력, 항공, 함정, 통신전자 등 장비 구매대금 - 외주정비용역 정산대가, 수리부속 구매대금 등
군인사 및 교육훈련	178	- 교육시설 공사대금, 교육훈련장비 구매대금 등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517	-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에 따른 임시 숙영시설 설치, 도로파열에 따른 보수공사 대금 등 - 소규모 보수사업(환경개선, 물품 구매 등), 공공요금 등
국방행정지원 등	271	- 예비훈련대 실내사격장 신축 및 보강공사 대금 - 정부구매카드 대금 등
합계	5,002	

자료: 국방부

국방부 미지급액은 세부사업 단위 및 그 하위 사업단위에서는 단위별 미지급액 규모가 구분되지 않고 프로그램 단위로만 구분되는 상황으로,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2,203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1,517억원 등 6개 프로그램에서 총 5,002억원이 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였다.[15)]

15)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연말 미지급액 가운데 이월액과 불용액을 구분하고 이월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단위별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단위별 미지급액 및 이월, 불용액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18조 546억원 중 16조 7,715억원을 집행하고, 7,499억원을 이월, 5,332억원을 불용하였다. 2024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4,537억원, 불용액은 528억원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17,916,708	18,054,598	+137,890
지출액	17,140,020	16,771,477	△368,543
집행률	95.7%	92.9%	△2.8%p
이월액	296,195	749,855	+453,660
불용액	480,493	533,266	+52,773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방위사업청도 국방부와 동일한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8,036억원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6년 1월 초 이월 또는 강제불용 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미집행액 처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	결산 확정	증감
집행대기(지출결의)	8,036	-	△8,036
이월	2,690	7,499	+4,809
불용	2,105	5,332	+3,227
계	12,831	12,831	-

주: 1. 집행대기는 지출결의까지 완료하였으나 국고자금 부족으로 2025.12.31. 기준 미지급된 금액
2. 당초 계획 상의 이월과 불용 규모는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획했던 이월액 2,690억원과 함께 미지급액 8,036억원도 이월시킬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26.1.5.)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이월액 규모를 6,000억원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26.1.7.)하였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재정경제부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7,499억원을 이월하고

5,332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마감('26.1.9.)하였다. 즉, 미지급액 8,036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월한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2025년 지출결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불용처리된 사업이 발생하였다.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미지급 사안 주요 경과]

2025.12.31.	◦국고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출결의한 8,036억원을 업체 등으로 미지급한 상태로 회계연도 종료
2026.1.5.	◦방위사업청은 미지급액 8,036억원 및 당초 이월계획액 2,690억원 이월요청
2026.1.7.	◦재정경제부는 이월규모를 6,000억원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
2026.1.9.	◦방위사업청과 재정경제부는 7,499억원으로 이월규모 협의 완료 후 2025 회계연도 결산 완료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방위사업청 미지급액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면,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 2,407억원,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1,520억원, 함정사업 1,794억원 등 7개 프로그램에서 총 8,036억원이 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였다.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미지급액 현황]

(단위: 억원)

프로그램	미지급액	주요내역
지휘정찰사업	1,520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등
기동화력사업	2,407	전투예비탄약, 230mm급무유도탄 등
함정사업	1,794	잠수함구조함-Ⅱ, 광개토-Ⅲ Batch-Ⅱ 등
항공기사업	1,073	소형무장헬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등
유도무기사업	1,070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방위사업정책지원	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등
방위사업행정지원	171	청사신축 등
합계	8,036	

자료: 방위사업청

다. 연초 이월·불용 처리결과와 후속 파급 효과[16)]

정부는 보도자료(2026.1.9.)를 통해, 2025년말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월집행 자금 1.5조원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정부가 지급하였다고 발표한 1.5조원은 연말에 미지급된 1.3조원과 기존에 각 부처에서 이월처리하기로 계획되었던 9,027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강제불용액의 최대 추정치인 6,881억원[17)]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 즉, 문제가 되었던 미지급금 1.3조원과 당초 이월 계획액을 전부 이월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 금액을 강제불용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18)]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미지급액의 2026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도 미지급액 (A+B)	2026년	
		집행완료(A)	미집행(B)
국방부	5,002	5,002	-
방위사업청	8,036	7,907	129
합계	**13,038**	**12,909**	**129**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미지급액 5,002억원 중 대부분을 2026년 1월 이월하여 집행하고, 재이월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용액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28조[19)]의 지난 연도 지출 규정을 근거로 2026년에 집행하였다.

---

16) 이하에서 **언급하는 강제불용액 6,881억원과 이월액 6,157억원은 각각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한다. 이는 미지급액 1.3조원을 각각 이월 및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부처별 이월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불용 사유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31일 기준 계획했던 이월 및 불용 규모 역시 불확정적이라는 국방부 및 방사청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17) 국방부 강제불용액은 재정경제부 입장을 반영할 경우, 2,853억원이므로 최소치도 6,080억원으로 축소

18)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지출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나, 국방부 및 방사청에서 최근 5년간 지출결의액에서 5억원 이상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19)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미지급액 8,036억원 중 7,907억원을 계약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29억원은 착·중도금인 점을 감안하여 연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함으로써 연초에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20]

이처럼 국방 분야 사업의 집행이 대규모로 이연되면서 일선 부대와 방산업체 등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불용처리한 사업들은 차년도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결국 관련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은 연초부터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것과는 다른 취지로 집행될 예정이다.

[불용처리한 미지급액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 및 내역변경 사례(방위사업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세목		세부사업명	세목
자체 전용	'26.1.14.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자산 취득비	2,702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일반 연구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해군)	자산 취득비	2,443	자항기뢰	공사비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체계 (JTDLS) 완성형(R&D)	연구 개발장비 ·시스템 구축비	10,134	연합지휘통제체계 (AKJCCS)성능개량 (R&D)	일반 연구비
내역 변경	'26.1.13.	K105자주포 (육군)	공사비	126	K-55A1자주포 (육군)	공사비
	'26.1.14.	울산급 Batch-Ⅲ (해군)	자산 취득비	34,871	광개토-Ⅲ Batch-Ⅱ(해군)	자산 취득비
	'26.1.15.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육군)	공사비	45	방공지휘통제경보 체계(육군)	공사비
	'26.1.16.	울산급 Batch-Ⅲ (해군)	자산 취득비	11,753	KDX-Ⅱ 성능개량(해군)	자산 취득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129억원의 미집행액은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이 부족했으며 다른 사업들로부터 이·전용을 받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연부액 조정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방위사업청은 2026년 1월부터 미지급액을 불용처리한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자항기뢰,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 사업을 위하여 152억 7,9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고, 미지급액을 불용처리한 K-55A1자주포(육군),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을 위하여 467억 9,500만원을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내역변경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미지급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구체적인 재조정 방식은 차년도 결산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지급액을 차년도에 지연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는 바, 2026년 5월 기준 지연이자(예상 규모)는 국방부 1억 8,099만원, 방위사업청 4억 9,028만원으로 양 부처 합산 약 6억 7,127만원에 달한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지연이자 발생 현황]

(단위: 천원)

프로그램		지연이자액
국방부	급식 및 피복	617
	국방정보화	4,041
	군수지원 및 협력	140,912
	군인사 및 교육훈련	2,072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2,498
	국방행정지원 및 기타	850
	합계	**180,990**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	63,523
	기동화력사업	117,428
	함정사업	189,428
	항공기사업	83,534
	유도무기사업	36,332
	방위사업정책지원	39
	방위사업행정지원	-
	합계	**490,284**

주: 청구 여부 및 지급시점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참고로 방위사업청의 미지급액 100억원 이상인 18개 사업의 결산 처리방식을 살펴보면, 미지급액 6,868억원 중 4,405억원을 이월하고 2,463억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미지급액 전액을 이월한 사업은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등 9개, 전액을 불용한 사업은 KDX-Ⅱ,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155mm사거리연장탄 등 3개로,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월·불용이 갈렸다.

[방위사업청 소관 미지급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결산 처리방식]

(단위: 억원)

사업명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미지급액	결산 처리방식	
			이월	불용
전투예비탄약	9,870	1,021	405	616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Ⅰ-②	2,960	945	944	1
소형무장헬기	4,821	681	390	291
광개토-Ⅲ Batch-Ⅱ	4,029	469	20	449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1,835	371	69	301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1,084	205	135	70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532	197	197	-
230mm급무유도탄	2,218	187	187	-
120mm자주박격포	1,208	185	185	-
청사신축	496	167	167	-
보라매 최초양산	11,745	147	147	-
중요시설경계시스템	349	133	133	-
30mm차륜형대공포	2,127	117	117	-
잠수함구조함-Ⅱ	890	880	880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756	430	430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	103	101	-	101
155mm사거리연장탄	1,168	517	-	517
KDX-Ⅱ 성능개량	452	118	-	118
합 계	46,643	6,868	4,405	2,463

주: 단수 조정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방위사업청

22-3. 분석의견

이하에서는 이번 국방비 미지급과 그에 따른 이월·불용이 통상적인지 혹은 이례적인지를 규모와 사유를 통해 진단하고, 그 원인을 (연말)현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의 발생과 (연초)자금 배분 과정의 강제 불용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 국방 분야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의 적정성 검토

(1) 이월·불용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여부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 순차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7~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이월액(B)	불용액(C)	비율	
				B/A	C/A
2017	286,565,836	1,874,491	4,207,387	0.7	1.5
2018	305,868,960	1,614,982	4,307,995	0.5	1.4
2019	336,299,386	1,293,644	4,121,606	0.4	1.2
2020	390,420,547	1,424,798	3,772,762	0.4	1.0
2021	425,881,010	2,647,663	5,512,669	0.6	1.3
2022	497,895,492	2,793,274	10,053,062	0.6	2.0
2023	449,067,227	2,005,609	41,175,329	0.4	9.2
2024	451,560,535	1,441,556	14,688,509	0.3	3.3
2025	498,441,961	2,086,544	5,345,719	0.4	1.1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023년 9.2% 대비 2025년 1.1%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이전재원 미교부와 내부거래 부진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이월 및 불용률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2023~2024년과 같이 2025년에도 세입결손[21]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집행실적은 양호하고 불용률도 낮은 편이라는 입장이나, 세수결손 규모가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2.1조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2개 연도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2024·2025회계연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세출예산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국방부 (일반회계)	2024	42,728,582	41,457,547	97.0	670,866	600,169
	2025	44,211,107	42,669,084	96.5	768,514	773,509
방위사업청	2024	17,916,708	17,140,020	95.7	296,195	480,493
	2025	18,054,598	16,771,477	92.9	749,855	533,266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방부(일반회계)와 방위사업청의 세출 실적만 별도로 살펴보면, 이월 및 불용 규모는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양 부처 모두 집행률이 하락하였고 이월액·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은 이월액이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23~2024년 대비 세수여건이 좋았던 2025년에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크게 감소하고 집행률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국방부(일반회계)와 방위사업청은 오히려 이월 및 불용 규모가 증가하고 집행률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21) 2025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1.8조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9조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총세입은 2.1조원 결손이 발생하였다.

(2) 이월 및 불용 사유 분석

이월 사유 측면에서는, 2023·2024년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 일반회계 세출의 '미지급금 이월' 사유가 2023년과 2024년에는 7%대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약 37%로 급등하였다. 즉, 매년 일정 규모는 출납정리기한의 존재 등에 따라 '미지급금 이월'로 처리되어 왔으나,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동일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가 약 7배 증가하여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3~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유]

(단위: 백만원, %)

이월 사유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동절기·공사중지·절대공기부족	696,657	34.7	495,964	34.4	429,446	20.6
미지급금 이월	**145,398**	**7.2**	**109,126**	**7.6**	**770,682**	**36.9**
계약체결·설계지연	339,748	16.9	216,424	15.0	274,371	13.1
외자구매지연	61,862	3.1	56,025	3.9	34,772	1.7
기타	761,944	38.0	564,017	39.1	577,273	27.7
합계	2,005,609	100.0	1,441,556	100.0	2,086,544	100.0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이월 규모가 '미지급금 이월' 사유를 중심으로 대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23년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이월액 중 미지급금 이월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가 각각 10.2%, 3.1%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3.8%와 72.9%로 급등하였다.

[2023~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및 방위사업청 이월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이월액 합계	이월사유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미지급금 이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외자구매 지연	기타
2023	국방부	967,166	430,752	**98,333 (10.2)**	119,261	52,700	266,120
	방사청	263,468	40,719	**8,065 (3.1)**	5,866	7,390	201,428
2024	국방부	670,866	333,053	**35,441 (5.3)**	52,731	44,066	205,575
	방사청	296,196	60,435	**40,313 (13.6)**	4,850	9,306	181,292
2025	국방부	768,514	232,840	**182,970 (23.8)**	14,383	31,842	306,479
	방사청	749,855	77,238	**546,420 (72.9)**	3,978	417	121,802

주: 괄호 안은 전체 이월액 대비 해당 사유로 인한 이월액의 비율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2025회계연도 '미지급금 이월' 규모의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			2024			2025		
부처	이월액	비중	부처	이월액	비중	부처	이월액	비중
국방부	98,333	67.6	방사청	40,313	36.9	방사청	546,420	70.9
문체부	12,538	8.6	국방부	35,441	32.5	국방부	182,970	23.7
방사청	8,065	5.5	과기부	6,781	6.2	과기부	21,193	2.7
국방부 +방사청	**106,398**	**73.2**	**국방부 +방사청**	**75,754**	**69.4**	**국방부 +방사청**	**729,390**	**94.6**
전체	145,398	100.0	전체	109,126	100.0	전체	770,682	100.0

주: 연도별 '미지급금 이월' 사유 규모 상위 3개 부처만 적시하였음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일반회계의 전체 이월액 중 '미지급금 이월'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는 2024년 1,091억원에서 2025년 7,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는바, 해당 사유로 인한 이월액 중 방위사업청이 70.9%, 국방부가 23.7%를 차지하여 절대 규모와 상대적인 비중 모두 크게 확대되었다.

참고로 '미지급금 이월'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임의로 추출한 항목이 아니라, 감사원이 국가결산검사보고에서 '기타'와 구분하여 별도 사유로 분류·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상의 이월사유는 동일한 분류 체계에 기반하는데, 이는 각 부처가 결산 마감 과정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이월사유를 자체 판단하에 입력하고, 정부와 감사원이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이월 및 불용 사유]

구분	사유코드 및 내용
이월	(501)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502)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503)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504) 용지매입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505) 외자구매지연, (506) 명시이월, (507) 계속비 이월, **(508) 미지급금 이월**, **(509) 세수부족**, (510) 기타, (511) 기본사업비이월
불용	(611) 지급사유 미발생,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613) 예산 절감, (614) 환율 변동,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616) 자금부족,** (617) 내부거래, (618) 집행잔액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정부 국가결산보고서는 '미지급금 이월'을 '기타'에 포함하여 제시하는 반면,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는 이를 별도 사유로 분리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드러낸 것은, 해당 사유가 통상적 이월과 구별되는 사항임을 보여준다.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및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기준 방위사업청 이월 사유 구분]

(단위: 백만원)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이월사유	이월 규모	이월사유	이월 규모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77,238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77,238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3,978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3,978
외자구매지연	417	외자구매지연	417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2,483	**미지급금 이월**	**546,420**
용지매입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2,110	기타	121,802
세수부족	6,065	합계	749,855
기타[1)]	**657,563**		
합계	749,855		

주: 기타 항목에는 '계속비 이월', '기본사업비 이월', '명시이월', **'미지급금 이월'**, '기타'가 포함됨
자료: 국가결산보고서(정부) 및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및 방위사업청 불용액과 불용 유형]

(단위: 억원)

코드 및 사유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4	2025	2024	2025
611 지급사유 미발생	116	16	118	4
612 계획변경 또는 취소	475	172	43	1
613 예산 절감	5	2	-	-
614 환율 변동	-	-	-	-
615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199	9	-	-
616 자금부족	**-**	**2,853**	**-**	**40**
617 내부거래	-	-	-	-
618 집행잔액 등	5,207	4,683	4,642	5,287
합계	**6,002**	**7,735**	**4,805**	**5,333**

주: 단수 조정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불용과 관련하여 국가결산보고서나 결산검사보고에는 구체적인 불용 사유가 드러나지는 않으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금부족'에 따른 불용이 국방부 2,853억원, 방위사업청 40억원[22] 등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당초 지출결의되어 지급이 대기 중이었던 상당수 사업들이 2026년도로 이월 지급되었고, 일부 사업은 강제 불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위

22) 방위사업청은 2025회계연도 결산 마감 당시에는 자금배정액 내에서 지출결의하였기 때문에 미지급액 중 불용처리한 경우를 '집행잔액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한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5년말 국방비 미지급은 낙관적으로 세입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고자금 여력에 비해 큰 규모로 자금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 부족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로 국방부보다는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에서 국고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이러한 상세 내역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 중 이월명세서상에는 '기타' 사유로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있고 감사원이 별도로 제출한 국가결산검사보고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불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연말) 국고 부족과 미지급금의 발생

(1) 세외수입 결손에도 불구한 낙관적 세입전망

먼저, 세입 측 배경에는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시 NXC 물납주식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약 3.7조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NXC 주식은 매각 시도가 모두 유찰되어 세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1,307억원만 수납되었다. 이는 연중 국고의 가용현금이 계획 대비 약 3.6조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초래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3,744,140	3,744,140	130,743	130,743	-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세수 여건이 호전되어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집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말에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연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5년 일반회계 불용률은 1.1%로 최근 3개년 중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미지급금 이월은 전년 대비 약 7배 급증하였다. 이는 정부가 세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말 현금이 실제로 부족해졌음을 의미한다.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 등으로 인한 3.9조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현금 여력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손 규모가 집행 독려 방침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결산	예산(A)	결산(B)	B-A	(%)
■ 총세입	535.9	600.0	597.9	△2.1	△0.3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0.5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1.7

주: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세출 집행 속도를 조정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정부는 오히려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하였고, 그 결과 연말 자금 수요가 더욱 집중되었다. 세입 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행을 가속하는 정책은 연말 유동성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입 여건에 대한 평가와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세외수입 결손은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소한 공개입찰이 실패한 9월 이후부터는 연내 수납이 어렵다는 점은 상당 부분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불가피한 세입 부족이라기보다 사전 관리와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원인은 세입 결손 그 자체보다, 예견된 결손에 대해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을 적시에 활용하였는지의 자금관리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말 자금 부족에 대한 단기 유동성·세입 보전 수단의 활용 적정성

「국고금 관리법」은 연중 세입·세출 간 수급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수단으로 통합계정을 통한 국고금 상호예탁(제31조), 재정증권 발행(제32조·제33조), 한국은행 일시차입(제32조)을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번 사안에서 이러한 수단들이 적정하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통합계정을 통한 내부 조달 여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연말 자금 운용이 빠듯하게 이루어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말 여유자금은 2023년 3조 2,700억원에서 2024년 1조 6,6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2025년에는 이러한 추

세에 더하여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초 계획에 없던 8,57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함에 따라, 기말 여유자금이 604억원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자금관리의 중심인 총괄계정 여유자금은 연말 기준 43억원으로 급감하였다.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연말 여유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결산
한국은행예치 (9702-970)	총괄계정	3,191,635	1,509,365	4,302
	융자계정	79,903	152,243	56,139
	합계	**3,271,538**	**1,661,608**	**60,441**

주: 공자기금 각 계정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 발생된 잔액(여유재원)을 차년도로 이월한 규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물론 일반회계 예탁의 누적 규모 자체가 수정 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통상 연중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최근 수년간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에 일반회계 예탁이 발생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계연도 종료 당일의 8,570억원 예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통합계정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12월 24일부터 지속된 한국은행 일시차입만으로는 연말 자금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자, 회계연도 종료일에 이르러 당초 계획에 없던 공자기금 예탁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12월 31일에 이루어진 예탁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곧 적자국채 발행과 동일한 결과이므로, 일반회계 여유 재원이 있다면 굳이 계획액 전체를 반드시 예탁할 필요는 없다. 즉,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예탁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회계연도 종료일에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재정경제부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가 계획대로 1.3조원 추가 확보되었다면, 연말 통합계정의 유동성 여력은 상당 부분 보강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자금소요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 공자기금의 재원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집행률 (B/A)
	계획		결산(B)	B-A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예탁(8520-851)	82,765,297	114,948,803	113,657,000	△1,291,803	98.9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자기금의 여유재원은 2025년 ①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토지매각 지연으로 해당 회계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계획 대비 △7,302억원 부족하였고, ②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여유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계획 대비 △5,208억원 부진했던 점, ③우체국예금특별회계가 예금 수신고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 부족으로 이·전용 재원(△4,689억원) 마련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를 축소한 점 등에 따라 공자기금 여유재원 부족 및 일반회계 예탁 규모 축소라는 연쇄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집행률 (B/A)
	계획		결산(B)	B-A	
	당초	수정(A)			
특별회계 예수금(94-942)	4,189,322	4,189,322	2,466,786	△1,722,536	58.9
교도작업특별회계	52,627	52,627	50,000	△2,627	95.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7,234	767,234	37,000	△730,234	4.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429,961	2,429,961	1,961,061	△468,900	80.7
우편사업특별회계	920,775	920,775	400,000	△520,775	4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725	18,725	18,725	-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토지매각 대상 부지의 매각절차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의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

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개정 추진 현황, 매매 관련 협의상황 등 토지매각 진행 경과와 연계하여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3]

즉, 당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토지매각대 수입 자체가 부지 매각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상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도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공자기금의 여유재원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자기금 여유재원 부족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시 내부거래 규모의 조정이나, 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예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응할 여력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공자기금의 여유재원도 계획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말 유동성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24] 정부는 2025년 12월에 5조원을 차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미지급분을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12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의 성격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월 일시차입은 2016~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23년(4조원)과 2024년(5조원)에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대응이었고 이번과 같은 국방비 미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12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2022	2023	2024	2025
한국은행 일시차입(12월)	-	4.0	5.0	5.0

자료: 재정경제부

반면 2025년은 제2회 추경을 통해 세입을 이미 감액경정하여 보정한 결과 총세입이 수정 예산(600.0조원) 대비 △2.1조원(△0.3%)에 그쳤음에도, 2024년과 동일한 규모의 차입(5조원)이 이루어졌고 국방비 미지급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2025

2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4.10), p.266 참고

24) 재정증권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12월에는 사실상 신규 발행이 불가능하다.

년 연말 국고 부족이 세입 측의 불가피한 요인이라기보다 자금관리 측의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25] 또한, 일시차입을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까지 일별로 분할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분할 차입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23일부터 국고금 압박 상태에 있었으나 연말까지 국고금 부족 사태가 해소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5년 12월 한은 일시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대출액	상환액	비고
2025-12-24	200,000	-	적용금리 2.457%
2025-12-26	1,000,000	-	
2025-12-29	700,000	-	
2025-12-30	1,400,000	-	
2025-12-31	1,700,000	-	
2026-01-02	-	1,600,000	13월의 세입으로 상환
2026-01-05	-	3,400,000	
합계	5,000,000	5,000,0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로, 12월 일시차입 규모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은 일시차입을 해당 회계연도(13월의 세입[26] 포함)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부리적수 산출장(12월 16일 이후)]

(단위: 원)

일자	대출금잔액	통합계정 정부당좌예금 잔액		부리잔액
		2024년도	2025년도	
2025-12-16	0	32,012,730	90	-32,012,820
2025-12-17	0	32,821,000	120,341,301,140	-120,374,122,140
2025-12-18	0	32,821,000	254,353,854,910	-254,386,675,910

25) 본예산(국세수입 372.1조원 등) 대비로는 세입이 부진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세입감액경정을 통해 보정하였으므로, 추경 기준에 비추어 연말 추가 차입을 정당화할 만한 예상 밖의 세입 부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2025년 12월 30~31일 납부되는 2025회계연도 세입은 2026년 1월 두 번째 영업일 후 국고계좌에 납입

(단위: 원)

일자	대출금잔액	통합계정 정부당좌예금 잔액		부리잔액
		2024년도	2025년도	
2025-12-19	0	32,821,000	77,383,485,950	-77,416,306,950
2025-12-20	0	32,821,000	77,383,485,950	-77,416,306,950
2025-12-21	0	32,821,000	77,383,485,950	-77,416,306,950
2025-12-22	0	32,821,000	402,095,598,880	-402,128,419,880
2025-12-23	0	0	128,583,223,130	-128,583,223,130
2025-12-24	200,000,000,000	0	217,024,442,240	-17,024,442,240
2025-12-25	200,000,000,000	0	217,024,442,240	-17,024,442,240
2025-12-26	1,200,000,000,000	0	10	1,199,999,999,990
2025-12-27	1,200,000,000,000	0	10	1,199,999,999,990
2025-12-28	1,200,000,000,000	0	10	1,199,999,999,990
2025-12-29	1,900,000,000,000	0	40,127,460,890	1,859,872,539,110
2025-12-30	3,300,000,000,000	0	0	3,300,000,000,000
2025-12-31	5,000,000,000,000	0	501,977,284,080	4,498,022,715,920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 이자 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부리적수[27] 산출장을 상세히 살펴보면, 12월 23일부터 통합계정 여유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과거 10년간(2015~2024년) 13월 세입 실적은 7.5~13.0조원 범위에 있었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13월의 세입도 7.3조원에 달했다.

따라서 일시차입 규모를 더 확대하였다면 국고의 일시적 유동성 경색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이월 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내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5조원 이상의 일시차입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재정경제부 입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7) 이자 산정을 위한 일별 잔액의 누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대정부 일시대출금 부리적수 산출장」은 일자별로 ① 대출금잔액, ② 회계계정별 정부당좌예금 잔액(연도별), ③ 부리잔액(=①-②)을 표시한 산출 명세서로, 부리잔액이 양(+)인 일자의 잔액만을 적수에 산입함. 즉, 정부가 한국은행에 보유한 당좌예금 잔액으로 차입금이 상계된 후의 순차입잔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됨. 이자는 「양(+)의 부리잔액 합계 × 적용이율 ÷ 365」로 산출함.

[2025회계연도 13월의 세입 규모(일반회계)]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실적(A=B+C)	1~12월(B)	13월(2026.1) (C)
합계	377.4	370.0	7.3
국세수입	361.4	354.1	7.2
세외수입	16.0	15.9	0.1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일시차입을 확대하여 미지급된 국방비 1.3조원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세입과 결산상 잉여금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규모의 강제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일시차입 7조원을 통한 미지급액 1.3조원 전액 지급 시나리오]

(단위: 억원)

구분	실제(5조원 차입)	가정 (7조원 차입 후 국방비 미지급액 1.3조원 지급)	비고
결산상 잉여금	21,693	8,655	=21,693-13,038
이월액	20,865	14,708	=20,865-6,157[1)]
세계잉여금	828	△6,053	

주: 1) 6,157억원은 미지급분이 차년도로 이월처리된 금액이므로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월액에서 제외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관서운영경비 잔액의 조기반납 유도 등 가용한 내부 자금 조달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28] 그리고 세수 여건의 호전을 미집행 관리나 우선순위 설정 없이 단순 집행 독려의 근거로만 활용한 점,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3·2024년에 비해 세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국고 통합계정의 실질 유동성은 오히려 경색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는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실행 주체로서 최종적인 판단 책임을 부여하고

28)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참고

있다. 다만 이때의 자금 조달(일시차입·재정증권)은 연말의 일시적 현금 부족, 즉 미지급 자체를 완화하는 수단일 뿐, 세입 부족에서 비롯된 강제불용까지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다.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으로 연내 현금 부족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국방비와 같이 지급 지연에 따른 국고 손실(지연배상금 발생)과 안보 공백의 리스크가 큰 필수 지출이 대기 중이었던 상황이라면, 재정 당국은 가용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적어도 손실이 큰 필수 지출의 미지급을 최소화하고,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후술할 예정인 강제불용 조치는 연말 유동성 경색이 아닌 세입 측면의 문제인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예견된(최소 9월) 시점에서 국고채 발행이나 타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한 일반회계 예탁과 같이 세입 보전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결산상 잉여금을 확보함으로써, 필수 지출이 강제불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대비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연초) 이월·불용 배분과 세입 부족에 따른 강제 불용 발생

(1) 미지급액의 이월·불용 현황

현행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29]은 세출예산의 이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제2호)”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제3호)”는 이월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자금배정액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에도 연말 국고 부족[30]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이월 한도마저 제한함으로써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불용이 이루어졌고, 강제불용된 금액은 2026년도 사업예산의 절감,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 활용,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국방부·방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62조 2,657억원 중 61조 493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였고, 국방부·방사청은 사업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배정액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두 부처는 59조 4,406억원을 집행완료하였고 1조

---

2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0) 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6.) 및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등에서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3,03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국고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금액을 채권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강제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였다. 또한 당초 이월예정액 9,027억원 중에서도 강제로 불용처리된 사업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이월규모는 당초 예정액 대비 6,157억원 증가한 1조 5,1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불용액의 경우, 당초 불용예정(6,186억원) 대비 6,881억원이 추가 불용되었으며, 이 중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확정채무가 이월 총량 한도로 강제 불용된 규모는 6,642억원(국방부 3,654억원, 방위사업청 2,988억원)으로 추정된다.[31]

[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및 방위사업청 집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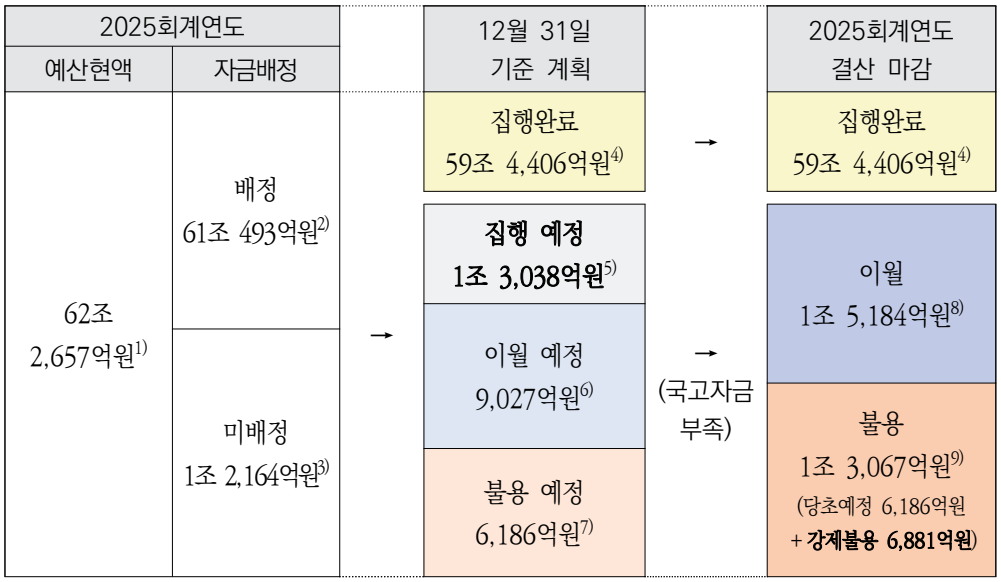

주: 1) 예산현액: 국방부 44조 2,111억원, 방위사업청 18조 546억원
2) 자금배정: 국방부 43조 3,060억원, 방위사업청 17조 7,433억원
3) 미배정: 국방부 9,051억원, 방위사업청 3,113억원
4) 2025회계연도 집행 완료: 국방부 42조 6,691억원, 방위사업청 16조 7,715억원
5) 12월 31일 기준 집행 예정: 국방부 5,002억원(추정), 방위사업청 8,036억원
6) 12월 31일 기준 이월 예정: 국방부 6,337억원(추정), 방위사업청 2,690억원
7) 12월 31일 기준 불용 예정: 국방부 4,081억원(추정), 방위사업청 2,105억원
8) 2025회계연도 결산마감 기준 이월: 국방부 7,685억원, 방위사업청 7,499억원
9) 2025회계연도 결산마감 기준 불용: 국방부 7,735억원, 방위사업청 5,332억원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1) 불용규모 증가액 6,881억원에는 ① 집행예정액 1조 3,038억원에서 강제 불용된 예산과 ② 당초 이월예정액 9,027억원에서 강제 불용된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집행예정액 1조 3,038억원 중에서 강제 불용된 금액은 6,881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예정액의 이월 및 불용처리 현황은 '방위사업청 소관 미지급액 100억원 이상 발생사업' 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세계잉여금 제약과 강제불용

재정경제부가 이월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을 중심으로 강제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세입 부족, 즉 세계잉여금 제약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세입예산 수납액-세출예산 집행액)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음수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세계잉여금이 결산상잉여금(세입-세출)에서 이월액을 차감하여 산정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월액이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32]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33] 규정에 근거한다. 즉,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음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1,693억원으로, 이월액 2조 865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억원)

세입 총계 (A)	세출 총계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4,931,790	4,910,097	21,693	20,865	82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그런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말에 지급받지 못한 1조 3,038억원을 연초에 이월하여 지급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는바, 재정경제부가 이를 모두 이월

32) 반면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음(-)이 될 수 있다.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과 이월이 이루어져 이월액이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적립금·여유재원 등 자체 재원을 보유·활용할 수 있어 당해연도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3)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처리하였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6,000억원의 음(-)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구조상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액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에 집행을 독려하였으나, 세외수입 결손 등으로 세입 실적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이월 여력(결산상잉여금)이 제약되었고, 자금계획 배정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까지 완료하였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그 부담이 6,881억원 규모의 강제 불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해 이월한도를 제한한 방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재정집행 원칙의 준수가 목적이었다면, 규모가 큰 주요 사업별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한하여 이월을 제한하는 방식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사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월 '총액'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미지급액을 모두 이월할 경우 이월액이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하여 세계잉여금이 음(-)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제한의 결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음수를 가까스로 면한 828억원에 그쳤다.

(3) 지출 우선순위 기준의 부재

한정된 가용 현금을 어느 지출에 우선 배정할 것인가에 관한 운용상의 문제도 확인된다. 국고지출은 예산배정과 자금계획 배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은 자금계획 배정 한도와 회계계정의 지출가능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산이 남아 있고 정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자금계획 배정잔액 또는 지출가능잔액이 부족하면 개별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1~2024년 사이 자금배정액[34] 내에서 지출결의를 실시하였고, 지출결의한 자금의 99.9%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완료되었다.

34) '배정'은 ① 예산의 배정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과 ② 자금의 배정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 및 세부자금계획서를 재정경제부가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 및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각 부처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것이 있다. 2025회계연도까지는 예산 및 자금의 배정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202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처, 자금의 배정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자금배정액 내에서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출결의한 자금 중 8,036억원(결의액 대비 4.6%)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17조 7,433억원을 '시스템상'으로 자금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고자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 역시 2025년 총 60조 2,159억원을 배정신청[35]하였고, 시스템상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총 43조 3,060억원을 배정받았다. 다만, 실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고 계좌 자금 부족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지출결의는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8,650억원 부족한 42조 9,380억원(지출원인행위액의 98.0%)에 대해 실시하였고, 실제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조 1,339억원 부족한 42조 6,691억원(지출원인행위액의 97.4%)을 지출하였다.

[2021~2025년 국방부(일반회계) 및 방위사업청 소관 자금배정(신청)액 및 지출액]

(단위: 억원)

구 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방부	자금배정 신청액	369,821	425,113	479,126	631,254	602,159
	자금배정액	349,600	392,567	430,656	416,286	433,060
	지출결의액	347,395	364,804	389,733	414,575	429,380
	지출액	347,394	364,804	389,731	414,575	426,691
방사청	자금배정 신청액	168,262	159,828	197,552	235,930	223,585
	자금배정액	167,882	159,922	170,951	172,048	177,433
	결의액	162,231	157,448	168,671	171,404	175,621[1)]
	지출액	162,231	157,448	168,671	171,400	167,715

주: 1)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세부사업에서 불용처리한 129억원에 대하여 지출결의를 취소하였기에 위 표에서 지출결의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7,907억원으로 산정됨
1. 자금배정신청액이 자금배정액에 비하여 큰 것은 일부 회차에서 자금배정액이 배정신청액을 하회하는 경우, 차기 신청 시 부족한 배정액을 재차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자금배정신청액은 신청 누적액의 개념임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5) 마지막 배정신청: 2025. 12. 18.

그런데 현행 법령에는 이처럼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유형의 지출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다. 계약상 또는 법령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와 지급 시기에 재량이 있는 경비 간의 배정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금지출 결정이 사실상 재정 당국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이다.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부처 간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가 동등한 조건이며 특정 부처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부처간 또는 사업 성격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처 내 자금배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의 집행자금 한도를 총량으로 배정하며, 각 부처는 설정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며, 이번과 같이 한정된 가용자금을 어느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할지 여부는 집행 부처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인건비 또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해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 없이 사실상 선착순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금액 또는 지연배상금률이 높은 계약을 선순위로 지급하는 등의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방위사업청의 미지급분에는 방산업체에 대한 계약대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연이자 약 4억 9,028만원이 국고 부담으로 발생하였다. 국방부에서도 약 1억 8,099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양 부처 합산 약 6억 7,127만원에 이른다.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가 미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필수지출에 대한 우선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국고금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자금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처가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4-2), 각 부처에 공급된 자금 중 월 말일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달 자금배정일 다음 날에 전액 회수한다(4-1).

또한 자금이 소진되거나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처는 소요 3일 전까지 수시 자금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1-2). 이는 재정 당국이 평소 자금배정을 적극적으로 조정·회수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금 부족 시 이를 보완할 수단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작동원리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고자금 집행지침」상 자금부족 보완 수단]

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2 (수시 자금배정의 요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소요자금이 필요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수시자금 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1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통해 예비비가 배정된 경우

1-2-2 예산 수시배정사업중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이 새로이 배정된 경우

1-2-3 부처에 배정된 자금이 소진되거나 외화지출 등 사전에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미집행 자금의 회수 및 자금배정 조정의 원칙

4-1 (미집행 자금의 회수) 각 부처에 월별로 공급된 자금중 해당월 말일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달 자금 배정일 익일에 전액 회수한다.

4-2 (자금배정의 조정)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자금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국방부 및 방사청의 자금신청 및 배정은 통상적인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미지급 문제가 두 부처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유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타 부처와 달리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지출이 12월 중하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부족시 후순위에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지출결의·자금배정신청 및 자금배정 시점 등 상세한 내역은 각 부처의 내부 자료로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1월 초 세입 부족으로 인해 이월 한도를 제한하여 불용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부처가 동등한 조건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후 조사와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라. 강제불용에 따른 문제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오히려 2025년에 전년 대비 2,261억원 증가하였다. 두 부처가 12월 31일에 예상했던 불용액 기준으로는 6,881억원의 불용액이 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국고부족으로 인한 강제적 불용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실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불용 사유 중 국방부의 '자금부족' 유형은 2024년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 급증한 바 있다.

국방비 미지급 사안에서 발생한 '강제 불용'의 유형은 ① 이월 자금의 한도 제한으로 당초 이월되었어야 할 예산이 강제 불용된 경우와 ② 미지급액 중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강제 불용된 경우로 구분된다.

이월 자금의 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 미실시 규모(='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을 통상적 불용 예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등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이월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이월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적 불용 예상액과 실제 불용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일반회계)의 경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2024년에는 통상적 불용 예상액 대비 실제 불용액 규모가 각각 95.8%, 92.2%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실제 불용액이 불용 예상액의 189.5%에 달하여 3,654억원이 초과 발생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2023년·2024년에는 실제 불용액이 통상적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각각 75.2%, 79.1%)에 있었던 반면, 2025년에는 실제 불용액이 불용 예상액의 227.4%에 달하여 2,988억원만큼 초과 발생하였다. 즉 확정채무 등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예산 6,642억원이 이월 총량 한도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된다.[36]

---

36)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마감시한은 다른 부처와 달리 2026년 1월 9일로 촉박하게 설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결산작업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이월규모로 인하여 일부 납품대금 등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방부의 경우 부대단위 집행구조로 인하여 지출관이 설치된 부대 단위에서 이월 및 불용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미지급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액의 사업별 배분현황 및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3~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불용액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행위액(B)	불용예상액(C=A-B)	불용액(D)	D/C
2023	409,571	398,953	10,618	10,168	95.8
2024	427,286	420,780	6,506	6,002	92.2
2025	442,111	438,030	4,081	7,735	189.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불용액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행위액(B)	불용예상액(C=A-B)	불용액(D)	D/C
2023	172,989	170,752	2,237	1,683	75.2
2024	179,167	173,091	6,076	4,805	79.1
2025	180,546	178,201	2,345	5,332	227.4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강제 불용의 또 다른 유형으로, 이미 한 차례 이월된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재이월금지 원칙에 따라 불용 처리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사업 내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체계사업의 경우, 2024년 편성된 계약대금 21억 5,900만원이 2025년으로 한 차례 이월되었으나, 2025년 12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연말 자금 미배정에 따라 미지급되었고,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해야 했다.

이처럼 강제 불용된 사업들은 정산 잔액 발생 등으로 지출의무가 소멸한 순수 불용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적법한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급채무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형식상 불용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지급의무는 존속하는 상태에 있다.

그에 따라 강제 불용처리한 대금을 2026년에 지급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이·전용, 절감집행 또는 연부액 조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재사고이월 불가로 불용처리한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체계사업'의 2026년도 연부액을 사업조정 등을 통하여 증액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집행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6년 1월 13~16일 동안 152억 7,900만원의 자체 전용과 467억 9,500만원의 내역변경을 실시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그

외 계약에서는 연부액 조정을 통해 대응하였다. 즉, 전년도 말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인하여 2026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국회의 심의·확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연말 국고자금 부족에 의한 이월 및 2025회계연도 세입 결손에 따른 강제 불용 과정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고, 방산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이연지급함에 따라 업체의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약 6억 7,127만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결의하였으나 강제불용된 금액을 차년도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전용 등의 수단을 불가피하게 활용함으로써 국회가 심의·확정한 2026년도 예산이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마. 선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차원의 불용이라는 입장에 대한 분석 의견

재정경제부는 연말 대규모 국방비 미지급은 통상 발생하는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는 동 사안이 이슈가 되었던 초기에는 보도자료(2026.1.6.)[37]를 통해 "2025년에는 양호한 세수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말 국고금 부족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보도자료(2026.1.11.)를 통해, ①2025년말 종료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은 2026년 1월 9일부터 순차 집행하였고, ②2025년말 새롭게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년도 이월을 제한하고 불용시킨 것으로 설명하였다.[38]

즉, 당초에는 선금 지급 시점 등 제도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시일이 소요되면서 연말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것은 이월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예 강제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선금 지급 시점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금 과다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은 2026년 2월 25일 발표되었고, 해당 방안에 따르더라도 경기 침체 보완을 위해 한시적 계약 특례 추가 확대를 통해 선금 지급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했던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 종료 시점은 2026년 4월로 명시되었다.

이처럼 선금 과다지급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5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제도개

3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2026.1.6.)

38)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강제불용한 6,881억원(추정치)의 사업이 선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편 시점도 2026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사업에 대해서만 이월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국방 분야의 선금 지급률이 타 부처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은 연초에 발표하여 해당 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별 부처가 연간 자금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더욱 용이하다고 할 것이며, 회계연도 종료 직전의 예상치 못한 불용은 결국 2026년에 편성되었던 본예산을 국회 심의 결과와는 다른 취지로 집행하게 되는 등 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선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표시점은 2026년 2월 말이나 실제 관련 논의는 6개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마감 시점에서 해당 논의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이월이 아닌 불용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5년말 새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주체는 국방부이며,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해서만 이월 규모를 제한하고 강제불용한 것은 아니고 전 부처에 걸쳐 선금 과다지급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가 지출원인행위를 바탕으로 이월 소요를 제시한 상황에서 회계연도 마감 직전에 과연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월 한도를 제한하였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사업별이나 부처별 선금 비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없이 재원 총량을 배분하였다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입 결손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러한 사유를 근거로 이월한도를 제한하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바. 소결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안의 직접적 원인은 회계연도 말 국고계좌의 현금 부족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금 부족은 세입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연말 국고금 운용 과정에서 누적된, 상당 부분 회피 가능한 자금관리상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안은 크게 ①(유동성 측면) 연말 일시적 국고 현금 부족에 따른 대규모 미지급(1조 3,038억원)과 그에 따른 지급이연·지연배상금 지급, ②(결산 측면)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 독려로 결산상 잉여금이 제약된 상태에서 미지급분과 당초 이월 소요를 전액 이월할 수 없어 발생한 최소 6,080~최대 6,881억원의 강제불용으로 요약되며, 각각의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국방비 미지급 사안의 쟁점 요약]

구분	국방비 미지급	국방비 강제불용
성격	Flow(현금흐름·유동성)	Net(결산·세입)
규모	1조 3,038억원	6,080 ~ 6,881억원
발생 시점	연말(2025.12)	결산 마감(2026.1)
직접 원인	국고계좌 현금 부족	2025회계연도 세입 결손
근본 원인	세입 진도 부진 및 연말 집행 집중에 따른 통합계정 유동성 경색	세외수입 결손 및 과잉집행으로 “세입 〈 세출+이월”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유동성 측면의 미지급은 세입 여건에 대한 평가가 집행 관리 및 유동성 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재정 당국은 전년 대비 호전된 세입 여건을 근거로 연말까지 집행을 적극 독려하였으나, 그 집행을 뒷받침할 연말 가용 현금이 충분한지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약 3.6조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늦어도 공개입찰이 무산된 9월 이후에는 상당 부분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집행 속도 조절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회계연도 종

료일에 최근 전례가 없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까지 동원하고도 연말 자금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1.1%)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으나, 그 이면에서는 '미지급금 이월'이 전년 대비 약 7배 급증하는 등 미집행의 성격이 자금 부족에 따른 비정상적 형태로 변질되었다.

다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5조원보다 더 큰 규모로 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후적·결과론적 평가의 측면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시차입은 그 해 세입(13월의 세입 포함)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13월 세입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단정적인 운용 실패로 보기보다는, 예견된 세입 결손에 대응하여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이 실제 자금 소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충분히 활용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그 운용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결산 측면의 강제불용과 관련하여, 그 규모 자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음(-)이 될 수 없는 결산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일 뿐, 세입 실현을 점검하지 않은 채 집행을 독려하여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도록 만든 판단, 확정채무를 우선순위 없이 미지급한 처리방식,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했던 방식조차 고려하지 않은 점은 회피 가능한 문제로 남는다.

실제로 현행 법령이나 지침에는 자금이 부족할 때 지급기일이 확정된 필수지출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회계연도 말 긴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사실상 재정경제부 및 각 부처 재량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계약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방산업체 계약대금 등이 미지급되어 국고가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23·2024년에도 없던 확정채무의 강제 불용이 세수 여건이 양호했던 2025년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종합하면, 전자(미지급)는 단기 유동성 수단으로, 후자(강제불용)는 세입 여건에 연계한 집행 관리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22-4. 개선방안

이에 앞서 분석한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연말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의 충분한 활용, 세입 여건과 집행 관리의 연계, 필수지출에 대한 자금배정 우선순위 기준 마련, 결산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연말과 같이 세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이 보다 면밀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주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연말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단기적 자금 경색에 대해서도 그 해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5년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는 실제 자금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급 지연의 비용이 큰 필수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세입 진도율 등을 고려하여 연내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기금 여유재원이나 일시차입 등 가용한 유동성 대응수단을 실제 자금 소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내 세입 결손이 상당 부분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계획에 반영하여 유동성 대응 규모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39]

다음으로, 연말의 일시적 현금 부족을 넘어 세입이 세출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부족에 대해서는, 세입 여건에 대한 평가를 집행 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일시적 현금 부족(미지급)을 완화하는 수단일 뿐, 세입 자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강제불용까지 해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사안에서도 약 1조 3,038억원의 미지급은 유동성 측면의 문제였던 반면, 약 6,881억원의 강제불용은 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결산상잉여금(이월 여력)이 제약된 데 따른 결과였다.[40] 따라서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와 같이

39) 실제로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 시에도 국방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계연도 중반부터 대규모 세수결손 규모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부처별 지출통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0)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미지급분 1.3조원 중에 강제불용된 금액은 없으며, 이는 2025년도 종료사업이나 재이월 금지 원칙 등에 따라 이월이 제한되어 각 부처에서 불용되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상당 부분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 속도와 자금계획에 반영하여 세출 소요가 가용 재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손이 확실시되는 시점에는 국공채 발행을 통한 일반회계 예탁,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공자기금 및 일반회계 재원 확보 등 세입 보전 방안을 적기에 검토하여 결산상 잉여금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확정채무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강제 불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NXC 관련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과다 편성에 따른 세입결손 가능성,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토지매각대 수입 과다 편성에 따른 공자기금 예탁 계획 축소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원 활용 계획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지출을 우선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는 자금 부족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상·법령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와 지급 시기에 재량이 있는 경비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안에서는 방산업체에 대한 계약대금과 같이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가 미지급되어 국고가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령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 인건비, 그 밖에 지급 지연 시 국가의 채무불이행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필수 지출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시에도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① 재정경제부의 부처별 자금배정 단계에서 필수지출 소요를 우선 파악하고 ② 각 부처 내부 집행 배분 단계에서 확정채무·법정 지급기일 경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관련 기준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41]

---

41) 다만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안은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보다는 국고금 관리 실패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이월·불용이 결산 과정에서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미지급분의 상당액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이월명세서상 '기타' 사유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상의 이월사유에서 '미지급금 이월'을 별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이월 및 불용을 별도의 사유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국가결산보고서를 보완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확정적 지급의무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불용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규모, 후속 처리 내역을 결산서에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단계에서 이를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가 디브레인에 이월 및 불용 사유를 정해진 유형별로 입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유에 의한 이월·불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처·사업·담당자별로 사유가 다르게 적시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결산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확한 구분 기준 및 각 부처 차원에서의 사전 교육 및 사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설립·운영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 등의 재정 위험이 정부에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구)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제출 및 이행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6월, (구)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1]으로 선정하였고, 동 기관들의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기존 재정건전화 목표 34.1조원에 신규 자구노력 실적인 8.1조원을 추가하여 2022~2026년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2023년 수정계획」이 포함되었고,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전년도 수정된 재정건전화 목표 42.2조원에 신규 자구노력 15.1조원을 더하여 2022~2026년 총 57.3조원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20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이 반영되었다.

또한 선제적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1) (구)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다음의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재무위험기관 현황]

요건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9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개)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23-1. 공공기관 결산 개요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6년 1월 기준으로 총 342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30개의 공기업, 58개의 준정부기관, 254개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26년에는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확정되었으며,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58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25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2026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단위: 개)

구분	2025	2026년 공공기관 현황			
		신규	해제	변경	계
공기업	31	-	-	△1[1)]	30
준정부기관	57	-	-	1[2)]	58
기타공공기관	243	11[3)]	-	-	254
합계	331	11	-	0	342

주: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됨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됨
3)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1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공공기관 지정", 2026.1.29.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수입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중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은 공기업으로,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또한,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h>기관 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
(30개)</td><td>시장형
(14개)</td><td rowspan="4">• 직원 정원 300명 이상
•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td><td>•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td><td>•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16개)</td><td>•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수자원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주)</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
(58개)</td><td>기금관리형
(12개)</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td><td>•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 신용보증기금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r>
<tr><td>위탁집행형
(46개)</td><td>• 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d>•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장학재단
• 국가철도공단</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
(254개)</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d>• 한국산업은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td></tr>
<tr><td colspan="6">총 342개</td></tr>
</table>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현황(2007~2026)]

(단위: 개)

연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합계
2007(a)	24	78	196	298
2008	24	77	204	305
2009	24	80	193	297
2010	22	79	185	286
2011	27	83	176	286
2012	28	82	176	286
2013	30	87	178	295
2014	30	87	187	304
2015	30	86	200	316
2016	30	90	203	323
2017	35	89	208	332
2018	35	93	210	338
2019	36	93	210	339
2020	36	95	209	340
2021	36	96	218	350
2022	36	94	220	350
2023	32	55	260	347
2024	32	55	240	327
2025	31	57	243	331
2026(b)	30	58	254	342
증감(b-a)	6	△20	58	44

주: 공공기관 수는 각 연도 1월 최초 지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중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및 재정경제부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07~2026년)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

2025회계연도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의 자산총액은 1,210.3조원, 부채총액은 768.6조원, 당기순이익은 13.3조원으로 나타났고, 2024회계연도 대비 자산 58.1조원 및 부채 27.1조원 증가, 당기순손익은 5.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공공기관의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하였다.[4]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25회계연도 자산총액은 1,210.3조원, 부채총액은 768.6조원, 당기순이익은 13.3조원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58.1조원, 부채는 27.1조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익은 5.2조원이 증가하였다.

2024년 대비 2025년의 부채 증가율보다 자본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2025년 부채비율은 174.1%로 2024년 180.5% 대비 6.4%p 하락한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 또한 2021년 26.3%에서 2023년 29.6%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4년 이후 감소하며 2025년 28.9%까지 감소하였다.

2024년 대비 2025년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분 58.1조원은 주로 설비·투자자산의 지속적 확대와 주거안정정책 수행 등에 따른 결과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임대자산(9.5조원 증가)과 분양토지·주택 등 재고자산(4.3조원 증가) 증가로 15.2조원의 자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채권 관련 지급보증대지급금 증가(7.8조원 증가)에 따라 자산이 5.4조원 증가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지분증권(주식) 평가이익 반영(2.8조원 증가) 등에 따라 자산 4.0조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책사업을 위한 금융자산 및 장기대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3.5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2.6조원 자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증계약자산[5] 1.7조원 증가 및 투자부동산 6천억원 증가에 기인한다.

---

4) 재정경제부, "342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26.4.30.
상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결과는, 202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339개 기관에 대한 것이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행보증 및 금융보증 관련하여 미래발생가능한 추정 및 관련 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는 보증계약마진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5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24년 대비 27.1조원 증가한 768.6조원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13.5조원)와 한국도로공사(3.0조원)의 부채 증가 등에 기인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비 충당 및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이자부담부채 12.1조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가 3.0조원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에 따라 대출채권(자산)이 2024년 대비 5.4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따라 부채도 3.8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발전설비 투자 확대 및 전력판매 증가 등에 따라 자산이 4.0조원 증가하였으며, 원전 관련 충당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채도 2.7조원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962	1,048.2	1,097.7	1,152.2	1,210.3	58.1	5.0
부채	584.4	671	709.7	741.5	768.6	27.1	3.7
부채비율	154.7	177.8	182.9	180.5	174.1	△6.4	
GDP 대비 부채비율	26.3	28.9	29.6	29.1	28.9	△0.2	△0.8
당기순이익	10.8	△14.0	△3.2	8.1	13.3	5.2	64.2

주: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기본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위 표의 수치 중 일부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함
3.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음
4. 전체 공공기관 부채 합계는 연결기준이고,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전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26.4.30.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원으로 2024년 8조 676억원 대비 5조 1,826억원 증가하였다.

2025년 당기순이익 규모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7.2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수력원자력㈜(1.6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1.6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1.2조원)가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7.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예금 증가에 따른 예금보험료 수익(2.5조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이용률 및 전력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2025년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기반으로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와 이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운용 등을 통해 1.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한편 2025년 공공기관의 2024년 대비 수익성 개선은 일부 공공기관에 집중된 실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6조 7,904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규모(13조 2,502억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195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147개이다.

[25년 당기순손익 상위기관 10개]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년 공공기관 합계 대비 기관별 증감 비중
한국전력공사	△56,077	△252,977	△32,492	8,293	72,499	54.7
예금보험공사	22,853	26,752	20,738	29,668	24,342	18.4
한국수력원자력(주)	2,945	△620	1,221	5,727	16,374	12.4
주택도시보증공사	3,620	△4,087	△38,598	△25,198	15,749	11.9
한국주택금융공사	6,088	△282	△3,755	3,593	11,871	9.0
한국해양진흥공사	41,875	△19,863	42	△4,382	8,037	6.1
인천국제공항공사	△7,506	△5,266	5,035	4,882	6,914	5.2
한국동서발전(주)	390	1,057	1,770	5,224	4,431	3.3
한국남부발전(주)	△1,147	△412	2,655	3,724	4,127	3.1
한국남동발전(주)	△45	1,696	2,274	3,619	3,559	2.7
소계	69,072	△1,026	△8,618	35,150	167,904	126.7
전체 공공기관 합계	107,495	△139,269	△32,271	80,676	132,502	

주: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회사도 분석에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한편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을 기관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기순이익 발생 기관 수는 2021년 213개에서 2025년 195개로 18개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 수는 같은 기간 129개에서 147개로 18개 증가하였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 수가 2021년 94개에서 2025년 11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나타난 반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위탁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 19개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1개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21개로 2023년 대비 1.91배 증가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의 규모가 2021년 94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8

개로 1.25배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손실 원인이 경영비효율성 등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1~2025년 당기순이익 및 손실 발생기관 현황(개수)]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
당기 순이익 발생 기관	시장형공기업	6	8	11	13	12	6
	준시장형공기업	12	11	13	13	12	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	8	9	10	10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7	33	35	32	25	-2
	기타공공기관	160	159	153	140	136	-24
	소계	213	219	221	208	195	-18
당기 순손실 발생 기관	시장형공기업	8	6	3	1	2	-6
	준시장형공기업	4	5	3	3	4	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4	3	2	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	13	11	14	21	2
	기타공공기관	94	95	101	114	118	24
	소계	129	123	121	134	147	18
총계		342	342	342	342	342	0

주: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회사 및 은행형 공공기관도 분석에 포함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1.3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1.2조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0.7조원), 한국철도공사(△0.4조원)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유가 전망 및 매장량 평가 등을 반영하여 석유개발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따라 2025년 당기순손실 1조 2,503억원을 기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사업비 증가에 따라 2025년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으며, 이는 2024년 당기순이익(2.4조원) 대비 3.6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과 관련한 보증금지급준비금(3,412억원) 및 보전채권매각손실(3,566억원) 발생 등으로 2025년 6,6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다만 보전채권상각비 감소와 보전채권상각충당금 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손실 규모는 전년(7,045억원) 대비 427억원 축소되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에도 각각 3,578억원, 3,444억원, 1,0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대비 손실액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매출 증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년도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하였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전년도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물량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확대되면서 2025년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적자 전환하였다.

[25년 당기순손익 하위기관 10개]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년 공공기관 합계 대비 기관별 증감 비중
한국석유공사	△460	3,130	1,788	1,915	△12,503	△9.4
국민건강보험공단	38,123	65,310	29,694	24,013	△12,018	△9.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9	△686	△5,562	△7,045	△6,618	△5.0
한국철도공사	△11,552	△2,350	△4,516	△4,999	△3,578	△2.7
한국광해광업공단	248	△181	△3,120	△11,817	△3,444	△2.6
대한석탄공사	△1,325	△1,673	△2,483	△4,369	△1,017	△0.8
경북대학교병원	207	700	△408	△1,040	△929	△0.7
한국토지주택공사	41,633	14,327	5,158	7,608	△918	△0.7
부산대학교병원	390	511	△470	△656	△757	△0.6
근로복지공단	△35	260	△41	△546	△641	△0.5
소계	67,129	79,392	20,040	3,064	△42,424	△32.0
전체 공공기관 합계	107,495	△139,269	△32,271	80,676	132,502	

주: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회사도 분석에 포함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현황 및 BIS비율]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 산정 시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있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5회계연도 부채총액은 907.1조원으로 2024년 대비 28.9조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 합계는 9.7조원으로 전기 5.8조원 대비 3.9조원 증가하였다. 3개 기관 모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 3.1조원 증가, 한국수출입은행 0.7조원 증가, 중소기업은행 0.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23~2025)]

(단위: 조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23	2024(a)	2025(b)	증감(b-a)	2023	2024(c)	2025(d)	증감(d-c)
한국산업은행	308.1	328.5	335.0	6.5	4.0	2.1	5.2	3.1
한국수출입은행	108.4	111.7	108.3	△3.4	0.8	1.0	1.8	0.7
중소기업은행	416.6	438.0	463.8	25.8	2.7	2.7	2.7	0.1
합계	833.2	878.2	907.1	28.9	7.5	5.8	9.7	3.9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2014년 12.08% 이후 2020년 15.29%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13.82%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요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등을 하향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말에,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6월 말부터 도입하였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평균 BIS비율(총자본)은 15.83%으로, 3개 기관의 평균 BIS비율인 15.58%는 시중 은행 대비 0.25%p 낮으며,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부실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 또한 있어, 이와 관련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수출입은행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14.84	13.38	14.47	15.35	17.71
한국산업은행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4.07	13.90	14.24
중소기업은행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14.85	14.68	14.87	14.69	14.78
3개 은행 평균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14.47	14.65	15.58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 합계는 964.9조원으로 2024년 948.0조원 대비 16.9조원이 증가하였다.[6] 2025년 총수입·총지출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공단(6.0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5.0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4.9조원) 등에서 발생하였고, 총수입·총지출 감소는 한국산업은행(△4.9조원), 한국수출입은행(△3.9조원), 중소기업은행(△3.8조원) 등에서 발생하였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의 40.5%는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은 3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입은 정부직접지원액과 정부간접지원액,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669.7조원으로 총수입 964.9조원의 69.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의 663.0조원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정부간접지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수입은 466.7조원으로 총수입의 48.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2024년의 473.8조원 대비 7.1조원이 감소하였다.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수입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3.9조원), 한국전력공사(1.6조원), 한국수력원자력(주)(1.4조원) 등이 있다. 이 외 차입을 통한 수입은 152.5조원으로 총수입의 15.8%를 차지하였고 2024년(138.7조원) 대비 13.8조원이 증가하였다. 차입금 수입은 주로 공기업(83.6조원, 54.8%)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중소기업은행(10.0조원 증가), 한국서부발전(주)(4.0조원 증가), 한국가스공사(2.6조원 증가)에서 차입금이 확대되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차입금이 감소한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4.2조원), 예금보험공사(△3.1조원)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지출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등으로 구분된다. 총지출 964.9조원 중 사업비는 649.4조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며, 이는 2024년(638.7조원) 대비 7.2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차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차입상환금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차입상환금은 103.9조원으로 2024년(97.4조원) 보다 6.5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재정경제부는 상기 총수입·총지출 총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나, 본 분석에서는 참고 목적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상기 총수입·총지출에는 은행형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총수입·총지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이다.

[공공기관 총수입·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4 (A)	2025					증감액 (B-A)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B)	비중	
수입	정부 지원 수입	정부 직접 지원	출연금	27.1	0.1	21.6	9.7	31.3	(3.2)	4.3
			보조금	26.8	1.1	23.6	5.4	30.1	(3.1)	3.3
			부담금	11.1	0.0	10.9	0.7	11.6	(1.2)	0.5
			이전수입	86.0	0.0	89.0	5.3	94.4	(9.8)	8.4
			부대수입	0.5	0.0	0.4	0.1	0.5	(0.1)	△0.0
		정부 간접 지원	사업수입	473.8	226.0	147.5	93.3	466.7	(48.4)	△7.1
			위탁수입	14.9	2.2	9.2	3.8	15.2	(1.6)	0.3
			독점수입	11.9	3.5	7.6	0.4	11.5	(1.2)	△0.4
			부대수입	10.9	6.2	2.1	0.2	8.5	(0.9)	△2.4
	소계			663.0	239.1	311.8	118.9	669.7	(69.4)	6.7
	차입금			138.7	83.6	32.1	36.8	152.5	(15.8)	13.8
	(비중)			-	(54.8)	(21.1)	(24.1)	(100.0)		-
	기타			146.4	31.5	77.0	34.1	142.7	(14.8)	△3.7
	합계			948.0	354.2	420.9	189.8	964.9	(100.0)	16.9
	비중			-	(36.7)	(43.6)	(19.7)	(100.0)		-
지출	인건비			32.1	13.4	9.1	11.5	34.1	(3.5)	1.9
	경상운영비			15.7	11.1	2.0	3.9	17.0	(1.8)	1.2
	사업비			638.7	204.7	315.9	128.9	649.4	(67.3)	10.7
	차입상환금			97.4	70.6	26.4	7.0	103.9	(10.8)	6.5
	기타			164.1	54.5	67.5	38.5	160.5	(16.6)	△3.2
	합계			948.0	354.2	420.9	189.8	964.9	(100.0)	16.9
	비중			-	(36.7)	(43.6)	(19.7)	(100.0)	-	-

주: 1.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2. 기타공공기관은 3개의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3.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가. 현 황

2022년 6월, (구)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발전 6사, 지역난방공사 등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었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는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어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구분된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14개 공공기관은 매년 부채와 자산규모가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 및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선제적 재무위험 관리를 위해 ① 비핵심자산 매각, ② 투자·사업 정비, ③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으로 부채비율을 안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위험기관 현황]

요건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9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 · 남부 · 동서 · 서부 · 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주: 1. 밑줄로 표시된 기관은 자본잠식 상태임
2. 2025년 공공기관 지정 시,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2년에 최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기관별 추가 부채감축 노력을 반영하여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수정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022년 최초계획(34조 949억원) 대비 68%(23조 1,986억원) 증가한 57조 2,935억원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건전화계획 수정 반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기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년 최초계획	53,343	58,243	135,993	47,354	46,016	340,949
2023년 수정계획	80,881	78,652	126,409	54,269	81,889	422,100
2024년 수정계획	80,881	169,838	141,326	67,080	113,810	572,935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4.8.28.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수정된 재정건전화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산매각 9.1조원, 사업조정 19.3조원, 경영효율화 11.9조원, 수익확대 6.1조원, 자본확충 10.7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자산매각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 등에 따라 실현될 예정이며, 사업조정 부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당진기지 단계적 건설을 통한 투자규모 조정,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건설 민간건설사 참여 확대 등을 계획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로 인한 전력구입비용 절감, 한국가스공사의 동절기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스 구매비용 절감 등, 원료비용 절감에 따른 경영효율화 노력이 계획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비 회수를 통해 수익확대를 계획한 바 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규모(2024)]

(단위: 억원)

구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기존 계획	75,493	157,173	67,510	14,459	107,465	422,100
추가 노력	15,683	35,928	51,643	47,189	392	150,835
합계	91,176	193,101	119,153	61,648	107,857	572,935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4.8.28.

나. 분석의견

정부의 재무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과 재무구조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위험이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2025회계연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총부채 768.6조원 중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가 62.8%(482.8조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 중 2025 회계연도 총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별도 기준 118.0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173.6조원)이다. 또한 전년 대비 2025 회계연도의 총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5조원)로 나타났다.

2025 회계연도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은 350.4%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174.1%)보다 17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이며,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대한석탄공사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손실이 정부의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5 회계연도 재무위험기관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보다 부채가 많다는 의미이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별도 기준) 453%, 한국가스공사 396.6%, 한국철도공사 280.2%, 한국지역난방공사 257.6%, 한국토지주택공사 230.8%로 나타나고 있다.

[202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

구분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30개)[1]		재무위험기관 (14개)[1]	
자산	1210.3조원	1084.1조원	89.6%	620.6조원	51.3%
부채	768.6조원	720.0조원	93.7%	482.8조원	62.8%
자본	441.7조원	364.1조원	82.4%	137.7조원	31.2%
부채비율	174.1%	197.7%		350.4%	

주: 1) 2025년 공공기관 지정 시, 대한석탄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표상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및 재무위험기관에는 포함하여 계산함

1. 전체 공공기관 부채 합계는 연결기준이고,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외되어 있음
2.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수치는 한국전력공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수치 계산 방식과 동일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5.9.3.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무위험기관의 총부채 중 이자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사채 및 차입금)를 살펴보면,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109.5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력공사(84.9조원), 한국가스공사(35.0조원), 한국석유공사(17.0조원), 한국철도공사(16.3조원), 한국수력원자력(주)(14.5조원)의 2025년 금융부채 역시 1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위험기관의 재무건전화계획이 시작된 2022년 대비 2025년의 금융부채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27.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7]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금융부채는 2022년 대비 8.1조원 증가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의 금융부채는 8.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토지 및 주택 분양사업의 신규 투자로 인해 재고자산 증가,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투자부동산(임대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 따른 차입금(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등이 증가하고 있다.

8) 2022년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및 LNG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 상승 및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중 증가 등에 따라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자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차입금 및 사채 조달이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22년 요금 동결 및 LNG 가격 상승 및 원료비연동제 유보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하여 적정 이익을 유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구매비용 대비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원료비미수금(자산)으로 인식하고 차기 이후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별 금융부채 규모(2021~2025)]

(단위: 조원)

기관명	2021(A)	2022(B)	2023	2024	2025(C)	증감 (D=C-A)	증감 (E=C-B)
한국토지주택공사	73.3	81.6	88.3	97.4	109.5	36.1	27.8
한국전력공사(별도)	39.1	76.8	89.6	87.9	84.9	45.8	8.1
한국가스공사	26.4	43.1	39.0	39.1	35.0	8.6	△8.0
한국석유공사	14.9	15.2	15.1	17.1	17.0	2.1	1.8
한국철도공사	12.6	14.0	15.1	16.0	16.3	3.7	2.3
한국수력원자력(주)	11.9	12.2	13.4	14.7	14.5	2.6	2.3
한국광해광업공단	7.0	7.1	7.7	8.2	7.9	0.9	0.8
한국중부발전(주)	8.0	8.2	7.9	7.1	7.0	△1.0	△1.1
한국서부발전(주)	5.5	5.9	5.7	5.8	6.2	0.7	0.3
한국남부발전(주)	5.2	5.7	5.6	5.1	5.0	△0.2	△0.8
한국지역난방공사	2.9	3.5	4.0	4.2	4.2	1.3	0.7
한국남동발전(주)	4.1	4.3	3.7	3.8	4.2	0.1	△0.1
한국동서발전(주)	3.6	3.8	3.6	3.8	3.8	0.1	△0.0
대한석탄공사	2.2	2.3	2.4	2.4	2.6	0.4	0.2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2025년 재무위험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9]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수익창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영업활동만으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와 선제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 중 영업이익을 시현하다가 2025년에 영업손실로 전환됨에 따라 이자보상

9) (영업이익/이자비용)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기관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배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2022~2024년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으로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무위험기관별 이자보상배율(2021~2025)]

(단위: 배)

기관명	이자보상배율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철도공사	△3.0	△1.2	△1.2	△0.2	△0.8
대한석탄공사	△3.5	△1.7	△1.0	△0.8	△0.3
한국토지주택공사	2.9	0.9	0.0	0.2	△0.3
한국광해광업공단	△0.7	△0.4	△0.4	△0.3	△0.3
한국가스공사	1.9	2.6	0.9	2.0	1.7
한국석유공사	1.1	4.4	1.7	2.2	1.5
한국서부발전(주)	△0.4	1.2	1.0	3.6	1.6
한국중부발전(주)	1.6	0.5	0.5	2.4	1.7
한국수력원자력(주)	1.0	0.7	0.7	1.3	2.0
한국전력공사	△8.7	△21.2	△2.1	1.0	2.9
한국남부발전(주)	0.2	△0.5	1.7	2.9	3.3
한국남동발전(주)	0.1	1.0	1.8	4.9	3.6
한국지역난방공사	0.7	△5.5	3.0	2.7	4.2
한국동서발전(주)	0.6	△0.1	1.2	4.8	4.8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관의 2021~2025년 영업손익 및 이자비용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는 735.7~8,881.2억원의 영업손실을 인식하는 동안에도 2,944.1~4,400.9억원의 이자비용을 상환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2021년 이후 영업손실이 1,040.2억원에서 262.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동기간 이자비용은 300.5억원에서 776.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1~2025년 영업손실은 3,831.9억원이며, 동 기간 이자비용은 2,168.4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손실보전기관임에

따라 이자비용의 발생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영업손익이 436.7~56,485.8억원으로 크게 변동하고 있으나 이자비용의 경우 5개년 평균 1.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관의 영업손익 및 이자비용(2021~2025)]

(단위: 억원)

기관명	영업손익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철도공사	△8,881.2	△3,969.5	△4,415.4	△735.7	△3,524.5
대한석탄공사	△1,040.3	△915.8	△793.5	△671.7	△262.5
한국토지주택공사	56,485.8	18,128.4	436.7	3,403.9	△6,412.5
한국광해광업공단	△373.5	△875.5	△1,042.5	△680.9	△859.5
기관명	이자비용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철도공사	2,944.1	3,212.2	3,721.7	4,151.3	4,400.9
대한석탄공사	300.5	536.9	809.9	873.6	776.2
한국토지주택공사	19,262.7	19,332.2	21,327.0	16,895.1	19,469.0
한국광해광업공단	549.2	2,138.2	2,742.5	2,640.3	2,771.7

자료: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재무위험기관의 총부채 비중 및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자본잠식과 같은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부채 규모, 금융부채 부담, 자본잠식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종료 이후에도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거나 재무구조 악화 징후를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3-3. 공공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가. 현 황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설립근거법 등에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기관이다.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규정한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15개 기관 중 법률에서 이익적립금을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이다. 한편, 법률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이다.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제6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제5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된 15개 공공기관의 2025회계연도 총부채 규모는 1,077조 1,816억원으로 2024년 대비 32조 8,071억원이 증가하였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부채가 증가한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 23조 8,341억원, 한국산업은행 4조 5,21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조 7,51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조 5,996억원 등 12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10)]

2025회계연도 기준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총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 규모는 51조 7,262억원으로 2024년 대비 9조 1,024억원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준 이익잉여금이 결손을 나타내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5개 기관이며, 이는 2024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4,63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2024년 대비 3,533억원이 확대되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4,5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월결손금은 4,4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1,01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은 전년 대비 1,006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24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 전부에서 2025년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2조 5,19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1조 5,74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도 2024년 당기순손실(4,402억원)에서 2025년 당기순이익(8,076억원)으로 전환되었다.

---

10)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2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2025년 부채가 증가하였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2025년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부채			이익잉여금 (적립금 및 잉여금)			당기순이익 (재정운영결과)		
	2024 (a)	2025 (b)	증감 (b-a)	2024 (c)	2025 (d)	증감 (d-c)	2024 (e)	2025 (f)	증감 (f-e)
[비은행형]									
기술보증기금	15,614	18,428	2,814	△70,676	**△74,209**	△3,533	△1,633	△4,633	△3,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19	1,801	282	445	685	240	82	281	199
대한석탄공사	24,587	25,880	1,293	△21,907	**△22,913**	△1,006	△4,387	△1,003	3,384
신용보증기금	39,628	38,716	△912	△36,156	**△28,694**	7,462	4,264	6,162	1,898
주택도시보증공사	15,466	16,282	816	△39,405	**△23,989**	15,416	△25,198	15,749	40,94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47,026	244,698	△2,328	23,007	30,327	7,320	△5,153	△896	4,257
한국광해광업공단	77,205	80,577	3,372	△55,216	**△59,710**	△4,494	△14,410	△4,520	9,890
한국무역보험공사	29,711	31,094	1,383	28,653	39,019	10,366	7,464	5,509	△1,955
한국장학재단	105,096	109,132	4,036	9,861	10,557	696	403	274	△129
한국주택금융공사	382,715	420,229	37,514	106,370	117,372	11,002	3,593	11,871	8,278
한국토지주택공사	1,388,735	1,424,731	35,996	69,958	63,810	△6,148	△9,930	△18,910	△8,980
한국해양진흥공사	54,691	60,335	5,644	39,545	47,702	8,157	△4,402	8,073	12,475
소계(A)	2,381,993	2,471,903	89,910	54,477	99,957	45,480	△49,308	17,957	67,265
[은행형]									
중소기업은행	3,998,639	4,236,980	238,341	208,962	223,703	14,741	24,281	23,858	△423
한국산업은행	2,962,962	3,008,177	45,215	129,146	146,802	17,656	20,072	17,152	△2,920
한국수출입은행	1,100,151	1,054,756	△45,395	33,653	46,800	13,147	9,796	16,850	7,054
소계(B)	8,061,752	8,299,913	238,161	371,761	417,305	45,544	54,149	57,860	3,711
합계(A+B)	10,443,745	10,771,816	328,071	426,238	517,262	91,024	4,841	75,817	70,976

주: 1. 손실보전 대상인 부문에 한하여 재무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되는데 재정운영결과가 (+)인 경우 기금에 발생한 부담금 등의 수익에 비해 원가나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고, (-)인 경우 원가나 비용에 비해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상기 표에서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영결과의 부호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재무정보와 기준 일치를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MBS 발행 관련 자산, 부채를 제외한 공시 기준(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Agreed Upon Procedure)으로 작성함(AUP 기준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당기순이익은 부담금수익(금융기관 출연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정운영순원가로 계상하므로 상기 표에도 이를 반영함). 또한, 2024년 수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발행한 AUP 보고서(2025.5.16.)를 적용하여 수정하였음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인 5개 사업(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설립근거법 등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된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2025회계연도 이익잉여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이 결손인 기관은 기술보증기금(△7조 4,209억원), 대한석탄공사(△2조 2,913억원), 신용보증기금(△2조 8,694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조 3,98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5조 9,710억원) 등 5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5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간(2021~2025년) 출자,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총 11조 7,15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6조 4,389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조 4,310억원, 신용보증기금 1조 9,933억원, 기술보증기금 6,120억원, 대한석탄공사 1,5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년 말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액(2021~2025)]

(단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2025년 이익잉여금	정부지원 유형	정부지원액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4,209	출연	3,500	1,320	-	200	1,100	6,120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59,710	출자, 출연, 보조	2,653	2,911	4,252	6,812	7,682	24,310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3,989	출자	3,900	-	3,839	47,000	9,650	64,389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8,694	출연	5,096	11,350	1,287	900	1,300	19,933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2,913	출자	285	271	236	402	358	1,552
합계		△209,515	-	15,434	16,302	10,014	55,314	20,090	117,154

주: 1. 2025년 말 이익잉여금은 각 기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회계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11] 상태이며, 이 두 기관의 자본잠식 규모 합계는 5조 2,695억원으로,

11)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 하며, 자본잠식이 지속되면서 자본총계가 음(-)(자산<부채)이 되는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 한다. 상기에서는 완전자본잠식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재하였다.

2021년 3조 5,106억원 대비 1조 7,589억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 기준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은 각각 2조 1,076억원과 3조 1,619억원이며, 자본잠식 규모는 2021년 대비 각각 8,153억원과 9,436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석탄사업 종료 이후에도 2조 5,592억원 규모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잔여 자산 규모가 금융부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입금 계약상 손실보전조항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의 상당 부분이 향후 정부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석탄사업 종료 이후 대한석탄공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재정부담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재정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손실보전 공공기관 연도별 총자본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대한석탄공사	△12,923	△14,258	△16,427	△20,422	△21,076	△8,153
한국광해광업공단	△22,183	△22,545	△24,778	△37,630	△31,619	△9,436
합계	△35,106	△36,803	△41,205	△58,052	△52,695	△17,589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설립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손실보전 규정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적자 전환하였다. 같은 기간 부채 규모는 2021년 138.8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73.7조원으로 34.7조원 증가하는 등 재무부담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관으로, 2025년 당기순손실 발생은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채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A)	2022	2023	2024(B)	2025(C)	증감(C-B)	증감(C-A)
당기순손익	41,633	14,327	5,158	7,608	△918	△8,526	△42,551
부채	1,388,884	1,466,172	1,528,473	1,601,055	1,736,567	135,512	347,683

자료: Alio를 바탕으로 재작성

손실보전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결손금이 누적될 경우 향후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과 적자 전환 및 부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4 정부 위탁사업 분석: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심으로

가. 현 황

(1) 정부 위탁사업의 개념 및 규모

정부 위탁사업이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부의 인력 및 예산상 한계를 극복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정부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 위탁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사업비[1]는 총 8조 6,589억원으로 2025년 전체 회계·기금의 총지출 결산액(684.1조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의 민간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5		2026
	예산(추경)	결산	예산(본예산)
총지출(A)	703.3	684.1	727.9
민간위탁사업비(B)	8.5	8.7	9.0
비중(B/A)	1.2	1.3	1.2

자료: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 위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민간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 중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에 준하여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3745)

1) 2025년 결산 기준 전체 회계·기금 320-02(민간위탁사업비)를 합산한 규모이다. 다만, 그 외 민간보조사업비나 사업출연금, 대행사업비,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은 제외하였다.

공공성을 띠면서도 운영상 효율성을 꾀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적인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법령상 위탁사업 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실제 수행방식은 기관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타 수탁기관 대비 위탁의 실질에 근거한 체계적 분석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정부 위탁사업 중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근거 법령 및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개념상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재원의 비목이 위탁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의 형식이라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공공기관을 통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

전체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사업특성이 상이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총 268개 공공기관[2]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2.6%인 141개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나머지 127개(47.4%) 공공기관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들 기관은 주로 보조·출연사업 외에 별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타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의 지위에 있어 정부가 아닌 상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또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자체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었다.

---

2) 본 분석은 2025년 1월 지정 기준 총 331개 공공기관 중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15개, 연구개발전문기관 10개, 연구소 등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3개, 그 외에 연구용역사업 외 수탁사업이 없는 기관 5개 등을 제외한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한편, 본 분석의 세부사업 현황 및 금액은 2026년 4월 현재 결산자료가 확정된 최신 사업연도인 2024회계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여부]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함	141	52.6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127	47.4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위탁 사업만 있는 기관)	1	0.4
(예산 지원 비수반 위탁만 있는 기관)	3	1.1
계 (전체 분석대상 기관)	**268**	**100.0**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5년, 사업별 현황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41개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은 2024년 기준 총 12조 656억원[4]으로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466조 347억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매출액(A)[1]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B)	비중(B/A)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141개)	466,034,723	12,065,579	2.6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한편, 해당 금액은 비목과 관계 없이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재원의 비목이 위탁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의 형식이라도 포함한 수치로, 앞서 살펴 본 정부 전체의 민간위탁사업비 합계(8조 6,589억원)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 분석에서 같다.

(3) 부처별·기관별 현황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5] 보건복지부는 전체 26개 공공기관 중 16개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기관 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13개 기관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국토교통부 11개, 문화체육관광부 각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고용노동부 8개 기관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소관 공공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31개 공공기관 중 29.0%인 9개 기관을 통해서만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다른 22개 기관과는 수행 중인 정부 위탁사업이 없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방부, 기상청 등 7개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과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부처별 현황]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1개)	33.3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3개)	100.0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개)	100.0
	금융위원회	7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3개)	42.9
	국무조정실	1	(0개)	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3	한국조폐공사 (1개)	33.3

5) 소관 부처는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국가 데이터처	1	(0개)	0.0
	기획예산처	1	한국재정정보원 (1개)	100.0
	관세청	1	(0개)	0.0
교육위원회	교육부	8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5개)	62.5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8개)	5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2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50.0
	원자력안전 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개)	100.0
외교통일 위원회	외교부	2	(0개)	0.0
	통일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개)	50.0
	재외동포청	1	(0개)	0.0
국방위원회	국방부	2	(0개)	0.0
	방위사업청	1	국방기술품질원 (1개)	100.0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3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개)	100.0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개)	100.0
	경찰청	1	한국도로교통공단 (1개)	100.0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개)	100.0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9개)	29.0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진흥원 (1개)	100.0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개)	45.5
	해양수산부	16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개)	81.3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개)	100.0
	산림청	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	80.0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4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17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35.3
	중소벤처기업부	9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개)	55.6
	지식재산처	5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4개)	8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26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6개)	61.5
	식품의약품안전처	5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개)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개)	66.7
	기후에너지환경부	30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12개)	40.0
	기상청	1	(0개)	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8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1개)	39.3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개)	100.0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268**	**141**	**52.6**

주: 소관 부처는 2026년, 공공기관 현황은 2025년, 사업별 현황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41개 공공기관을 위탁사업 규모가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체 매출액 4조 7,103억원 중 29.5%인 1조 3,897억원의 매출이 정부 위탁사업 수탁을 통해 발생함으로써 위탁사업비 총액 기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이 1조 290억원, 한국장학재단 9,802억원, 한국철도공사 8,490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158억원 등의 순이었다. 141개 기관이 수탁한 정부 위탁사업의 평균 규모는 856억원이었다.

[정부 위탁사업 매출액 상위 20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전체 매출액 (A)[1]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B)	비중(B/A)
1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4,710,321	1,389,736	29.5
2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1,263,263	1,029,005	81.5
3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5,366,056	980,175	18.3
4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6,528,145	849,012	13.0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7,311	715,832	98.4
6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725,902	690,449	95.1
7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70,114,038	656,735	0.9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653,570	555,233	85.0
9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2,583	502,583	100.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26,532,709	416,033	0.3
11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8,694,618	358,935	4.1
12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1,833,216	347,886	19.0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1,252,909	301,449	24.1
14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917,699	268,509	29.3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전체 매출액 (A)[1]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B)	비중(B/A)
15	국립공원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551,341	**235,434**	42.7
1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부	342,652	**208,667**	60.9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4,676	**201,212**	98.3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15,572,240	**181,457**	1.2
19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40,091	**132,951**	55.4
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153,612	**116,254**	75.7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141개) 평균			3,305,211	**85,571**	2.6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정부 위탁사업 수행시 계약 절차의 실질화 필요

첫째, 정부 위탁사업 중 일부는 정부가 수탁 공공기관과 별도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의무와 책임 관계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정부부처와 같은 행정기관은 공공기관 등 개념상 민간수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1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계약[6] 체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117개 기관, 83.0%)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12개 기관(8.5%)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12개 기관(8.5%)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탁사업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1)]	12	8.5
일부 사업만 계약을 체결함	12	8.5
계약을 체결함[2)]	117	83.0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20% 미만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2)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본 분석에서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 실무상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협약이 정부 위탁사업의 위·수탁 당사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정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4개 공공기관(일부 미체결 기관 12개 포함)을 대상으로 계약 미체결 사유를 살펴 보면, 법령에서 직접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19개 기관(79.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정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기관 응답)]

(단위: 개 기관, %)

구분	수탁 공공기관 수	비중
법령에서 직접 위탁받은 사업이므로 계약서 미작성	19	79.2
법령해석 차이[1)]	1	4.2
기타[2)]	1	4.2
(이유 미설명)	3	12.5
계 (전체 계약 미체결 공공기관)	**24**	**100.0**

주: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은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2) 비목상 국가보조금의 비목이므로 별도의 계약 없이 승인공문으로 갈음하였다는 입장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컨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7]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 계약에 준하여 이미 위탁기관의 자격, 업무의 내용, 위탁 절차 등을 이미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처럼 별도의 명시적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 위탁의 일반적 규정으로

7) 예컨대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경우, 정부가 공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35조(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서 해당 규정에 따른 위탁뿐만 아니라 타 법령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8]된다는 점, 개별 근거 법령에 따르더라도 해당 법령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어 계약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고려하면, 법령에 근거한 정부 위탁사업이라도 정부와 공공기관 간에 명시적인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정부가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바, 부처·기관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9]은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비용 및 수수료(일반관리비 및 이윤), 위탁기간 등 실질적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는 정부가 사업 위탁의 대가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위탁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런데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141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12.8%)에 대해서는 체결된 계약에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개 기관(16.3%)에 대해서는 체결된 계약에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8.5%)을 감안하면, 이는 총 53개 기관(37.6%)에 대해 정부가 체결한 계약에서 위탁사업비가 불완전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참고로 본 분석에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위탁사업마다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사업비 명시 여부]

(단위: 개 기관, %)

구분		수탁 공공기관 수	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1)]		12	8.5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없음		18	12.8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있음	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23	16.3
	사업비 관련 조항이 있으며 사업비 금액도 명시	88	62.4
	소계	111	78.7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1.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위탁사업비 외에 정부가 위탁수행의 대가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141개 공공기관 중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을 제외하고도, 77개 기관(54.6%)에 대해서는 계약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4개 기관(9.9%)에 대해서는 실제 부처가 해당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

11) 그 외에도 계약 본문에는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으나 산출내역서나 과업지시서 등 첨부서류에 위탁수수료 금액이 포함된 기관은 31개 기관(22.0%)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수수료 명시 여부]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음[1)]	위탁수수료 수취함		2	1.4
	위탁수수료 수취 안함		10	7.1
	소계		12	8.5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없음	위탁수수료 수취함		14	9.9
		(나라장터 표준계약서 사용)	8	5.7
	위탁수수료 수취 안함		63	44.7
	소계		77	54.6
계약 본문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은 없으나, 첨부서류(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는 금액 있음			31	22.0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있음	구체적 금액 미규정	근거 규정만 둠	3	2.1
		상한선 규정만 둠	10	7.1
		소계	13	9.2
	구체적 금액 규정	받지 않는다고 명시	1	0.7
		수수료율 명시	5	3.5
		수수료금액 명시	2	1.4
		소계	8	5.7
	소계		21	14.9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1.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수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는 원칙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정부의 관여가 일부 불가피하더라도, 그 관여 역시 사전에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위탁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계약의 내용에는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의무와 책임 관계 등 위탁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완결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이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위탁수수료율 산정체계 정비 및 직접사업비의 편성 명확화 필요

위탁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본래의 사업주체인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탁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정부 위탁사업은 수탁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이 아니지만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맡겨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므로,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외에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12]에서는 수탁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관리비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기업의 유지·관리 및 영업활동 등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를 의미한다. 반면 이윤은 계약 수행에 따른 수탁기관의 적정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수탁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위탁사업 수행 기관 141개의 46.1%인 6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평균 위탁수수료율[13]을 분석한 결과, 65개 공공기관의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A)	위탁수수료 수취 사업 매출액(B)	전체 위탁 수수료 계(C)	평균 위탁수수료율 (C/B)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65개) 계	6,633,584	6,018,600	224,561	3.7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기관별로 평균 위탁수수료율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2.5% 초과 5.0% 이하인 기관은 24개(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0.0% 초과 2.5% 이하인 기관은 20개(30.8%)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도 2개(3.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이 상당수 5.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평균 위탁수수료율)[1]	10.0% 초과	2	3.1
	7.5% 초과 10.0% 이하	5	7.7
	5.0% 초과 7.5% 이하	14	21.5
	2.5% 초과 5.0% 이하	24	36.9
	0.0% 초과 2.5% 이하	20	30.8
	소계	**65**	**100.0**

주: 1) 해당 기관의 2024년 기준 '전체 정부 위탁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의 매출(사업비) 합계액' 대비 '전체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본 분석에서 평균 위탁수수료율이란 해당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의 사업비 합계액' 대비 '전체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첫째, 정부가 공공기관에 정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상당수는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정해지고 있는바, 보다 체계적인 위탁수수료율 산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65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조사[14]한 결과, 이 중 27개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산정기준 없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기관 응답)]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별도의 수수료 산정기준 없음	별다른 산정기준이나 계약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	22	33.8
	별다른 산정기준 없이 계약에 따라 운영	5	7.7
	소계	27	41.5
수수료 산정기준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0	30.8
	개별 법령상 별도 규정 있음	2	3.1
	부처에서 정한 별도 지침 있음	11	16.9
	기관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 있음	3	4.6
	여러 산정기준 혼용	2	3.1
	소계	38	58.5
계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		**65**	**100.0**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개 기관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산정기준을 따랐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공공기관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삼았다고 응답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성격의 위탁사업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사업비의 5~10%, 이윤은 10%까지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수수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5]

14) 참고로 본 분석에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위탁사업마다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5) 이처럼 법령에서 위탁수수료의 상한만을 규정한 것은, 사업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양 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수수료율의 상한]

사업의 종류		일반관리비의 상한	이윤의 상한
공사	(일반적인 경우)	11%	15%
	시설공사	*8%*	
제조 및 구매	(일반적인 경우)	(품목별로) 6~14%	25%*
	수입물품의 구매	8%	10%
용역	폐기물 처리·재활용	10%	10%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용역	6%	

주: 1. 해당 상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전체 위탁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음
2. *이탤릭*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없으나,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규정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함

따라서 이들 47개 기관은 수탁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상한기준 외에는 별다른 산정기준이 없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탁기관 별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 자체의 특성 외에도 해당 기관의 별도 운영비 지원 여부 등 재무적 특성이 수수료율 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6] 역시 위탁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아니나 수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이나 '기술 보유의 정

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부 위탁사업의 수수료율을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27개 기관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수수료의 상한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도,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탁수수료의 설정에도 이러한 요인이 일부 고려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명시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직접사업비의 편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수수료적 성격의 간접비용이 포함 지원될 수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직접사업비의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76개 기관의 위탁사업비 상세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4개 기관(71.1%)이 직접사업비 편성 시 실제 소요되는 투입단위 및 산출단가를 고려한 상세 산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8개 기관(10.5%)은 상세 편성자료를 갖추고 있었으나, 단순히 정부예산 비목[17]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고 있어 투입단위에 근거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명확한 분리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상세 편성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사업비 편성시 직·간접비를 구분함		14	18.4
구분하지 않음	상세 단가편성자료 없음(미제출 포함)	54	71.1
	비목별 편성자료만 존재	8	10.5
	소계	62	81.6
계 (전체 위탁수수료 미수취기관)		**76**	**100.0**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일반용역비 등 정부의 품목별 지출 성질기준에 따라 구분된 경우를 말하며, 반면 직접비 또는 간접비와 같은 사업원가 기준으로 구분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상세 단가편성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총액 기준(Lump-sum)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해될 수 있다. 상세 산출 내역의 부재는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직접사업비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차원의 간접비 목적으로 임의 배분·집행할 소지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사후 감시와 검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정산 시 위·수탁 기관 간 마찰을 유발하고 환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적정 원가 산정이 곤란해진다. 사업별 원가 기준에 근거한 세부 편성내역이 누락되면 사업 효율성을 평가할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예산의 과다·과소 책정에 따른 재정 낭비와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적정 원가 데이터 축적이 불가능해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 '깜깜이' 계약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셋째, 법적·감사적 리스크가 가중된다. 구체적인 집행 근거가 결여된 총액 계약은 상급 기관의 회계 감사 시 예산 관리 소홀로 지적될 개연성이 높으며, 세부 증빙이 느슨해짐에 따라 허위 청구나 인건비 중복 계상 등 부정수급 및 예산 편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

넷째, 수탁기관의 자율성이 예산 오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보장된 자율성이 오히려 위탁사업 본래 목적보다 수탁기관의 고유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는 '주객전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총액 내에서 기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 위탁사업에서 직접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하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간접비적 성격의 비용을 분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부 위탁사업 추진 시 협약서 내에 명확한 단가 편성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 간 전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공부문은 원가계산 용역 등을 통해 사전에 세부 비목을 확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율의 합리화 필요

재위탁이란 당초 정부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공공기관(원수탁기관)이 제3의 기관(재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8]에 따르면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받은 공공기관 등은 법령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보다 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141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은 제3의 재수탁기관에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세부적으로는 재위탁 사업 수가 1개인 기관이 13개(9.2%), 2~3개인 기관이 11개(7.8%)이며, 4개 이상의 사업을 재위탁하는 기관도 6개(4.3%)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수행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수탁 공공기관 수	비중
재위탁 사업 없음		111	78.7
재위탁 사업 있음	재위탁 사업수 1개	13	9.2
	재위탁 사업수 2~3개	11	7.8
	재위탁 사업수 4개 이상	6	4.3
	소계	30	21.3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재위탁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19) 이 때의 재위탁은 공공기관이 수탁받은 정부 위탁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취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때 타 기관에 맡긴다는 의미는 공공기관(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간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용역계약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맡기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재위탁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본 분석에서는 재위탁 여부에 대해 단순한 사무 집행업무의 수행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탁기관이 해당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였다.

첫째,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받은 공공기관이 상당 업무를 제3의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오히려 위탁수수료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보다 높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재위탁은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사업주체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구조가 복잡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탁받은 사업을 제3의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 공공기관(원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위탁사업을 일부 재위탁하고 있는 30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15개 기관은 재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중 4개 기관은 재위탁사업에 대해 오히려 직접 수행사업보다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평균적으로 수취하고 있었다.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수탁 공공기관 수	비중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받지 않음		15	50.0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 받음	재위탁사업의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더 높음	11	36.7
	직접 수행사업의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더 높음	4	13.3
	소계	15	50.0
계 (재위탁 사업이 있는 공공기관)		**30**	**100.0**

주: 재위탁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이 재위탁 사업에 대해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데에는 기관 재무적인 취약성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설립 근거법률 등에 정부로부터 별도로 기관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출연·출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탁수수료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타 기관에 실제 수행을 맡기고 공단은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재위탁 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와 수수료 수취 구조 간의 괴리를 가져올 수 있는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재위탁 사업의 경우는 공공기관(원수탁기관) 외에도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제3의 재수탁기관이 별도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원수탁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제한된 사업비 내에서 실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재위탁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수행사업보다 위탁수수료를 낮게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 위탁사업에서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21]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위탁수수료는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탁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량과 난이도를 수수료율

---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공공기관(원수탁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실제 수행 주체(직접 수행 여부)나 실질적인 업무량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채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량에 따라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법령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공기관에 국한된 개선방안이 아닌, 재위탁 시에는 직접 수행사업에 비해 위탁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정부 차원의 차등 지급 원칙을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당국 차원의 명확한 공공기관 지원 원칙의 수립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는 단순한 업무 대가를 넘어, 해당 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보전이나 재무구조 안정화 등 외부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비례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의 명확한 정책적 원칙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일부 공공기관과 같이 위탁수수료 항목에 재정보전 성격을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현재 정부 위탁사업은 부처별·기관별로 운영상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 부처나 기관에 국한된 단편적인 개선방안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위탁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22]

22)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정부 위탁사업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2024년 12월에 관련 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정부제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위탁수수료율 부과와 관련한 재정당국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현황 분석

가. 현 황

(1)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개념 및 정책 동향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 국제협력 추진,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현지 거점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현지 조직을 해외사무소라고 하며, 법적 형태와 운영 특성에 따라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사업수행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을 포괄하는 명시적인 법령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3에서 '해외사무소등의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위 네 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외사무소(등)'을 사용한다.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조작적 정의로서, 개별 공공기관의 내부 명칭이나 정부 부처의 집계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프로젝트 현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고 사업 종료와 함께 폐쇄되는 거점은 일반적인 해외사무소와 설치 목적 및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수행사무소'로 별도 유형화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3[1]은 해외사무소등 신설 시 기존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통합청사와의 통합 설치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설

장희란 예산분석관(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3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등(법인 · 지사 · 지점 ·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설치된 다른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통합청사 등이 존재하는 때에는, 신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기존의 사무소 또는 통합청사를 운영하는 기관과 사무소의 통합 설치 방안에 관하여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야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외사무소등 설치 현황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9.〉

치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해외파견자 자녀의 학비 지원에 대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영 기준·성과관리 체계 등은 공공기관별 설립 목적과 해외사업의 성격, 현지 여건이 상이하여 통일적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어, 개별 공공기관은 정관·내부규정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근거로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는 196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당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뉴욕에 최초의 무역관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자원개발·건설·인프라 분야로 설치 주체와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무역·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ODA), 문화·콘텐츠 수출, 방산, 기술협력,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해외사무소의 규모와 형태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2월 재정경제부는 분산된 해외사무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인 K-마루 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제6조의3(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항은 ① 해외사무소등 신설 시 동일 지역의 기존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통합청사와의 통합 설치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설치 현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K-마루는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과 재외국민에게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일 도시에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해외 거점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 2026년 4월 9일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2)]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3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등(법인 · 지사 · 지점 ·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설치된 다른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통합청사 등이 존재하는 때에는, 신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기존의 사무소 또는 통합청사를 운영하는 기관과 사무소의 통합 설치 방안에 관하여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외사무소등 설치 현황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등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날(이 조의 시행 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1

조항 제목이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① '해외사무소 등'의 범위에 법인·지사·지점·연락사무소 및 주재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해외사무소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일(시행 전 설치분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설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③ 폐쇄·이전 등 보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④ 해외사무소등의 장이 관할 재외공관의 장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K-마루 사업은 1·2차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2월 1차 선도지역으로 로스앤젤레스, 하노이, 나이로비, 두바이, 브뤼셀 5개 도시가 선정되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2026년 5월 27일에는 베이징·다카르 2개 도시가 2차 선도지역으로 추가되어 15개 공공기관 간 MOU가 체결되었다. 특히 2차 선도지역은 운영 방식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이징은 포스코홀딩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최초의 민관협력형 거점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카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ODA 특화 거점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심의 무역지원형 거점에서 벗어나 민관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K-마루의 기능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차·2차 선도지역]

도시		대상기관	입주시기	비고
1차	L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식품 유통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결합하여 K-푸드 및 소비재 확산을 주도하고 현지 물류 및 통관 이슈 공동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4월	
	하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우리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마케팅 원스톱 체계'를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28.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28.4월	

호서식에 따른 설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사무소등의 폐쇄·이전 등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해외사무소등의 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외사무소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시		대상기관	입주시기	비고
	나이로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도시화 수요에 맞추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지원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26.9월	
	두바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EU·중동(기술인증):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합류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2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7.1월	
	브뤼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1월	
2차	베이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기관	한중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등
		산업연구원	'26년	중국 제조업 및 첨단산업 정책 분석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년	환경규제 대응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한국전력공사	'26년	전력·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년	한국 농식품의 해외 시장개척 및 홍보, 수출 정보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년	중국 농림업정책 동향과 농업·농촌, 시장정보 수집·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26년	중국 디지털·사이버 규제 대응 및 정보보호 협력 지원
		한국연구재단	'27년	과학기술·학술분야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7년	아시아지역 민간지원센터 운영, 유망사업 발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년	중국경제 현안분석 및 조사연구사업 수행
		한국디자인진흥원	'28년	국내 디자인기업 대중 진출 및 현지화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9년	중국지역 현지 여객, 환승객 증대 마케팅
		한국산업은행	'31년	국내기업 대중 투자·금융지원, 공급망·첨단산업 금융협력 발굴 등
	다카르	한국국제협력단	주관기관	세네갈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 및 현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26년	세네갈 농업 ODA 사업 수행

주: 기관별 입주시기는 기존 사무소 임차계약 종료 시점
자료: 재정경제부 K-마루 1·2차 업무협약식 추진 보도자료(2026.2.5., 2026.5.27.)

(2)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유형 분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① 법인격 보유 여부와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 운영형태별 유형과, ② 설립목적·주요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한 기능별 범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해외법인과 법인격은 없으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해외지점,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 프로젝트 현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수행사무소로 구분된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가 해외지사를 영업활동 수행 여부에 따라 해외지점(제1호)과 해외사무소(제2호)로 구분하고 현지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공공기관 해외조직이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보다 정책 수행·공공서비스 제공·국제협력 등 공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법적 등록 형태만으로는 실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형태별 유형분류]

유형	법인격	법적 근거	특징
해외법인	있음	현지법에 따른 법인설립	독립 법률관계 주체
해외지점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①호	독립채산, 영업활동 수행
해외사무소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②호	비영업적 기능, 공공기관의 일반적 형태
사업수행 사무소	없음	개별사업 계약·협약	프로젝트 현장형, 사업종료 시 폐쇄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다음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를 살펴본다. 해외사무소의 주요기능을 기관 설문으로 취합한 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3]을 적용하여, 무역·수출·시장진출, 국제개발협력(ODA),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사업개발·인프라·기타, 금융·투자관리, 관광·문화, 자원·에너지사업, 기술협력·방산의 8개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3) 내용분석은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객관적으로 분류하는 질적·양적 혼합 연구 방법으로, 본 분석에서는 607개 사무소의 주요기능 기재 내용을 8개 범주의 사전 설정 기준에 따라 검토·분류하였다.

각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수출·시장진출 기능은 해외시장 개척·바이어 발굴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 기능 유형이고, 금융·투자관리 기능은 현지 금융지원·투자관리·기금운용을 수행하는 정책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기관의 거점이 해당한다. 사업개발·인프라·기타 기능은 교통·에너지·도시개발 등 해외 인프라사업의 발굴·수행 지원을,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현지 정책·시장 동향 조사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ODA)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의 직접 수행을, 관광·문화는 방한 관광 유치 및 문화콘텐츠 보급을, 자원·에너지사업은 자원개발·발전설비 운영정비(O&M)·핵심광물 확보 지원을, 기술협력·방산은 과학기술 협력 거점 운영 및 방산 기술이전·수출 지원을 각각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분류 체계에 따른 기관별·해외사무소 별 분포는 나. 분석의견 (3)에서 다룬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등)의 기능분류 체계]

기능범주	정의	대표 기관(예시)
무역·수출·시장진출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 현지 바이어 연결 및 비즈매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금융·투자관리	해외금융지원, 투자사업관리, 기금운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사업개발·인프라·기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수행 지원, 공공사업 협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등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구축	현지 정책·시장동향파악, 정보수집,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우체국금융개발원, 연구원 등
국제개발협력(ODA)	개발도상국 원조사업 수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관광·문화	방한 관광 유치 및 한국 관광 홍보, 한국어·문화 콘텐츠 보급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등
자원·에너지사업	에너지·자원 분야 해외사업 발굴·수행 지원, 발전설비 운영·정비(O&M), 핵심광물 확보지원	한전KPS,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술협력·방산	과학기술협력 거점 운영, 방위산업 기술 이전 및 수출 지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3)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2025년 말 기준으로 84개 공공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이 113개국 218개 도시에서 715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을 제외한 해외사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1조 754억원에 달한다. 기관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기관 수 비중(19.0%)에 비해 해외사무소 수 비중(40.1%)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해외사무소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기관 수	사무소 수	주요 기관(예시)
공기업	**23**	**158**	
시장형	13	107	한국전력공사(35), 한국남동발전(10), 한국중부발전(9), 한국가스공사(8) 등
준시장형	10	51	한전KPS(10), 한국전력기술(8), 한국토지주택공사(4), 그랜드코리아레저(6) 등
준정부기관	**23**	**346**	
기금관리형	7	59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26), 한국무역보험공사(23) 등
위탁집행형	16	2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31), 한국국제협력단(49), 한국관광공사(30) 등
기타공공기관	**38**	**211**	수출입은행(36), 한국콘텐츠진흥원(27), 한국산업은행(25), 중소기업은행(15) 등
합 계	**84**	**715**	

주: 1. 괄호 안은 해외사무소 개소수
2. 합계 84개에는 부설기관 3개(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포함되며, 독립기관 기준으로는 81개임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12월 칭다오 GBC 및 실리콘밸리 KSC 설치하였으나 2026년부터 운영으로 본 분석에서 2개소는 제외함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전체의 59.2%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79개, 11.1%)·미국(67개, 9.4%)·베트남(43개, 6.0%)·인도네시아(40개, 5.6%)·일본

(29개, 4.1%) 순이다(해외법인 포함). 〔보강〕 상위 20개국에 전체의 65.5%(468개)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93개국에 34.5%(247개)가 분산되어 있으며, 상위 5개국 중 4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아시아 중심으로 분포함을 보여준다. 거점 수와 진출 기관 수의 비율에도 차이가 있어, 중국은 33개 기관이 79개 거점을, 미국은 38개 기관이 67개 거점을 운영하는데,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등 현지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이 복수의 지방 거점을 설치한 결과이다.

도시별로는 자카르타(29개 기관)·하노이(26개)·베이징(23개) 순으로 진출 기관이 많고, 10개 이상 기관이 진출한 도시는 18개이다. 하노이·베이징·자카르타 3개 도시에 동시 진출한 기관은 12개(14.3%)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해당하며, 자카르타는 진출 기관 수(29개)에 비해 거점 수(36개)가 많은데 이는 발전공기업·SOC 기관이 현지법인·사업수행사무소와 해외사무소를 병행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점 집중은 해당 도시가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지이자 현지 정부·산업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동일 도시에 무역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금융(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문화(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너지·인프라(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기관이 소재하여 기관 간 협업 지원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도시별 공공기관 진출 현황(10개 이상 기관 진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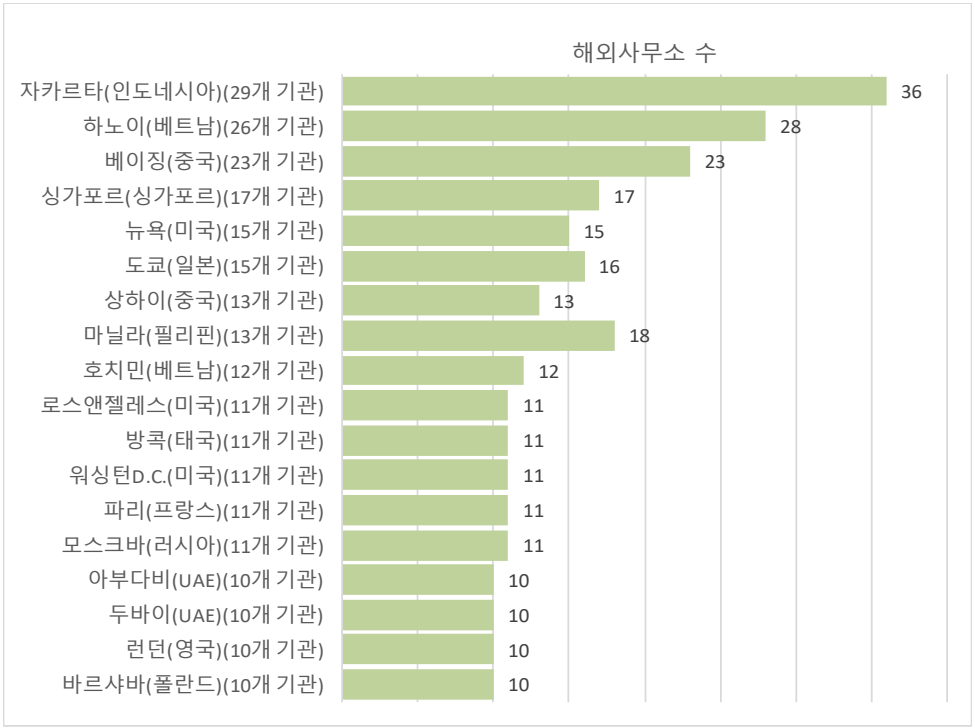

주: 기관수는 도시에 1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한 기관의 수임(동일기관 복수 사무소 시 하나의 기관으로 산정)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설치 시기별로는 전체 거점의 58.6%가 2010년대 이후 설치되었으며, 2020년대 들어서만 159개가 신규 설치되는 등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확장 구조도 변화하여, 2010년대에는 신남방정책의 영향으로 동남아·중동(자카르타 17개, 마닐라 13개, 하노이 12개)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고, 2020년대에는 신규 진출 도시(23개)보다 기존 거점 도시 내 밀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하노이(11개)가 최다인 가운데 바르샤바(8개)가 원전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리야드(5개, 중동 다변화)·보스턴(3개, 바이오헬스)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2024년에는 단일 연도에 49개 해외사무소가 집중 설치되었는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에 대응한 한국콘텐츠진흥원(2024~2025년 17개소 일시 설치)과 기존 IP-DESK를 해외IP센터로 이관·개편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편 폴란드(바르샤바)·루마니

아(체르나보다) 등 유럽 원전수출 거점이 새롭게 형성되어 해외법인·해외지점·사업수행사무소가 연계 구축된 것이 2010년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기별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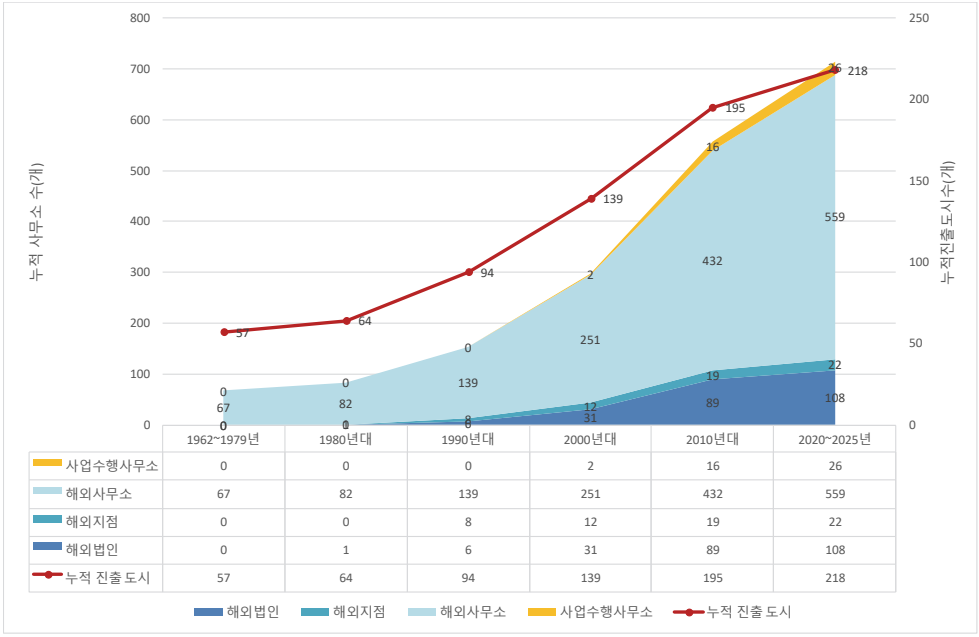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4)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분석은 목적에 따라 대상을 이원화하였다. 거시적 현황분석(규모·분포·시기)은 해외법인을 포함한 84개 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 71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투입·운영·성과 분석은 동일 기준 비교가 곤란한 해외법을 제외한 79개 기관 60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설치근거 → 자원투입 → 운영·통제 → 성과관리 → 환류로 이어지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아루어져 온 요소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검토하였다.[4]

4) 본 분석의 현황분석 대상(81개 기관, 715개소)은 재정경제부의 2025년 12월 집계(82개 기관, 723개소)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재원의 독립 거점 포함 여부, 단일 사업을 위한 복수 특수목적법인(SPC)의 산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세부 내용은 「다. 분석의견 (1)」 참조).

[분석 대상 개요]

구분	기관 수	해외사무소 수	진출 국가/도시
현황 분석	84개(부설 3개 포함)	715개소	113개국 218개 도시
투입·운영·성과 분석	79개(부설 3개 포함)	607개소(해외법인 제외)	110개국 191개 도시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나. 분석의견

(1) 해외사무소 개념 정의·집계 기준의 정립 및 체계적 공시기반 마련 필요

해외사무소에 대한 법령상 통일된 개념 정의가 없어 기관별·부처별 집계 기준이 상이하고 전체 현황의 정확한 파악 자체가 어려운바, 개념 정의와 집계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 공시 및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부처별 집계 결과의 차이는 '무엇을 하나의 해외사무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본 분석의 현황 분석 대상은 81개 기관 715개소인 반면 재정경제부의 2025년 12월 발표 집계는 82개 기관 723개소로, 기관 수와 사무소 수 모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물리적 사무공간 없이 인력만 파견된 주재원을 독립된 해외사무소로 볼 것인지, 단일 사업을 위해 설립된 복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각각의 독립 거점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의 공백은 최근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6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해외사무소등'의 범위에 법인·지사·지점·연락사무소 및 주재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설치·변경·폐쇄 시 30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나, 주재원의 법령상 정의가 여전히 부재하여 신고의무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며, 물리적 거점인 해외사무소와 인력 파견 형태인 주재원에 동일한 신고·보고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남아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 현행 공시 체계에는 해외사무소의 명칭·소재지·설치연도·운영형태·설치 근거 등 기본 현황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와 국민이 공공기관별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사무소의 법적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의 통일을 선결 과제로 추진하되, 해외사무소의 개념에 새롭게 포함된 주재원의 정의와 신고의무 적용 범위, SPC의 거점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알리오 공시 항목에 기관별 명칭·소재지 등 일반현황을 포함한 정보 공개 기반을 마련하고, 주무기관 차원에서 설치 근거의 법적 적정성, 내부감사 실시 여부, 성과지표 운용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기 점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분산적 관리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설치 근거의 법적 기반 차이에 따른 법제화의 단계적 정비 필요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가 부여되는 규범의 법적 위계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설립법·정관 모두에 근거가 부재한 기관도 확인되는바, 설치 근거의 법적 위계와 운영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가 어느 수준의 법적 기반 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등)의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하 '설치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을 전수 검토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① 설치 근거 조항이 법률에 직접 명시된 경우(법률 명시형), ② 그러한 조항은 없으나 해외사업·국제협력 등 해외업무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법률 간접규정형), ③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법률 미비형)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하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설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하는지, 정관에 근거하는지, 내부규정에 그치는지에 따라 근거 규범의 위계가 달라지고, 이 차이가 이후 법제화 정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법률 명시형은 40개 기관(50.6%), 법률 간접규정형은 14개 기관(17.7%), 설치 근거 조항도 해외사업 관련 조항도 없이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만 의존하는 법률 미비형은 25개 기관(31.6%)으로 나타났다.

[설립근거법상 해외사무소 설치근거의 명확성 수준]

(단위: 개, %)

단계	분류기준	기관수
법률 명시형	해당 기관 설립근거법에 해외사무소(지사·사무소 등) 설치 근거 조항이 직접 명시	40 (50.6)
법률 간접 규정형	해당 기관 설립근거법에 해외사업·국제협력 등 해외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정관 등에서 해외사무소 설치로 구체화	14 (17.7)
법률 미비형	해당 기관 설립근거법에 설치 근거 조항 및 해외사업 관련 조항이 없으며, 정관, 이사회 의결에만 근거(별도 설립법이 없는 자회사·부설기관 포함)	25 (31.6)

주: 1. 법률 명시형은 설립근거법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등 설치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법률 간접 규정형은 설치 근거 조항은 없으나 해외사업·국제협력 등의 업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임

2. 법률 미비형에는 별도 설립법이 없는 자회사·부설기관(13개)이 포함됨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법률 미비형 25개 기관(88개 사무소)의 정관을 전수 검토하여 실제 설치 근거를 재분류한 결과, 기관 응답과 실제 정관상 근거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확인되었다. 이사회 의결·내부규정을 설치 근거로 응답한 기관 다수가 실제로는 정관에 설치 근거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설치를 결정한 절차(이사회 결의)를 설치의 법적 근거로 혼동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은 설립법에 의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정해지고 제·개정 시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 일반 내부규정과 위계가 구별되므로, 정관에 설치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는 정관 수준에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률 미비형 25개 기관을 정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재분류하면, 정관에 사무소 설치 근거를 직접 명시하였거나 해외사업 조항과 사무소 설치 조항을 결합하여 갖춘 기관이 21개(77개 사무소), 정관 조항의 해석에 여지가 있는 기관이 1개(1개 사무소), 설립법과 정관 모두에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기관이 3개(10개 사무소)로 확인되었다.

설립법·정관 모두에 근거가 부재한 3개 기관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정관에 사무소·지사 설치 조항이 없고 목적사업에도 해외사업 조항이 없으며,[5] 한전KDN

은 목적사업이 IT·전력시스템 사업으로 한정되어 해외사업의 근거가 없고 정관 제3조의 '사업소' 조항도 국내외 구분이 없어 해외사무소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6][7]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관의 '지역사무소' 조항이 국내 조직을 상정한 것이어서 해외사무소를 포함하는 수권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8]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3개 해외지사를 운영하면서도 설립근거법인 「무역보험법」에 사무소 설치 수권 조항이 없이 정관 제4조제2항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핵심 업무인 무역보험업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운영 규모에 비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에 해당한다.[9]

---

5) 국방과학연구소 정관 제3조(소재지)는 "필요한 곳에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소·지사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목적사업(제4조)에도 해외사업 관련 조항이 없다.

6) 한전KDN 정관 제2조(목적)는 전력설비 시스템통합(SI)·스마트그리드·정보통신·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관련 조항은 없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외 구분이 없고 "사업소"라는 표현이 해외사무소를 포함하는지도 불명확하다.

7) 이에 대해 한전KDN은 정관 제3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국내외 불문 포괄적 수권 조항에 해당하며,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등 해외사업 연계 가능 사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②유형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관 제3조의 사업소 설치 조항은 국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②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해외사업·국제협력이 목적사업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국내·외" 원자력 엔지니어링 사업이 직접 명시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는 구조가 상이하므로 원문 분류를 유지하였다.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제3조(소재지)는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무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국내 지역 단위 조직을 상정한 표현으로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3조(사업)의 국제협력·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조항(제4호, 제7호)은 해외 활동의 간접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사무소 설치를 직접 허용하는 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9) 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개정 전 정관 기재사항이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 후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사무소"로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에 차이가 없으며, 동 조항이 해외사무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법률 간접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의 법률 간접형 분류 기준은 해외사업·국제협력 등 해외업무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정관 기재사항 일반 조항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문 분류를 유지하였다.

[법률 미비형 해당 기관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유형	기관수	해당기관
기관 설립법은 있으나 해외사무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	11	한국무역보험공사(23), 국방과학연구소(4), 한국해양과학기술원(5), 한국산업기술진흥원(3), 한국산업기술시험원(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 산업연구원(2), (재)우체국금융개발원(1), (주)강원랜드(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한국농촌경제연구원(1)
자회사 · 부설기관	13	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별도 설립법 없음	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합계	25	-

주: 괄호 안은 해외사무소 수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설치 근거가 부여되는 규범의 위계는 기관별로 법률 명시형에서 정관, 나아가 설립법·정관 모두에 근거가 부재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정관은 제·개정 시 주무부처의 인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 내부규정과 위계가 구별되나 법률 명시형에 비해서는 근거의 위상이 낮으며, 특히 운영 규모가 큰 기관에서도 설립법상 직접적 수권 조항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업 수행을 위해 23개 해외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무역보험법」에 사무소 설치 수권 조항이 없이 정관에만 의존하고 있어, 핵심 업무의 해외 수행 규모에 비해 업무의 성격과 법적 기반 간 정합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근거 규범의 위계와 운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선 설립법·정관 모두에 근거가 부재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관에 설치 근거를 명시

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규범적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핵심 업무의 해외 수행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설립법상 수권 조항이 부재한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3에 따른 신설 사전협의 과정에서 설치 근거의 법적 위상과 설치 목적의 구체성을 필수 검토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신규 거점이 충분한 규범적 기반 위에서 설치되도록 사전 통제 단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유사 기능 거점의 분산적 병렬 운영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동일 도시 내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 기관이 각자 독립 거점을 운영하는 분산적 병렬 구조가 광범위한바, 기관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공간·현지 네트워크·공통 정보를 공유하는 원루프(One-Roof) 방식의 협력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특정 영역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다. 607개 사무소를 8개 기능 범주로 분류한 결과 무역·수출·시장진출이 249개(41.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국제개발협력(ODA, 84개)과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75개)을 더한 상위 3개 범주가 전체의 67.2%를 점유한다. 반면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사무소 수(75개, 12.4%)에 비해 이를 운영하는 기관 수(20개, 25.3%)가 8개 범주 중 가장 많아, 전체 기관의 4분의 1 이상이 현지 정보수집을 위해 각자 독립적인 거점을 두는 분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사무소 기능 범주 분류]

(단위: 개, %)

기능 범주	해외사무소 수	기관 수
무역·수출·시장진출	249 (41.0)	19 (24.1)
국제개발협력(ODA)	84 (13.8)	4 (5.1)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 구축	75 (12.4)	20 (25.3)
사업개발·인프라·기타	57 (9.4)	16 (20.3)
금융·투자관리	47 (7.7)	9 (11.4)
관광·문화	36 (5.9)	3 (3.8)
자원·에너지사업	36 (5.9)	12 (15.2)
기술협력·방산	23 (3.8)	8 (10.1)
합계	607	-

주: 1. 79개 기관, 607개 사무소 기준(해외법인 제외)
2.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24개) 및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현지 정보 거점(15개)은 실질 업무가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해당하여 정보수집·조사·네트워크로 분류
3. 기관 수는 해당 기능 범주 사무소를 1개 이상 보유한 기관의 수이며, 복수 기능 범주에 걸쳐 있는 기관은 중복 산정됨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이러한 기능 집중은 거점 도시별로도 뚜렷한 특성으로 나타나며, 동일 도시에 유사 기능 기관이 병렬적으로 모여 있다. 607개 사무소는 110개국 191개 도시에 분포하나 10개 이상 기관이 진출한 15개 밀집 도시에 213개(35.1%)가 집중되어 있다. 도시별로 보면 싱가포르(금융 5개)·뉴욕(금융 6개)은 금융·투자 거점, 베이징(정보수집 8개)·모스크바(정보수집 4개)는 정보수집·네트워크 거점, 자카르타(사업개발 7개)·마닐라(사업개발 3개)는 SOC·인프라 사업개발 거점, 워싱턴 D.C.(기술협력·방산 4개)는 대미 협력 거점으로 성격이 구분된다. 특히 금융·투자 기능은 전체 47개 중 27개(57.4%)가 이들 밀집 도시에 집중되어 다른 범주보다 거점 도시 집중도가 높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집중 도시(10개 이상 기관 집중)의 기능별 분포 현황]

(단위: 개, %)

도시	무역 수출	관광 문화	정보수집 네트워크	사업개발 인프라	ODA	금융 투자관리	기술협력 방산	자원 에너지	합계
하노이	8	1	2	4	4	3	1	3	26
자카르타	5	1	4	7	2	1	-	4	24
베이징	8	2	8	2	-	1	-	1	22
도쿄	8	1	5	-	-	2	-	-	16
뉴욕	5	1	2	-	-	6	-	-	14
싱가포르	6	1	1	-	-	5	-	-	13
방콕	6	1	1	2	1	-	-	-	11
상하이	6	1	4	-	-	1	-	-	12
마닐라	4	1	-	3	2	1	-	-	11
로스앤젤레스	5	2	2	1	-	1	-	-	11
두바이	6	1	1	-	-	1	-	1	10
모스크바	4	1	4	-	-	1	1	-	11
파리	4	2	2	-	-	1	1	1	11
호치민	6	1	1	1	-	2	-	-	11
워싱턴D.C.	2	-	3	-	-	1	4	-	10
집중도시 소계	83 (33.3)	17 (47.2)	40 (53.3)	20 (35.1)	9 (10.7)	27 (57.4)	7 (30.4)	10 (27.8)	213 (35.1)
전체	249	36	75	57	84	47	23	36	607

주: 1. 집중도시는 공공기관 10개 이상 진출한 소재 도시를 의미함
2. 해외사무소 수는 해당 도시에 등록된 해외사무소(등) 수 기준으로, 다음 절의 인력·예산의 해외사무소수(인력 1명 이상 기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집중 도시(10개 이상 기관 집중)의 기능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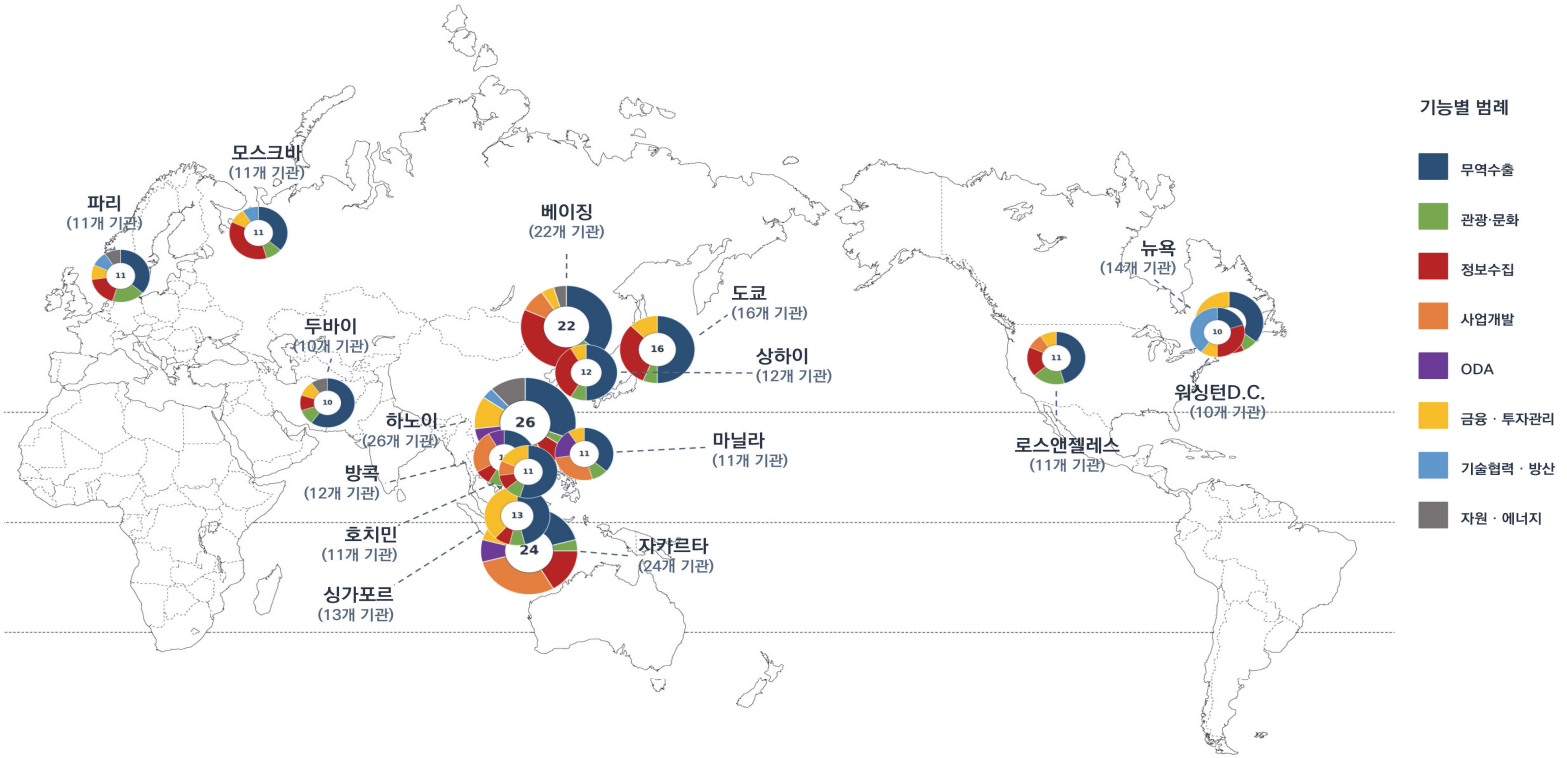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무역·수출 기능군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131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6개소, ICT)·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6개소, 중소기업)·한국콘텐츠진흥원(27개소, 콘텐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9개소, 농수산식품)가 소관 업종별로 별도 거점을 운영한다. 소관 업종으로는 역할이 구분되나 현지 활동은 바이어 발굴·시장조사·네트워크 구축 등 공통 요소에서 중첩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한국벤처투자(5개소, 14명)·기술보증기금(싱가포르 1개소, 2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리아스타트업센터(5개소, 19명)가 각자 소규모 인력으로 활동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부처 재편과 사업 이관이 반복되며 누적된 것이기도 하다.[10] 나아가 복수의 한국 공공기관이 동일 도시에 진출한 이후 현지 정부기관이 소통창구와 역할 분담의 공식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단순한 운영 비효율을 넘어 코리아 브랜드 통합성 측면의 과제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분산 구조에 대한 대응 방향은 재정경제부의 K-마루 정책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5월 2차 거점으로 선정된 베이징은 본 분석에서 다수 기관이 집중된 도시(22개)로 확인된 곳으로, 기존 6개 기관에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단일 거점 최대 규모(19개 기관)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베이징 K-마루가 민간기업(포스코홀딩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다카르 K-마루가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의 ODA형으로 설계된 점은, 분산적 병렬 운영의 통합 여지가 공공부문 내 협력을 넘어 민간 인프라 연계 및 무역 외 기능군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분석에서 ODA 기능(84개)과 정보수집·네트워크 기능(75개)에서도 분산 구조가 확인된 점과 부합한다.

따라서 K-마루 방식을 하노이·싱가포르·두바이·베이징 등 기관 밀집 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기관별 업종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공간·현지 네트워크·공통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기관의 4분의 1 이상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현지 시장·정책 동향 정보의 수집은 공동 조사·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2차 협약

10) ICT 분야의 경우 2008년 IT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관되었으나, 2013년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4년부터 별도 IT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동일 재원(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이원화 구조가 형성되어 일원화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에서도 기관별 입주 시기가 기존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연동되어 2026~2031년까지 분산되어 있어 물리적 집적의 실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K-마루 확산과 병행하여 거점별 기관 간 역할 경계와 비용·인력 배분의 표준 모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자원 투입 확대에 따른 비용 적정성 관리 필요

해외사무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파견·현지채용 간 비용 구조 격차, 수당 규정의 적용 한계, 사무공간 임차료의 편차가 함께 확인되는바, 비용 적정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은 인력과 운영비 양 측면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4,388명에서 2025년 5,305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같은 기간 7,858억원에서 1조 75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확대는 단순한 규모 증가에 그치지 않고, 인력 구성(파견·현지채용)과 비용 항목(인건비·수당·임차료)에 따라 1인당·단위당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특성을 수반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① 파견·현지채용 중심의 인력 확대 추세와 그에 따른 1인당 비용 구조의 격차, ② 운영비 증가의 항목별 동인, ③ 재외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적용 한계, ④ 사무공간 유형 및 기관 간 임차료의 편차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인력 측면을 보면, 해외사무소 인력은 2021년 4,388명에서 2025년 5,305명으로 5년간 20.9% 증가하였으며, 증가는 현지채용(28.1% 증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파견인원은 2022~2025년 1,555~1,558명으로 외형상 정체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한전KPS의 해외 현장사업 종료(254→100명)가 신규 개소한 36개 기관의 파견증가(95명)를 상쇄한 결과이다.

[해외사무소 인력 추이(2021~2025)]

(단위: 명, %)

연도	파견 (A)	현지채용 (B)	인력합계 (C=A+B)	파견비율 (A/C)	전년대비증감 (증감률)
2021	1,463	2,925	4,388	33.3	-
2022	1,557	3,235	4,792	32.5	403 (9.2)
2023	1,555	3,427	4,982	31.2	191 (4.0)
2024	1,557	3,771	5,328	29.2	346 (6.9)
2025	1,558	3,747	5,305	29.4	△23 (△0.4)

주: 1. 해외법인 제외. 인력상주 사무소 수는 파견 또는 현지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사무소를 의미함(비상주·휴관·국내운영 등은 제외)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3년부터 해외사무소 미운영,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4년부터 국내운영 및 무인운영으로 전환하여, 2025년 실제 운영 해외사무소는 77개 기관, 592개 사무소임
3. 인원은 겸직·근무기간 등을 반영한 소수점 단위 원자료를 반올림한 값으로, 연도별 합계 및 전년대비 증감이 표기 수치간 계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인력은 특정 거점에 편재되어 15개 밀집 도시에 1,310명(24.7%)이 집중되며, 도시별로는 하노이(183명), 뉴욕(174.5명), 베이징(142명), 싱가포르(129명) 순이고, 파견비율은 워싱턴 D.C.(66.7%), 파리(59.1%)가 높은 반면 베이징(28.2%), 상하이(29.2%) 등은 현지채용 비중이 높다. 이때 파견과 현지채용 간 1인당 비용 구조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파견직 1인당 인력운영비는 190.5백만원으로 인건비(76.0백만원) 외에 주재수당·주거비·자녀학비보조 등 부가비용이 인건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반면, 현지채용은 1인당 36.5백만원으로 현지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

[파견직 · 현지채용별 1인당 인력운영비(2025)]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1인당 인력운영비					
		인건비	주재수당	주거비	자녀학비	기타수당	합계
파견	1,558	76.0	48.9	46.6	13.5	5.4	190.5
현지 채용	3,747	36.3	-	-	-	0.1	36.5

주: 1. 해외법인 제외
2. 각 항목은 반올림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인력 구조는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총운영비는 2021년 7,858억원에서 2025년 1조 754억원으로 5년간 36.9% 증가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인력운영비(53.3%)와 임차료(42.0%)의 증가율이 전체를 크게 상회하여 운영비 증가를 주도하였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연도별 운영비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인력운영비	2,859 (36.4)	3,068 (34.5)	3,635 (36.9)	3,996 (39.2)	4,383 (40.8)
임차료	1,011 (12.9)	1,146 (12.9)	1,204 (12.2)	1,304 (12.8)	1,436 (13.4)
사업비	2,608 (33.2)	2,995 (33.7)	3,313 (33.6)	3,087 (30.3)	2,966 (27.6)
기타운영비	1,380 (17.6)	1,673 (18.8)	1,708 (17.3)	1,809 (17.7)	1,969 (18.3)
합계	7,858 (100.0)	8,882 (100.0)	9,860 (100.0)	10,196 (100.0)	10,754 (100.0)
(전년대비 증감율)	-	(13.0)	(11.0)	(3.4)	(5.5)

주: 1. 해외법인 제외
2.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주재수당, 주거비, 자녀학비, 기타수당 등)의 합임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한편, 운영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1]을 준용하나, 동 규정이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먼저, 사전승인 요건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2025년 기준 파견직 1인당 지급액이 기본 상한(초·중등 연 12.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무소는 158개로 모두 외교부장관 사전승인 대상이나, 수백 개 사무소에서 매년 변동되는 학비에 대해 개별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워 대부분의 기관이 내부 규정을 통해 초과분의 65%까지 자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영어권 5개국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의 해석이 기관별로 상이하다. [별표 6] [비고 1][13]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원칙적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5년 동 5개국 10개 사무소에 612.6백만원이 지급되는 가운데 보스턴·시드니 등 예외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지급, 적용 제외 국

---

1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은 국외학교(유치원,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국외 학교 등)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에게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되, 학비가 면제·무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고 1]
1.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

가를 4개국으로만 한정하여 일부 국가를 누락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아울러 외교부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가 규정 본문에 없는 유치원 학비 예외를 설정하고 있어 규정 정합성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다.

사무공간 측면에서는 독립사무실 중심(79.4%)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무실 유형에 따라 단위면적당 비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독립사무실이 429개(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타기관 공동입주(46개, 8.5%), 재외공관 내 입주(25개, 4.6%), 공유오피스(19개, 3.5%)가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 공유오피스는 평균면적이 35㎡로 독립사무실(372㎡)의 약 10분의 1 수준이나, 단위면적당 임차료 중앙값은 172,176원/㎡로 독립사무실(36,527원/㎡)의 4.7배에 달하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선택한 공간 유형에서 오히려 단가가 높게 산출되는 비용 역전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공용시설 이용료와 관리 서비스 비용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공유오피스의 운영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일 도시 내에서도 기관 간 단위면적당 임차료 격차가 파리 22.5배, 두바이 7.6배, 하노이 6.7배에 이르는데, 이는 기관별 계약 시점과 계약 조건, 관리비 포함 여부 등이 상이한 데다 동일 도시 내 임차 정보를 공유·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사무소 사무실 유형별 임차료 현황(2025)]

(단위: 개, ㎡, 만원)

사무실 유형	사무소 수	평균면적	월임차료		비고
			평균값	중앙값	
독립사무실	429 (79.4)	372	1,292	789	-
타기관 공동입주	46 (8.5)	132	736	205	한국 공공기관 간 공유
재외공관내 입주	25 (4.6)	73	619	631	대사관·총영사관· 한국문화원 등
공유오피스	19 (3.5)	35	654	543	WeWork 등 상업 공유공간
기타	21 (3.9)	38	133	134	협력기관 제공 공간 등
합계	540[1)] (100.0)	331	1,154	711	-

주: 1) 운영형태가 해외사무소인 540개소를 대상으로 함
1. 괄호 안은 비중임
2. 임차료는 2025.12.31. 한국은행 고시 환율 기준
3. ㎡당 월임차료는 임차료·면적이 모두 확인 가능한 사무소 기준이며, 계약 방식에 따라 관리비가 임차료에 포함된 경우 단가가 높게 산출될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따라서 파견직 수당 지급의 규정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교부장관 사전승인 요건의 이행 방식과 영어권 5개국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공공기관 현실에 맞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무공간 유형 선택과 임차료 수준에 대한 기관 간 비교·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오피스의 비용 역전 현상이 본래의 절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운영·통제 체계의 형식화와 실질적 이행 강화 필요

해외사무소의 운영·통제 체계가 규정 구비 등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 이행은 미흡한바,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물리적 감독이 어렵고 현지 법규·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반 조직 단위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해외사무소의 운영·통제 실태는 규정·지침의 보유 여부(형식)와 그 실제 작동 여부(실질)를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COSO 내부통제 프레임워크[14]를 분석틀로 삼아 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모니터링의 단계별 구비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계약·채용에 대한 사전통제와 자체점검·본사 모니터링 등 사후통제의 구축 정도, 그리고 내부감사 실시 실태와 국회·감사원·부처의 외부 지적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규정·지침을 갖추는 상위 단계의 구축율은 높으나 위험 대응과 실제 작동 확인으로 갈수록 이행률이 낮아지는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확인되며, 이러한 괴리는 특정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사후 통제와 모니터링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COSO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규정·지침을 갖추는 통제환경의 형식적 구축율은 높으나 위험평가·통제활동·모니터링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이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확인된다. 내부통제는 규정·지침 마련(통제환경)에서 위험 파악·대응계획 수립(위험평가), 실제 절차 운영(통제활동), 감사를 통한 작동 확인(모니터링)으로 이어져야 하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행률이 하락하여 상위규정만 갖추고 실제 작동은 확인되지 않는 구조가 나타난다.[15]

---

14)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는 1992년 미국에서 발표된 내부통제 표준 모형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내부통제 평가 기준이다. ①통제환경(조직의 지배구조 · 책임구조), ②위험평가(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위험의 식별 · 분석), ③통제활동(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 절차), ④정보와 의사소통(통제 관련 정보의 식별 · 전달), ⑤모니터링(내부통제 운영의 지속적 평가)의 5개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본 분석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해외사무소 운영 · 관리 체계 진단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15) 5개 구성요소 중 '정보와 의사소통'은 본사–해외사무소 간 보고체계 전반에 내재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COSO 구성요소별 이행률의 역피라미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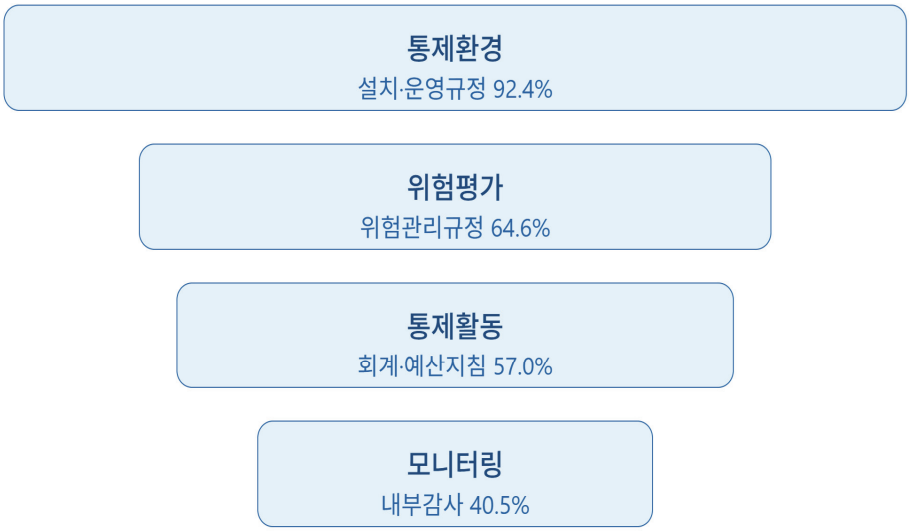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구체적으로 통제환경에 해당하는 규정·지침의 구비율은 설치·운영규정(92.4%)과 전담 관할부서(81.0%)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으나, 인사·복무규정(68.4%)·보수·복지규정(69.6%)은 다소 낮아 인사 관련 기준 정비가 미흡한 기관이 존재한다. 반면 위험평가 단계의 구비율은 현저히 낮아, 위험관리 규정·매뉴얼은 51개(64.6%), 철수·축소 계획은 32개(40.5%)에 그쳐 평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비해 비상시 대응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구비 기관에는 한국공항공사·국방과학연구소 등 상당한 규모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국가 안보·기간산업과 직결되는 기관이 포함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개 기관이 모두 미구비 상태로 본원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자체가 부재하다. 통제활동 단계의 정보보안지침 구비율(48.1%)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통제환경 대비 위험평가·통제활동 단계 전반의 이행률이 저조하다.

[COSO 구성요소별 관리 체계 현황]

(단위: 개, %)

COSO 구성요소	항목	구비 기관수	구비율
통제환경	설치 · 운영규정	73	92.4
	전담 관할부서	64	81.0
	인사 · 복무규정	54	68.4
	보수 · 복지규정	55	69.6
위험평가	위험관리규정 · 매뉴얼	51	64.6
	철수 · 축소계획	32	40.5
통제활동	회계 · 예산지침	45	57.0
	정보 보안지침	38	48.1
모니터링	내부감사 정기실시(연1회 이상)	32	40.5

주: 복수응답 포함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모니터링 단계의 내부감사 정기 실시율(40.5%)은 설치·운영규정 구축율(92.4%) 대비 51.9%p 낮아 5개 단계 중 편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규정이 갖추어져 있어도 주기적 점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통제 절차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 확인된 구조적 취약성의 핵심에 해당한다.

예산집행·계약체결·채용에 대한 사전승인(3개)과 정기 자체점검·본사 정기모니터링(2개) 등 5개 통제 절차의 구축 수준에도 기관 간 편차가 크며, 사전통제에 비해 사후통제의 구비율이 낮다. 5개 절차를 모두 갖춘 기관은 41개(51.9%)인 반면 1~2개만 갖춘 취약 기관도 12개(15.2%)이고, 현지 계약 시 사후보고·자율시행만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11개에 달하며 사전승인 기준도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까지 편차가 크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UAE 사무소장의 셀프 계약(2,345만원 부당이득) 사례는 이러한 통제 공백이 실제 비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16)]

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부당이득 환수(2024.12), 해임(2024.10), 경찰 고발(2024.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법원신고(2025.8)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외사무소 업무현황 점검 정례화(주간) 및 회계 통제

형식과 실질 간 단절은 내부감사와 외부 지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연 1회 이상 정기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32개(40.5%)에 그치며, 연 1회 이상으로 응답한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감사가 2023년 7월(2년 6개월 경과), 비정기로 응답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9월(약 8년 공백)로 확인되는 등 응답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도 다수 나타난다. 나아가 79개 기관 중 27개(34.2%)에서 국회·감사원·부처의 지적이 발생하였고, 그 유형이 예산·비용, 성과관리, 감사·통제, 인사·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이러한 관리 공백이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닌 운영 전반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유형별 외부 지적 내용]

유형	주요 내용	지적 주체
예산·비용 적정성	국외여비 과다집행·출장보고서 부실, 기관 간 해외지사 비목편성 불합리한 차이	국회
성과관리 미흡	해외사무소 성과점검 절차 결여, 사무소 급증 대비 인력 과소, 투자실적 집계 방식 문제	국회
감사·통제 체계	해외사무소 정기감사 미실시, 파견직원 복무관리 부실	국회·감사원
인사·채용 부적정	현지직원 채용절차·평가·재고용 부적정, 일반계약직 채용 위반	국회
자산·회계관리	해외사무소 물품관리 부적정, 외부회계 정산체계 미흡	부처
내부비위	사무소장의 자기 소유 회사와 계약 체결·부당이득 취득	부처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해외사무소를 별도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와 결과를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규정 및 철수·축소 계획 구축을 의무화하며 정보보안 중요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지침 수립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계약 사전승인 기준이 기관 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승인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화 규정 개정(2025.10)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6) 성과관리의 형식화와 성과-자원 연계 미흡에 따른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

성과지표가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해외사무소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무소 단위의 예산·인력 배분으로 환류되지 못하는바,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설치에서 존치·폐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의 성과관리는 지표의 설정에서 측정, 평가, 그리고 그 결과의 자원 배분으로의 환류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이 작동할 때 비로소 운영 개선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분석은 ①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는지(지표 설정의 실질성), ② 목표치가 성과를 변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목표 설정의 적정성), ③ 지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outcome)를 포착하는지 아니면 산출물(output)·정성 평가에 편중되어 있는지(지표 구성의 성격), ④ 성과평가 결과가 사무소 단위의 예산·인력 배분으로 환류되는지(성과-자원 연계)의 네 측면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과관리 체계가 외형상으로는 광범위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지표의 형식적 설정, 목표치의 과소 설정, 산출물·정성지표 편중, 환류 기제의 단절이 중첩되어 사무소의 존속 타당성을 판단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지표 설정의 실질성을 보면, 외형상의 운영 비율과 실제 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확인된다. 응답 기관의 87%가 성과지표를 운영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설문 응답과 실제 제출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지표 공란 제출이나 본사 사업부서 편입 평가 등 형식적 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미설정 8개 기관(10.1%)[17]과 형식적 운용 5개 기관[18]을 합하면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한 기관은 13개 내외에 이른다.

목표치 과소 설정도 광범위하다. 달성률 산출이 가능한 1,784건 중 100% 이상을 달성한 지표가 1,114건으로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80% 미만 저달성 지표는 146건에 그쳐 성과가 100% 구간에 집중되는 분포를 보이며, 전 지표 100% 달성 기관이 14개에 이른다. 목표·실적 간 괴리가 큰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한국수

17) 미설정 8개 기관은 (주)강원랜드,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이다.

18) 형식적 운용 5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력원자력에서는 7개 전 지표의 목표와 실적이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하는 등 성과지표가 실질적 측정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성과지표가 정성지표에 편중되거나 산출물(output)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outcome)가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않는데,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는 계량 가능한 핵심 성과가 발생함에도 보고서평가 중심의 정성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개 사무소에 사무소별 고유 지표 없이 기관 전체 평균 점수를 일괄 적용하며 21개 지표 전체가 산출물 지표로만 구성되어 바이오헬스 수출지원이라는 핵심 목적의 측정이 부재하다.

[목표치 과소 설정 주요 사례]

기관(사무소)	지표	목표	실적	비고
한국전력공사 (북미지사)	해외사업 영업활동 추진	52점	293점	목표의 5.6배 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해양과학연구센터)	협력성과 건수	10건	2,739건	목표의 274배 초과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 개발 지원 역할 강화, 해외 경영·기술 확보 등 7개 전 지표	-	-	목표·실적 동일

자료: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2026.5.)

성과평가 결과가 사무소 단위의 운영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점도 주요 한계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49.4%)이나 인사평가(36.7%) 등 개인 보상에는 연결되지만, 사무소 단위의 예산증감에 반영하는 기관은 5개(6.3%), 인력조정에 반영하는 기관도 5개(6.3%)에 불과하며, 운영 방식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기관은 전체의 21.5%에 그친다.

특히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목표를 산출하는 역진적 구조에서는 실적이 낮을수록 목표도 낮아져 부진 사무소의 달성률이 오히려 높게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5년 연속 채권회수액이 운영 예산을 하회하는 싱가포르지사(달성률 90.0%)가 실질 성과가 우수한 자카르타지사(달성률 83.6%)보다 오히려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는 역전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성

과관리 체계가 사무소의 존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활동량 중심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outcome)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계량 가능한 핵심 성과가 공식 평가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사무소 단위의 예산·인력 배분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력 미배치 또는 기능 정지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기관이 존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절차를 관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설치에서 존치·폐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Ⅲ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3239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822-10
ISSN 3140-323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